

연구 보고서

새로운 세기의 시대정신: 팍스 아메리카나 이후

2009. 10.

사단
법인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연구용역과제>

“새로운 세기의 시대정신: 팩스 아메리카나 이후”

연구책임자 : 김 남 국 (서울대)

공동연구원 : 강 상 규 (방송대)

공 진 성 (서강대)

김 은 실 (성신여대)

박 동 천 (전북대)

서 회 경 (진실화해위)

오 영 달 (경희대)

최 치 원 (고려대)

홍 태 영 (국방대)

연구기간 : 2009. 5. 8.~2009. 10. 7.

이 책자는 2009년도 국회연구용역계획에 의하여 한국정치사상학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로서 의정활동연구에 활용되도록 발간한 것입니다.

차 례

• 전체개요	i
• 국문요약	ii

제1부 — 제국의 재구성: 회고와 전망

• 논문1: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와 제국주의 / 박동천	3
• 논문2: 제국, 시대정신 모색의 새로운 조건 / 공진성	23
• 논문3: 팩스 아메리카나에서 팩스 유엔으로 / 오영달	39

제2부 — 동아시아의 경험과 성찰: 전쟁과 평화

• 논문4: 근대기획으로서 동아시아 / 최치원	59
• 논문5: 전쟁과 정의: 한국전쟁에서 정당성 문제 / 서희경	73
• 논문6: 동아시아의 전환기 경험과 새로운 세기의 시대정신 / 강상규	113

제3부 — 유럽의 경험과 성찰: 근대와 이성의 재해석

• 논문7: 근대 산업주의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홍태영	139
• 논문8: 새로운 세기를 향한 러시아의 인간주의 윤리학 / 김은실	157
• 논문9: 유럽의 새로운 역할: 규범적 리더 또는 현실적 타협자? / 김남국	175

새로운 세기의 시대정신: 팩스 아메리카나 이후

최근의 경제위기는 과연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몰락하고 있는가와 만약 그렇다면 미국을 대체할 어떤 대안 질서가 가능한가에 대해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와 비교정치 영역에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둘러싼 흥미로운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논의들은 국가전략과 산업재편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 논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기획은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발 더 나아가서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철학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세계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올 시대를 구성할 가장 설득력 있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정치철학의 차원에서 묻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현재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서있고 어디로 향해 가야하는가에 대해 더 분명한 청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획은 크게 세 가지 연구로 나뉜다. 첫째는 20세기의 근대가 성취한 것들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제국에 대한 재검토라는 주제 아래 따져 보는 것이다. 둘째는 동아시아의 19세기와 20세기에 대한 성찰을 통해 미국적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시대정신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셋째는 유럽의 19세기와 20세기에 대한 성찰을 통해 미국적 질서를 대체할 또 하나의 시대정신의 근원을 추적해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획은 팩스 아메리카나 이후 새로운 세기의 시대정신이 미지의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와 유럽의 과거와 현재로부터 그 대안을 모색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이 공동연구는 모두 아홉 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제국의 재구성: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 아래 세 편의 논문이 19세기의 제국주의와 20세기의 미국 패권 체제,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제국의 등장 또는 유엔 중심의 새로운 평화체제 형성 문제를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동아시아의 경험과 성찰: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 아래 세 편의 논문이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근대라는 기획과 그곳에서 일어난 전쟁에 관하여 살펴보고, 또한 새로운 세기의 시대정신을 모색해 본다. 제3부에서는 ‘유럽의 경험과 성찰: 근대와 이성의 재해석’이라는 제목 아래 세 편의 논문이 유럽의 유토피아 문학 속에서 드러나는 산업사회의 미래의 모습을, 러시아의 정교사상 속의 인간주의 윤리학의 내용을, 그리고 새로운 국제사회의 규범적 리더로서의 유럽공동체의 위상을 살펴본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실존과 시의의 관점에서

박동천(전북대학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의 저자로서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대표적인 전도사 중 하나이다. 그는 정치사회의 중요한 결정에서 시민 개개인의 의지와 판단이 자유롭게 표현된다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하나의 집단지성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또한 시민 개개인들이 정부의 권력에 대해 잘잘못을 따짐으로써, 너무나 잘못된 시책이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데서 개명된 정치의 요체를 발견했다. 말하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공론이 작동하다보면 인류의 역사는 서서히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존 밀의 저작에는 적어도 겉으로 볼 때 이와 다른 입장이 또한 자주 나타난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원주민 사회에 관해서 영국의 지배를 옹호한 것이다. 물론 존 밀은 우월한 무력으로부터 지배자의 권리가 나온다고 본 것은 아니다. 당시 유럽인 관리와 군대가 식민지에서 자주 저질렀던 무자비한 학살이나 폭력에 의한 강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렇지만 그는 당대 인도나 뉴질랜드 원주민 사회에 개명된 전제자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러한 전제자의 역할을 영국을 비롯한 유럽인들이 맡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미개 - 반(半)야만 - 개명으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야 하며, 실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계몽주의관 단선적 진보사관을 그는 일생 동안 견지했고, 당대의 영국과 프랑스의 자유주의가 대표하는 유럽 문명이 곧 개명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논리학체계』에서 주창하는 주지주의 인식론, 그리고 『공리주의』에서 개진하는 공리주의 윤리학과 결합되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도덕에 관한 존 밀의 사유체계에 골조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한 가지 논점을 밝히고, 나아가 하나의 논제를 제기하는 데 목표가 있다. 한 가지 논점이란 존 스튜어트 밀이 일반적인 원칙을 주장하는 차원과 구체적인 현실의 상황에서 우러나는 필요를 인정하는 차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밀은 표현의 자유에는 무제한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표현의 방식에 대한 일정한 제재는 당연하다고 봤던 현실적인 사상가였다. 그는 콩도르세와 생시몽의 기획계몽주의에게서 영향을 받은 만큼 적어도 흄과 버크의 관습계몽주의에게서도 영향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는 “자유”라는 가치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다른 모든 가치를 내팽

개치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욕망과 충동과 목적들을 가능한 평화적으로 해결할 길을 찾아나가는 실제적인 탐색과정이다. 밀이 원칙의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발적인 판단을 강조했다고 해서 실존과 시의의 차원에서도 모든 규제나 지도에 반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를 아무리 중시하더라도, 정치사회는 동시에 모종의 결정을 일상적으로 내려야 하고 강행해야 한다. 개개인의 행태에 대한 규제는 모두 “선의의 간섭”과 흡사한 논리에 따라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제국을 옹호한 것은 인종주의적 편견의 소산이라기보다는 공리주의적 계몽주의에 입각한 판단이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려는 한 가지 논제는 존 밀의 제국주의를 비판할 때, 그 관점 자체의 정합성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비쿠 파레크처럼 인도 출신의 학자가 동인도회사와 자유주의 이론의 편파성을 오늘날 공격하는 것은 자체로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동인도회사가 인도에서 저지른 처사 가운데 오늘날 누구도 승인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명백한 인종적 편견을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 행태를 오늘날 성토했을 필요가 크다는 이유에 묻혀서, 존 밀의 제국주의와 예컨대 스티븐이나 매콜리나 심지어 제임스 밀의 제국주의를 섬세하게 분별할 필요가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인도 지배가 잘못으로 판정을 받아야 한다면, 구체적인 행태들이 잘못이었기 때문이지 영국인들이 인도에 가서 활동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밀은 상대가 영국인인가 인도인인가, 아일랜드인인가 잉글랜드인인가를 가리지 않고, 어떤 일에 관해 말할 때 그 일 자체의 성격과 결과에 초점을 맞췄다. 인도의 전통적 지배계급이 민중에 대한 압제자이자 착취자라고 본 것이며, 민중이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유럽 지식인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존 밀의 계몽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문화에 관해 우열을 가릴 수 있다는 발상, 과학적 절차를 통해 도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서양 근대가 보편적인 계몽을 대표한다는 발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 사회가 진보하리라는 믿음 등은 모두 어느 정도씩은 단견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한 단견을 근거로 삼아 존 밀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오만을 부리고 있었다고까지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근대 유럽의 계몽주의는 자신들의 성취에 도취되어 오만을 부린 것이 사실이다. 제국주의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횡포에 더해 “문명화 사명”이라고 하는 오만을 부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명화 사명”이 오만이라는 시각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실천적으로는 어떤 함축을 가지는가? 유럽의 문명이 인도의 전통문명에 대해 오만을 부릴 자격이 없다고 항변하는 이론적인 주장은 오늘날 시대를 주도하는 인도인들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경쟁하는 실천에 대해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

유럽의 지식인 사회에서 “문명화 사명”에 오만이 섞였음을 반성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말이 된다. 실제로 그랬듯이, 인도에 대한 “선의의 간섭”이 잘못이거나 더 이상 이익이

아니라고 반성하는 순간 영국은 그 간섭을 중단할 수 있다. 심지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보상마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인의 입장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문명화 사명”이 오만임을 발견하는 순간 그 문명의 물결을 막기만 하면 되는 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 식민지 노릇을 경험한 지역에서 오늘날 제국주의에 대한 성토가 빗발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성토에는 정서적인 위안 이상의 의미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서적인 위안 이상의 의미가 더욱 많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피식민지라는 단순 도식에서 벗어난 비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영어 교육을 받고 자란 타고르의 경우, 유럽인들이 보기에 그의 시가 아무리 벵골의 정신을 형상화한 것으로 비쳤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진짜로” 벵골적인지 의문이 항상 가능하다. 영국 대 인도라고 하는 지역적 차이에만 몰두한 이분법에 따라 생각하면 할수록, 이미 300년 이상 영국과 접촉하면서 영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인도의 경우, “진짜” 인도가 무엇이나고 하는 본질주의적이므로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의 덫에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존 밀은 적어도 스스로 의식하는 수준에서는 지역적, 인종적 구분이라는 장벽에 자신의 사고를 가두지 않았다. 자기 부친이 스코틀랜드 출신이라고 해서 잉글랜드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을 느끼지 않았듯이, 유럽인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사업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자행한 폭력에는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당장 철수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도 보지 않았다. 죽기까지 인도의 독립은 시기상조라고 봤기 때문에, 당대 영국 정부의 제국주의를 밀이 묵인한 것까지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영국 정부의 제국주의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자신의 의식 안에서, 밀은 인도인들이 압제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동인도회사 방식의 간접 통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단순히 밀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동인도회사 방식보다 직접통치가 결과적으로 더 나쁠 것도 없었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고, 애당초 간접 통치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으리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당대 또는 현재 인도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 처리하는 편으로 공리의 초점을 모으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때 무엇이 “자신의 일”이나 “스스로 잘”에 해당하느냐고 하는 질문은 이론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선택하고 결과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이다. 기원이 브리튼 섬에 있느냐 인도 대륙에 있느냐고 하는 지리적-발생학적 고려는 이와 같은 실존적 질문에 대해 하나의 참고 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선택을 인도하는 결정적인 지침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별을 존 밀이 창시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나아가 인도의 전통적 문헌에도 이런 분별을 가르치는 지혜가 넘쳐나겠지만, 어쨌든 존 밀이 강조한 계몽에서 이런 분별력이 핵심 요소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제국’이라는, 시대정신 모색의 새로운 조건에 관하여

공진성(서강대학교)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미국 단일패권의 등장은 미국의 ‘제국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2008년 겨울, 미국에 불어닥친, 1930년대의 대공황에 비견되는, 심각한 경제난은 미국의 ‘제국적’ 지위에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지난 8년간의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대외정책을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제국’ 미국의 앞날에 관한 각종 추측을 또한 무성케 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국’을 둘러싼 지난 논의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시대적 변화를 ‘제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국’이 어떠한 의미에서건 우리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할 때에 전제해야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폴리스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국민국가에 갇혀 있고, 동시에 로마 제국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그저 관념적으로 지구화한 세계의 보편적 시민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의 제국적 지위나 역할에 대한 도덕주의적 긍정/부정론보다는, 현실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위상이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련의 논자들의 주장들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이 ‘어떤’ 제국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인구학자인 임마뉘엘 토드이다. 그는 현재 미국의 ‘제국적’ 행태가 근본적으로 더 이상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미국의 공포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미국의 무용성, 그리고 그에 따른 고립의 공포”가 미국으로 하여금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을 세계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인식시키려고 노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두 가지 변화가 전제되어 있다. 하나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오히려 주변 세계에 종속적이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된 것이다. 문자해독율 증가와 출산율 저하와 함께 세계가 점차 개인주의화, 근대화, 민주화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제국적 사명’으로 내세웠던 미국의 입지가 좁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적어도 상징적으로나마 세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자신의 ‘힘’, 아니 ‘절대권력’을 무대에 올려야”하므로 “연극적 군사주의의 발전”을 피하게 된다.

토드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현 세계의 문화적 진보에 대한 설명변수를 대중의 문자해독율 증가에 따른 각국의 출산율 저하에서 찾는 것이다. 낮은 출산율은 일종의 근대성의 표현인 것이다.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Herfried Münkler)는 이

처럼 출산율이 낮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을 희생태세를 상실한 ‘탈영웅적 사회’라고 부르고, 이 탈영웅성이 민주주의와 함께 미국이 제국이 되는 데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탈영웅성은, 앞에서 토드가 언급한 세 번째 행위규범인, 신무기의 개발로 나타나고, 전쟁수행에서 자국 시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간군사회사의 활용과 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용병의 고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미제국의 탈영웅적 모습은 그 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에서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 ‘민주적 제국’이라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제약이 오히려 유권자들을 속여가면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게 하고, 2년 주기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의석을 잃지 않기 위해 오히려 단기간에 전리품을 챙기려는 생각으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게 하며, 백인 중산층 유권자의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희생되어 지지가 철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민간군사회사와 그린카드 병사를 고용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뮌클러는 미제국의 가장 큰 약점이 외부의 위협에 있지 않고 ‘제국적 계산서를 지불할 미국 유권자들의 의문스러운 의지’에 있다고 평가한다.

민주주의는 에이미 추아(Amy Chua)에게도 미국이 제국이 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가 미국의 제국화를 비판하는 이유는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제국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명목상으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제국이 될 수 없다. “제국이 민주주의 이념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압이라는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몽된’ 혹은 ‘자유주의적인’ 제국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미국은 제국이 될 수 없다. 과거에 로마는 피정복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여 그들을 로마제국의 일부로 만들 수 있었지만, 오늘날 미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의 주민들을 정복하여 자국의 시민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의 정치적 연합으로 묶을 ‘접착제’가 없다는 사실이 21세기에 미국과 같이 민주정체를 가진 초강대국이 제국이 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은 지나치게 비형식적이다. 심지어 경계도 외부도 없는, ‘무장소’(non-place)이다. 추아가 미국의 제국화 시점으로 지정한 9.11 테러 이전에 출간된 『제국』에서 네그리와 하트는 미국이 1991년의 걸프전쟁에서처럼 보편적 가치를 앞세우고 전 지구적으로 경찰국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현상에서 주권국가를 넘어서는 지구제국의 출현 경향을 읽었다. 미국의 연방주의 헌법에 내장되어 있는 제국적 팽창의 원리가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출현한 오늘날의 지구제국은 그 안에 미국을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하여 국민국가들과 다국적 기업들, 국제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 그리고 각국의 국민들을 행위자들로 위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제국은 일종의 혼합정적 구성체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의 지구제국이 출현하게 된 것은 국민국가적 통제를 벗어나서 탈주하는 다중의 존재 탓이다. 생산이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비-물질적 노동이 증대하면서 자본은 더 이상 노동을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과거와 같이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끊임없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다중을 지배하기 위해 네트워크 형태의 주권인 지구제국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그리와 하트에게 지구제국은 한 마디로 자본 축적 위기

의 산물이며 다중의 지구적 네트워크화에 맞선 자본의 대응이다.

미국이 제국이 아니라는 네그리와 하트의 주장에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제국이 새롭게 합성된 초국가적 네트워크 권력이기 때문이 아니다. 근대의 국민국가 체제가 제국의 붕괴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등장한 국민국가가 자본주의가 아무리 침투한다고 해도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고 가라타니는 말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상품교환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가라타니는 오히려 국민국가의 등장, 즉 네이션과 스테이트가 고착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제국’이라는 기반에 주목한다. 오늘날 세계자본주의의 압력 하에서 추구되는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광역국가 형성의 시도들과, 국민국가 형성에 실패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의 낙후한 지역에서의 종교적 원리주의 운동에 공통적으로 과거의 제국적 기반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제국’의 등장 (동시에 쇠퇴) 원인은 행위자의 심리적/정신적 수준, 정책집단의 수준, 국가적 수준, 그리고 지구적 혹은 세계체제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영화 감독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는 미국의 팽창적 대외정책 혹은 제국화 경향의 원인을 아들 부시(George W. Bush Jr.) 대통령의 정신상태에서 발견하고자 한 듯하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고, 제국은 부시 대통령의 정신상태의 정상화와 함께 혹은 그의 퇴임과 함께 쇠퇴하게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 개인의 성향에서 미국 제국화의 원인을 찾는 것과 연결된 또 다른 해석은 그것을 흔히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 정책집단의 영향력 또는 음모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제국화를 ‘네오콘’이라는 특정 정책집단과 연결하면 제국은 지난 8년간의 일시적 현상이 되어 버리고 그 전과 후의 민주당 정부 시기의 ‘제국적’ 정책은 자동적으로 부정된다.

가장 추상적으로 지구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국 등장의 혹은 미국 제국화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과 아리기(Giovanni Arrighi)의 세계체제론이다. 네그리와 하트의 지구제국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지배에서 벗어나는 다중의 자율성과 그로 인한 자본의 축적 위기에서 비롯한, 새로운 주권합성을 통한 자본의 지구적 대응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시적인 제국주의적 역행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세계체제론자들인 월러스틴과 아리기 역시 부시 정부 이후의 변화를 과거의 ‘미국 헤게모니’ 시기와 부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들은 미국의 이른바 ‘제국화’ 현상을 장기적인 자본주의의 주기에서 헤게모니 쇠퇴기에 실질적 능력이 없는 헤게모니 국가 미국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몰락을 오히려 가속화할 수도 있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지구화한 자본주의적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이해하거나 역사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긴 생애로 이해하거나 간에 위에서 살펴본 거시적 입장들은 공통적으로 부시 정부에서 나타난 미국의 제국적 혹은 제국주의적 경향을 어떤 큰 흐름 안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중요한 것은 그 큰 흐름이고, 그 흐름이 이 시대의 근본적 조건이 된다.

추상화 수준을 조금 낮추면 제국 현상을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 즉 주권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의 문제 또는 패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론들이 있다. 국제정치학의 패권안정론과 세력균형론의 이른바 제국 버전인데, 패권안정론의 제국 버전은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또한 미국이 그러한 국제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제국은 근본적으로 패권이 부재하는 경우에 불안정해지는 국제사회의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뜻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구 전체를 포괄할 만한 패권의 부재가 생겨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소련 제국의 몰락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안정이 하나의 강력한 패권국가에 의해서보다는 적절한 세력의 균형을 통해서 더 잘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 전통적인 현실주의자들은 오늘날 미국의 ‘지나친’ 제국화 또는 그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안정이 미국을 견제하여 힘의 균형을 맞춰줄 만한 강국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국’ 시대의 공통된 특징은 군사적 불안정이다. 다만 이 불안정의 원인을 사람들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패권안정론의 제국버전은 탈냉전 시대에 근대화에 실패한 ‘불량’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군사적 불안정 요소라고 여긴다. 9.11 이후 미국은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더 이상 일정한 영토 내에서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근대국가가 아니라 그러한 폭력의 독점에 실패한 국가들에서 우후죽순 솟아나고 있는 다양한 동기를 지닌, 그러나 공통적으로 미국에 적대적인, 비국가적 무장집단임을 깨닫고서 자신 역시 근대국가적 틀에서 벗어나 ‘예방적’이고, 심지어 ‘선제적’인 방식으로 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제국은 근대적 주권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사사화한 폭력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그 반면에 세력균형론의 제국버전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근대화에 실패한 이른바 ‘불량’ 국가들의 존재가 오히려 오래된 제국적 수탈의 결과이며 또한 오늘날 미국의 제국적 확장을 위한 알리바이로서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뒤늦게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환기의 혼란과 폭력’은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안정될 테지만, 그 과도기적 현상의 의미를 ‘테러리즘의 보편화’로까지 격상시켜 제국화의 빌미로 삼는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 시대의 군사적 불안정을 이해하건 간에 공통적인 것은 탈영웅적인 사회들의 제국(물질적 부에 근거한 실재로서의 광역국가)과 여전히 영웅적인, 근대화에 실패한 사회들(종교적 원리주의에 근거한 부재로서의 광역국가) 간의 부정적 상호의존성이다. 이러한 상황을 네그리와 하트는 다분히 홉스적인 의미에서 ‘지구적 내전의 상태’ 또는 ‘항구적 전쟁의 상태’라고 부른다. 홉스의 ‘자연상태=전쟁상태’가 리바이어던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이듯이, ‘항구적 전쟁의 상태’ 역시 지구적인 차원의 리바이어던, 곧 ‘제국’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홉스가 실제로 영국내전을 겪으면서 폭력을 독점한 국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지구적 내전’을 겪으면서 지구적으로 폭력을 독점하는 제국의 필요성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시대적 변화를 ‘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살펴보는 작업은 ‘지식’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과거의 우리의 지식과 사상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제국’의 지식이었다. 그리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제국들 간의 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우리의 ‘제국적’ 지식은 ‘국민국가적’ 지식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국가적 지식체계는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새로운 국제사회의 ‘패권적’ 지식체계에 동화되었고, 오늘날 ‘지구적·보편적’ 지식체계 속으로 통합되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이 시대의 정치적 질서가, 그리고 지식의 질서가, 지배적 ‘제국’의 질서가 아닌, 비지배적 ‘세계공화국’의 질서가 될 수 있을까? 비지배적 세계공화국이 등장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 안에서 비지배적 보편적 지식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새로운 세기의 이른바 ‘보편적’인 지식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국적 질서의 주변부에 속한 한국의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유엔으로: 양차 걸프전쟁의 논의를 중심으로

오영달(경희대학교)

오늘날 인류세계는 국경을 넘어 상호의존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과 기타 다양한 위협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류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류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국제적 또는 국내적 분쟁과 갈등을 경험해왔고 또한 그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각각 등장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은 이러한 인류 노력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오늘날 유엔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되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의 중심적 행위자 역할을 해온 국가들이 국제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강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날 인류세계의 문제 처리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국가들이 모여서 형성한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인류가 유엔의 정체성에 대하여 가지는 서로 다른 견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미 리처드 비셀(Richard E. Bissel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엔이 그 회원국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전체, 즉, 인류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있어서 세계정치는 강대국들이 지배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강대국들 중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실제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의 세계적 강국이었던 영국을 대체하여 세계정치를 주도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오늘날 인류는 가히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양상은 1989년 동서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공산 진영이 무너지고 이어서 발생한 제1차 걸프전쟁을 치루면서 더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미국은 오늘날까지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세계의 여러 국가들 중 월등한 힘을 보유함으로써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불리워져 왔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빈번히 일방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계는 더 불안한 곳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오늘날 상호의존이 심화되어가는 인류세계에 있어

서 전통적인 강대국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연합, 즉 유엔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최근까지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 팩스 아메리카나로부터 팩스 유엔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엔에서 다루어지는 쟁점들을 크게 갈등과 협력이라는 두 범주로 나눌 때 이 논문에서는 갈등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양차에 걸친 페르시아 걸프 전쟁에 있어서 유엔과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상호작용을 고찰한다. 미국은 1991년과 2003년에 페르시아 만에서 각각 대규모 전쟁을 주도하였다. 이 두 전쟁의 뚜렷한 차이점은 1991년에 있었던 제1차 걸프전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하에 미국과 그에 협력하는 다국적군에 의해 수행되었던 반면에 제2차 걸프전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1차 걸프전쟁은 그만큼 그 정당성이 높았다고 한다면 제2차 걸프전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바로 양차 걸프전쟁의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그 전쟁의 결과가 오늘날 시대정신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 즉 본 논문은 양차 걸프 전쟁에 유엔의 역할과 미국의 행동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인류세계의 시대정신은 팩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라 팩스 유엔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사회의 평화와 질서는 어느 한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엔이라는 제도적 행위자를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하에서 이 논문은 제2장에서 유엔이 세계평화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일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논의한 후 제3장에서 제1, 2차 걸프전쟁에 있어서 미국과 유엔의 역할과 관계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그것이 세계평화에 갖는 의미를 도출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에서 논문의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 논문에서 시도한 논의가 오늘날 인류가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과 관련하여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면서 끝맺고 있다.

근대기획으로서 동북아시아: ‘미완의 기획’인가?

최치원(고려대학교)

홉즈바움(Eric Hobsbawm)에게 20세기의 역사는 ‘극단의 시대’이다. 그러나 극단의 시대는 단지 20세기에 한정되어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통칭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18세기 중반 이후의 역사에도 적용되어 이해될 수 있다. 근대는 어떤 의미로는 20세기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파괴적인 인간의 잠재력이 축적되어지는 시기, 즉 전쟁과 전체주의의 등장 그리고 대량학살로 상징되는 인권유린과 같은 파멸적인 역사를 준비하는, 그리고 그 스스로가 그런 역사를 조금씩 써 가고 있던 시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베버(Max Weber)의 합리주의 테제에 입각해 근대를 ‘일방적인, 경제적 및 행정적인 합리성의 제반 척도들’로 이해되는 이성의 피상적인 힘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항상 불안과 항의의 갖가지 동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아도르노 상 수상식 연설(1980)에서 근대에 관해 하나의 중요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근대는 각종의 혼돈과 오류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미완의 기획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근대 기획의 의미를 유럽에 한정시켜 이해한다면 그것은 유럽의 근대 기획이 될 것이다. 유럽은 계몽의 시대부터 하나의 근대 기획을 전개시켜온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유럽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기획은 오늘날 유럽자신에만 한정되어 실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그것은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의 삶의 양식을 지배하고 토대가 되어있는 온갖 종류의 정치·사회·경제·교육 그리고 군사제도들과 이데올로기들 및 문화들의 형식으로 실현되어 있다. 유럽의 근대기획은 계몽이 실현하고자 한 것, 베버(Max Weber)의 용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세계의 탈신비화(Entzauberung der Welt)를 목적으로 만들어 지고 전개되었다. 칸트는 1780년대 중반에 우리는 ‘계몽된 시대(aufgeklärte Zeitalter)’가 아니라 아직 ‘계몽의 시대(Zeitalter der Aufklärung)’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칸트의 생각이 전개되고 200년이 훨씬 넘어섰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계몽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혹은 이미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확답을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전세계에 아직 야만과 인간성에 대한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아직 ‘계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계몽된’ 세계는 ‘탈신비화된’ 세계이다. 그것은 또한 근대기획이 실현하고자했던 목표였다. 세계가 인간의 이성적 혹은 합리적 지식의 탐구와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세계에 대한 계몽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동안 세계는 우리의 인식 범위를 벗어나 있는, 감추어진 비밀

스런 존재는 더 이상 아니었다. 세계의 모든 것이 (그것이 정치이든, 경제이든, 문화이든 아니면 자연이든 간에) 계몽이 무한한 신뢰를 보냈던 인간이성의 힘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고 조작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계몽된 세계에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계몽된 세계는 진보를 가져왔기 보다는 전쟁과 파괴 그리고 자유의 억압이라는 야만과 파멸의 모습으로 20세기 초중반에 나타난 적이 있었다.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와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는 이러한 야만과 파멸이 계몽 자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계몽이 목적으로 했던 탈신비화의 ‘신화’를 비판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럽의 계몽에서 출발하는 근대기획은 일단 실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비록 유럽의 근대기획이 혼돈과 오류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을 갖지 못하는 실패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유럽은 평화로운 공동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로 다시 태어나 과거의 혼돈들과 오류들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 근대기획은 미완의 상태를 넘어 완성을 향해가고 있는 듯하다. 지난 세기에 유럽 세계를 수놓았던 전쟁과 파괴 그리고 자유의 억압이라는 야만과 파멸은 평화로운 공동체 속에서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근대기획으로 이해하고 이에 관해 탐구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혹은 서구로부터 (그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든 자의로 이루어졌든) 계몽으로 이해되는 학문과 사상 및 기술, 한마디로 근대 문명을 수용하는 순간부터 동북아시아는 계몽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이래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삶의 양식 속으로 유럽의 정치·사회·경제·교육·군사제도들과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문화들이 흡수되어 계몽이 목적으로 했던 세계의 탈신비화를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동북아시아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하나의 근대기획의 유형이 되었다. 물론 세계의 탈신비화 혹은 계몽된 세계에 나타나는 파멸의 모습 역시 서구에만 국한되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동북아시아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에서도 계몽으로 이해되는 학문과 사상 그리고 문명은 삶의 어둡고 비밀스런 측면을 밝혀줌으로써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위한 조건으로 이용되었기 보다는 평화파괴적 현실논리의 전개와 정치공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침략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봉사했다. 그것들이 전적으로 계몽이 상정했던 것, 즉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지식은 이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근대기획으로서 동북아시아가 갖는 각종의 혼돈들과 오류들을 극복하고 유럽의 경험을 상상하고 희망해 볼 수 있을까? 오늘날 탈근대가 언급되는 시대는 의미상실 그리고 의미부정을 통해 특징지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칸트적 의미의 자기사유(Selbstdenken)와 자유가 의심되고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보다 자유로운 의식을 전개하고, 오히려 의미유발과 의미창조 그리고 의미부여의 필요성을 더욱 자각케 하는 인식론적 조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하나의 미완의 기획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거의 혼돈들과 오류에 대해 반성해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지식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또한 전체 근대의 맥락에서 과거의 사상과 지식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미래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적 사상과 지식체계를 전개시키는 것과도 연관된다.

전쟁과 정의: 한국전쟁에 있어서 정당성 문제

서희경(진실화해위원회)

이 연구는 정의전쟁론의 정치사상가인 마이클 월쩌(Michael Walzer)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제기된 전쟁의 정당성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한국전쟁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는 대체로 원인론과 고증론에 기초하였다. 반면에 한국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전쟁은 어떻게 이해되고 판단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 개시의 정당성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전쟁개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just cause)와 정당한 의도(just intention)가 있어야 하며, 또한 정당한 권위에 의한 공개적 포고가 전쟁 개시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쟁은 평화적 해결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최후수단으로써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한국 전쟁의 발발 주체 및 평가에 관해서는 전쟁 발발 시기부터 오늘날까지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마이클 월쩌에 따르면, 북한의 남침은 무단한 침략이며, 이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응전은 “통상적인 정당한 방어전쟁”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북한이 사전에 치밀히 계획하여 1950년 6월 25일 전면적으로 남한을 공격했다. 김일성은 1945년 이후 사회주의 구축이 완료되자 ‘남한을 소멸시키고 북한체제로 국토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전쟁을 개시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공식적인 선전 포고를 허위로 발표하여, 정의전쟁론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즉, 이점에서 북한의 전쟁개시는 부정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침략전쟁을 개시한 북한의 정치 및 군사지도자는 전쟁개시의 책임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원칙이기도 하다. 반면, 미국은 공식적인 참전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의의 원칙을 준수했다. 또한 모든 국가는 전쟁을 결정하기 전에 평화주의에서처럼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협상, 그리고 국제적 제재와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은 모두 평화적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고, 모두 군사적 대결을 우선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전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둘째, 한국전쟁 개입의 정당성 문제이다. 마이클 월쩌의 논의에 따르면, 미국과 유엔의 한국전쟁 개입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통상적인 방어 전쟁이지, ‘내전의 한 당사자에 대한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서 다른 당사자를 지지해 주는 의미에서의 역개입’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및 유엔의 개입은 형식상 ‘방어를 돕기 위한 개입’이었고, 월쩌가 분류한 개입 중에서는 역개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내용상 ‘남한의 방어전쟁’이라기보다 미국, 자유진영, 유엔, 인류를 위한 방어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한 미국의 최고 결정자들의 인식은 상당히 유사하며 대결의지는 확고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초기부터 한국전쟁이 소련 팽창주의의 산물이며, 미국과 자유진영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즉각 대처해야 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였다. 미국은 이 위기를 타개하지 않으면, 미국이 수립한 대한민국의 파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해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도력이 손상되어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체제 구축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

미국 군사개입의 주된 목적은 자유주의 진영을 결속시키고, 그 안에서 자국의 지위와 이익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으므로 미국의 개입 의도가 정당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은 매우 논쟁적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세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동의를 획득했다. 미국은 이 목적을 유엔의 대의 아래 수행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세계의 이익으로 만들어 싸웠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정의의 구현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적절하고 정당성 있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개입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미국의 국가 이익이 유엔 제도를 통해 보다 보편적 이익으로 여과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했다.

한편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즉각 개입하자, 소련은 한국 사태를 국내문제로 규정하고 개입에 반대했다. 미국이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엔에 의해 미국의 입장을 승인케 함으로써 내정 간섭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소련은 한국전쟁 개전의 직접 당사국이었다. 또한 북침은 사실이 아니며, 한국전쟁이 내전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스탈린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결정적인 무기 전부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개입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전쟁발발 직후 현지에 파견된 고문단들을 대부분 철수시켰다. 소련은 미국과 달리, 군사 개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공개적인 장에서는 개입을 은폐하고 미국과 유엔의 개입을 비난했다. 그런 점에서 소련은 개입의 정당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기만과 은폐에 의해 유엔의 적법한 절차를 무력화하고자 했다. 이것은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공산주의의 대의라는 관점에서는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 정의라는 관점과는 배치된다.

중국의 참전은 미국의 위협, 스탈린의 권고, 북한의 지원호소, 중국의 북한에 대한 동양적 의리 등의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이루어졌다. 중국 개입은 북한을 도와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 보다는 자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중국군의 한국전 개입 과정은 두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소련 및 북한과의 협조 하에 실제 전선 부근에서 중공군 부대 이동 등의 개입 준비가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공공연하게 ‘유엔군 북진 시 개입한다’고 경고하였다. 정의전쟁론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자국의 안보위협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회의에서의 사태 해결 노력이 보다 우선되어야 했다. 북한에서의 전쟁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잠정적이고 추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개입의 정당성은 제한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전쟁개입을 공식적

으로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의 했다.

셋째, 전쟁 수행의 정당성 문제이다. 왈찌가 제시한 전쟁수행의 정의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군사 및 정치 지도자나 전장의 병사가 전투의 승리 자체에 대한 고려 못지않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하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다. 즉, 전쟁은 민간인의 위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와 목적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왈찌는 군인이 민간인의 위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이 위험을 감수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인을 덜 희생시키는 작전을 검토하여 수행한 사례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웨이 페어몽크(Vermrk) 지역의 중수공장을 파괴하는 데 공습 대신에 특공대의 기습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두 번째는 이중효과 원칙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의 공중폭격 사례를 들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폭격 위주의 군사작전을 수행하여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군은 수색이 먼저여야 했지만, 무엇보다 탱크 공격과 항공기 폭격을 앞세웠던 것이다. 왈찌는 군인이란 민간인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군인은 위험에 처하게 된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에서도 민간인과 적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 왈찌는 침략에 맞서 방어전쟁을 시작한 당사국이 국가공동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결정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생존의 권리를 위해서 전쟁수행중의 규범에 구속받지 않고 비상한 수단을 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왈찌가 주장하는 극도의 비상상황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의 국민보도연맹원 처형 사례를 살펴볼 때, 이는 국가의 안보(생존)와 국민 보호(인권) 간의 딜레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시 상황에서 체제 저항 세력에 대한 보호 의무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과도 관련되어 있다.

국민보도연맹사건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전황이 다급하게 전개되자, 수감되어 있던 좌익 정치범들과 국민보도연맹원 등의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보도연맹원에 대한 처형은 전쟁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평가는 양분된다. 한편에서는 보도연맹원 처형이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했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도연맹원 처형은 “불법적 학살이며, 국가범죄”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국민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에 대한 처형은 한국정부가 급박한 당시의 전황과 위기의 경험, 그리고 공산군 점령 하에서 ‘적에게 협력할 가능성’ 등을 예단하여 결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발발 초기 인천소년형무소 등에서 170여명의 탈옥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전형무소는 준폭동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법적 정의의 실현은 현장상황의 정도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도연맹원 사건 전체를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이 글에서는 (1) 예비검속자의 선정과 처벌에 대한 심사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한 것이었는가, (2) 처형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비상하고 긴박했는가, (3) 처형 절차

는 준수되었는가, (4)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5)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첫째, 국가는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비상상황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은 국가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근대 계약론자들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마이클 왈쩌에 의하면, 국가 공동체의 정치적 주권과 영토 보전의 권리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로부터 유래 한다”고 밝히고, “생명과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우리가 전쟁에 관하여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국가의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런 국가는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민간인 희생에 대한 또 하나의 주요한 주장이다.

그런데 홉스에 의하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자체가 인간에게 가장 비상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무리 나쁜 국가라 해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하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존재해야만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도 존재한다. 왈쩌 역시 개인의 권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한 사회적 상황 밖에서는 실현되기 힘들며, 또한 국가의 자기방어의 대상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뿐만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보장하는 공동적 삶의 양식이라고 단서를 단다. 그렇다면 국가는 자기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성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훼손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 복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국가 없는 개인도 없고, 개인 없는 국가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함께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양날의 칼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공동적 삶의 양식이 실재하지 않거나 혹은 국가가 그러한 양식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침략에 대한 한 국가의 자기방어는 아무런 도덕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희생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적 삶의 양식’을 보호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즉, 국가가 자기 존립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궁극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정당화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를 공동적 삶의 양식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상 국가는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군인의 행위 중 어느 것은 정당한 것이며, 어느 것은 범죄행위인가?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을 기본목적으로 삼는 군인의 행위 자체가 범죄이다. 그러나 국가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에 대한 군인의 살인행위는 애국적이고 위대한 행위이다. 나아가 군인의 일반적인 범죄행위도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여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저지른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된다. 이럴 경우, 한국전쟁을 전후해 무고하게 민간인을 희생시킨 사례는 애국적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의 산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는 전쟁수행의 규범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이런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삶의 양식

‘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공직자 및 군인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공동적 삶의 형식에 부합한 것인지를 성찰해야 하며 범죄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최고위 공직자와 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는 과거 이들의 행위가 상황의 산물이라 해도, 그 행위가 도덕적, 정치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전환기 경험과 새로운 세기의 시대정신: 과거와 미래의 대화

강상규(방송대학교)

새로운 세기 벽두에 벌어진 9.11테러와 쌍둥이 빌딩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마치 인류가 어렵게 구축해온 문명의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21세기의 벽두에 벌어진 이 뜨거운 사건은 새로운 세기가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된 미래로 이어지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21세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21세기 지구적 차원에서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전환의 흐름을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맥락에서 더듬어보고 재구성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채워져 있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을까? 거대한 전환의 과정에 한반도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떠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대응을 했던 것인가? 당시 동아시아 삼국의 각기 다른 선택은 이후 어떤 다른 결말로 이어졌는가? 동아시아의 19세기와 20세기, 21세기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전환기로서 19세기와 21세기는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애초에 역사는 왜 움직이는 것이며, 전환기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한반도에게 전환기란 무엇인가? 바꿔 묻는다면, 한반도는 통시적으로 볼 때 전환기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경험을 하였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최종적으로 다음 질문으로 귀결된다. 새로운 세기의 한반도는 어디로 가야하며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동아시아의 19세기는 상이한 문명 곧 ‘동서문명’의 충돌이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기로서, 보통 ‘서세동점’의 시기로 표현된다. 19세기 동아시아의 중화질서(천하질서=중국적 세계질서)는 유럽발 근대국제질서라는 상이한 대외질서관념과 마주하게 된다.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예의 관념’에 기반한 중화질서로부터 ‘국가평등 관념’에 근거한 근대 ‘국제’ 질서로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하는 패러다임의 변동을 겪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19세기 동아시아 삼국은 동일한 사태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의 패러다임 변동이 중화질서하의 ‘조공 책봉관계’에서 근대국제질서의 수평적이고 독립적이며 그런 만큼 ‘무정부적인 관계’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왕의 고유한 패러다임을 밀어내는 과정이었으며, 기존의 문명기준이 새로운 문명기준에 의해 전복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것은 중화문명권의 관점에서 보면, ‘문명 기준’이 완전히 ‘역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에 나타난 ‘서구의 충격’이란 실제로 각국이 처한 각각의 외압의 성격이나 강도, 타이밍의 차이, 지정학적 위치, 기존 정치질서의 안정성 등의 여부에 따라 그 충격의 객관적 여파 곧 ‘위기상황’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각국의 중화문명 내에서의 위상과 중화문명의 수용 혹은 체감의 양상, 국가내부의 구조와 정치적 풍토 및 정체성, 고유하면서도 주요한 사유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 주관적 ‘위기의식’의 성격에도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했으며 이에 따라 대응방식도 달랐다는 점이다.

19세기 동서문명이 대면하는 현장은 물리적 폭력과 갈등을 수반하고 있었고 그 어지러운 현장의 한복판에는 서양국가와의 ‘조약’체결이라는 문제가 어김없이 얹혀 있었다. 만국공법(=국제법)은 이처럼 서구와의 대규모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불평등 조약의 체결이라는 새로운 위기상황의 접점에 놓여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19세기라는 전환기를 맞이하는 각국의 대응양상과 위기의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법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갖는 의미를 분석해 들어감으로써,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삼국에 핵심화두로 등장한 ‘문명개화’와 ‘자주 독립국가’가 구미의 근대국제질서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시대정신(zeitgeist)’으로 등장하는 맥락과 아울러 이에 대한 수용과 저항, 그리고 제국주의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20세기는 혁신의 시대였다. 거대한 공장에서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사람들은 욕망을 소비한다. 근대 문명이 안고 있는 문제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을 부추기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는 점점 더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 인류의 미래는 오늘 보다 더 나은 장밋빛으로 인식된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서구의 지성들이 ‘세계사의 발전 법칙’을 근대인의 상식으로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역사의 발전단계’ 운운하는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직선적 역사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다소 불안하더라도 직선으로 치달리는 역사의 기관차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게 된다.

동아시아의 19세기가 문명사적 전환기로서 외래의 문명기준에 의해 고유의 문명기준이 뒤집히는 ‘문명기준의 역전’의 시기였다면, 동아시아의 20세기는 ‘근대 따라잡기’의 세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20세기에 구체적으로는 서로 매우 다른 궤적을 밟은 듯 보였지만, 각국의 위기의식과 대응방식이 겨누는 창끝이 결국 ‘근대 따라잡기’라는 동일한 하나의 과녁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1세기 인류는 디지털화된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지구상의 국가, 지역, 시민들의 정보기술력의 격차가 21세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지식과 정보를 혁신으로 이어주는 정보처리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 이른바 ‘정보혁명’이 자리하고 있다. 사회조직의 네트워크 형태는 다른 시공간에서도 존재해왔지만, 새로운 정보기술 패러다임은 이 네트워크 형태가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파급되도록 하는 물질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류는 지구화의 흐름과 정보혁명 시대의 도래에서 비롯한 ‘거대하고 복합적인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19세기 전환기 경험이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문명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문제였다면, 동아시아의 21세기 전환은 정보혁명과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 ‘무한경쟁’의 속도전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동아시아에게 있어 19세기의 전환이 문명기준의 뒤바뀜이라는 문제였던 만큼, 주권국가 간의 국제질서나 부국강병과 같은 외래의 문명기준을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으나 여기에는 따라잡아야 할 목표와 선두주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힘들더라도 선두주자를 보면서 ‘근대의 문법’을 열심히 배우고 따라가면 길이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기의 상황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안개에 휩싸여 있는데다 모두가 아직 걸어보지 못한 미답(未踏)의 초행길인 지라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의 원칙에 의해 질주하는 근대 패러다임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마이드스의 손(Midas touch)’을 연상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건드리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신시켜 놓았고, 현대인은 모두가 자신이 마이드스의 손을 가진 주인공이 되기를 잠시나마 꿈꾸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마이드스는 온 세상을 황금으로 만들 수는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지는 못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신기술을 확보하려는 무한경쟁의 불뚝이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쉼 없이 계속되는 속도경쟁은 지구자체의 자정능력을 흔들어놓고 평형능력을 깨뜨리는가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행위이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모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매우 재앙적인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사례를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비유는 매우 극명하게 보여준다. 21세기 인류는 이러한 문명사적인 과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새로운 세기의 ‘거대하고 복합적인 전환’의 패러다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외치는 검은 피부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나, ‘생활정치’라는 구호에 익숙해있던 일본의 유권자들이 전후 줄곧 지속되던 자민당 체계를 갈아치운 것은 ‘변화’에 대한 의미심장한 열망의 분출이라고 할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이 검은 품고 양쯔강을 건너다 그만 강에 검은 배를 빠뜨리고 말았다. 그는 나중에 찾기 위해 검은 떨어뜨린 곳에다 주머니칼로 표시를 해두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는 표시해둔 곳으로 내려가 검은 배를 찾으려 했으나 검은 배는 눈에 띄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문제는 요컨대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흐르는 강물위에 서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의 행위는 매우 정당한 대응방식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고사성어는 게임의 룰이 변하고 경기장이 바뀌는 상황 즉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를 이해할 때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간주되던 방식이 전환기의 상황, 즉 새롭게 부상한 패러다임에서는 이미 전혀 ‘비’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명료하게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환을 감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19세기 조선의 전통주의자들이 화이관념의 연장선상에서 눈앞에서 전개되는 대외정세를 서양 오랑캐라는 새로운 위협적 요소의 ‘양적’ 증가라는 일종의 ‘현상적’인 차원의 변화로만 해석함으로써, 조선이 속해있는 동아시아 질서 자체가 근저에서부터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사례는 실제로 패러다임의 변환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드러내준다. 더욱이 패러다임의 변환을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정치 공간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안과 밖’으로 광범위한 동의를 끌어낸다는 것은 훨씬 더 난해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전환기적 상황마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긴장관계의 초점으로 떠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동아시아 정치질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가 이처럼 전환기적 상황마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긴장관계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된 데는 한반도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전환기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과 ‘구조적’ 사례들은 한반도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며 또한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아울러 한반도의 역할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준다. 한국의 정치가 국제정치 혹은 세계정세에 대한 안목을 왜 동시에 필요로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역사적 시야가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이 탄력성을 상실하면서 ‘군자 vs. 소인’의 이분법이 횡행했고, 19세기의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문명 vs. 야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분하려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식민지와 냉전, 분단과 산업화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민족 vs. 반민족’, ‘친북 vs. 반공’ ‘좌익 vs. 우익’ ‘민주 vs. 반민주’ ‘영남 vs. 호남’ ‘친미 vs. 반미’ ‘보수 vs. 진보’ 등의 편가르기가 일상화되었다. 이처럼 상극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벽을 넘어 ‘상생과 화해’의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 ‘가재의 탈피’에 관한 분석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간의 긴장, 그 내적 모순위에 진행되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기회’일 수 있다. 더욱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 전환의 한복판에서 씨름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인류보편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발상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과거와 미래를 향해 두 개의 질문을 던져야한다. “우리가 당시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과거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수반하는 질문이라면,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하는 물음은 미래를 향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책임 있는 지속가능한 선택을 하게 될지를 되묻는 질문

이 될 것이다.

19세기 중엽 조선은 기존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과의 전면적인 만남을 목전에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처럼 변화하는 세계를 직시하려는 책임감과 비전을 갖춘 정치세력이나 지식인그룹은 좀처럼 부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눈을 감는다고 해서 거대한 변환의 수레바퀴가 그냥 조선을 피해가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조선의 약점을 더욱 철저하게 파고들면서 짓밟으려 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전환기의 기로에 섰다.

근대 산업주의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19세기인들의 미래에 대한 투사

홍태영(국방대학교)

“유토피아를 포함하지 아니한 세계지도는 쳐다볼 가치가 없다”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은 그만큼 인간에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토피아 혹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전망 혹은 바램은 시간적으로 고대 이래로, 공간적으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하여 왔다. 현재 그리고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곳 그리고 다른 시간에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 혹은 그러한 공간은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것은 먼 미래의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미 존재한 적이 있는 것 - 동양에서 요순시대, 루소에게서 황금시대 등 - 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플라톤 이래 르네상스 시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까지의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은 주요하게는 ‘평화’와 ‘안녕’ 그리고 아우타르키적 삶을 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근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도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 유토피아에 대한 연구는 ‘장소유토피아’ 즉 플라톤의 전통을 수용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생각은 주로 섬이라든가 반도와 같은 공간적인 영역 - 홍길동의 ‘율도국’도 동일하다 - 을 통하여 형상되었다가,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전 미래지향적 사고 형태를 지닌 ‘시간 유토피아’로 변화된다. 즉 공간적 형태의 유토피아주의에서 시간적 과정의 유토피아주의로의 변화이다. ‘시간 유토피아’의 형성은 근대적 시간 개념의 형성 즉 ‘진보’라는 개념의 형성에 그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선형적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그것의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의 진보 개념 속에 시간의 선형적인 흐름이 존재하고, 그 시간의 흐름은 동력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그 흐름에 새로운 동력을 제시한 다거나 새로운 자극을 가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단축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근대의 진보적 사고들 속에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근대’의 특징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 두가지 사건이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이다. 전자는 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인간 주체가 정치적 주체로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고, 후자는 인간 주체가 자연에 대한 지배를 분명히 하는 계기로써 보여졌다.

주로 19세기 전반기에 유토피아의 전망에 우세하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디스토피아의 전망이 우세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디스토

피아에 대한 전망은 유토피아적 전망이 실현불가능하다는 비판론은 물론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보면서 내놓은 전망들이다. 따라서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 이후 디스토피아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시간적 순서이거나 병렬적인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19세기 산업주의 나아가 근대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근대를 넘어선 새로운 전망의 가능성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즉 ‘새로운 시대정신’ 혹은 21세기에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을 새롭게 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바에서이다. 따라서 마지막 절에서는 앞의 두가지 논의들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새로운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선 등장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다. 그것은 근대 이성의 기획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로부터 유추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 콩도르세, 생시몽, 콩트 등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은 실현가능한 새로운 미래의 모습으로서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실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실의 운동의 가속화시켜 시간 압축의 효과를 가져오고자 한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혁명 시기 콩도르세와 19세기 생시몽, 콩트 등이다. 18세기 계몽시대와 프랑스혁명을 잇는 인물이었던 콩도르세는 『인간정신 진보의 역사적 소묘』에서 진보의 매개물로서 과학을 제시하고, ‘완전성의 법칙’과 ‘진보의 법칙’이 실현되는 역사적 필연으로서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보의 자연스럽고 또한 당연한 전망은 이후 생시몽, 콩트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한 생시몽의 ‘산업 사회’, 콩트의 ‘실증주의 시대’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를 그리고 있다. 이것들은 근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 속에서 과학기술의 극한적 발전에 기반한 일종의 ‘기술적 유토피아’라고 불릴 수 있는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기술 유토피아가 실현된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벨라미(E. Bellamy)의 소설 『뒤를 돌아보면서(Looking Backward 2000-1887)』(1888)이다. 벨라미는 19세기의 사회적 모순, 산업사회의 후진성을 고발하고 21세기의 발전된 산업사회를 유토피아 양식으로 표현, 대비시키고 있다. 이 시간의 흐름은 단지 “한 세기가 흘렀을 뿐이지만, 세계사에서 수천년 동안의 변화에 비견될 만”하다는 언급에서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시간의 응축 효과를 보여주는 예이다.

자연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장악력을 증가시키고 있었고 그에 따른 낙관적 전망은 과학기술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낳았다. 그에 따라 산업주의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근거하여 미래의 유토피아를 그릴 수 있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져오는 빈곤과 노동조건의 열악 등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따름이었다.

엔겔스는 자신의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에서 노동자계급의 상태가 “모든 사회운동의 진정한 토대이자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산주의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책을 찾는 가운데 유토피아적 전망이 위치한다. 푸리에에는 산업주의가 가져온 폐해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의 제시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푸리에가 상정하고 추구했던 인간은 근대의 초입에 등장하고 가정되었던 인간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인간이었다. 19세기 초반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발전과

정과 맞물리면서 가정되고 현실화되는 인간의 모습은 이성적 인간이었고, 자유로운 계약의 주체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푸리에의 사상은 도발적이었다. 그는 획일주의적 거대원리에 대항하여 오로지 개인들에서 출발하여 사회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산업사회에서 개인들의 노동이 빈곤을 가져오고 억압적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인간의 정념(passion)에 근거하고 그 정념이 실현되는 공간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맑스와 엥겔스는 생시몽의 산업체제나 푸리에의 팔랑스테르를 통한 유토피아의 구현이라는 사상들을 유토피아적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맑스와 엥겔스에게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전망은 역시 유토피아로서 존재하였다. 그리고 많은 부분 그들 유토피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시사받은 점들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맑스와 엥겔스에게 유토피아로서 공산주의는 동시에 현실의 운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로서 제시된 측면과 동시에 현실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자운동으로서 존재하였다. 노동자운동은 유토피아로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자본주의 사회 내의 커다란 주체적인 흐름으로 간주되었다. 주체에 대한 문제설정은 맑스의 공산주의가 유토피아주의적 공산주의와 구별짓는 점이다.

이러한 묘사들을 종합해 볼 때, 맑스는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에서 개인의 자유의 실현과 공동체의 조직화라는 과제 사이에 어떠한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푸리에의 유토피아적 전망과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앞서 언급한 콩트나 생시몽의 논리가 거대구조 속에 개인들의 배치라고 한다면, 푸리에와 맑스에게서 중요한 점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라는 시각이다.

반면에 디스토피아를 구상하는 경우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경우와 유사하지만, 당연히 디스토피아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디스토피아로의 경향을 보여주면서 비판으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나아가 디스토피아는 앞의 유토피아의 경향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 즉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경우의 주요한 특징은 그것이 소설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1924)에서부터 조지 오웰의 『1984』(1949)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헉슬리와 조지 오웰의 작품들은 주요하게 전체주의적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그것은 단지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첫 번째 경향의 유토피아에 대해서 역시 비판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근대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갖는다. 헉슬리가 말하는 ‘포드 기원’ 등의 표현은 포드주의의 극단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기술적 유토피아의 허구를 그리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소련이라는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 역시 보이고 있다. 실제 1920-30년대 소련과 미국은 동시에 자신들의 기술적 유토피아라는 공동의 목표 속에서 극단적인 실험들을 행하였다. 소련과 미국의 그들의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헉슬리나 오웰의 눈에 그것들은 한갓 몽상이었을 뿐이다.

『1984』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회는 약간은 세련되지 못한 ‘판옵티콘’의 사회일 것이다.

푸코가 말하고 있는 판옵티콘의 사회의 경우 구성원들은 사회적 규율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훨씬 더 세련된 규율 사회일지 모른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1984』에서 그리고 있는 사회 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우리는 통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시나 그러한 우려 속에서 헉슬리나 오웰은 자신들의 작품 속에서 산업주의의 극단으로서 ‘디스토피아’를 그렸을 것이다.

19세기 부와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지리적 불균등발전이 발생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교외의 ‘프라이버토피아(privatopias)’가 형성된다. 19세기 런던의 교외지역은 소수 엘리트들을 위한 선택된 피난처로서 시작되었고, 거의 영국 중산층의 지배적인 가정형태가 되었다. 사실상 이것은 도시의 ‘문이 있는(gated) 지역사회들’로서 스스로 패쇄되면서 시민권, 사회적 소속감, 상호부조의 개념들을 훼손시키기 까지 한다. 이러한 프라이버토피아 형태의 제한적 공간 내에서의 유토피아적 발상은 토마스 모어시대까지 이루어졌던 공간적 유토피아의 재현이다. 즉 특정한 공간 내에서 유토피아의 실현이라는 사고이다.

20세기에 들어서 생시몽주의와 푸리에주의 도시 계획안을 나름대로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이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이다. 그의 작품 「현대도시(La ville contemporaine)」는 생시몽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후 「빛나는 도시(La ville radieuse)」에서 르 코르뷔지에는 생시몽주의와 푸리에주의를 결합하고자 한다. 하지만 사실상 르 코르뷔지에는 도시계획안이 실현되는 방식은 20세기 초반 대도시의 인구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단위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사실상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나는 근대도시 주거계획에서는 강조되는 부분은 기능과 효율성의 측면이었고, 인간본질의 측면은 뒤로 밀려났다. 유토피아적 공간은 고립적이거나 선택적 혹은 제한적으로만 존재 가능할 뿐이었다.

20세기 두 개의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의 기술유토피아일 것이다. 두나라 모두 19세기인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시도들이었다. 1917년 러시아의 혁명은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구체적인 실험과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신경제정책을 실험하면서 레닌은 사회주의는 곧 포드주의와 노동자통제를 결합시킨 것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신경제정책 속에서 전기화는 기술적인 프로그램이자 정치적 프로그램이었다. 스탈린에 의해 강력히 추진된 산업화 그리고 테일러주의를 대체한 스타하노비즘은 1930년대 소비에트 노동의 모델이 되었다. 2차대전이 끝난 뒤 “서구 따라잡기”는 자본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미국 역시 동일한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의 연호가 ‘포드 기원 〇〇〇년’이듯이 포드주의는 20세기 초반 등장하여 미국 자본주의의 대량생산 대량 소비 체제를 가져온다. 이른바 풍요의 시대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품게 하였다. 1920년대 미국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를 만드는 듯 하였다. 포드주의의 일관작업체계에 기반한 기술패러다임과 법인자본주의의 막대한 생산능력은 미국식 근대성의 체계의 등장을 가져왔다. 미국은 ① 법인자본의 잠재적 분배력, ② 자본-노동의 갈등을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문제로 전환하는 거시경제조정을 통해 완전고용을 약속한 국가의

‘중립적’ 조절장치와 노동력 관리정책 등에 기초해,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없이도 대중노동자에게 일할 권리와 소득에 대한 권리를 부여했다. 이러한 대중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는 미국의 해게모니 속에서 높은 대중소비에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 시민’의 권리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것들을 테일러는 네덜란드의 상인적 근대성에서 영국의 산업적 근대성을 거쳐 미국의 소비적 근대성으로 진화했다고 근대성의 근대화를 파악한다. ‘모두를 위한 대중소비’를 약속한 미국의 소비적 근대성은 모더니즘 건축양식에서 드러나는 안락에 대한 경멸과 대조적으로 핵가족을 위한 소비적 안락이 집중된 장소로서의 ‘교외주택+쇼펄몰’로 상징되는 일상적 ‘안락의 민주화’를 표상한다. 하지만 소비적 근대성의 이면에는 그것이 요구하는 소비자가 될 수 없었던 많은 하층민들 특히 흑인을 위시로 한 유색인종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임금 노동자층은 다양한 형태의 이민노동자로 유입되고 있다.

결국 20세기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산업주의가 현실 속에서 가능한 형태들을 실험해 보는 세기였다. 사실상 꿈꾸었던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었고 오히려 디스토피아의 모습에 더 가까워 보일 수 있다. 단순히 경제적 삶의 윤택함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권력의 망의 존재 때문이다. 그것은 푸코의 상이한 방식으로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에 공통된 것은 근대의 산업주의가 인간의 본성, 특히 인간의 정념(passion)에 반한다는 생각이다. 산업주의는 근대 이성의 발현의 산물이고 그것은 인간의 정념에 대한 억압을 가져오며,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 사회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포스트모던의 새로운 문제의식들이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정념의 문제를 새롭게 사고해야 한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로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사유가 유토피아에 대한 사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기를 향한 러시아의 인간주의 윤리학

김 은 실(성신여자대학교)

정치는 그 시대에 대한 성찰을 통해 대중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부의 사회적 배분과 불평등 해소라는 경제학 기능에 몰두하게 되면서 시대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 제시라는 정치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보호막이 전혀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현대문명을 크게 변화시켰다. ‘세계화’로 압축 표현되고 있는 현대문명은 보편화와 대중화, 과학만능주의와 물신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쟁과 갈등은 곧 국가 내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는 불신과 우열경쟁의 와중에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다. 빈부격차의 심화, 세대 간 물이해와 개인주의화 경향은 사회의 균열과 양극화로 이어지고,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점차로 희소해져 가고 있다. 치열한 승자 독식의 경쟁 양상은 인간을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소외감과 사회병리현상은 자살, 충동적 공격, 저출산, 노인문제, 환경과 생태문제, 전쟁 등등 인류의 공존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물질문명의 발달과 산업발전을 계기로 현대문명은 인간의 영역에 다른 물질적인 것들을 대체시키고 있다. 인간사회는 한정된 재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자본주의 산업구조와 인간의 본질 문제가 충돌하면서 긍정적인 해법을 창출하지 못하고, 결국은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마저 자신의 생존과 욕망을 위한 명분으로 전환시키는 몰도덕적이고 몰이성적인 행태들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 자신의 욕망과 안정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방해하고, 그 피해자에 의해 또 침해를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 같이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19세기 러시아 지성계가 인식하고 있던 시대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러시아는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온 유럽 사회와의 조우하게 되고, 러시아에게 개방과 교류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게 했다. 폐쇄성과 열등감을 해소하고 유럽 열강과 동등한 국제관계를 유지하려는 열망으로 러시아 지식인 사회는 들떠 있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 열풍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해 있는 정치, 경제적 상황과 유사하다. 1812년 크림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기운을 체감했던 러시아는 유럽 진출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과 농노개혁을 비롯한 국내사회의 근대화 개혁을 단행하였다. 유럽 열강의 치열한 제국 경쟁에서 생존과 발전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사회의 체질개선을 전제로

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느끼고 있는 명제였다.

국가 발전과 유럽 진출이라는 명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사회는 급진적이고 물질적인 경향이 대세를 이뤘다. 정부 역시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전통의식 보다는 유럽의 혁명적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러시아 국민들 역시 유럽의 부와 사회적인 변화를 한꺼번에 수용하고자 하는 과잉 의욕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 발전의 기초 동력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는 물질적 번영과 정치적 영향력 확보가 일차적인 과제로 인식되었고, 인간주의적 전통에 대한 분석보다는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유럽의 눈부신 발전에 몰입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 정부는 유럽의 제국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쟁력을 창출해 내기 위해 국내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과학만능주의와 물신주의에 점점 빠져 들고 있는 유럽의 정세와, 국가발전이라는 명제에 매료되어 유럽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지성계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근대정신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이 문학과 예술 작품을 통해 표출되기도 하였고, 서구화와 개방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으로 발생한 인간 사회의 갈등과 일탈에 대한 자기반성과 교정에 대한 의지들이 사상가들을 통해 고민되어졌다. 톨스토이는 근대 과학과 기술적인 진보가 일반적인 행복에 기여하는 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인간의 비참함을 증가시킬 뿐 감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그는 사회문제의 원인이 과학문명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적 발전은 사회적 존재의 영향 밖에서 존재하며, 윤리학에 의해 정립되지 않은 과학은 비도덕적이고 인간의 사명과 삶의 의미에 기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생존경쟁의 법칙에 속하는 이기주의, 쾌락주의에 기반된 물신숭배가 거짓이성을 등장시켜 탈 인간화, 윤리적 중립화를 강화시킴으로써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궁극적 개념이나 공동의 신념과 행위규칙에 대한 공감대가 향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톨스토이의 과학 윤리에 대한 견해는 윤리를 상실한 과학과 기술이 인간 사회에 대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근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한 톨스토이의 진정한 개혁은 물질적 번영이나 혁명적 저항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윤리적 자기완성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었다. 인간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소유했던 톨스토이는 인간은 모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이성과 양심은 이 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지각 있는 삶의 목적은 이 힘의 의지인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 실현된다고 믿었다. 감각적 육체적 자연원칙에 지배되는 거짓이성을 거부하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원칙, 즉 이성적 자아의 완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세상은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유토피아가 선과 악으로 대립되어 있으며, 악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에서 비롯된 산물로 인식하였다. 부르주아적 생활방식과 서구의 합리적 이기주의는 사회적 관계의 비인간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하였다. 부르주아 문명의 발달이 소수에 의한 부의 증대와 함께 다수의 빈곤과 정치적 결핍을 가져왔고, 부르주아 사회의 보편적 번영과 사회적 조화는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문학 작품 속에서 인간 영혼의 문제를 사회와 인간의 자아 관계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의 도덕 심리를 분석함으로써 허무주의에 대한 인간성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모색하고 있다.

인간과 신의 관계라는 거대한 문제를 설정함으로써 인간의 문제를 인간 영혼 속에 놓인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접근하고자 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점차로 긍정적인 자아의 형태로 변화시켜 나갔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 내부의 심원한 곳으로부터 존재론적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인간과 신의 관계의 설정을 통해 인간의 영혼 속에 놓인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실존적 인간의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당시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을 종교적 재화와 도덕적 재생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였다. 또한 사회 속의 자아를 탈피하고 인식의 다른 차원에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인간의 모습이 문학작품 속에서 전개되었다. 자본주의의 합리적이기주의에 대해 인간의 생명존중 사상을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불합리와 죄악에 대한 선전포고를 시도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같은 시대적 병리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인간의 자기갱생 능력에서 발견하고 있다. 인간은 발전하는 존재로서 자기갱생을 통해 도덕적 자아로 돌아올 수 있는 자연적이고 본래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임을 확신하였다.

또한 러시아 전통에 보존되어 있는 진정한 형제애적 공동체의 이상을 대조시켜 당시 부르주아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는 형제애는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위해 강요되지 않는 자발성으로 자기희생의 단계에 도달하며 최고로 발전된 개인의 인격, 최고의 침착함, 최고로 자유로운 개인의 의지 표현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형제애는 생명의 최고 단계인 자기희생의 자발적인 단계를 통해 승화된다.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은 지상에서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 덕목이자, 인간의 존재 의미이다. 그리고 사랑은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통해 행복의 길로 안내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자유와 도덕성을 갖도록 해 준다. 따라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지향하는 사회는 교회와 신에 대한 자유로운 사랑에 토대를 둔 형제애적 공동체이며, 이것은 자아의 법칙을 통해 승화되는 것이다.

정교회 원리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러시아의 인간주의 전통은 과학과 물질주의의 성장에서 비롯된 인간성의 상실과 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정치사상적 각성이다. 19세기 러시아의 종교철학은 러시아 정교회 교리와 전통적 공동체 윤리를 중심으로 인간주의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신적인 기원을 갖는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인간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고, 신과의 공존 속에서 자연이나 천사보다도 우선시 되는 존재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신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신과 공유되는 형상을 통해 교제하며 창조에 임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는 러시아의 윤리공동체는 하나하나의 자유로운 개체들이 동일하게 통일되는 것이다. 신의 형상을 닮은 리취노스씨의 결합은 어떤 형태의 예측성도 거부하며, 사랑을 통한 자유로운 결합을 전제로 한 세계 민족 간의 연대성을 의미한다.

러시아 사상가들이 지향하는 공동체주의 이상은 자유로운 리취노스찌의 조화를 통해 통일체를 이룸으로써 그 수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러시아 윤리공동체의 사보르노스찌 개념은 단순한 사회통합의 차원을 넘어 러시아인들의 세계적 사명과 역사적 통합에 대한 이상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인들의 정체성과 국민적 자존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러시아 지식인들은 유럽문명 세계에 대한 러시아적 공동체 윤리를 통한 극복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 경제적으로 급변하고 있던 유럽 사회는 부르주아 문명을 형성하여 경쟁과 승자독식의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마저도 파괴해 버리고 진정한 인간본질을 망각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결국 소수에 의한 부의 증대를 초래하는 부르주아 문명의 발달은 그들이 주장하는 부르주아 사회의 보편적인 번영과 사회적 조화가 아니라 다수의 빈곤과 결핍을 초래함으로써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와 인간에게 자기갱생 능력이 있다는 러시아 인간주의 윤리학에 대한 확신은 현대사회에도 희망의 메시지로 들린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인간 이성에 대한 두터운 신뢰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위력 앞에 서 흔들리는 인간의 정체성에 좋은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록 이상주의적이고 관념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겠으나, 인간주의 정신을 토대로 한 러시아의 윤리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현대 사회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미래 사회에 대한 윤리적인 지향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새로운 역할: 규범적 리더 또는 현실적 타협자?

김남국(서울대학교)

미국의 신보수주의 세계전략 아래서 사람들은 유럽의 소프트 파워에 관심을 가졌다. 네오콘의 도덕적 절대주의(moral absolutism),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헤게모니적 일방주의(hegemonic unilateralism)는 힘의 과시에 따른 공포와 민주적 절차의 결여에 대한 불만을 동시에 가져왔고 유럽은 그 사이에 교토의정서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주도하면서 이른바 규범적 권력을 앞세워 미국적 문제해결 방식과 다른 접근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유럽은 이러한 소프트 파워 전략을 통해 미국의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

조셉 나이의 분류에 따르면 소프트 파워는 문화와 정치적 가치, 외교정책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것 역시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힘의 일종이다. 이와 반대되는 하드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리킨다. 만약 유럽이 소프트 파워에 집중해 미국과 대비되는 세계전략을 세운다면 그것은 아마도 도덕적 상대주의(moral relativism), 자유주의적 제도주의(liberal institutionalism), 권력분산의 다자주의(power sharing multilateralism)가 될 것이다. 물론 조셉 나이는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대체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하드 파워 역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 즉,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스마트 파워를 이상적인 상태로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 파워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현재 상황을 비교한다면 정치적 비전, 군사적 힘, 경제적 능력이라는 강대국의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미국이 정치적 가치와 비전이라는 소프트파워에서 상대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은 소프트 파워 전략에 치중하면서 미국과의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럽은 대표적인 하드파워인 군사적 힘에서 상대적인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소프트 파워 중심의 발전 경향이 정말 미국적 길과 다른 규범적인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 유럽연합의 두 가지 외교 정책, 즉 인권정책과 유럽안보방위정책(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의 발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대체로 유럽은 미국과 비교되는 규범적 경향에 대한 강조와 자신의 국경과 이해를 우선하려는 현실주의적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에 이어 유럽안보방위정책을 통해 군사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적어도 유럽연합은 세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유럽연합은 내부의 경계와 외부의 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군사적 발전의 결과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를 주장하는 회원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더 확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정치공동체를 넘어서 군사공동체를 지향하는 유럽연합의 외형적인 발전단계와는 다르게 내부로부터 점점 갈등이 심화되면서 회원국가간 연대가 약화되는 모순된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사실 유럽연합이 군사적 발전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군사력 지출 세계 1위인 미국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세계 2위부터 14위까지 국가의 군사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즉, 군사력으로 미국을 대체하거나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오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셋째, 군사적 발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영향력이 과연 현재 유럽연합이 누리고 있는 공정한 제3자로서의 이미지를 통한 소프트 파워로서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군사적 강대국을 추구한 결과 얻은 영향력이 완벽하게 미국을 대체하지 못하고 동시에 자신이 갖고 있던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유럽연합에게 가장 나쁜 상황이 될 것이다.

유럽은 규범적 권력과 군사적 강대국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그 결과 아마도 민주적 제국(democratic empire)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제국은 세 가지 동기, 즉 공포와 명예, 그리고 이익에 근거해 건설된다. 유럽은 테러리스트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정당한 공포와 규범적 권력의 모범이 되려는 명예, 그리고 자신의 영토의 경계를 지키려는 이익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동기를 쫓아 유럽이 민주적 제국을 건설한다면 이것은 정말 미국의 길과 다른 새로운 길일까? 혹시 거대하게 등장하는 유럽연합이 기존의 국민국가가 갖는 모든 부정적인 점들을 그 크기만 다른 상태에서 재생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결국 우리는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유럽과 비유럽 사이의 경계를 높여가는 아틀란틱 해안 건너편에 또 하나의 미국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그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부

제국의 재구성: 회고와 전망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실존과 시의의 관점에서

박동천(전북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존 스튜어트 밀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제국주의 문제가 가장 인기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스스로 평가하기에 자기가 지은 “어떤 것보다 (혹시 『논리학체계』가 예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자유론』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여타 저술 도처에서 나타나는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그의 태도가 비판적 논의의 주제로서 20세기 후반 및 21세기라는 시대 상황에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¹⁾

무엇보다도 그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뒤를 이어) 동인도회사의 직원으로 35년 동안 일했을 뿐만 아니라, 저술을 통해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옹호했다. 『자유론』에서는 “봐줄 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설정하는 방식이 최선이다. 그 자체로 최선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방식이기 때문”²⁾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단지 개명된 나라의 시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대의정부론』에서는, “공중이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수동적이거나, 또는 너무 부주의하고 태만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최선의 행정기구에서도 혜택이랄 것이 별로 나올 수 없다”³⁾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노예란, 명실상부하게 노예라면, 스스로 도울 줄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노예는 물론 미개인보다는 한 단계 앞선다. 그러나 정치사회의 첫 번째 교훈을 아직 습득하지 못했다. 두려운 상대가 눈앞에 서서 처벌로

1) 이 논의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뒤이어, 파레크를 비롯한 일련의 인도 출신 학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통해서 촉발되었다. Edward Said, *Orientalism* (1978);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Alfred Knopf, 1993). Bhikhu Parekh, “Decolonizing Liberalism”, *The End of 'isms'? Reflections on the Fate of Ideological Politics after Communism's Collapse*, ed. by Alexander Shtromas (Oxford: Blackwell, 1994), pp. 85–103; “Liberalism and Colonialism: a Critique of Locke and Mill”, *The Decolonization of Imagination: Culture, Knowledge and Power*, ed. by Jan Pieterse and Bhikhu Parekh (London: Zed Books, 1995), pp. 81–98. Uday Singh Mehta, *Liberalism and Empi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2) *On Liberty,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XVIII, p. 270.

3)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XIX, pp. 415–416.

위험한다면 복종하지만, 그가 등을 돌리는 순간 작업은 수행되지 않는다. 그들을 좌우하는 동기는 이익이 아니라 본능에만 – 즉각적 기대 아니면 즉각적 공포에만 – 호소해야 한다. ……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정부는 무력을 보유하지만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 정부, 온정주의적 전제 또는 귀족정이다.”⁴⁾ 이 대목에서 거론하는 지역은 페루와 파라과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미국의 원주민, 인도인, 중국인, 기타 모든 아시아인, 그리고 러시아, 터키, 에스파냐, 아일랜드 등, 유럽의 미산업화 지역이 포함된다.⁵⁾

『정치경제학원리』에서는 이들이 노력하지 않는 이유를 주로 “축적하려는 실효적 욕구”가 부족한 데서 찾고, 그 까닭은 다시 “재산이 전제정부에 의한 약탈 또는 …… 계절스러운 관리들에 의한 약탈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서 찾는다 (제2편 제15장 §2). 아일랜드 농민들의 게으름과 앵구시앙스는 켈트족의 특성이 아니라 입찰소작제 때문이라는 것이다(제2편, 제9장, §3). 경위야 어떻든 이들에게는 현재 자치(self-government)의 능력이 없다. 자치는 그럴 만한 능력이 배양된 다음에 가능한 일이고, 그 능력을 배양하기까지는 지도편달의 전제정과 강제가 불가피하다. 이들이 지금까지 겪은 전제정 때문에 이들의 습성으로 고착된 폐단을 뿌리뽑기 위해, 그리고 오직 그 목적으로만 제국주의는 정당화된다. 미개-개명의 이분법 또는 미개-반(半)야만-개명의 삼분법, 또는 수렵-유목-농경-상업이라는 사분법,⁶⁾ 그리고 지성의 발전을 통해서 역사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발상은 벤담과 생시몽과 콩트의 영향을 융합한 밀의 역사관이자, 르네상스 이래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팽배하던 계몽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19세기에 다윈의 진화론까지 첨가된 뒤에는 공고한 신조로 자리 잡은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비유럽지역을 미개 또는 반야만으로 보면서, 그런 지역 주민들을 개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백인의 부담”⁷⁾라고 고상한 척 자임하는 태도는 종종 상대방에게는 좌절과 고통의 원인이자, 반감과 분개의 명분을 제공하였다.

우선 제임스 밀은 『영국령 인도의 역사』를 힌두어도 전혀 모르고 인도 땅에 발도 한번 디더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술했다. 그러면서도 예컨대 일반적으로 아라비아숫자라고 불리는 기호들 그리고 거기 함축된 십진법을 인도인들이 처음 개발했다든지, 아리아바타(Aryabhata, 476-550)가 땅이 둥글고 무게중심이 지구의 중앙에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전통적 기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대망상과 거짓의 일반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축했다. 반야만적인 인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유럽 근대문명

4) Ibid., p. 396.

5) 『정치경제학원리』, 제1편, 제11장, §3; 제1편, 제13장, §1.

6) 이는 몽테스키외의 계몽주의가 스코틀랜드로 가서 변용된 역사관으로, 흄, 스미스, 제임스 밀 등, 스코틀랜드 출신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잉글랜드에서도 지배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착했다. Margaret Kohn and Daniel I. O’Neil, “A Tale of Two Indias: Burke and Mill on Empire and Slavery in the West Indies and America”, *Political Theory*, 34:2 (2006), pp. 194-195.

7) 백인의 부담(White Man’s Burden): 키플링(Rudyard Kipling, 1865-1936)이 1899년에 미국의 필리핀 영유를 소재로 발표한 시 제목으로 세계에 서구 문명을 전파하는 것이 백인의 의무라는 의미이다. 키플링의 의도는 제국주의 찬양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파국적 귀결을 경고한 아이러니라는 해석도 있다. 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문구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표어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탈식민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오만을 대표하는 상징 중의 하나로 거론된다.

에 접한 다음에 지어낸 이야기가 틀림없다는 것이다.⁸⁾ 인도총독부에서 법률담당 위원을 지낸 스티븐((James Fitzjames Stephen, 1829-1894)은 영국의 인도 정복은 “사람에게든 재산에게든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으며, “종교에 간섭하지도 않고, 재산을 몰수하지도 않고, 귀중한 제도나 결사를 파괴하지도 않았”⁹⁾기 때문에, 칭기즈칸의 노예화나 대량학살과는 다르다고 했다. 매콜리(Thomas Babbington Macaulay, 1800-1859)는 “산스크리트 언어로 적힌 모든 책의 역사적인 정보를 다 모아도 영국에서 대학 예과의 교재로 쓰이는 하찮은 축약본 내용보다 가치가 적다”¹⁰⁾고 했다. 이런 입장은 당연히 후손들에게 연결되어 1919년 4월 13일 암리차르(Amritsar)에서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총격으로 379명이 살해되고 2,000명이 부상한 일을 두고, 한 영국인 관리는 영국통치의 “도덕적 위신이 이보다 높았던 적은 없었다”고 묘사했다.¹¹⁾

물론 제임스 밀은 거의 일석주적이라 할 정도로 교조적인 벤담주의자였지만, 존 스튜어트 밀은 슈페터¹²⁾의 혹평을 받을 정도로 얼핏 보기에 모순으로 가득 찬 복잡한 사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이 곧 아들의 입장인 것은 결코 아니다. 스티븐이나 매콜리는 밀 부자에게 여러 방면에서 정적이자 논적이었고,¹³⁾ 적어도 존 스튜어트 밀은 1857년의 이른바 세포이 반란에서 무력이 사용된 것을 비난했다.¹⁴⁾

존 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세상에서 제국주의라는 이름 아래 성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죄목을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통해 선포되는 횡포 중에는 상대가 실제로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 못하는 난제를 상대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는 경우마저 없지 않다. 더구나 존 밀은 적어도 스티븐이나 매콜리와 같은 부류의 제국주의와도 분명히 색깔이 달랐다. 그의 자유주의에 어떤 색조의 제국주의가 얼마만큼 함축되어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의미

8) Amartya Sen, *The Argumentative India* (Penguin, 2006), pp. 146-150을 참조할 것.

9) J. F. Stephen, “Foundations of the Government of India”, *The Nineteenth Century* 80 (1883), p. 545. Mark Tunick, “Tolerant Imperialism: John Stuart Mill's Defense of British Rule in India”, *Review of Politics* 68 (2006), pp. 590에서 재인용.

10) T. B. Macaulay, *Speeches by Lord Macaulay*, ed. by G. M. You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p. 349.

11) Sen, op. cit., p. 106.

12) “밀의 이해력은 일정한 지층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았고 그의 지성은 일정한 장벽을 결코 넘어가지 않았다. 그 지층 아래, 그 장벽 너머에 있는 것들을 그는 자기방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우리의 무의식적 장치를 통해서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J. 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 529.

13) 인도 문제에 관해 스티븐과 밀의 차이는 Lynn Zastoupil, *John Stuart Mill and Ind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Chs. 5-6에서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제임스 밀을 위시한 공리주의자들에 대해 현학과 수사와 논리로써 매콜리가 횡포하고 야유한 비평은 “Mill on Government”, *Edinburgh Review* (March 1829)와 “Utilitarian Theory of Government”, *Edinburgh Review* (October 1829)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인도 문제에서는 제임스 밀과 매콜리의 입장이 여러 면에서 비슷했고, 존 스튜어트 밀은 그들과 차이가 있었다. 이런 사연 역시 자스투필의 책에서 - Chs. 2-3, 그리고 Appendix - 찾아볼 수 있다.

14) 1867년 6월 22일자 편지의 내용. 6월 14일에 하원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The Later Letters of John Stuart Mill, 1849-1873*, Part III,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XVI, pp. 1205-1206, 1282.

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작업은 제3절로 미루고 먼저 언표나 행동을 통해 그가 당대 보통 지식인들과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를 살펴보자.

2. 제국 또는 지배에 관한 존 밀의 입장

18-19세기 영국 고전정치경제학자들이 식민지문제에 관해서 기울인 관심은 원주민과 제국주의 세력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식민지 정착민들과 본국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있었다. 벤담의 『식민지를 해방하라!』¹⁵⁾는 식민지가 본국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 식민지의 정착민들에게 자치를 허용하라는 (직접적으로는 프랑스 정부에게 권고하는) 주장이다. 제임스 밀은 식민지가 주로 소수 지배계급에게 행정과 군사를 위한 직위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쟁을 초래하거나 전쟁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인민의 상상력을 봉쇄하고 만족한 노예로 만드는 데에 기여할 뿐이라고 통박했지만,¹⁶⁾ 이 역시 정착민과 본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 중에서는 리카도가 아마도 유일하게 “전제군주의 이익이 인민의 이익과 상반되는 것처럼, 통치자인 영국인민의 이익이 피치자인 인도인민의 이익과 반대된다”¹⁷⁾는 의미를 상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올바른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제임스 밀의 자신감¹⁸⁾에 제동을 거는 정도에서 그쳤고, 계몽주의적 단선적 진보사관 자체에 대한 성찰에는 미치지 못했다. 개명된 지역에서 미개한 - 또는 반야만적 - 지역으로 주민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개명된 나라와 개명되지 못한 나라의 주민들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유럽의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배제하지 않았다.¹⁹⁾ 실제로 유럽 국가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1793년의 벤담처럼 반론도 있었고, 원주민들을 개명으로 이끌기

15) Jeremy Bentham, “Emancipate Your Colonies!”(1793),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 IV.

16) James Mill, “Colony”, *Supplement to the Encyclopedia Britannica* (London: J. Innes, 1825), pp. 31-33.

17) 제임스 밀에게 보낸 1817년 12월 30일자 답장.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Vol. VII - *Letters 1816-1818*. 영국 고전정치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식민주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관해서는 Donald Winch, *Classical Political Economy and Colonies* (London: G. Bell and Sons Ltd., 1965)를 참조할 것.

18) 리카도에게 보낸 제임스 밀의 1817년 12월 27일자 편지. Ibid.

19) 정치경제학자에서 지식인 일반으로 시선을 넓히면, 진보를 명분으로 삼는 식민주의에 동조하지 않은 뚜렷한 사례로 버크가 돋보인다. “영국을 반드시 잘못 다스리는 수단으로는 되지 않으면서 인도를 잘 다스릴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지 못한다면, 그들을 영구히 분리할 바탕이 깔린 셈이 될 뿐이지 우리 헌법에 그 나라의 인민을 희생시킬 바탕은 전혀 될 수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Edmund Burke, “Fox's India Bill Speech”, *Writings and Speeches of Edmund Burke*, Vol. 5, p. 383, ed. by P. J. Marshall (Oxford: Clarendon Press, 1981). 진보라는 잣대로 역사를 바라본 당대의 풍토에서 버크가 경험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부각한 메타의 연구는 누구나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Uday Singh Mehta, *Liberalism and Empire*, 특히 chs. 5-6. 그러한 버크조차도 인도문제를 고려하는 데 영국의 이익을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결부시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생각보다 어려우리라는 우려가 1817년의 리카도처럼 있었을 따름이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하비, 보일, 패러데이, 다윈, 파스퇴르, 아인슈타인, 그리고 와트와 에디슨과 오펜하이머에서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근대서양의 성취로부터 우월감을 도출하는 오만을 찾아내서 고발하기는 비교적 쉽지만, 서양문명의 우위 자체를 의심할 여지를 구체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양의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담론 자체가 영어를 비롯한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 등, 기본적으로 유럽어로 표현될수록 비유럽 지역의 지식인들에게마저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러니는 심상하게 넘길 일만은 아니다. 더구나 과거 또는 현재의 제국주의를 성토했던 사람들이 대개 서양의 기술문명과 사회조직원리에서 나오는 이점들 (당사자에게 허용되고 스스로 편리하다고 느끼는 한) 거의 당연하게 향유한다는 사실은, 비서구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기껏해야 음식, 복식, 음악, 미술, 종교 등등, 정치나 산업처럼 생존을 위해 유사시 치열한 경쟁을 함축하는 영역과는 약간이나마 떨어진 분야에서 인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특이한 사례 정도로 치부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보아스, 슈팽글러, 후세를, 그리고 비트겐슈타인과 윈치 등의 반성과 성찰을 거친 후인 21세기에도 그럴진대, 하물며 벤담, 생시몽, 콩트 등의 구상을 통해서 단선적 진보사관이 체계화되어가고 있던 19세기 중반에 활약한 밀이 그와 같은 시대의 풍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밀은 물론 맹목적인 사회진화론자는 아니었고, 단지 인도인들이 스스로 다스리기에 필요한 수준의 개명에 도달하기까지는 선의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믿었을 뿐이다. 그러나 무력사용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정책은 설득과 인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무력이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야 할 경우가 언제인지는 물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였지만, 예컨대 1857년의 인도, 1865년의 자메이카나 1867년 아일랜드의 경우는 아니었다.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수백 명을 현장에서 살해하고 다시 수백 명을 처형한 자메이카 총독 에어(Edward John Eyre, 1815-1901)를 살인범으로 처벌하기 위해 애썼고, “아일랜드의 문제는 아일랜드인 때문이 아니라 영국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답지 않게 자극적인 연설로 군중을 선동하기까지 해서 아일랜드 독립운동가 두 사람을 사형집행 직전에 구명함으로써, 영국내 애국주의로부터 배척을 자초했다.²⁰⁾ 물론 이런 과정에서 그는 항상 인도주의가 아니라 공리주의적인 논지를 펼쳤다 - 에어와 같은 잔혹행위를 허용하거나, 아일랜드 독립을 위한 순교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영국에게 이익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인도적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다. 즉,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 대 자메이카, 또는 영국 대 아일랜드 중에서 막연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아마도 (막연한 선택을 무의미하다고 거부했거나 아니면) 영국을 택했을 사람이지만, 그의 애국심은 집단적 경계보다는 효용과 이익에 근거를 두었다. 그에게는 편협한 종파적인 이익보다 상호이익이 언제나 컸고, 정의나 여타 인도주의적인 가치들 역시 가치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익이어야 했던 것이다.

밀이 유럽인은 성인이므로 자유를 허용하고 비유럽인들은 마치 미성년자로 간주해서 강제적 교육대상으로 취급했다는 해석은 그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는 데에 기여하는

20) Michael St. John Packe, *The Life of John Stuart Mill* (London: Secker, 1954), p. 463.

바가 더 많다. 우선 정치제도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대의정치제도는 자체로 훌륭한 인류의 발명품이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주류세력의 전횡에 맞서기에 충분한 반대세력과 경쟁세력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개인들이 소속한 집단에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기보다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집단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이 전체인류를 위한 이익의 향상에 필수적인 바탕이 된다고까지 인정되지는 못하더라도, 배신행위 또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박해의 대상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명분을 아무리 공동체의 이익으로 내걸더라도 전횡은 공동체를 파괴할 뿐이라는 개명 또는 믿음의 대의정치에는 필수불가결한 대전제인 것이다. 믿음의 당대의 인도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지만, 아일랜드는 자치를 허용해도 된다고 보았다.

이런 믿을 두고, 인도 인민의 개명도가 당시에 아일랜드 인민의 그것보다 더 높았다고 실증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고, 개명에 관한 믿음의 기준이 서양식 판본일 뿐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애당초 개명도로 사람을 구분하는 믿음의 엘리트주의에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에게 인종주의의 혐의를 부당하지 않게 씌울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눈에 개명이 될 것으로 비친 것은 비단 인도의 민중들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의 민중도 향상의 여지가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대의정부론』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잉글랜드 신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잉글랜드 노동계급은 – 거짓말을 부끄러워한다는 점에서는 일부 다른 나라의 노동계급과 다르지만 – 아직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쟁이들이다.” 웨스트민스터 선거구에 출마한 1865년, 노동계급 앞에 연사로 나섰을 때, 반대파 한 사람이 이 구절을 들고 나와 청중들 앞에서 읽고, 그렇게 쓴 것이 맞느냐고 다그쳤다. “믿은 일어나 ‘내가 그렇게 썼’노라고 대답하고 다시 앉았다. 방금 거짓말쟁이라고 불린 노동자들이 한몸처럼 일어났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오래 이어졌다.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네 사람이었다.”²¹⁾ 거짓말쟁이가 버릇을 고치려면 스스로 거짓말쟁이임을 인식하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도 1868년에는 믿을 뽑아주지 않았다. 믿음은 실망도 충격도 받지 않고 조용히 아비뇽으로 돌아갔다. 웨스트민스터의 노동자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고통을 정면에서 견딜 수 있을 만큼은 개명되었지만, 인도와 자메이카와 아일랜드에서 영국군대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다시 당선시킬 정도로 개명되지는 못했을 뿐이다.

자유를 유일한 가치로 주장하지 않는 한, 풍요나 안전, 자비나 계몽, 정의나 평화 등도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는 한,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에는 여러 가지 유보 조건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믿음은 공리주의자답게, 자유의 가치를 향상과 결부시켜서 찾았다. 개인의 지성과 덕성은 자유롭지만 실존적인 책임이 따르는 선택행위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사회의 지성과 덕성도 오로지 개인들에게 자발적인 선택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풍토에서 가장 잘 자라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자유경쟁시장이 호황을 누린 다음에는 위기를 겪어야 하듯이, 자유가 좋은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음의 논지는 자유로 말미암아 일정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좋은지

21) Ruth Borchard, *John Stuart Mill: the Man* (London: Watts, 1957), pp. 138–139.

나쁜지를 판단하고 나쁘다면 개선책을 강구할 역량 자체가 자발성을 존중하는 풍토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험을 통해서 가장 잘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발성이 그와 같은 역량으로 이어진다는 선험적인 필연성은 전혀 없다. 그럴지 안 그럴지는 오직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적인 문제일 뿐이다.²²⁾ 밀 역시 여기에 비록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지향을 섞기는 했지만, 이 문제가 경험적인 문제임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자유론』에서는 사생활의 영역,²³⁾ 즉 “다른 사람에게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에게만 상관이 있는 일”에 관해서는 공공목적에 입각한 간섭이라는 명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디가 원칙이고 어디가 시의인지가 종종 독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3. 제국, 레짐,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사회의 조직원리로서 자유주의는 모든 이에게 중립적이거나 반드시 공정한 체제인 것은 아니다. 존 밀이 생각한 바람직한 정치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함축하는 규제의 영역과 공론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밀은 정부의 기능에 관해 다음과 같은 두 갈래의 착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쪽에서는 참을성 없는 개혁파들이 공중의 지성과 성향보다는 정부를 장악하는 것이 더 쉽고 더 빠를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부관할 영역을 온당한 한계 너머에까지 잡아 늘려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통치자들이 공익과는 다른 목적으로 또는 공익이 무엇인지를 잘못 인식한 결과로 인간생활에 간섭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또한 향상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여론이나 토의를 통해서 고안될 때에만 유용하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목표를 강제적인 규제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성급한 제안들이 너무나 많이 내놓았던 탓에, 단지 정부의 간섭 그 자체에 대해 처음부터 저항하고, 정부의 활동영역을 가장 좁은 한계선 안에 제한하려는 성향도 자라났다. (『정치경제학원리』, 제5편, 제1장, §1)

정부가 때때로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자유주의 체제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모든 레짐의 일반적 원리에 해당한다. 어떤 정책을 강행할 때 모든 레짐은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건다는 점 역시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한다. 물론 강행의 이면에는 항상 주어진 정책이 어떤 면에서 “공익”인지에 관한 논쟁, 다시 말해서 다른 대안이 더 큰 “공익”에 기여한다는 도전이 도사릴 수 있다. 자유주의 정부가 비자유주의 정부에 비해 강제력을 보다 신사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는 관심 있는 연구자가 나름대로 측정의 지표를 정해서 통계적으로 조사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전히 그 자체가 다시 논란

22) 이 점을 지적한 문헌은 술하게 많지만, 벌린의 논의를 읽어볼 만하다. 「자유와 두 개념」, 「존 스튜어트 밀과 인생의 목적」, 박동천 역,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아카넷, 2006).

23) 스코럽스키도 사생활의 자유와 공공영역의 통제라는 구분을 통해 밀의 일관성을 찾았다. John Skorupski, John Stuart Mill, Routledge, 1989, pp. 359-360.

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요컨대 자유주의 정부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폭력을 다른 종류의 정부에 비해 더 신사적으로 행사한다는 일반명제는 성립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자유주의 정부와 비자유주의 정부 사이의 구분이 본질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강제력이 발동되는 순간이란 곧 더 이상 신사 노릇만 할 수는 없다는 결단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존 밀의 자유주의는 정치의 이러한 일반적 차원에 대해서 어떤 발본적인 함축을 직접 담고 있지는 않다. 철학적 발본파로서 그가 주목한 초점은 공론의 차원이다. 사회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양식에 따라 주어진 쟁점에 관해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웃들과 교환하면서 토론하는 가운데 주어진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가 (또는 결정을 미루고 얼마나 더 오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인지가) 시의성의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 그러한 공론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주도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물론 공론이란 지극히 느슨한 개념으로서, 주어진 시점에서 어떤 결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내려질지 말지, 내려진 결정이 시의적으로 올바른 것일지,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장기적인 폐해나 이득이 뒤따르게 될지 말지 등은 모두 열려있는 문제다.

이것이 열려있는 문제라는 점은 밀에게 어떤 특정한 입장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라 사안의 본질적인 이치에 해당하는 항목이었다. 예컨대 “올바른” 결정이나 “유익한” 결정을 공론장에서 모색하려고 해봤자 결국 무엇이 옳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가 다시 공론에 맡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의견이 유용한지는 그 자체가 공론의 문제다. 그 의견 자체와 마찬가지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며 논란의 대상인 것이다” (On Liberty, ch. 2, par. 48).

한편, 존 밀은 벤담이나 제임스 밀처럼 기계적이며 단선적인 계몽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인간 정신의 개명에 따라서 역사가 진보할 수 있음을 굳게 믿은 계몽주의자였다. 그가 생각하기에 공론의 흐름이 역사의 진보를 지향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으려면 먼저 시민 가운데 충분한 비율이 이치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개명되고, 자신의 미세한 판단을 공표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성과 덕성에서 공히 최소한의 요건을 채운 상태여야 한다. 지성이란,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익숙한 관습에 따라 영위하더라도, 새로운 발상이나 실험적인 제안을 단순히 생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축하거나 탄압하지는 않을 만큼 이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덕성이란, 자신의 의견을 책임감을 가지고 형성하고, 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공동체에게 기여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하며, 나아가 이웃 중에 편협하거나 사악한 방식으로 반응할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생산적인 논의가 아예 멸절되지는 않을 정도로 선의를 가진 사람의 수가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제임스 밀도 이와 같은 이념에서는 존 밀과 마찬가지로였다. 공론의 자연스러운 작동이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가능하지만, 비유럽 지역에서는 바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부자의 생각은 같았다. 유럽이라도 아일랜드라든지 에스파냐 등, 산업화가 이뤄지지 못한 곳에서는 바탕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계몽의 불빛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 것까지도 부자가 같은데, 차이는 이끄는 방법에서 나

타났다. 제임스 밀은 「정부론」에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지배계급이란 나머지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착취자와 같다고 격렬하게 성토했다. 인도의 토호(zamindar) 군주들을 그러한 착취자라고 보면서, 그는 농민들을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고 농민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설정했다. 유럽의 봉건사회가 상업사회로 이행한 것과 비슷한 조용한 혁명의 가능성에 그가 큰 희망을 걸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²⁴⁾

반면이 존 밀은 이런 방식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봤다. 농민에 대한 토호 군주들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토호들이 권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노선을 존 밀은 선호했다. 이는 먼로(Thomas Munro, 1761-1827), 맬컴(John Malcolm, 1769-1833), 엘핀스톤(Mountstuart Elphinstone, 1779-1859), 메캘프(Charles Metcalfe, 1785-1846) 등,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인도에서 일한 영국 관리들의 노선을 계승한 것이기도 했다. 자스투필은 이들이 “공론의 제국”(the empire of opinion)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론의 제국파”(the empire-of opinion group)라고 불렀다.²⁵⁾ 1857년 제1차 인도 독립전쟁의 여파로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를 폐지하고 직접 통치로 선회했을 때, 밀이 반대하고 회사를 더나게 되는 것도 간접통치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4. 파레크의 과잉 반응

존 밀이 당시 인도인의 정치적 역량을 영국인이나 아일랜드인보다 낮게 잡았고, 자신처럼 선의를 가진 자유주의 계몽주의자 영국인들이 인도의 개명을 이끌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존 밀은 인도에 대한 영국의 직접 통치에 반대했고, 잔혹한 무력의 사용을 비난했지만, 인도인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다고 생각한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영국 의회는 동인도 회사를 1858년에 폐지하고 직접 통치를 시작해서, 1876년에는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여제(Empress of India)로 명명된다. 밀은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제국주의에는 반대했다. 하지만 프랑스어나 포르투갈어로 “문명화 사명”(mission civilisatrice, missão civilizadora)이라고 일컬어졌고, 또는 후일 키플링이 백인의 부담(the White Man's Burden)이라고 명명했던 발상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구분을 사소하다고 볼 사람도 있고 착각이라고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밀의 제국주의를 “너그러운 제국주의”²⁶⁾라고 좀 너그럽게 이해하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24) Stefan Collini, Donald Winch, and John Burrow, *That Noble Science of Politics: A Study in Nineteenth Century Intellectual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 118. Lynn Zastoupil, *John Stuart Mill and Ind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 17에 재인용.

25) Lynn Zastoupil, *John Stuart Mill and Ind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26) Mark Tunick, “Tolerant Imperialism: John Stuart Mill's Defense of British Rule in India”, *Review of Politics* 68 (2006)

는 점잔을 빼지만 속내는 마찬가지로 더욱 가증스럽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파레크가 1994년에 공표한 격렬한 비판이 후자를 대표한다. 존 밀에 대한 파레크의 기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²⁷⁾

① 밀의 자유주의에서 식민주의는 우연이 아니라 본질이다. 마니교식 이분법으로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눈 후, 자유주의를 문명과 빛으로 연결하고 비자유주의를 야만과 어둠으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② 밀은 후진 사회들이 문명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오직 유럽인들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 자유주의적 가치들이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것이 유럽에게 고유하다고 보는 모순을 저지른다.

③ 밀의 자유주의는 이중 타자화의 소산이다. 그는 비유럽사회를 이해하기 전에 타자화하고, 다시 그렇게 타자화된 비자유주의 사회에 대조해서 자유주의를 설정한다. 이로써 스스로 이중 왜곡의 희생물로 전락한다.

④ 밀이 인정하듯이 자유주의의 원천은 고대 그리스와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태어났고 그리스는 아시아라고만도 할 수 없지만 유럽이라고만도 할 수 없다. 그리스는 아마 아시아이면서 유럽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⑤ 밀의 자유주의가 떠받드는 다양성이란 지극히 편협한 족쇄에 묶여 있다. 개인, 자발성, 선택, 근검, 노력, 세속적 성취 등만을 중요시할 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삶, 전통적인 생활방식, 종족정체성에 바탕을 두는 삶, 세속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가벼이 여기고 신앙이나 정신을 숭상하는 삶의 형태 등을 배제하기까지는 않는다면 업신여긴다는 점에서 밀의 자유주의는 불관용적이다.

⑥ 밀의 자유주의는 깊은 곳에서 자신감 부족과 불안감에 시달린다. 핵심 기둥으로 삼고 있는 개인성이라는 것이 주춧돌 노릇을 하기에 너무나 박약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가 이론으로서 완벽하게 정합적이지 못하고, 오만을 부릴 권리는 존 밀에게도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는 파레크의 비판이 타당하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완벽하다고 밀이 오만을 부린 적은 내가 생각할 때 없는 것 같다. 자신이 나름대로 도달한 견해를 공표하기까지 내면적으로 거친 성찰의 정도에 비례해서, 밀은 어떤 주장을 개진할 때 남달리 당당했던 것은 분명하다. 당대에도 그 때문에 향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오만하다고 비쳤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 인식론에 충실한 학생의 자세를 평생 잃지 않았다. 공론을 신봉한 사람답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에 혹시라도 자기가 미처 살피지 못한 이치가 들어있을까 항상 경청할 줄을 알았다. 이런 자세에서 나오는 철학자의 뚝뚝함을 미숙한 인격의 속성인 오만과 혼동한다는 것은 지적 탐구의 본질적인 성격 자체를 부인하는 셈이다.

자유주의가 유럽에게 자연적으로, 즉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고유하다고 밀이 주장

27) Bhikhu Parekh, "Decolonizing Liberalism", *The End of 'isms'? Reflections on the Fate of Ideological Politics after Communism's Collapse*, ed. by Alexander Shtromas (Oxford: Blackwell, 1994), pp. 92-94.

한 적도 없다. 밀이 유럽의 우월성을 인정한 대목은 근대 이후의 역사가 그랬다는 사실에 토대를 둔 이야기일 뿐이다. 물론 근대 이후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유럽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개인적으로 소고기를 안 먹고, 전기를 (그릴 수 있다면) 아예 안 쓰거나 가능한 덜 쓰면서, 서양 의학의 도움을 거절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삶이라도 존 밀이나 빅토리아 여왕이나 조지 소로스의 삶에 비해 특별히 못할 것도 없고, 나아가 그들의 삶에는 없는 어떤 의미 있는 요소가 담겨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밀이 다룬 주제는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의 문제다. 10억을 넘는다는 인도의 인구가 어떻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자유주의 이론은 세속적인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틀림없다. 밀은 인류의 역사가 수렵-유목-농경-상업이라는 순서로 진보했다고 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적통을 계승한 후예로서,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 흥정으로 경쟁하는 상업사회를 문명사회라고 본 사람이다. 이는 장사꾼이 농민이나 사냥꾼보다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라, 평화와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체제로서 상업사회가 최선이라는 말이다. 인류의 지성이나 취향이 장차 근본적으로 바뀐다면 모르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다수 사람들이 평화와 풍요를 원한다고 보는 견지 위에서 구축된 결론이다.

고대 그리스를 독점할 권리는 유럽에게 없고 기독교는 원래 아시아라는 파레크의 지적은 연민을 자아내는 한탄이다. 근대 유럽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그리스나 기독교를 독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밀은 오히려 고대 그리스의 정신이나 기독교의 정신 중에서 자기가 취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온 마음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류에 속한다. 지리적, 인종적, 조직적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은 것이다. 파레크가 지리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조직적 구분에서 탈피해서 사고를 했더라면, 자유주의를 유럽이 독점한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오늘날 자유주의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자기가 보기에 이치에 맞는 부분들을 선별하고 부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밀이 계몽에 심취해서 과학과 이성의 역량을 과장한 혐의는 거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온당함이란 오직 그 과장을 비판함으로써 이 주제에 관해 보다 밝은 빛을²⁸⁾ 뿌려줄 수 있을 때에만 본령의 의미에 부합하게 구현되는 되는 것이지, 단순히 상대의 태도에서 오만을 일방적으로 읽은 다음 그 오만을 성토한다는 것이야 말로 이중 왜곡이자 이중 타자화가 아닐 수 없다. 밀이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과학과 진보에 관해서 형상화한 이념들을 비유럽사회의 비자유주의를 타자화한 다음 그 반대되는 것만을 추려낸 비-비-자유주의의 형태로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론』, 『공리주의』, 『대의정부론』, 『논리학체계』, 『정치경제학원리』 등,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밀의 저술을 충분히 섭렵하지 않은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밀이 10대 후반 이후 50년 동안 줄기차게 발표한 저술 전체에서 비유럽 지역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언급되는 대목을 모두 빼고 읽어도 그의 의도가 특별히 불분명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파레크 정도 되는 학자가 밀의

28) 밀의 (벤담에 비해서는 향상된) 계몽주의가 벗어나지 못한 착각을 내가 보기에 가장 명확하게 밝혀낸 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주요 공헌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빛 아래 밀의 인식론을 직접 논의한 글로는 Peter Winch, *The Idea of a Social Science*가 있다.

저술을 충분히 읽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보면, 인도인으로서 영국에 대해 가지지 않기가 어려운 복잡한 논리외적인 심사가 작용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뭇가지에 걸린 줄에 매달려 흔들거리다보면 득도할 수 있다고 믿고 행하는 사람을 밀이 존중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다. 그런 사람을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인민으로 구성된 사회에 대해 거의 멸시에 가까운 반감을 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밀의 이런 태도는 서구중심주의도 아니고 편협한 도덕주의도 아니다. 그는 기독교도라고 하더라도 현세의 가난을 한탄하면서 그 가난을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팔자나 운명 타령을 늘어놓는다면 똑같이 비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스스로 고행을 통해 구원을 얻기로 결단하고 풍찬노숙을 받아들인다면 힌두교도든 기독교도든 밀에게 별로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 밀은 물론 그런 삶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비난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문제는 대다수 보통사람들이었다. “노예란, 명실상부하게 노예라면, 스스로 도울 줄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두려운 상대가 눈앞에 서서 처벌로 위협한다면 복종하지만, 그가 등을 돌리는 순간 작업은 수행되지 않는다. 그들을 좌우하는 동기는 이익이 아니라 본능에만 – 즉각적 기대 아니면 즉각적 공포에만 – 호소해야 한다.” 압제와 착취와 빈곤에 시달려 거짓말과 도둑질을 틈만 나면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주요 원인이 바로 종교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행세하는 지배체제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그는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다. 안타까움이 지나쳐서 때로 걱정이 멸시의 형태로 표현된 적도 없지 않으나, 적어도 그의 주관성 안에서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공분이었다.²⁹⁾

5. 시각의 문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상대의 오만을 꾸짖을 권리는 어떤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있다. 상대가 안타까움을 지나 내 처지를 멸시하기까지 한다면 기분이 나빠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의미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다. 그러나 시각을 바꿔보면 남이 나를 멸시하거나 안타까워할 때, 그 이유를 한번 캐물어볼 의무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의 그런 태도에서 내 기분이 나빠진다면, 기분이 나빠지는 내 맘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의미의 폭이 좀 더 크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존 밀의 자유주의뿐 아니라 어떤 누구의 자유주의라도 비판의 여지가 없는 버전은 없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이 제국으로 한창 성장해 가는 번성기에 피식민 지역에서 악의에서든 선의에서든 영국인들이 저지른 만행과 악행이 무척 많다는 증거를 새삼 제시해야

29)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XIX, p. 396.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가 곧 제국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의 이념은 버전 여하를 막론하고 귀속적 속성보다는 개인적 속성을 중요시하며, 탈속한 은둔자의 미덕보다는 현세적 사업가의 덕성에 초점을 맞춘다. 탈속한 은둔자들은 명실상부하게 탈속한 은둔자라면 누가 와서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맞서 싸우기 보다는 조용히 학살 당하는 편을 택할 테니 현세적 정치에 관한 이론에서는 도외시되어도 괜찮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정치 이념은 장사와 도박을 평화롭게 (즉, 폭력을 가능한 줄이면서) 하자는 데에 초점이 있다. 유럽은 중세에서 근대 초까지 온갖 이유로 전쟁을 겪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일각에서 드러내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중농주의라고 불린 사람들이나 영국에서 자유주의라고 불린 사람들은 계몽주의자들 가운데서 이런 깨달음을 특별히 중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나폴레옹 이후 19세기에 유럽 열강 사이에서는 전쟁이 없었지만, 유럽 바깥에서는 전쟁이 여전히 벌어졌다. 인도,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는 유럽계 백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전쟁, 또는 일방적인 살육이 대규모로 자행되었다. “심지어 ... 아도와 전투, 이산들과나 전투, 마이완드 전투처럼 유럽 군대들이 식민지 사람들에게 패배한 ... 곳에서조차 유럽인의 희생자 수는, 20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18-19세기 유럽의 큰 규모의 전쟁에서 잃은 유럽인의 희생자 수보다 적었다.”³⁰⁾ 전쟁뿐 아니라, 유럽인들이 가져다 준 전염병, 그리고 노예무역 때문에 비유럽인들이 겪어야 한 고통과 희생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를테면 자유주의가 장사꾼의 탐욕을 정당화해 줌으로써 부추겼다고 보면, 이 모두가 자유주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말은 되지만 실천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근대 서양의 제국주의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는 이유에서 보면, 케플러나 하비가 제국주의의 원흉으로 지목될 수 있다. 실제 과학혁명을 선도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특별히 문화적 상대주의자였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대다수가 암묵적으로 향리주의적으로 형성된 인종적 편견 또는 제노포비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갈릴레오나 뉴턴에서 제국주의의 뿌리를 찾기로 한다면 못 찾을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방향의 탐구에는 별 매력을 느낄 수 없다. 그러한 성토를 통해 혹시 매우 말초적인 위로를 얻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밖에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가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존 밀은 식민지 건설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특히 웨이크필드 방식에 관해서는 『정치경제학원리』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논의하면서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방식은 웨이크필드(Edward Gibbon Wakefield, 1796-1862)가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못했고 결국 뉴질랜드에서 기회를 얻어 초창기 뉴질랜드 식민 사업이 이 집안의 가족 사업처럼 이뤄진 계기를 제공했다. 예컨대,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에서 이주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여행경비를 회사에서 대여해준다. 이주자들은 식민지로 가서 일년 정도 임금노

30) 스티븐 하우 저, 강유원, 한동희 옮김, 『제국』, 뿌리와이파리, 2007, pp. 165-166.

동자로 기존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립할 밑천을 저축한다. 그 돈으로 여행 경비를 상환하고 낮은 가격으로 농지를 불하받아 자영농이 된다. 회사는 상환받은 자금으로 다시 새로운 이주자들을 모집해서 불러 오는 방식이었다.

존 밀은 이 방식이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식민지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주자들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조금의 눈길도 주지 않는다.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고발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공리주의자로서 토지의 효율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원주민들이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축적을 향한 실효적 욕구”³¹⁾로 충만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일랜드 농민들이 경작하는 상태는 인류 전체를 위해 더 나은 결과라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리적, 인종적, 조직적 기원을 어떤 불변의 표준이라고 보지 않은 경험주의자-공리주의자로서 이러한 입장은 적어도 일관적이라고는 봐야 한다.

물론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사기 또는 강탈이라고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사기나 강탈이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따지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사기 또는 강탈에 의한 취득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본질적으로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법이란 정치공동체의 권위가 전제되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용어이다. 그런데 유럽에서 온 이주민과 비유럽 지역의 원주민들이 처음 조우한 상황이란 공통되는 정치적 권위가 전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해당한다. 더구나 사기나 강탈에 의한 취득을 불법으로 정한 데 더해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사기나 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당한 정도 이상으로 일관성 있게 (즉,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판정하고, 나아가 그렇게 판정된 경우에 소유권을 원상 복귀까지 하는 사법적 관행은 유럽인들과 만나기 이전 인도나 마오리에 확립되어 있었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밀은 권력자가 변덕에 따라 지목한 상대로부터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 비유럽 지역의 관습이라고 보았다. 근대 이후 유럽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치의 이념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또는 인도나 중국의 전통 사회에서 소유권이나 부당 취득 등에 관한 사법적 기준이 얼마나 정합적으로 확립되어 있었는지 등은 물론 밀이 단정하듯이 간단하게 일반화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그러나 영국인들이 인도나 뉴질랜드에서 토지 사용권 또는 점유권을 야금야금 취득해 간 과정은 취득한 편에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영국의 법에 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 인도인이나 마오리인들이 사기나 강탈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어떤 법정에 호소할 것인지부터 정해져야 하는데, 영국 법정에서는 당대에 소송이 된 경우에는 대개 패소했다. 영국 법정이므로 영국인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당시에 하나의 레짐으로서 현실적인 권위를 가진 법정이 영국 법정 말고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당대에 영국 법정이 체계적으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꼈을 때 인도인이나 마오리인이 따

31) effective desire of accumulation: 미래를 위해 현재 생산성을 높이고(근면), 소비를 줄이는(절약) 욕구를 가리키는데,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우만을 지목하기 위해 “실효적”(effective)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성취동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밀이 사용한 문구이다.

로 호소할 수 있는 법정은 지상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영국인과 인도인이 이처럼 집단적으로 상충하는 이익 때문에 대립하는 구도라면, 그러한 법정을 지상에 만들어줬어야 할 책임은 집단으로서 영국인이 아니라 인도인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정당했음을 주장하려는 말이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성토가 현재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다. 상황을 영국/인도의 대립으로 인식하는 한, 제국주의 강도들이 선량한 이웃을 해치고 약탈했다는 도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당대 영국인들이 모두 강도가 아니었듯이 당대 인도인들이 모두 선량하지만도 않았고 모두가 피해를 입지만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런 도식은 실상과는 거리가 있는 커리커처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인도 제국이 독립을 쟁취한 후 결국 네 개의 정치체로 갈라진 후에도 내부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근대화의 필요와 전통적 정체성에 대한 향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차원의 문제는 영국 지배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수가 없다. 현재 인도 사회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일차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 구성원들이 실존적으로 시의적으로 풀어내야 할 일이다. 과거 역사에 관한 책임 공방은 이러한 실존성과 시의성에 대해 약간의 부수적인 함축 이상을 가질 수는 없다.

6. 결론에 대신하여

문제의 뿌리에는 예컨대 인도가 무엇이나고 하는 난제, 즉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 일례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는 벵골 지방의 명문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이중언어, 즉 영어와 벵골어로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은 인도인이라는 자기규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인물이다. 그의 시들은 인도의 정신을 표현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노벨문학상까지 주어졌다. 그렇지만 당대 벵골의 유명한 문학사가였던 디네쉬 찬드라 센(Dinesh Chandra Sen, 1866-1939)은 타고르의 『기탄잘리』를 기본적으로 영문학 작품이라고 자리매김했다.

그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본질적으로 영국적이라서 나는 『기탄잘리』의 벵골어 원본보다 영어 번역본이 더욱 이해가 잘 된다. ... 우리 가운데서는 영어책만을 읽고, 민중의 삶과 접점을 이미 잃어 버린 사람들만이 그의 애독자다 ... 벵골이 유럽에게 라빈드라나트를 보내주었다기보다는 유럽이 벵골에게 그를 보내준 셈이다.³²⁾

반면에 나바니타 센에 따르면 타고르는 자신의 작품 중에서 종교문제 또는 동양과 서양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글들을 조심스럽게 선별해서 유럽어로 번역되도록 했다고 한다.³³⁾ 자기에 대한 인기가 유럽에서 급속히 끓어오를 때 약간 당황한 타고르가 유럽 독

32) Rosinka Chaudhuri, "Cutlets or Fish Curry? Debating Indian Authenticity in Late Nineteenth Century Bengal", *Modern Asian Studies*, 40:2 (2006), p. 268.

33) Nabaneeta Sen, "The 'Foreign Incarnation' of Rabindranath Tagor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5:2 (Feb. 1966), pp. 264-275.

자들의 기호가 거기에 있다고 해석해서 그런 것인데, 그 때문에 열기가 금방 식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어쨌든 타고르의 문학이 벵골의 정서를 재발견한 결과라는 해석만큼이나 그의 문학은 영국적 사고를 벵골어로 표현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언제나 가능하다. 사실 타고르처럼 영국 문화에 노출된 19세기 벵골의 작가라면 누구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나 “진정한” 벵골 문학을 대변하는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교육받은 벵골인이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동물인가?” 하고 당대 벵골의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악샤이찬드라 사르카르(Akshaychandra Sarkar, 1846-1917)가 자문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교육받은 벵골인은 불가지론자다. 직선적인 단어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추종한다. 교육받은 벵골인은 종교(dharma)를 믿지 않고, 실천(kharma)도 믿지 않고, 규칙(shastra)도 믿지 않고, 사회도 믿지 않는다. 선생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학생에 대한 믿음도 없다.

교육받은 벵골인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단지 슬픔 속에서 신앙을 쉬게 둔다. 험찬드라는 이런 벵골사람들의 시인으로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의 언약을 이행했다.³⁴⁾

험찬드라(Hemchandra Bandyopadhyay, 1838-1903)는 벵골의 시인으로서, 악샤이찬드라는 그의 작품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벵골 문학인지를 따져 묻은 끝에 “슬픔의 노래”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험찬드라뿐 아니라 타고르 또는 간디에 대해서도 그의 사상이 얼마나 “진정으로” 인도적인지를 묻게 되면 답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하지만 19세기 말이든 20세기든 21세기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각자 개인적으로나 공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나름대로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자신이 얼마나 “진정으로” 인도인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인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처럼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미궁을 만나게 되는 수수께끼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장차 다음 세기 인도인들로 하여금 정체성 논쟁에 덜 시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존 밀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제국주의자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제국주의 동조자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나름대로 도달한 보편성의 원리에 일관되게 충성을 바친 경험주의-공리주의적 계몽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였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제국주의자로 본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특별히 낮아질 것도 없고 자유주의 신조에 충실했다고 본다고 해서 그가 특별히 높아질 것도 없을 것이다. 각 시각은 나름대로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되거나 않거나 할 텐데, 프래크와 같은 비판자가 서있는 시각은 과거의 역사에서 나름대로 느낀 불의에 대한 공감대를 다분히 정서적으로 확산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타고르의 종교 취향이 금세 매력을 상실했던 것과 비슷한 운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게는 보인다. 반면에 존 밀이 나름대로 포착한 자유주의적 가치의

34) Akshaychandra Sarkar, *Pita-putra*, in *Akshay Sahitya Sambhar*, vol. 1, Calcutta: Indian Associated Publishing Company, 1887, p. 34. Chaudhuri, op. cit., p. 271에서 재인용.

보편성은 여전히 현실 안에서 검증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문화적 차이를 넘나들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여지를 조금은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과거에 (또는 현재에도 계속)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신세라고 자각하는 사회의 지식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사회의 “진정한” 원형 찾기에 나서기보다는 지금 여기의 실존과 시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깨달음은, 제국주의를 잠시 잊고 밑을 읽을 수 있다면 구하기가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닐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문헌]

- Bentham, Jeremy. "Emancipate Your Colonies!"(1793),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 IV. Bristol: Thoemmes. 1995.
- Berlin, Isaiah. 박동천 역.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아카넷, 2006.
- Borchard, Ruth. *John Stuart Mill: the Man*. London: Watts. 1957.
- Burke, Edmund. "Fox's India Bill Speech". *Writings and Speeches of Edmund Burke*. Ed. by P. J. Marshall. Vol. 5. Oxford: Clarendon Press. 1981.
- Chaudhuri, Rosinka. "Cutlets or Fish Curry? Debating Indian Authenticity in Late Nineteenth Century Bengal". *Modern Asian Studies*, 40:2. 2006.
- Steven Howe. 강유원, 한동희 옮김. 『제국』. 뿌리와이파리. 2007.
- Macaulay, Thomas Babington. *Speeches by Lord Macaulay*. Ed. by G. M. You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 _____. "Mill on Government", *Edinburgh Review*. March 1829.
- _____. "Utilitarian Theory of Government". *Edinburgh Review*. October 1829.
- Kohn, Margaret and Daniel I. O'Neil. "A Tale of Two Indias: Burke and Mill on Empire and Slavery in the West Indies and America". *Political Theory* 34:2. 2006.
- Mehta, Uday Singh. *Liberalism and Empi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 Mill, James. "Colony". *Supplement to the Encyclopedia Britannica*. London: J. Innes. 1825.
- Mill, John Stuart. On Liberty,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XVIII.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7
- _____.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XIX.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9.
- _____.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s. II-III.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5. 박동천 역. 『정치경제학원리』. 근간 예정.
- _____. The Later Letters of John Stuart Mill, 1849-1873,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XVI.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2.
- _____. Writings on India,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XXX.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0.
- Packe, Michael St. John. *The Life of John Stuart Mill*. London: Secker. 1954.
- Parekh, Bhikhu. "Decolonizing Liberalism", *The End of 'isms'? Reflections on the Fate of Ideological Politics after Communism's Collapse*. Ed. by Alexander Shtromas. Oxford: Blackwell. 1994. Pp. 85-103.

- _____. "Liberalism and Colonialism: a Critique of Locke and Mill". *The Decolonization of Imagination: Culture, Knowledge and Power*. Ed. by Jan Pieterse and Bhikhu Parekh. London: Zed Books. 1995. Pp. 81–98.
- Ricardo, David.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Vol. 7: Letters 1816–1818. The Royal Economic Society. 1970.
- Edward Said.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 _____.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Alfred Knopf. 1993.
- Schumpeter, Joseph, A.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 Sen, Amartya. *The Argumentative India*. Penguin. 2006.
- Sen, Nabaneeta. "The 'Foreign Incarnation' of Rabindranath Tagor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5:2. Feb. 1966. Pp. 264–275.
- Skorupski, John. *John Stuart Mill*. Routledge. 1989.
- Tunick, Mark. "Tolerant Imperialism: John Stuart Mill's Defense of British Rule in India". *Review of Politics* 68. 2006.
- Winch, Donald. *Classical Political Economy and Colonies*. London: G. Bell and Sons Ltd. 1965.
- Winch, Peter. *The Idea of a Social Science*. Routledge and Kegan Paul. 1958.
- Zastoupil, Lynn. *John Stuart Mill and Ind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제국’이라는, 시대정신 모색의 새로운 조건에 관하여

공진성(서강대학교)

1. 왜 ‘제국’인가?

한동안 학문적 관심에서 멀어졌던 ‘제국’이 몇 년 전부터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먼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함께 지구상의 유일한 패권국가로 남게 된 미국의 지난 8년 동안의 일방적인 대외정책이 미국을 새로운 ‘제국’으로 인식하게끔 했다. 또한 지구적 지배의 등장과 그에 맞서는 다중의 저항에 관한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책 『제국』도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제국에 관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후 한국에서도 ‘제국’인지 ‘제국주의’인지, 그리고 과연 미국이 ‘제국’인지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은 과연 마이클 왈쩌의 주장처럼 단지 패권적이고 일방주의적일 뿐인가?¹⁾ 아니면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고전적인 의미의, 다만 조금 세련되게 변한 것일 뿐인, 제국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네그리와 하트의 주장처럼 새롭게 등장한 지구적 제국의 경찰국가인가?

2008년 겨울, 미국에 불어닥친, 1930년대의 대공황에 비견되는, 심각한 경제난과 지난 8년간의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대외정책을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제국’ 미국의 앞날에 관한 각종 추측을 또한 무성케 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국’을 둘러싼 지난 논의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시대적 변화를 ‘제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국’이 어떠한 의미에서건 우리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할 때에 전제해야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셸던 월린(Sheldon Wolin)은 “삶의 조건이 제국의 시대로 변화한 상황”에서 그리스인들이 “정치적 공간에 대한 재정의의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삶의 활력을 숨 막히는 한계 속에서 봉합하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외부’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제국이 “폴리스보다 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유할 수 없다는 무능력에서 야기된 심리적 산물”이었다고 평가한다.²⁾ 새로운 공간에 대한 정치적 인식의 기피는 다른 한편으로 스토아 철학자들의 경우에서처럼 관념적 세계시민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여전히 국민국가적 상상력에 갇혀 있거나, 지구화한 세

1) Michael Walzer, "Is There an American Empire?", *Dissent*, 2003년 가을.

2) 셸던 월린, 『정치와 비전』 1권(후마니타스, 2007), 126, 132쪽.

계의 보편적 시민임을 공허하게 자처하고 있지 않은가?

이 글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조건이 새롭게 ‘제국’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하기에 앞서 ‘제국’이라는 변화된 삶의 조건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새삼스럽게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국’에 관한 기존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새로운 주장을 덧붙이는 것, 특정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 글은 다만 미국과 제국을 연결하는 여러 논의들 속에서 ‘제국’의 의미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제국’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조건을, 그리고 정치적 사회의 조건을, 다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2. 미국은 ‘제국’인가?

‘제국’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먼저 정의하고 오늘날의 미국이 과연 제국인지를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제국’이라는 개념의 뜻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그 외연이 넓기 때문에,³⁾ 이 글에서는 ‘제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국이 제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 논자들의 대답들 속에서 화용론적으로 찾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또한 과거의 개념을 가지고서 변화하는 현실을 재단하기보다 현실의 변화 속에서 개념이 새롭게 구성되고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고자 함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80년대 민족해방과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신식민주의 지배’를 겪은 한국에서 ‘제국’이라는 개념은, 비록 부정적이었지만, 결코 낯설지 않았다. 여러 논자들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제국’이라는 표현은, 영국 제국의 식민지배에 저항해서 독립을 쟁취한 미국의 건국 배경 때문에도 그렇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이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불렀기 때문에도 그렇고, 결코 낯설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것이었다.⁴⁾

부정적이었던 ‘제국’ 개념이 최근의 제국 논의에서는 상당히 정상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념 안에서 의미의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천 년대의 벽두에 출간된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제국』은 좌파의 전통적인 반제국주의적 입장과 일견 어긋나게도 ‘제국’ 개념을 정상화하고 반제국주의 독립전쟁을 통해 세워진 미국의 연방헌법이 그 안에 이미 제국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⁵⁾ 니얼 퍼거슨(Nial Ferguson)과 마이클 이그나티프(Michael Ignatieff) 같은 사람들은 미국이 제국적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긍정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떠맡아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⁶⁾ 이러한 현상을

3) ‘제국’ 개념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박지향, 「왜 지금 제국인가」, 『세계정치』 제26집 1호(2005년)를, ‘제국’ 개념의 역사와 정의에 관해서는 김영호, 「21세기 미국 제국의 등장과 국제정치적 영향」,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1호(2005년)를 참고하라.

4) 건국 초기부터 미국인들이 자국을 ‘제국’으로 인식했다는 주장도 있다.

5)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 『제국』(이학사, 2001)

6) Nial Ferguson, *Colossus: The Price of America's Empire* (New York: Penguin, 2004);

스티븐 하우(Stephen Howe)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제는 그 [미국 제국이라는] 말을 본질적으로 중립적이고 서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미국이 제국 건설자의 역할을 떠맡는 것이 미국 자신을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신념을 가진 이들도 따스한 호감을 가지고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⁷⁾

최근에 미국에서 ‘제국’ 개념이 정상화하는 배경에는 미국 역사학과와 정치학과에서의 오랜 움직임이 있다. 존 개디스(John Lewis Gaddis)로 대표되는 본질주의 외교사학과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을 필두로 한 신보수주의가 바로 그것이다.⁸⁾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이 미국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제국주의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반대해 개디스는 1980년대에 룬데스타드(Gair Lundestad)의 ‘초대받은 제국’ 테제를 받아들여 냉전을 ‘본질주의적’으로, 즉 ‘선한 제국’과 ‘악한 제국’ 간의 대결로 해석하기 시작했다.⁹⁾ 이렇게 ‘미 제국’의 실재를 긍정함으로써 개디스는 궁극적으로 ‘제국’의 의미를 가치론적으로 전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미 제국’의 의미 전복은 또한 신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꺼렸던 것과 다르게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제국적 힘과 역할을 긍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지위와 역할을 부정하는 좌파/리버럴 지식인들의 무책임함을 그들은 비판하였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제국에 관한 이러한 입장은 지난 8년간의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충실하게 혹은 부실하게 반영되었다.¹⁰⁾

한국에서도 ‘제국’ 개념을 둘러싸고 비슷한 의미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제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미국의 제국적 지위의 실제성과 무관하게 ‘미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을 적극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국적’ 현실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대항 제국’의 실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¹¹⁾ 미국의 본질주의 외교사학에 대한 공감 속에서 또는 미국의 신보수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경계 속에서, 비록 언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을지라도, 미국의 제국적 위상과 역할을 긍정/인정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¹²⁾ 그리고 이러한 담론상의 의미

Michael Ignatieff, "The Burden," *New York Times Magazine*, 2003년 1월 5일, 22쪽.

7) 스티븐 하우, 『제국』(뿌리와이파리, 2007), 7쪽.

8) 이에 관해서는 이삼성, 「미국 외교사학과 ‘제국’ 담론의 전복: 신보수주의와 존 L. 개디스의 본질주의 외교사학」, 『국제정치논총』 제46집 4호(2006년) 참조.

9) 미국에 대한 제국 개념의 사용 용례에 관해서는 김명섭, 「국제와 제국: 국제질서의 변동과 제국담론의 발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1호(2005년) 참조.

10) 신보수주의적 외교정책의 지적 배후에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박성래, 『부활하는 네오콘의 대부 레오 스트라우스』(김영사, 2005) 참조.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신보수주의 노선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 잘못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기묘한 선 미국』(랜덤하우스, 2006) 참조.

11) 조정환, 『제국기계 비판』(갈무리, 2005); 윤수중,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제국』 -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 『문학과사회』 제14권 2호(2001년 여름); 이구표, 「서평-“대중이 제국을 낳았다”: 전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대중 정치학」, 『진보평론』 제11호(2002년 봄); 박상진, 「제국의 내파, 그 징후와 가능성」, 『문학과경제』 11호(2003년 겨울) 참조.

12) 김영호, 「21세기 미국 제국의 등장과 국제정치적 영향」; 김명섭, 「미국 안에서 없어지는 세계」, 『문학과경제』 4호(2002년 봄); 이근, 「제국으로서의 미국과 한미 FTA, 전략적 유연성」, 『

역전 현상에 직간접적으로 기대어 과거의 일본 제국과 그 식민 지배를 ‘재인식’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제국인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의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이나 좌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에 대해서 ‘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그리 주저하지 않았다. 이들은 미국이 설령 ‘제국’이 되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제국이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제로 특정 영토를 정복하여 식민지로 삼지는 않더라도 시장과 미군 기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제국주의 국가’라고 불려왔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지난 8년간의 미국의 개입적 대외정책이나 단독 군사행동이 특별히 새롭지 않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이들의 비판적 시각에도 변화는 없다. 미국의 제국적 위상은 긍정하지만 그러한 역할은 부정하는 이와 같은 입장, 즉 “미국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미국의 ‘제국적 모습’을 힐책하는” 또는 “먼저 상대 얼굴을 검게 칠하고 그 검은 것을 책망하는” 입장은 이 글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¹³⁾ 이와 관련하여 임마누엘 토드(Emmanuel Todd)는 미국의 국제적 행태에 대한 엄격한 설명 모델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가 ‘미국의 유일한 문제가 힘이 너무 강한 것’이라는 정형화된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일이며 이 일을 수행하는 데에 ‘미국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강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하는 촘스키(Noam Chomsky)와 같은 반미주의자 전문가들이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고 주장한다.¹⁴⁾

이 글은 미국의 네오콘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학자들이 미국의 제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국적 지위나 역할에 대한 도덕주의적 긍정/부정론보다는, 현실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위상이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련의 논자들의 주장들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이 ‘어떤’ 제국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인구학자인 임마누엘 토드이다. 그는 현재 미국의 ‘제국적’ 행태가 근본적으로 더 이상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미국의 공포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미국의 무용성, 그리고 그에 따른 고립의 공포”가 미국으로 하여금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을 세계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인식시키려고 노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생각에는 두 가지 변화가 전제되어 있다. 하나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오히려 주변 세계에 종속적이게 된 것이다. 2008년에 일어난 미국의 금융위기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이 경제적 종속관계의 역전을 그 동안 금융부문에서 위험스럽게 만회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된 것이다. 문자해독율 증가와 출산을 저하와

역사비평』 75호(2006년 여름); 배영자, 「정보혁명과 미국제국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관점」, 『국제·지역연구』 15권 3호(2006년 가을) 참조.

13) 후지와라 기이치, 『민주주의 제국』(에머지, 2002), 23쪽.

14) 임마누엘 토드, 『제국의 몰락: 미국 체제의 해체와 세계의 재편』(까치, 2003), 13쪽.

15) 토드, 『제국의 몰락』, 23~24쪽.

함께 세계가 점차 개인주의화, 근대화, 민주화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제국적 사명’으로 내세웠던 미국의 입지가 좁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적어도 상징적으로나마 세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자신의 ‘힘’, 아니 ‘절대권력’을 무대에 올려야”하므로 “연극적 군사주의의 발전”을 피하게 된다.¹⁶⁾

오늘날 세계가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국 미국을 지배하는 행위 규범은 다음 세 가지이다. 하나,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유일 초강대국’의 무한정한 군사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버리는 일을 피할 것.” 둘, “이라크, 이란, 북한, 쿠바와 같은 소국들을 상대할 것.” 셋, “앞으로도 결코 끝나지 않을 무기경쟁에서 미국이 ‘훨씬 멀리’ 앞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할 것.”¹⁷⁾ 토드는 룬데스타드의 ‘초대받은 제국’ 테제와 비슷하게 냉전시기 미국의 지배가 비공산화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유익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그는 탈냉전 시기에 미국의 유용성이 무용성으로 도치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소련제국의 해체와 함께 미국제국도 해체 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토드는 미국이 제국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필요를 입증하기 위해 무질서를 조장하는 대신에 보통 국가로 연착륙하기를, “미국이 원래 그 자체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생산적”인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다.¹⁸⁾

토드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현 세계의 문화적 진보에 대한 설명변수를 대중의 문자해독율 증가에 따른 각국의 출산율 저하에서 찾는 것이다. 낮은 출산율은 일종의 근대성의 표현인 것이다.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Herfried Münkler)는 이처럼 출산율이 낮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을 희생태세를 상실한 ‘탈영웅적 사회’라고 부르고, 이 탈영웅성이 민주주의와 함께 미국이 제국이 되는 데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¹⁹⁾ 먼저 이 탈영웅성은, 앞에서 토드가 언급한 세 번째 행위규범인, 신무기의 개발로 나타나고,²⁰⁾ 전쟁수행에서 자국 시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간군사회사의 활용과 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용병의 고용으로 나타난다.²¹⁾

16) 토드, 『제국의 몰락』, 34~35쪽.

17) 토드, 『제국의 몰락』, 35쪽.

18) 토드, 『제국의 몰락』, 263쪽.

19) 토드와 마찬가지로 뮌클러도 오늘날보다는 오히려 전간기와 냉전기에 미국이 제국이였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전 세계 총생산량의 27퍼센트를 차지하는 미국의 국내총생산량이 영국제국이 당시에 차지했던 비중보다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여전히 전간기와 2차대전 이후의 4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Herfried Münkler, *Empires: The Logic of World Domination from Ancient Rome to the United States* (Polity, 2007), 159쪽 참조.

20) 일본, 독일, 프랑스의 국내총생산에 합한 것만큼 많은 미국의 국내총생산에 비해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그 밑의 12개 나라의 군사비를 합한 것만큼 많다(Münkler, *Empires*, 160쪽). “현재 미국은 세계 전체의 군사 연구 개발비의 80퍼센트, 세계 전체의 국방비 지출의 40퍼센트를 차지한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국방 예산은 머잖아 나머지 세계 전체의 국방비를 합한 것과 맞먹게 될 것이다.”(제러미 리프킨, 『유러피언 드림』(민음사, 2005), 395쪽)

21) 탈영웅적 사회에 관해서는 공진성, 「탈영웅적 사회와 평화의 전망」, 『인문사회과학연구』 제 16집(2007년) 참조.

이러한 미 제국의 탈영웅적 모습은 그 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에서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 ‘민주적 제국’이라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제약이 오히려 유권자들을 속여가면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게 하고, 2년 주기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의석을 잃지 않기 위해 오히려 단기간에 전리품을 챙기려는 생각으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게 하며, 백인 중산층 유권자의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희생되어 지지가 철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민간군사회사와 그린카드 병사를 고용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²²⁾ 그래서 뮌클러는 미제국의 가장 큰 약점이 외부의 위협에 있지 않고 ‘제국적 계산서를 지불할 미국 유권자들의 의문스러운 의지’에 있다고 평가한다.²³⁾ 선거라는 제도에 종속된 민주적 제국 미국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다.

민주주의는 에이미 추아(Amy Chua)에게도 미국이 제국이 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추아는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여러 필수요소들 가운데에서 특히 관용에 주목하면서 미국이야말로 관용을 통해서 세계적인 패권국가로 성장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원자폭탄 개발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둔 것도 “박해를 피해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 과학자들 덕분”이었고, 컴퓨터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한 것도 “세계 전역으로부터 재능 있고 진취적인 개인들을 끌어들이는 미국의 탁월한 능력이 빚어낸 직접적인 결과”였다.²⁴⁾ 그것이 바로 ‘관용적인 초강대국’ 미국의 모습이었다. 그에게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제국이 아닌 세계 최초의 초강대국이자, 군사 제국주의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최초의 초강대국”이었다.²⁵⁾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이후 미국의 군사적 제국화와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추아는 한탄한다.

그가 미국의 제국화를 비판하는 이유는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제국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명목상으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제국이 될 수 없다. “제국이 민주주의 이념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압이라는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몽된’ 혹은 ‘자유주의적인’ 제국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²⁶⁾ 또한 실질적으로 미국은 제국이 될 수 없다. 과거에 로마는 피정복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여 그들을 로마제국의 일부로 만들 수 있었지만, 오늘날 미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의 주민들을 정복하여 자국의 시민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²⁷⁾ 미국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의 정치적 연합으로 묶을 ‘접착제’가 없다는 사실이 21세기에 미국과 같이 민주정체를 가진 초강대국이 제국이 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렇다면 미국에 남은 단 하나의 대안은 끊임없이 전 세계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관용적인, 그러나 군사제국주의적이지는 않은, 초강대국으로 계속해서 남는 것이다.

22) Münkler, *Empires*

23) Münkler, *Empires*, 160쪽.

24) 에이미 추아, 『제국의 미래』(비아북, 2008), 13쪽.

25) 추아, 『제국의 미래』, 14~15쪽.

26) 추아, 『제국의 미래』, 466쪽.

27) 추아, 『제국의 미래』, 456쪽.

추아는 제국의 의미를 지나치게 법률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제국의 양립가능성, 즉 식민지를 거느리지 않는 ‘비형식적 제국’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비록 그가 미국의 제국화를 “자멸적인 모험”으로 간주하여 경계하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제국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추아의 미국이 군사적인 제국과 관용적인 초강대국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네그리와 하트의 미국은 지구적인 네트워크 제국과 일국적 제국주의 사이에서 과도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추아의 제국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면,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은 지나치게 비형식적이다. 심지어 경계도 외부도 없는, ‘무장소’(non-place)이다.²⁸⁾

추아가 미국의 제국화 시점으로 지정한 9.11 테러 이전에 출간된 『제국』에서 네그리와 하트는 미국이 1991년의 걸프전쟁에서처럼 보편적 가치를 앞세우고 전 지구적으로 경찰 국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현상에서 주권국가를 넘어서는 지구제국의 출현 경향을 읽었다. 미국의 연방주의 헌법에 내장되어 있는 제국적 팽창의 원리가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출현한 오늘날의 지구제국은 그 안에 미국을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하여 국민국가들과 다국적 기업들, 국제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 그리고 각국의 국민들을 행위자들로 위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제국은 일종의 혼합정적 구성체이다.²⁹⁾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의 지구제국이 출현하게 된 것은 국민국가적 통제를 벗어나서 탈주하는 다중의 존재 탓이다. 생산이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비-물질적 노동이 증대하면서 자본은 더 이상 노동을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과거와 같이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끊임없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다중을 지배하기 위해 네트워크 형태의 주권인 지구제국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그리와 하트에게 지구제국은 한 마디로 자본 축적 위기의 산물이며 다중의 지구적 네트워크화에 맞선 자본의 대응이다.³⁰⁾ 네그리와 하트의 주장대로 오늘날의 지구제국이 기본적으로 다중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라면, 비록 미국이 일시적으로 9.11 이후에 지구제국화의 경향을 거슬러 자국만을 제국 내의 예외로 삼으려는 미 제국화의 경향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지구제국의 지배는, 그것이 다중에 의한 저항으로 완전히 붕괴되거나 또 다른 주권의 형태의 바뀌지 않는 한,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미 제국은 일종의 “환상”인 것이다.³¹⁾

미국이 제국이 아니라는 네그리와 하트의 주장에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제국이 새롭게 합성된 초국가적 네트워크 권력이기 때문이 아니다. 근대의 국민국가 체제가 제국의 붕괴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등장한 국민국가가 자본주의가 아무리 침투한다고 해도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고 가라타니는 말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상품교환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³²⁾ 자본과 국가

28) 네그리와 하트, 『제국』, 252~257쪽.

29) 네그리와 하트, 『제국』, 397~421쪽 참조.

30) 조정환, 『제국기계 비판』, 174~198쪽; 이구표, 「서평-“대중이 제국을 낳았다”: 전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대중 정치학」 참조.

31) 조정환, 『제국기계 비판』, 141~143쪽 참조.

는 서로 다른 기초적 교환양식에서 유래한 것이고, 또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일은 없다고 가라타니는 주장한다. 또한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즉 다른 주권국가의 승인을 통해서만 존재하므로 일방적으로 한 나라 안에서 주권이 지양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국민국가이면서 ‘제국’이고자 한다면 제국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³³⁾ 미국은 세계자본주의의 압력 하에서 그 자신의 국가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다만 “제국주의를 부정하는 몸짓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제국주의 국가인 것이다.³⁴⁾

가라타니는 오히려 국민국가의 등장, 즉 네이션과 스테이트가 고착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제국’이라는 기반에 주목한다. 오늘날 세계자본주의의 압력 하에서 추구되는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광역국가 형성의 시도들과, 국민국가 형성에 실패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의 낙후한 지역에서의 종교적 원리주의 운동에 공통적으로 과거의 제국적 기반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³⁵⁾ 그러나 일단 제국이 붕괴되고 국가-자본-네이션을 연결하는, 그러나 어느 것 하나를 없애면 함께 무너지는, 보로메오의 매듭이 형성된 이상 국가가 지양되고 제국이 복구될 수는 없다고 가라타니는 주장한다. 국민국가 체제가 지속되고, 다만 지구적 시장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과거의 제국적 공통 기반 위에서 “네이션으로서의 각자의 기억을 괄호에 넣고, 자신의 주권을 대폭 제한하여” 광역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 뿐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국민국가의 연장이기 때문에 팽창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팽창을 막는 것이 다른 광역국가뿐이라면, ‘제국의 평화’(pax imperii)는 불가능하며, 세계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³⁶⁾

3. ‘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날 ‘제국’이 내용과 실체 없이 단지 개념으로만 유행처럼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 어떤 변화를 어느 정도 포착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제국의 등장 원인으로 지목되는, 따라서 쇠퇴 원인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그 어떤 변화의 다양한 측면들일 것이다. 그 변화, 즉 화용론적 의미에서의 ‘제국’을 오늘날 우리가 시대정신을 새롭게 모색할 때에 사유의 조건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국’의 등장 (동시에 쇠퇴) 원인은 행위자의 심리적/정신적 수준, 정책집단의 수준, 국가적 수준, 그리고 지구적 혹은 세계체제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미제국의 등장을 부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책집단의 성향에서 찾는 설명부터 살펴보

32) 가라타니 고진, 『세계공화국으로』(도서출판 b, 2007), 217쪽.

33) 가라타니, 『세계공화국으로』, 208~214쪽 참조.

34) 가라타니 고진, 『네이션과 미학』(도서출판 b, 2009), 59쪽.

35) 가라타니, 『네이션과 미학』, 62~63쪽.

36) 물론 이 지점에서 고진은 ‘자연의 간지’를 신뢰하는 칸트의 세계공화국 이념을 도입한다. 고진 2007, 220쪽 이하 참조.

자.

미국의 다큐멘터리영화 감독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는 미국의 팽창적 대외정책 혹은 제국화 경향의 원인을 아들 부시(George W. Bush Jr.) 대통령의 정신상태에서 발견하고자 한 듯하다.³⁷⁾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대중들의 공감은 물론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공감도 얻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고, 제국은 부시 대통령의 정신상태의 정상화와 함께 혹은 그의 퇴임과 함께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 위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막연한,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필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대감을 가진다.

어떤 사람들은 부시 대통령의 십자군적 언어 사용에서 드러나는 그의 독특한 종교적 멘탈리티에서 미국의 ‘기독교적’ 제국화의 원인을 찾는다. 그래서 미 제국의 현실을 기독교를 재해석함으로써, 즉 ‘로마 제국에 맞선 예수’를 새롭게 부각시킴으로써 비판하기도 한다.³⁸⁾ 그러나 부시 대통령 개인의 ‘홀륭한’ 신앙심에서 그의 정치적 성공의 원인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불합리한 것과 마찬가지로,³⁹⁾ 그의 ‘왜곡된’ 신앙심 또는 ‘예수에 대한 몰이해’에서 미국의 제국적 팽창의 원인을 찾는 것도 불합리하다.

부시 대통령 개인의 성향에서 미국 제국화의 원인을 찾는 것과 연결된 또 다른 해석은 그것을 흔히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 정책집단의 영향력 또는 음모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⁴⁰⁾ 미국 시카고대학의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의 ‘밀교적’ 교의를 따르는 학자들이 신보수주의 정책집단의 핵심을 구성하며, 이들이 지난 8년간 부시 행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제국적 대외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이 이러한 해석의 가장 자극적인 버전이라면, 밀교적 집단의 존재나 스트라우스와의 연계도 부정하고 미국의 제국화가 신보수주의자 전체의 공통된 성향이 아니라 그저 대외정책 결정에 가담한 일부의, 그것도 판단착오였다는 것이 가장 미묘한 버전이다.⁴¹⁾ 어느 버전을 따르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제국화를 ‘네오콘’이라는 특정 정책집단과 연결하면 제국은 지난 8년간의 일시적 현상이 되어 버리고 그 전과 후의 민주당 정부 시기의 ‘제국적’ 정책은 자동적으로 부정된다.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이미 2004년에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면 유럽과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오랜 안보 정책이 수정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오”일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다시 진보적인 민주당 대통령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 패권주의 외교 정책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⁴²⁾

37) 영화 「화씨 9/11」(2004) 참조.

38) 리처드 호슬리 지음, 김준우 옮김, 『예수와 제국』(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참조.

39) 스티븐 맨스필드(Stephen Mansfield)는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그의 ‘신앙’의 덕으로 돌리는 책을 내더니, 오바마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자 또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그의 ‘신앙’으로 환원하는 책을 썼다. 『조지 W. 부시의 믿음』(순전한나드, 2005); 『오바마: 새로운 미래 아이콘』(청림출판, 2008) 참조.

40) 박성래, 『레오 스트라우스』 참조.

41) 후쿠야마, 『기रो에 선 미국』 참조.

42) 리프킨, 『유러피언 드림』, 403~404쪽.

가장 추상적으로 지구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국 등장의 혹은 미국 제국화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과 아리기(Giovanni Arrighi)의 세계체제론이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네그리와 하트의 지구제국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지배에서 벗어나는 다중의 자율성과 그로 인한 자본의 축적 위기에서 비롯한, 새로운 주권합성을 통한 자본의 지구적 대응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시적인 제국주의적 역행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제국의 출현을 지구화한 다중에 대한 자본의 대응으로 여기기 때문에 네그리와 하트는 ‘반세계화 투쟁’과 같은, 지구화에 반대하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국지적인 시도를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한다. 그들에게 민족주의는 일종의 ‘역사적 반동’인 셈이다.⁴³⁾ 마찬가지로 이유로 네그리와 하트는 9.11을 계기로, 그리고 2003년의 이라크 침공으로 전면화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행동을 ‘제국으로부터의 이탈’, 심지어 ‘제국에 대한 쿠데타’라고까지 평가한다.⁴⁴⁾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 오바마의 집권은 ‘지구제국’의 행진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세계체제론자들인 월러스틴과 아리기 역시 부시 정부 이후의 변화를 과거의 ‘미국 헤게모니’ 시기와 부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들은 미국의 이른바 ‘제국화’ 현상을 장기적인 자본주의의 주기에서 헤게모니 쇠퇴기에 실질적 능력이 없는 헤게모니 국가 미국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몰락을 오히려 가속화할 수도 있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⁴⁵⁾ 아리기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의 금융적 팽창기는 새로운 체제의 탄생을 준비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연쇄적인 경제 ‘기적’이 일어났고, 이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적 파워와 경제적 파워가 분기되었다. 토드가 ‘경제적 종속관계의 역전’이라고 표현한 현상인 것이다. 아리기는 향후의 세계체제 전개에 대한 세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동아시아로부터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을 뿔아냄으로써 사상 최초로 전 지구적인 제국이 되는 것이다.⁴⁶⁾ 둘째는 세계시장사회의 형성으로서 동아시아가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와 문명의 상호존중에 의해 지탱되는 세계체제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중심질서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셋째는 세계가 지구적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⁴⁷⁾

헤게모니 쇠퇴의 징조로 여겨지는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미국이 2040년 안에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할 정도로 큰데, 그것은

43)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손호철, 「반세계화 투쟁은 역사적 반동인가」,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이매진, 2006) 참조.

44) 백승욱, 「‘제국’과 미국 헤게모니, 전지구화: 세계체제 분석을 통한 『제국』 읽기」, 『경제와사회』 제60호(2003년 겨울) 참조.

45) 백승욱, 「세계정치와 제국: 미국헤게모니의 쇠퇴와 제국」, 『세계정치』 제26집 1호(2005년) 참조.

46) 토드는 미국이 이미 독일과 일본에 엄청난 규모의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사실상 조공을 수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토드, 『제국의 몰락』 참조.

47) 조반니 아리기, 『장기 20세기: 화폐, 권력,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원』, 백승욱 옮김, 그린비 2009.

연방지출을 60% 감축하거나, 연방조세를 현재의 2배로 인상하거나, 실질 GDP를 75년간 매년 두 자리 수 백분율로 증가시키는 것이다.⁴⁸⁾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미국의 헤게모니 쇠퇴는 군사력만으로는 역전시키기 어려운 현실일 것이다.

지구화한 자본주의적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이해하거나 역사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긴 생애로 이해하거나 간에 위에서 살펴본 거시적 입장들은 공통적으로 부시 정부에서 나타난 미국의 제국적 혹은 제국주의적 경향을 어떤 큰 흐름 안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중요한 것은 그 큰 흐름이고, 그 흐름이 이 시대의 근본적 조건이 된다.

추상화 수준을 조금 낮추면 제국 현상을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 즉 주권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의 문제 또는 패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론들이 있다. 국제정치학의 패권안정론과 세력균형론의 이른바 제국 버전인데, 패권안정론의 제국 버전은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또한 미국이 그러한 국제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행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패권의 부재로 인해 국제사회가 불안정해져서 무력분쟁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는 나쁜 상태보다는 ‘덜 나쁜’ 일이다. 다만 이 ‘불쾌한’ 역할을 감당할 국가가 현재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을 능가하는 다른 지구적 패권국가 등장하지 않는 한 미국에 요구되는 이러한 지위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다만 미국이,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기꺼이 그러한 부담을 지려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제국은 근본적으로 패권이 부재하는 경우에 불안정해지는 국제사회의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뜻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구 전체를 포괄할 만한 패권의 부재가 생겨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소련 제국의 몰락이다. 냉전 시대의 양대 제국 가운데 하나였던 소련이 몰락함으로써 지구적으로 커다란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국제사회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한 제국인 미국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 패권안정론의 제국 버전이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안정이 하나의 강력한 패권국가에 의해서보다는 적절한 세력의 균형을 통해서 더 잘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 전통적인 현실주의자들은 오늘날 미국의 ‘지나친’ 제국화 또는 그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안정이 미국을 견제하여 힘의 균형을 맞춰줄 만한 강국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토드가 분석한 바와 같이 오늘날 미국이 보이는 제국적 행태는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 제국과의 힘의 균형 속에서 미국이 제1세계 내에서 누렸던 자신의 제국적 지위를 그리워하는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이다. 문제의 원인이 힘의 균형을 맞춰줄 다른 강대국의 부재일 때, 해결책은 미국과 경쟁할 만한 상대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연합을 미래에 미국과 경쟁하여 지구적으로 세력균

48) 정건화, 「미국의 경제위기와 오바마의 경제정책」, 『동향과전망』 76호(2009년 여름), 94~96쪽.

형을 맞춰줄 후보자로 손꼽는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에서 사람들은 더욱 ‘악한’ 미 제국에 맞설 ‘선한’ 유럽 제국의 가능성을 본다. 그러나 유럽의 군사적 무능함은 자신의 뒷마당에서 벌어진 군사적 분쟁도 미국 없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게다가 미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만한 군사비 지출 의지도 유럽인들에게는 없다. 유럽은 여전히 미 제국을 ‘초대하고’ 있다.⁴⁹⁾ 또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어서 세계 제2위와 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서도 아직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에 오르지 못한 일본과 독일의 지위를 정상화하여 미국에 대한 균형추로 삼으려고도 한다. 또는 여전히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

4. ‘제국’ 시대의 평화는?

‘제국’ 시대의 공통된 특징은 군사적 불안정이다. 아마도 그것은 이행기/과도기의 불안정성일 것이다. 다만 이 불안정의 원인을 사람들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패권안정론의 제국버전은 탈냉전 시대에 근대화 실패한 ‘불량’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군사적 불안정 요소라고 여긴다. 네트워크 형태의 국제테러 조직에 조직원을 공급하는 것도 보급창고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근대화 실패한, 폭력을 독점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국가들이다. 이곳에서 ‘폭력의 사사화’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데 실패한 이 지역에서 전쟁은 최고의 비즈니스이다. 아직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이 지역은 여전히 높은 영웅적 희생태세를 보유하고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이러한 영웅성을 한껏 증폭시킨다. 그리고 근대화한 세계의 중심부에서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한다. 9.11 이후 미국은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더 이상 일정한 영토 내에서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근대국가가 아니라 그러한 폭력의 독점에 실패한 국가들에서 우후죽순 솟아나고 있는 다양한 동기를 지닌, 그러나 공통적으로 미국에 적대적인, 비국가적 무장집단임을 깨닫고서 자신 역시 근대국가적 틀에서 벗어나 ‘예방적’이고, 심지어 ‘선제적’인 방식으로 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제국은 근대적 주권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사사화한 폭력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그 반면에 세력균형론의 제국버전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근대화 실패한 이른바 ‘불량’ 국가들의 존재가 오히려 오래된 제국적 수탈의 결과이며 또한 오늘날 미국의 제국적 확장을 위한 알리바이로서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뒤늦게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환기의 혼란과 폭력’은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안정될 테지만, 그 과도기적 현상의 의미를 ‘테러리즘의 보편화’로까지 격상시켜 제국화의 빌미로 삼는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 시대의 군사적 불안정을 이해하건 간에 공통적인 것은 탈영웅적인 사회들의 제국(물질적 부에 근거한 실재로서의 광역국가)과 여전히 영웅적인, 근대화 실패한 사회들(종교적 원리주의에 근거한 부재로서의 광역국가) 간의 부정적 상호의존

49) Münkler, *Empires* 참조.

성이다. 이 속에서 어느 한 쪽의 발달은 다른 한 쪽의 발달을 부른다. 그 결과 오늘날 군사적 분쟁 역시 무기기술적인 차원에서 열등한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영웅성과 전략적 창의성이 무기기술적인 차원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그러나 탈영웅적인 제국적 행위자와 맞서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네그리와 하트는 다분히 홉스적인 의미에서 ‘지구적 내전의 상태’ 또는 ‘항구적 전쟁의 상태’라고 부른다. 홉스의 ‘자연상태=전쟁상태’가 리바이어던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이듯이, ‘항구적 전쟁의 상태’ 역시 지구적인 차원의 리바이어던, 곧 ‘제국’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홉스가 실제로 영국내전을 겪으면서 폭력을 독점한 국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지구적 내전’을 겪으면서 지구적으로 폭력을 독점하는 제국의 필요성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가라타니 고진은 이 지점에서 칸트를 불러들인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전쟁이, 헤겔의 ‘이성의 간지’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일종의 ‘자연의 간지’가 되어 우리에게 협력적인 세계의 필요성, 곧 세계공화국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다.

5. ‘제국’ 시대의 지식체계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사회의 구조적 조건과 지구적 차원의 변화가 일정한 의미에서 (실재로서의 또는 부재로서의) ‘제국’을 또는 그것의 쇠퇴를 요구한다면, 미국이 실제로 제국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만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제국에 관한 논의와 제국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정치적, 학문적 삶에 관한 논의는 필요할 것이며 또한 계속될 것이다. 이 글은 다만 앞으로의 연구와 논의를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오늘날의 제국의 모습을 짚막하게 정리해 보았다.

오늘날의 시대적 변화를 ‘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살펴보는 작업은 ‘지식’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과거의 우리의 지식과 사상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제국’의 지식이었다. 그리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제국들 간의 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우리의 ‘제국적’ 지식은 ‘국민국가적’ 지식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국가적 지식체계는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새로운 국제사회의 ‘패권적’ 지식체계에 동화되었고, 오늘날 ‘지구적·보편적’ 지식체계 속으로 통합되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제국’에 관한 정치·경제·군사적 논의는 이렇게 ‘지식’에 관한 논의와 연결된다.

‘제국’이라는 보편적 질서의 등장과 함께 ‘보편적’ 지식의 체계를 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는 ‘보편적’ 지식체계의 등장을 촉구하는 학문적 움직임이 ‘제국적 질서’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보편주의를 가장한 기존의 ‘미국 패권적’ 지식체계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유럽적’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유럽의 다자주의를 대립시키고, 미국의 군사주의와 유럽의 경제적 협력주의를 대립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지젝처럼 그러한 대안적 주장 속의 ‘유럽’이 보수적 함의를 가진다고 비판하면서 ‘좌파적 유럽’을 복원하고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월러스틴처럼, 유럽적

이거나 미국적이거나 간에, 기존의 패권적 지식체계가 진정 보편적인 지식체계가 아니라 단지 ‘서구중심적’ 보편주의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면서 ‘보편적’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이 시대의 정치적 질서가, 그리고 지식의 질서가, 지배적 ‘제국’의 질서가 아닌, 비지배적 ‘세계공화국’의 질서가 될 수 있을까? 비지배적 세계공화국이 등장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 안에서 비지배적 보편적 지식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새로운 세기의 이른바 ‘보편적’인 지식은 네그리와 하트적 의미의 ‘노동지배적 제국의’ 보편적 지식이 되거나, ‘서구적이고 미국패권적인’ 보편적 지식이 되거나, ‘서구적이고 유럽대안패권적인’ 보편적 지식이 되거나, 또는 ‘서구적이고 좌파유럽패권적’ 보편적 지식이 되거나, 아니면 ‘아시아적 중국대항패권적’ 보편적 지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다시 고대인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과연 우리는 고대의 그리스인들처럼 국민국가적 지식체계에 무기력하게 매달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 제국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관념적 세계시민주의를 표방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특히 제국적 질서의 주변부에 속한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2007. 『세계공화국으로』. 도서출판 b.
-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2009.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 b.
- 공진성. 2007. 「탈영웅적 사회와 평화의 전망」.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집.
- 기이치, 후지와라. 2002. 『민주주의 제국』. 에머지.
- 김명섭. 2002. 「미국 안에서 없어지는 세계」. 『문학과경계』. 2002년 봄호(통권4호).
- 김명섭. 2005. 「국제와 제국: 국제질서의 변동과 제국담론의 발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1호.
- 김민웅. 2004. 「미국의 지구 제국 건설 전략과 평화 운동의 대응」. 『환경과생명』. 통권39호.
- 김영호. 2005. 「21세기 미국 제국의 등장과 국제정치적 영향」.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1호.
- 네그리, 안토니오 & 하트, 마이클. 2001. 윤수중 역. 『제국』. 이학사.
- 리프킨, 제러미. 이원기 역. 2005. 『유러피언 드림』. 민음사.
- 맨스필드, 스티븐. 2005. 『조지 W. 부시의 믿음』. 순전한나드.
- 맨드필드, 스트븐. 2008. 『오바마: 새로운 미래 아이콘』. 청림출판.
- 박상진. 2003. 「제국의 내파, 그 징후와 가능성」. 『문학과경계』. 겨울/통권11호.
- 박성래. 2005. 『부활하는 네오콘의 대부 레오 스트라우스』. 김영사.
- 박지향. 2005. 「왜 지금 제국인가」. 『세계정치』. 제26집 1호.
- 배영자. 2006. 「정보혁명과 미국제국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관점」. 『국제·지역연구』. 가을/15권 3호.
- 백승욱. 2003. 「‘제국’과 미국 헤게모니, 전지구화: 세계체계 분석을 통한 『제국』 읽기」. 『경제와사회』. 겨울/통권 제60호.
- 백승욱. 2005. 「세계정치와 제국: 미국헤게모니의 쇠퇴와 제국」. 『세계정치』. 제26집 1호.
- 손호철. 2006. 「반세계화 투쟁은 역사적 반동인가」.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이매진.
- 아리기, 조반니. 백승욱 역. 2009. 『장기 20세기: 화폐, 권력,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원』. 그린비.
- 안병진. 2005.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 제국론에서의 미국의 위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세계정치』. 제26집 1호.
- 윤수중. 2001.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제국』 -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 『문학과사회』. 여름/통권 제54호.
- 이구표. 2002. 「서평-“대중이 제국을 낳았다”: 전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대중 정치학」. 『진보평론』. 봄/제11호.
- 이 근. 2006. 「제국으로서의 미국과 한미 FTA, 전략적 유연성」. 『역사비평』. 여름/통권 75호.
- 이삼성. 2003. 「미국을 불량국가로 가진 세계의 불행과 희망」. 『창작과비평』. 여름/통권

120호.

- 이삼성. 2006. 「미국 외교사학과 ‘제국’ 담론의 전복: 신보수주의와 존 L. 개디스의 본질주의 외교사학」. 『국제정치논총』. 제46집 4호.
- 정건화. 2009. 「미국의 경제위기와 오바마의 경제정책」. 『동향과전망』. 여름/76호.
- 왈쯔, 마이클. 송재우 역. 2004. 『관용에 대하여』. 미토.
- 월린, 셸던. 강정인 외 역. 2007. 『정치와 비전 1』. 후마니타스.
- 조정환. 2005. 『제국기계 비판』. 갈무리.
- 추아, 에이미. 이순희 역. 2008. 『제국의 미래』. 비아북.
- 캘리니코스, 알렉스 외. 김정한 외 역. 2007. 『제국이라는 유령: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 비판』. 이매진.
- 토드, 임마누엘. 주경철 역. 2003. 『제국의 몰락: 미국 체제의 해체와 세계의 재편』. 까치.
- 하우, 스티븐. 강유원·한동희 역. 2007. 『제국』. 뿌리와이파리.
- 호슬리, 리처드. 김준우 역. 2004. 『예수와 제국』. 한국기독교연구소.
- 후쿠야마, 프랜시스. 유강은 역. 2006. 『기रो에 선 미국』. 랜덤하우스.
- Ferguson, Nial. 2004. *Colossus: The Price of America's Empire*. New York: Penguin.
- Ignatieff, Michael. 2003. "The Burden". *New York Times Magazine*. 1월 15일, 22쪽.
- Münkler, Herfried. 2005. *Imperien: Die Logik der Weltherrschaft – vom Alten Rom bis zu den Vereinigten Staaten*. Rowohlt·Berlin. (Translated by Patrick Camiller. 2007. *Empires: The Logic of World Domination from Ancient Rome to the United States*. Polity.)
- Walzer, Michael. 2003. "Is There an American Empire?" *Dissent*. Fall.
- Walzer, Michael. 2004. *Arguing about War*. Yale University Press.
- Wolin, Sheldon S. 2004. *Politics and Vision: Continuity and Innovatio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Expanded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유엔으로: 양차 결프전쟁의 논의를 중심으로

오영달(경희대학교)

I. 서론

오늘날 인류세계는 국경을 넘어 상호의존현상이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과 기타 위협에 의해 야기되는 인류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류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국제적 전쟁 또는 국내적 갈등을 경험해왔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각각 등장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은 이러한 인류 노력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오늘날 유엔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의 중심적 행위자 역할을 해온 국가가 국제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견해도 강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인류세계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가 중심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국가들이 모여서 형성한 국제기구가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유엔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나타나는 오랫동안의 혼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미 리처드 비셀(Richard E. Bissel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엔이 그 회원국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전체, 즉, 인류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¹⁾ 비셀은 이미 1980년대 초에 유엔이 인권 분야에 있어서처럼 점점 더 개인들에게 직접 다가감으로써 범세계적 수준의 근본적 권위를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었다.²⁾

세계의 강대국들 중 대표적인 한 사례인 미국은 실제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의 영국을 대체하여 세계정치를 주도해오고 있어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유지해오고 있었다.³⁾ 이러한 양상은 1989년 동서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공산 진영

1) Richard E. Bissell, "The United States in the UN: Past and Present – US Participation in the UN System," in Toby Trister Gati, ed., *The US, the UN, and the Management of Global Chang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3), p. 95.

2) Ibid., p. 96.

3) Henry R. Nau,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Power, Institutions, and Ideas* (Washington, D.C.: CQ Press, 2007), pp. 194–195.

이 무너지고 또 이어서 발생한 제1차 걸프전쟁을 치루면서 더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오늘날까지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세계의 여러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의 세계에서 보여준 역할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점점 더 상호의존화 되어가는 세계에서 빈번히 일방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는 점점 더 불안하고 혼란스런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오늘날 상호의존이 심화되어가는 인류세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아니라 국제연합, 즉 유엔이 중심적인 행위자가 국제사회가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최근까지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 팩스 아메리카나로부터 팩스 유엔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엔에서 다루어지는 쟁점들을 크게 갈등과 협력이라는 두 범주로 나눌 때⁴⁾ 이 논문에서는 갈등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양차에 걸친 페르시아 걸프 전쟁에 있어서 유엔과 최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상호작용을 고찰한다. 미국은 1991년과 2003년 양차에 걸쳐서 페르시아 만에서 대규모 전쟁을 주도하였다. 1991년에 있었던 제1차 걸프전쟁은 유엔의 승인 하에 미국과 다국적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기 위해 수행된 전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당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수차례에 걸친 결의를 통해서 그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여러 유엔 회원국들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목적도 신속히 달성할 수 있었다. 이후 세계사회에 있어서 유엔을 통한 강대국들 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고조되었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군림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조직에 의하여 테러공격을 당한 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어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미국은 그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수행한 이러한 전쟁들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고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 정부를 종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있어서 유혈적 갈등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그만큼 세계사회는 더욱 불안한 곳이 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미국의 제2차 이라크 전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감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미국은 제2차 이라크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취약했었으며, 나아가 전쟁 후 밝혀진 바와 같이 미국이 원래 중용한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이 유엔과 상호작용하면서 주도했던 제1차, 제2차 걸프전쟁의 시작과 결과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시대정신과 관련하여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류사회는 그동안 해온 것처럼 어떤 강대국들의 주도하에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종합적 국제기구로서 유엔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

4) Bissell, op. cit., p. 98.

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제1, 2차 걸프전쟁의 고찰을 통하여 오늘날 인류세계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라 팍스 유엔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오늘날 세계사회의 질서와 평화는 어느 한 강대국의 힘 아래서가 아니라 유엔의 제도들을 통해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하에서 이 논문은 본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유엔이 세계평화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일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제1, 2차 걸프전쟁에 있어서 미국과 유엔의 역할과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논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이러한 논의가 오늘날 인류가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면서 끝맺는다.

II. 유엔과 세계평화

인류사회는 오랫동안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 중 힘이 강한 국가들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찍이 기원 전후에 로마제국이 존재하여 그 힘에 의해 유럽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했었고 이를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하여 흔히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고 하였다. 하지만 1648년 30년 전쟁을 종결하는 베스트팔렌조약이 맺어지면서 유럽이 근대국가들 중심의 국제질서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영국은 18, 19세기를 통하여 세계 영토의 4분의 1,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함으로써⁵⁾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 시대를 연출하기도 하였다.⁶⁾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가 두 개의 이데올로기 진영으로 나뉘고 자유주의 진영은 미국의 지도하에 결속하게 되었고 공산주의 진영은 소련의 지도하에 단합을 유지했었다. 이러한 현상을 각각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소비에트카야 등으로 불리었다. 1989년 동서독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나누었던 상징적 존재로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공산주의 진영이 몰락하고 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됨으로써 팍스 아메리카나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주도하에 치루어졌던 제1차 걸프전쟁의 성공적 종결은 이후 세계사회에서 미국을 확고한 초강대국의 지위로 올려 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은 최근, 특히 제2차 걸프전쟁을 감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누려온 초강대국 지위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은 그 경제력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그 무력에 있어서도 여러 국가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는 최근의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제 더 이상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아니며 오늘날 인류는 탈미국의 세계(the post-American world)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⁷⁾ 이러한 상황에서 자카리아는 아직 팍스 아메리카나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대안을 세계정치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에서 찾고자 한다.

5)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지음, 『미리 가본 2018년 유엔 미래보고서』 (서울: 교보문고, 2009), p. 90.

6) Nau, *op. cit.*, pp.

7) Fareed Zakaria,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Norton, 2008) 참조.

특히 조영식이 조어하고 사용해온 팩스 유엔(Pax UN)이라는 개념을 그 대안으로서 논의하고자 한다. 조영식은 오래 전부터 팩스 로마나(Pax Romana) 같은 일국 지배하의 세계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사상에 기초하는 만국의 평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평화가 이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⁸⁾ 조영식은 일찍이 1984년 7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제7차 세계대학총장회의에서 “팩스 유엔(Pax UN)을 통한 세계평화”라는 기조연설 속에서 세계평화정착방안을 발표함으로써 ‘팩스 유엔’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후 유엔에서는 Pax UN에 관한 연구와 함께 유엔 강화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유엔의 주도 하에 1991년 제1차 걸프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유럽의 30여명 국가지도자들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회의를 갖고 발표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에서는 이 Pax UN만이 세계평화의 유일한 방법임을 천명한 적이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상회담에서도 Pax UN의 시대를 논의하였다.⁹⁾

물론 유엔의 정체성, 즉 유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한다. 첫째, 유엔은 그 자체의 독자적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단순한 제도적 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이러한 견해는 주로 국제관계에 대하여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유엔은 강대국들이 그들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과 무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유엔은 강대국들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평화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¹¹⁾ 둘째, 유엔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자로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유엔이 단순히 회원국들이나 강대국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때때로 회원국들, 특히 강대국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도 취할 수 있다고 본다.¹²⁾ 사실 유엔은 이 두 견해가 말하는 양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엔은 실패했다”라든가 “유엔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때 이러한 사례들은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머스 와이스(Thomas G. Weiss) 등이 지적하는 것처럼 유엔은 근본적으로 정부간 기구로서 그 중요한 결정은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들에 의하여 내려진다고 할 수 있다.¹³⁾ 비록 유엔 현장의 전문은 그 처음에 “우리들 세계의 인민들은 ...”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유엔 회원국은 국가들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은 또한 광대하고 복잡한 정책결정과 행정체계로서 어떤 결정들은 국가들의 지시를 받지 않는 개인들에 의

8) 조영식 편저, 『지구공동사회대헌장: 이념과 현실』 (서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5), pp. 25-38.

9) 이에 대해서는 조영식 편저, 상계서, p. 37, 각주 3 참조.

10) 서창록,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다산출판사, 2004), pp. 15-16.

11) Jock A. Finlayson and Mark W. Zacher, "The United Nations and Collective Security: Retrospect and Prospect," in Toby Trister Gati, ed., *The US, the UN, and the Management of Global Chang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3), p. 162.

12)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Thomas W. Weiss, David P. Forczyk, and Roger A. Coate, *The United Nations and Changing World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2001), pp. 12-15 참조.

13) *Ibid.*, p. 12.

하여 내려지기도 한다. 비정부기구들 또한 유엔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어떤 때는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할 때 사실 그 결정은 이사국들이 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유엔 직원은 정부간 기구들로부터 어떤 권위를 위임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유엔 헌장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어떤 독립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견해를 피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에서 유엔의 활동보고를 하기도 한다. 유엔 직원들의 권위는 초국가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지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행동해야 할지에 대하여 권유할 수는 있다.¹⁴⁾

유엔은 기본적으로 국가들이 그들의 외교정책을 실행하는 하나의 제도적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유엔 헌장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문서 중 범세계적 헌법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¹⁵⁾ 국가 행위자들이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유엔의 절차를 활용할 때 그들의 정책은 국제법에서 연원하는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또한 공동의 정치적 승인에 기초하는 정당성을 가지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유엔이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제1, 2차 걸프전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엔의 절차를 거친 외교정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유엔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두 가지, 즉 제도적 틀과 행위자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 즉, 강대국들을 포함하여 어떤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을 통하여 행동을 취한다고 할 때 이는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유엔의 직원들과 그 제도적 틀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은 후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유엔은 세계 공동체를 위한 기본 규범으로서 유엔 헌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무력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엔 헌장 제6장과 7장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얻은 교훈에 기초하여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세력균형이 아니라 정치, 법, 군사적인 측면에서 집단적 접근을 통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¹⁶⁾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그리고 침략행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 경제, 군사력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권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국제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총회와 달리 상설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신속하게 회의소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유엔은, 데브라 밀러(Debra L. Miller)가 지적하는 것처럼, 국제안보와 평화의 유지를 위해 국제안보의식의 고양, 행동기준의 설정, 그리고 이러한 기준의 실행 등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¹⁷⁾ 안보문제에 관한 국제협상은 다원적이고 분권화된 성격을 보

14) *Ibid.*, p. 13.

15) *Ibid.*

16) J. L. Briery, *The Law of Nations*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3), p. 397.

17) Debra L. Miller, "The UN System and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ontributions of the UN to International Security Regimes," in Toby Trister Gati, ed., *The US, the UN, and the Management of Global Change* (New York: New York

여주어서 유엔, 유엔 전문기구들, 지역 기구, 양자 외교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일어나며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¹⁸⁾ 따라서 유엔의 기능은 강대국들의 정치적 동학 속에서 어떤 때는 성공적으로 발휘되기도 하도 다른 때는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다음 장에서는 제1, 2차 걸프 전쟁을 통하여 유엔과 강대국의 상호작용이 성공적인 경우와 실패한 경우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III. 제1, 2차 걸프전쟁과 유엔 그리고 미국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제1차 걸프전쟁 그리고 그로부터 10여년 후에 다시 발생한 제2차 걸프 전쟁은 대규모 무력이 동원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편의상 나뉜 것일 뿐이다. 헬레나 마이어-냅(Helena Meyer-Knapp)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1차 걸프전쟁은 교전상태가 종결된 후에도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 등으로 인하여 종결됨이 없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⁹⁾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제2차 걸프 전쟁은 이러한 제1차 걸프전쟁이 완전히 종결됨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1차 전쟁의 연장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걸프전쟁은 1990년 이후 10여년 지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제 제2차 걸프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통과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인 1441호는 그 서두에서 이전의 많은 결의들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강대국들의 상호작용은 두 시기에 서로 다른 점이 뚜렷하여 그 의미를 고찰할 가치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 두 시기의 걸프전쟁에 있어서 유엔과 강대국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1. 제1차 걸프전쟁

사담 후세인이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 전격적으로 점령했을 때 과거와 비교하여 국제사회는 크게 변해 있었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중반 구소련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미국과 구소련 사이의 해빙무드는 크게 진전되어 있었다. 특히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그의 신사고외교정책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유지에 있어서 유엔의 기능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²⁰⁾ 따라서 1990년대 초는 냉전기간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대국들의 협조 속에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구, 아랍, 그리고 아시아와 비동맹 국가들 모두가 유엔의 행동 조치들을 외교, 군사, 그리고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지원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를 점령한 사담 후세인은 장기적 저항 태세를 취하였고 몇몇

University Press, 1983), pp. 135-140.

18) Ibid., p. 141.

19) Helena Meyer-Knapp, *Dangerous Peace-making* (Olympia, Washington: Peace-maker Press, 2003), pp. 145-158.

20) Mikhail S. 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Harper & Row, 1987) 참조.

서구 외교관들을 인질로 억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1990년 11월 필요한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유엔 회원국들이 이라크를 쿠웨이트로부터 축출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군이 조직되어²¹⁾ 1991년 1월 16일 공습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6주간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2월 24일부터는 지상전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이라크의 전투력은 궤멸되어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이라크의 통치 하에 있었던 쿠르드족과 시아파 회교도들은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사담 후세인의 보복 공격에 더 큰 희생을 입었을 뿐이다. 사담 후세인의 쿠르드족과 시아파 회교도에 대한 공격에 대해 유엔은 사담 후세인을 통제할 어떤 힘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라크의 북부에 안전지대(safe haven)를 설치하여 후에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족을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사담 후세인은 여전히 아직도 유지하고 있던 그 군사력을 사용하여 유엔 등의 제재에 저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결의 687호를 통해 사담 후세인을 감시 하에 둠으로서 강제적 국경분할, 무기 사찰, 보상권리에 대한 사법적 결정, 새로운 조약 의무 부과, 그리고 내적 군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 경제 제재조치를 실행하였다.²²⁾

제1차 걸프전쟁과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에 근거하여 단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간 무력분쟁에 대하여 전형적인 유엔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먼저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이웃의 토후국 쿠웨이트를 전격 점령하자 안전보장이사회는 14국의 찬성과 예멘의 투표 불참 상태에서 1990년 8월 2일 결의 660호를 채택하고 유엔 헌장 39조와 40조에 따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국제평화의 파괴(breach of international peace)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라크 군이 쿠웨이트로부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라크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그 결의 661호를 채택하여 헌장 제7장에 따라 경제적 제재조치를 발동하여 유엔 회원국들의 이라크와 점령된 쿠웨이트에 대한 무역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제재조치의 실행과 감독을 담당하는 소위 ‘제재위원회(Sanctions Committee)’ 또는 ‘661조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엄격히 의료목적의 물품이나 식료품 등과 같이 인도주의적 성격을 띤 것은 이러한 금수조치에서 제외되었다. 이어서 이라크가 쿠웨이트의 합병을 선언하자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 결의 662호를 채택하여 합병의 국제법적 무효를 선언하였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결의 664호를 채택하여 이라크 및 점령 쿠웨이트로부터 제3국인의 출국 승인을 요구하였으며 이어서 그 결의 665호를 채택하여 회원국들이 해군력을 사용하여 이라크로 오고가는 해운을 감독, 확인하도록 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666호 결의에 의해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금수품목에

21) 제1차 걸프전쟁에서 사용된 다국적군의 성격은 엄격히 말해 유엔 헌장 제7장에 의한 유엔군이라기보다는 제51조의 집단자위군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전쟁 시와 달리 이 전투에서 싸운 군사력은 유엔기가 아니라 각각 자국의 깃발 아래 전투를 수행하였다.

22) James Cockayne, "Testing the UN's Indispensability in Iraq," in The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USA, *Global Agenda: Issues Before the United Nations, 2009-2010* (New York: United Nations Association, USA, Inc., 2009), pp. 37-38.

서 제외된 식료품 등도 15세 이하의 아동들이나 임산부들에게만 유엔이나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667호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내 외국 공관 침입과 프랑스 외교관 등의 억류를 규탄하였다. 이어서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결의 670호를 채택하여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영공의 금수조치를 취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결의 674호, 677호를 각각 채택하여 외국인에 대한 가해에 대해 경고하고 쿠웨이트의 인구이동을 규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들에 대하여 이라크가 계속하여 수용하지 않자 다시 그 결의 678호를 채택하여 1991년 1월 15일을 기한으로 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이라크가 기존의 결의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사용할 것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에는 군사력의 사용이 포함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군이 조직되어 이라크군을 쿠웨이트로부터 축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실행하여 성공하였다. 이에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시 그 결의 686호를 채택하여 휴전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였으며 계속하여 1991년 4월 3일의 결의 687호를 채택하여 휴전에 관한 자세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이 결의에서 바로 대량살상무기의 선언과 파괴를 의무화하였는데 이것이 2003년도 미국에 의한 제2차 걸프전쟁의 발발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4월 5일 다시 결의 688호를 채택하여 이라크의 쿠르드족과 기타 시민들에 대한 억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4월 11일에 채택된 결의를 통해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이에 총 15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의 설치를 승인하였다. 나아가 이 전쟁동안 입은 외국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결의 692호를 통해 이라크의 석유수출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부터 보상기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유엔을 통한 이라크의 응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미국의 조지 W. H.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국제질서(new international order)를 선언하였다. 그것은 이제 냉전시대가 종식되었고 유엔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협력하여 국제문제를 다루어가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이러한 제재는 실행에 옮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제재 속에서 인도주의적 희생이 발생했는데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1996년 그 결의 986호를 채택하여 이라크 정부가 64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판매기금을 가지고 식량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매 및 배분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이 결의의 실행으로 2002년 5세 이하 이라크인들의 영양실조는 1996년에 비하여 그 반으로 줄어들었고 만성적 영양결핍도 약 56% 감소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사망률을 낮추었으며 소아마비도 박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나타난 부패현상을 보면서 미국은 유엔의 무능을 질타하기도 하였다.²³⁾ 미국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687호에 의해 구성되어 활동한 유엔의 사찰팀이 우유부단한 것으로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첫 번째 유엔 사찰단인 ‘유엔 특별위원단’은 1997년 말 해산되었다. 1999년에 다시 조직된 ‘유엔 감시, 확인, 사찰 위원단’이 이라크에서 활동하기도 전인 2001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프랑스 등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강은 양면 정책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와중에 2001년 9월 11일의 미국에

23) Ibid., p. 39.

대한 테러공격이 발생했다. 9.11 테러공격의 발생을 계기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하여 한층 더 잠재적으로 위험한 위협요인으로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테러범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곧 사담 후세인의 제거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2차 걸프 전쟁으로 나타났다.

2. 제2차 걸프전쟁

제2차 걸프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 노선은 한편으로 우드로 윌슨과 같은 자유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닉슨과 같은 현실주의를 보여주었다. 제2차 걸프전쟁이 일어나기 전, 즉 그의 첫 재임 시기에 그는 그의 초대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공허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이 위대한 국가의 건국과 지도의 원칙”이라고 강조하였었다. 하지만 이 부시 대통령과 그의 외교정책팀은 의도적으로 현실주의 성향으로 기울어졌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뚜렷이 윌슨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던 전임 클린턴 정부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이라는 그의 노선에 따라 다자적 제도의 증진이나 국제조약의 선양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²⁴⁾ 대신에 그는 국가 미사일 방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2001년 9월 11일 테러를 경험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독재국가들에 있어서 정권 교체를 통한 보다 안전한 세계를 외교정책 목표로 하였다. 2002년 9월 발표된 부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전 세계에 있어서 자유의 증진이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안보전략은 소위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하여 입안되었다. 신보수주의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김성한이 강조하듯이 ‘미국적 평화(Pax Americana)’, 즉 미국 중심의 단극적 세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며 이는 곧 미국의 원칙과 이익에 맞는 국제안보질서를 창출하는 것이었다.²⁵⁾ 신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미국적 평화는 국제법과 비강제적 수단에 의해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칸트적 영구평화’라기 보다는 군사적 수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홉스적 평화’라고 할 수 있다.²⁶⁾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뿌리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시카고대학교의 레오 시트라우스(Leo Strauss)로 알려져 있다. 그는 홉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서구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서구 국가들을 민주화시켜야 함을 역설하였었다.²⁷⁾ 레오 시트라우스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제자인 알란 블룸(Alan Bloom)과 알버트 볼스테터(Albert

24) James M. Goldgeier and Michael McFaul, *Power and Purpose: U.S. Policy toward Russia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p. 315.

25) 김성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신보수주의의 미래,” 『국제관계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15호) (2003년), p. 20.

26) 상계 논문.

27) 김성한,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전략,” 『신아세아』, 제10권, 제3호 (2003년 가을), pp. 35-36.

Wohlstetter)에게 전해졌고 볼스테터는 다시 그 제자로서 부시 행정부에서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명이었던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 국방부 부장관과 리처드 펄(Richard Perle)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도덕적 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적 가치의 세계화가 강조되었던 것이다.²⁸⁾ 김성한이 지적하듯이 이렇듯 기독교적 사명감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의 ‘도덕적 우월주의’는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경우처럼 이를 부정해온 전통적 보수주의의 ‘국제정치적 현실주의’와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맥락 하의 신보수주의의 국제정치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 2001년 가을의 탈레반 정권 전복이고 나아가 2003년 3월의 이라크 침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 형식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선제공격 전략에 기초하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 미국의 침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부시 행정부는 그의 시선을 이라크로 돌렸다. 그 행정부 내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싸움의 첫 단계는 유엔 내에서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10월 12일, 부시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유엔, 특히 안전보장이사회가 10년 전 이라크 전쟁을 종결하면서 채택한 10여개의 결의들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그는 유엔 회원국들이 미국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옆으로 물러나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하여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이미 구성되어 활동 중인 무기사찰단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 등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증거 부재”가 곧 대량살상무기의 “부재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제임스 코크레인은 당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이라크 침공을 하기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명백한 승인을 확보하자고 거듭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아마도 처음부터 유엔을 완전히 무시했을 지도 모른다고 지적하였다.²⁹⁾ 이로부터 2개월 후,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국 만장일치로 결의 1441호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사담 후세인이 그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낱알이 밝히고 그를 파괴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결의 1441호가 통과됨에 따라 사담 후세인은 유엔 무기사찰단(UNMOVIC)의 활동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선언하지 않았고 또 사찰의 결과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음에 대하여 부시 행정부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고 점차 사담 후세인이 결의 1441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다.³⁰⁾ 하지만, 미국과

28) Leo Strauss, *The City and Man* (Charlottesville, VA: Th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64), p. 2. 김성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신보수주의의 미래,” pp. 16-17에서 재인용.

29) Cockayne, op. cit., p. 40.

30) 이 사찰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미국은 이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즉,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441호의 내용도 그렇게 되어있는 것처럼 사담 후세인은 유엔 무기사찰단에 대하여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들에 대하여 완전하게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무기사찰단이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었다. 당시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정책실장이었던 리처드 하스(Richard Haas)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시작하기 직전에 서울의 한 모임에서 한 연설도 이를 예증하고 있는데 그는 이 사찰 동안에 사담 후세

달리 러시아와 프랑스는 이 사찰 결과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미국과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3년 2월, 부시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441호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 의 하나로 또 하나의 유엔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다. 즉, 부시와 그의 외교정책 팀은 무력 사용의 승인을 확보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03년 2월 5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그는 이 연설에서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봉쇄와 제재조치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미국의 입장에 설득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작크 시라크 대통령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의 소유를 믿고 있지 않았으며 의심스런 부분이 있더라도 시간을 갖고 평화적인 사찰을 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³¹⁾ 하지만 2월 24일 미국, 영국, 스페인은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단순히 유엔헌장의 제7장하에서 이라크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441호가 부여한 기회를 놓쳤음을 선언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다.³²⁾ 2003년 3월 5일,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사찰단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의 외무장관이었던 이고르 이바노프(Igor Ivanov)는 국제법과 유엔 결의의 존중이라는 원칙들에 기초하는 새로운 세계질서, 그리고 다극적 세계의 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미국의 일방적 행동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었다.³³⁾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자 부시 대통령은 유엔 결의의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대신 새로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정부는 그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하여 이전 결의들의 내용이 이미 미국의 무력 공격을 승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제2차 이라크 전쟁은 2003년 3월 19일 엄청난

인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존재를 실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력 공격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즉, 이 마지막 기회 동안에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에 대하여 낱말이 선언하고 파괴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것은 미국 행정부가 사찰단의 활동결과를 그리 중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존재에 대해 스스로 선언하는가 여부만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달리 말해 미국이 결의 1441호를 무기 사찰 그 자체보다 사담 후세인이 무기 사찰에 협력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세계로 하여금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쫓기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Nina Tannenwald, "The UN and Debates Ov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Richard M. Price and Mark W. Zacher, eds., *The United Nations and Global Security* (Basingstoke: Palgrave, 2004), p. 15.

31) 김남국, 「영국의 이라크전 참여의 동기」,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2007), pp. 265-266.

32) Michael J. Glennon, "Why the Security Council Failed," *Foreign Affairs*, Vol. 82, No. 3 (May/June 2003), p. 18.

33) *Ibid.*, p. 327.

화력을 동원한 공습으로 시작되었다. 이 전쟁이 발발한 첫째 날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과 규범에 위반하여 이라크에서 군사행동을 시작했다고 비난하였다.³⁴⁾ 러시아 외무장관 이바노프도 이라크가 국제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확증이 없으며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였다는 증거도 거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면 인도주의적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³⁵⁾ 2003년 4월 9일, 미국군은 바그다드에 입성하였고 사담 후세인과 그 바트당 지도부는 바그다드에서 도주하였다. 그리하여 부시 행정부의 작전은 성공한 듯 보였고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1일 전투기에서 낙하하면서 임무완수를 선언하였다.

그동안 무시당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3년 5월 22일 그 결의 1483호를 통과시켜서 미국과 영국을 이라크의 점령국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연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국제법에 의해 인정되는 한계를 넘어 이 두 국가가 이라크에 있어서 대폭적인 민주개혁을 수행하도록 권위를 부여하였다. 제2차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유엔은 그 회원국 중 한 국가가 회원국들 대다수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 침략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당시 유엔의 정체성과 권위의 상징적 인물인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침공이 있기 전날 ‘유엔의 매우 슬픈 날’이라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침공을 비난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2차 이라크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영국이 허용하는 제한적인 인도주의적 지원 외에는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하여 점점 더 별 의미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미국 점령군은 이라크 내에서 점증하는 저항에 부딪혔는데 바트당원들, 과격 이슬람단체들, 그리고 쫓겨난 이라크 군 장교들이 단합하여 점령군에 대항하였기 때문이다. 점령 연합군의 사상자는 크게 늘어났고 이라크 내의 서로 다른 종파 간 살육과 납치 등도 빈번히 일어났다. 점령군이 오랫동안 사담 후세인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도 아직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장악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엔 사무국은 조용히 이라크 국민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2003년 6월 당시 명망이 높던 서지오 비에이라 드 멜로(Sergio Vieira de Mello) 인권고등판무관으로 하여금 잠시 그 자리를 떠나 이라크에 가서 활동하게 하였다. 하지만 비에이라 멜로는 연합군에 의하여 흔히 무시되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2003년 8월 19일 유엔 본부에 대한 테러 공격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21명과 함께 사망하였다. 유엔 활동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이 있자마자 아난 사무총장은 유엔 요원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유엔에 대한 공격은 제2차 걸프전쟁 종결 후 이라크에 있어서 폭력의 상승을 의미하였다. 점령군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다.

2003년 10월 미국의 이라크 조사단(Iraq Survey Group)이 다시 5개월 동안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찾아 철저히 조사한 후 제출한 보고서는 1991년 이라크 전쟁과 이후의

34) “Statement by President Putin on Iraq at a Kremlin Meeting,” broadcast on RTR, March 20, 2003, transcript and translation provided by Federal News Service (fednews.com) cited in James M. Goldgeier and Michael McFaul, *Power and Purpose: U.S. Policy toward Russia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p. 328.

35) *Ibid.*, p. 328.

유엔 사찰과 제재로 인하여 이라크가 그 핵무기와 화학무기 개발계획을 재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로써 미국이 제2차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유엔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근거가 없었음을 보여주었다.³⁶⁾ 2003년 12월 사담 후세인의 체포도 이라크 내의 발호하는 폭력을 막지는 못하였고 점령군이 처해있는 문제의 심각성만을 부각시켰다. 2004년 4월 아부 그라이브 형무소에서 미군의 이라크인들에 대한 고문과 취조의 실상이 드러났을 때 점령군의 권위는 이라크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크게 손상을 입었다.

이제 미국은 지친 상태에서 이라크로부터 그 정치적 탈출을 위하여 유엔의 중재를 구하기 위해 유엔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난 사무총장은 라크다르 브라히미를 특사로 파견하여 점령군과 이라크 현지의 정치 및 종교 당국자들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엔은 2004년과 2005년 동안에 선거를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선거를 통해 미국은 이제까지 행사해온 통제와 주권을 이라크에 반환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2007년을 통하여 이러한 권력 이양이 진행되면서 유엔은 대체로 한쪽으로 비켜서서 난민 이동, 선거,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라크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하여 이라크 재건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승인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라크 당국이 직접 이러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2008년 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임기를 마치면서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는 미군이 2011년까지 이라크로부터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일정이 합의되었다. 금년 초 새로 들어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까지 이라크에서 미군의 전투임무를 종결하고 지원업무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아직도 이라크의 앞길은 불확실하다. 종파들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라크의 석유에서 나오는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긴장이 높으며 폭력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이라크의 젊은 세대들의 고용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미국 오바마 정부는 유엔을 통한 다자적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제1, 2차 걸프전쟁에 있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왜 팩스 아메리카나에서 팩스 유엔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오늘날 상호의존이 심화되어가는 세계정치에 있어서 한 강대국에 의한 세계질서의 통제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은 제1, 2차 걸프전쟁의 결과에 의해서도 증명됨을 지적하였다. 즉, 제1차 걸프전쟁은 처음부터 유엔 현장에 기초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 절차에 따라 다루어졌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그 소기의 목적, 쿠웨이트로부터 사담 후세인을 축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2차 걸프전쟁에서 미국은 다른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곧바로 안전보장이사회를 우회하여 영국과 함께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취약

36) Tannenwald, op. cit., p. 15.

하였다. 이것은 유엔의 역사에 있어서 불행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강대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편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³⁷⁾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방적인 행동의 결과 오늘날 세계는 평화롭기보다는 더욱 불안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 자신이 주도하여 설립한 유엔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높은 기대감을 갖고 또 찬사도 보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빈번히 그 실망감과 거부감을 표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셀이 지적하는 것처럼 결국 유엔에 대하여 보다 높은 기대감을 갖고 그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세계정치에 있어서 안보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인류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유엔의 제도적 틀 안에서 접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엔이야말로 아직까지 인류가 창조한 국제기구들 중에서 가장 범세계적인 비전을 담고 있는 최고의 장이기 때문이다.³⁹⁾ 사실 제1, 2차 걸프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유엔에 대하여 보여준 태도도 많은 경우 유엔의 제도적 틀 내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고 일시적으로 유엔을 회피할 때에도 결국 유엔으로 회귀하는 모습이었다. 1945년 유엔의 설립 당시부터 미국이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떠나 국제주의, 즉, 자유주의적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유엔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은 유엔 현장의 핵심적 이상이 바로 미국주의와 근본적으로 일맥상통했기 때문이었다.⁴⁰⁾ 도널드 푸찰라가 지적하듯이 자유, 인간의 존엄성, 법의 지배, 반 제국주의, 불가침, 평화적 변화 등과 같은 미국적 가치를 바탕으로 유엔은 탄생되었고, 이러한 가치들은 세계의 어디에서든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것이다.⁴¹⁾ 그리고 같은 논리적 맥락에서 제임스 스킬런(James W. Skillen)은 미국적 자유주의는 미국의 건국자들이 품고 있었던 이상이며, 국제연맹을 위한 우드로 윌슨의 비전 속에 담겨있고, 나아가 유엔의 설립과정에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유엔에 걸었던 희망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스킬런은 심지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2002년 국가안보전략의 정신도 기본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였다.⁴²⁾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유엔은 설립자들은 유엔이 강대국들의 집단적 지도력 하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이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복수의 강대국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거부권으로서 유엔은 강대국들의 일치된 합의

37) Ramesh Thakur, "Iraq, UN and Changing Bases of World Order," *Economic & Political Weekly*, Vol. 38, No. 23 (Jun 7-13, 2003), pp. 2261-2266.; James W. Skillen, *With Or Against the World?: American's Role Among the Nations*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5), p. 105.

38) Lawrence S. Finkelste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Proper Prudence – or A New Failure of Nerve?" in Sung-Hack Kang, ed., *The United Nations and Keeping Peace in Northeast Asia* (Seoul: The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1995), pp. 73-4.

39) Bissell, op. cit., p. 100.

40) Ibid., p. 77.; Donald J. Puchala, "US National Interests and the United Nations," in Toby Trister Gati, ed., *The US, the UN, and the Management of Global Chang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3), pp. 343.

41) Donald J. Puchala, "US National Interests and the United Nations," p. 361.

42) Skillen, op. cit., p. 97.

없이 행동할 수 없으며 또한 만장일치가 형성되지 않을 때 행동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다.⁴³⁾ 하지만 제2차 걸프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국은 강대국들 간의 이러한 세력관계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단극적인 초강대국으로 부상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이클 글레논(Michael J. Glennon)이 제2차 걸프전쟁 직후 미국이 취한 일방적 행동을 현실적인 상황으로 옹호했던 것처럼 당시 미국 정부의 지도부는 불확실한 정보 하에서도 힘의 정치를 신봉하는 인물들이 정책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이사국들의 견해를 무시했던 것이다.⁴⁴⁾

유엔은 물론 세계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한계 내에서만 그 권위의 행사가 가능하다.⁴⁵⁾ 미국은 조영식이 오래 전에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단순히 힘만 센 강대국(strong power)이 아니라 유엔 헌장 기본정신의 실천에 있어서 모범적인 위대한 국가(great power)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팩스 아메리카나와 팩스 유엔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지속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오늘날 유엔이 세계평화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유엔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수립되었고 당시 국가 간의 전쟁이 국제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주권국가의 내부 문제에 대한 불간섭이 평화의 중요한 기초였다. 하지만 당시 주권의 보호의도가 곧 오늘날 국내적으로 인권을 유린해도 묵인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⁴⁶⁾ 기존의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그 위상이 격상된 것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 당시의 강대국들로 구성되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오늘날 변화한 강대국들의 위상을 고려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과 표결방식 등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미국 등 월등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 국가 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유엔의 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43) Puchala, *op. cit.*, p. 78.

44) Glennon, *op. cit.*, p. 18.

45) *Ibid.*, p. 344.

46) Skillen, *op. cit.*, 143.

[참고문헌]

- 김남국, 「영국의 이라크전 참여의 동기」,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2007)
- 김성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신보수주의의 미래,” 『국제관계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15호) (2003년)
-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지음, 『미리 가본 2018년 유엔 미래보고서』 (서울: 교보문고, 2009)
- 서창록,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다산출판사, 2004)
- 조영식 편저, 『지구공동사회대전장: 이념과 현실』 (서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5)
- Bissell, Richard E., "The United States in the UN: Past and Present – US Participation in the UN System," in Toby Trister Gati, ed., *The US, the UN, and the Management of Global Chang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3.
- Brierly, J. L., *The Law of Nations*,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3.
- Cockayne, James, "Testing the UN's Indispensability in Iraq," *The Association of the USA, A Global Agenda: Issues Before the United Nations, 2009–2010*, Seoul: Kyung Hee University Press, 2009.
- Finkelstein, Lawrence 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Proper Prudence – or A New Failure of Nerve?" in Sung-Hack Kang, ed., *The United Nations and Keeping Peace in Northeast Asia*, Seoul: The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1995.
- Finlayson, Jock A. and Mark W. Zacher, "The United Nations and Collective Security: Retrospect and Prospect," in Toby Trister Gati, ed., *The US, the UN, and the Management of Global Chang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3.
- Glennon, Michael J., "Why the Security Council Failed," *Foreign Affairs*, Vol. 82, No. 3 (May/June 2003).
- Goldgeier, James M. and Michael McFaul, *Power and Purpose: U.S. Policy toward Russia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 Gorbachev, Mikhail S.,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Harper & Row, 1987.
- Meyer-Knapp, Helena, *Dangerous Peace-making*, Olympia, Washington: Peace-maker Press, 2003.
- Miller, Debra L., "The UN System and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ontributions of the UN to International Security Regimes," in Toby Trister Gati, ed., *The US, the UN, and the Management of Global Change*,

-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3.
- Nau, Henry R.,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Power, Institutions, and Ideas*, Washington, D.C.: CQ Press, 2007.
- Puchala, Donald J., "US National Interests and the United Nations," in Toby Trister Gati, ed., *The US, the UN, and the Management of Global Chang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3.
- Skillen, James W. *With Or Against the World?: American's Role Among the Nations*,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5.
- Thakur, Ramesh, "Iraq, UN and Changing Bases of World Order," *Economic & Political Weekly*, Vol. 38, No. 23 (Jun 7–13, 2003)
- Tannenwald, Nina, "The UN and Debates Ov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Richard M. Price and Mark W. Zacher, eds., *The United Nations and Global Security*, Basingstoke: Palgrave. 2004.
- Weiss, Thomas W., David P. Forcythe, and Roger A. Coate, *The United Nations and Changing World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2001.
- Zakaria, Fareed,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Norton, 2008.

제2부

동아시아의 경험과 성찰: 전쟁과 평화

근대기획으로서 동북아시아: ‘미완의 기획’인가?

최치원(고려대 평화연구소)

“Why, then, did the century end, not with a celebration of this unparalleled and marvellous progress, but in a mood of uneasiness?” – “Not only because it was without doubt the most murderous century of which we have record, both by the scale, frequency and length [...] but also by the unparalleled scale of human catastrophes it produced [...]”

– Eric Hobsbawm –

I. 들어가는 말

홉즈바움(Eric Hobsbawm)에게 20세기의 역사는 ‘극단의 시대’이다. 그러나 극단의 시대는 단지 20세기에 한정되어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통칭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18세기 중반 이후의 역사에도 적용되어 이해될 수 있다. 근대는 어떤 의미로는 20세기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파괴적인 인간의 잠재력이 축적되어지는 시기, 즉 전쟁과 전체주의의 등장 그리고 대량학살로 상징되는 인권유린과 같은 파멸적인 역사를 준비하는, 그리고 그 스스로가 그런 역사를 조금씩 써 가고 있던 시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베버(Max Weber)의 합리주의 테제에 입각해 근대를 ‘일방적인, 경제적 및 행정적인 합리성의 제반 척도들’로 이해되는 이성의 피상적인 힘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항상 불안과 항의의 갖가지 동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아도르노 상 수상식 연설(1980)에서 근대에 관해 하나의 중요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근대는 각종의 혼돈과 오류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미완의 기획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근대 기획의 의미를 유럽에 한정시켜 이해한다면 그것은 유럽의 근대 기획이 될 것이다. 유럽은 계몽의 시대부터 하나의 근대 기획을 전개시켜온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유럽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기획은 오늘날 유럽자신에만 한정되어 실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그것은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의 삶의 양식을 지배하고 토대가 되어있는 온갖 종류의 정치·사회·경제·교육 그리고 군사제도들과 이데올로기들 및 문화들의 형식으로 실현되어 있다. 유럽의 근대기획은 계몽이 실현하고자 한 것, 베버(Max Weber)의 용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세계의 탈신비화(Entzauberung der Welt)를 목적으로 만들어 지고 전

개되었다. 칸트는 1780년대 중반에 우리는 ‘계몽된 시대(aufgeklärte Zeitalter)’가 아니라 아직 ‘계몽의 시대(Zeitalter der Aufklärung)’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칸트의 생각이 전개되고 200년이 훨씬 넘어섰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계몽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혹은 이미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확답을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전세계에 아직 야만과 인간성에 대한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아직 ‘계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계몽된’ 세계는 ‘탈신비화된’ 세계이다. 그것은 또한 근대기획이 실현하고자했던 목표였다. 세계가 인간의 이성적 혹은 합리적 지식의 탐구와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세계에 대한 계몽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동안 세계는 우리의 인식 범위를 벗어나 있는, 감추어진 비밀스런 존재는 더 이상 아니었다. 세계의 모든 것이 (그것이 정치이든, 경제이든, 문화이든 아니면 자연이든 간에) 계몽이 무한한 신뢰를 보냈던 인간이성의 힘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고 조작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계몽된 세계에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계몽된 세계는 진보를 가져왔기 보다는 전쟁과 파괴 그리고 자유의 억압이라는 야만과 파멸의 모습으로 20세기 초중반에 나타난 적이 있었다.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와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는 이러한 야만과 파멸이 계몽자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계몽이 목적으로 했던 탈신비화의 ‘신화’를 비판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럽의 계몽에서 출발하는 근대기획은 일단 실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비록 유럽의 근대기획이 혼돈과 오류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을 갖지 못하는 실패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유럽은 평화로운 공동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로 다시 태어나 과거의 혼돈들과 오류들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 근대기획은 미완의 상태를 넘어 완성을 향해가고 있는 듯하다. 지난 세기에 유럽 세계를 수놓았던 전쟁과 파괴 그리고 자유의 억압이라는 야만과 파멸은 평화로운 공동체 속에서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근대기획으로 이해하고 이에 관해 탐구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혹은 서구로부터 (그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든 자의로 이루어졌든) 계몽으로 이해되는 학문과 사상 및 기술, 한마디로 근대 문명을 수용하는 순간부터 동북아시아는 계몽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이래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삶의 양식 속으로 유럽의 정치·사회·경제·교육·군사 제도들과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문화들이 흡수되어 계몽이 목적으로 했던 세계의 탈신비화를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동북아시아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하나의 근대기획의 유형이 되었다. 물론 세계의 탈신비화 혹은 계몽된 세계에 나타나는 파멸의 모습 역시 서구에만 국한되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동북아시아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에서도 계몽으로 이해되는 학문과 사상 그리고 문명은 삶의 어둡고 비밀스런 측면을 밝혀줌으로써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위한 조건으로 이용되었기 보다는 평화파괴적 현실논리의 전개와 정치공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침략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봉사했다. 그것들이 전적으로 계몽이 상정했

던 것, 즉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지식은 이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근대기획으로서 동북아시아가 갖는 각종의 혼돈들과 오류들을 극복하고 유럽의 경험을 상상하고 희망해 볼 수 있을까? 오늘날 탈근대가 언급되는 시대는 의미상실 그리고 의미부정을 통해 특징지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칸트적 의미의 자기사유 (Selbstdenken)와 자유가 의심되고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보다 자유로운 의식을 전개하고, 오히려 의미유발과 의미창조 그리고 의미부여의 필요성을 더욱 자각케 하는 인식론적 조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하나의 미완의 기획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거의 혼돈들과 오류에 대해 반성해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지식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또한 전체 근대의 맥락에서 과거의 사상과 지식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미래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적 사상과 지식체계를 전개시키는 것과도 연관된다.

II. 혼돈과 오류로서 동북아시아의 근대기획

서구에서 신의 계시를 대체한 이성 18세기의 계몽사상에서 꽃을 피웠다. 계몽사상은 전통과 관습의 영역에 안주해 있던 인간의 신념과 견해를 이성의 빛 속으로 끌어들여, 그것들의 참모습들을 폭로하였다. 이러한 비판의 정신으로부터 오늘날 아직 우리의 정치적 삶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이 탄생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성은 자연의 근본 진리가 더 이상 신이나 철학의 영역이 아닌 과학의 영역에서 탐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성의 요구에 따라 자연과학이 자연철학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인간 이성이 갖는 능력과 그것의 한계는 칸트의 ‘비판’을 통하여 개념화되었다. 칸트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사유 형식이 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도덕과 가치에 대한 인간의 사유 형식 역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프랑스 혁명을 철학적으로 체계화시키고 그것의 의미를 정당화시켰다. 헤겔은 인간의 의식 구조 내지는 관념체계가 칸트의 이론실천철학이 상정하듯 영원불변한 고정된 것은 아니고, 각각의 역사 단계에 있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진보해왔으며, 그것은 또한 세계의 진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입증했다. 헤겔에 있어서도 칸트와 마찬가지로 이성은 인간과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었다. 마르크스는 현실과의 관계에서 관념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의식의 사회성과 역사성에 주목하고, 의식의 토대로서 사회성과 역사성의 의미를 연구 하였다.

이성 우위에 대한 사고는 서구의 지적 전통을 특징짓는 요소이다. 이성의 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철학은 역사와 사회의 진보와 더불어 근대문명도 진보한다는 관념을 전개시켰다. 그러나 근대문명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철학 자체가 아니라 과학이었다. 17세기 이래의 자연과학의 진보에 의해 철학이 갖는 과학성은 끊임없이 불신되었

으며, 학문의 주류는 철학에서 과학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19세기 중엽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자연과학의 발전, 즉 물리학, 화학 그리고 특히 다윈의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생물학의 발전은 유럽의 기술진보의 지적 토대로서 문명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신앙의 대상과도 같은 인간 이성을 토대로 유럽은 근대문명을 만들어 내었다. 유럽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명으로 통칭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었던 중심지였다. 유럽은 지식·교육의 발전과 물질적 정신적 진보를 만들어 내었으며, 예술 그리고 과학의 탄생지였으며, 산업·정치혁명의 본고장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주의 법적 헌정구조를 전세계로 확산시켰고, 세계의 대부분을 종속시켰으며, 세계정치시스템을 성립시켰다. 그리고 유럽은 역사의 주도계급으로서 부르주아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유럽의 “세계 중심성에 대한 깊은 확신”은 20세기의 ‘원초적 재앙’(G. F. Kennan)으로 불리는 1차 세계대전 속에서 무너져 버렸다.

유럽이 발전시킨 근대문명은 총체적 붕괴를 경험하였지만, 그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고유의 힘을 갖는 것으로 숭배되었다. 그것은 마치 원시인들이 나무와 바위와 같은 특성의 대상물이 신비한 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따르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물신숭배(Fetischismus, fetishism)’의 성격을 갖는다. 당대의 동북아시아의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실현되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 바로 근대문명이라는 물신이었다. 동북아시아 각국이 근대문명에 매료되면서 그것을 물신화시킨 계기는 서구의 폭력적 위력에 대한 충격적 경험을 통해서였다. 이 경험은 동북아시아 각국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에게 서구로부터 문명과 그것의 토대였던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고, 특히 서구가 이러한 물질적 진보를 모방해서 서구와 동등한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동북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서구적인 것은 새로운 것을 의미했으며, 새로운 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힘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19세기 중·후반에 근대문명을 알기위해 여러 차례 사절단을 외국에 파견한 것은 근대문명에 대한 갈망의 정도를 집약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물신숭배로서 근대문명의 본질은 동북아시아에서는 웨이위엔(魏源)에 의해 1843년에서 1852년에 걸쳐 100권으로 편찬된 해국도지(海國圖志)의 주해편(籌海篇)에 나오는 한 구절, 즉 ‘이(夷)의 장기[뛰어난 군사기술]를 배워 이를 제압한다’라는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해국도지는 서구의 의회제도를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해국도지에 담긴 이러한 내용들은 19세기 후반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목가적인 것이었다. 19세기 후반에 동북아시아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관료들의 주된 관심은 이제 서구의 ‘오랑캐’를 제압하는 문제는 더 이상 아니었다. 그것은 (1870년대 이후 수용되기 시작한 사회진화론의 취지에도 상응하고 있지만) 이제 어느 누가 최대한도로 빠르게 근대화를 수행해서 지역의 강자가 되어 주변국을 정복하느냐의 현실적 문제로 바뀌었다. 해국도지는 당시에 청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일본에서 무사들을 포

함하여 부유한 농민들과 상인들에 의해서 널리 공감을 받고 읽혀짐으로써 개국 및 유신 사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량치차오(梁啓超)가 지적하듯, 이 책은 일본의 사쿠마 조우잔(平象山 혹은 佐久間象山),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으로 하여금 존황양이(尊皇攘夷)나 메이지 유신을 연출할 수 있게 한 이념적 토대였다.

동북아시아에서 근대문명을 알아야 한다는 지상명령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했다. 에도(江戸) 막부시절, 근대문명을 배우기 위해 자신을 미국으로 보내달라며 페리 제독의 함선에 올라탔다가 옥살이를 한 20대의 청년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경우가 이에 대한 적절한 예이다. 그의 교육입국의 논리는 조국의 수호 위해서라면 서양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육입국에 대한 이러한 논리는 당대의 중국이나 한국의 지식인들의 사유형태 속에서 (그 맥락과 시간적 차이에 따라 다른 형태로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공유되는 기본원리였다. 그러나 조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조선이나 중국을 정벌할 필요가 있다는 쇼인의 근대에 대한 생각은 교육입국에 대한 그 자신의 열망과 뒤섞여 뒤틀려져 나타나 있다.

근대문명에 대한 집단적 앎의 시작은 중체서용론에 입각해서 전개된 동북아시아 최초의 서구모방운동인 양무운동에서였다. 중국은 이미 17세기 초에 예수교 선교사들을 통해 서구의 과학과 기술에 접할 수 있었다. 중국이 이후에 서구의 과학과 기술에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은 신교도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중국은 전자의 경우에 서와 마찬가지로 서구의 문물이 갖는 의미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어떤 보편적인 동기나 필연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직 전쟁과 살육에 대한 경험만이 중국으로 하여금 서구로부터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 되었다. 양무운동의 주도적 인물들이었던 증궈펑(曾國藩), 리홍장(李鴻章), 좌종당(左宗棠) 등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은 중국에게 여러 차례 굴욕을 안겨 주었던 서구의 군사력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태평천국운동의 진압 때 보여준 무기의 위력으로 표현되는 근대문명의 실체였다. 이들 지식인들은 태평천국을 실제 진압한 살육의 경험을 토대로 서구모방운동을 전개시키는 핵심적 인물이 되었다. 좌종당은 푸젠(福建)지역에 중국 최초의 근대적 군사학교를 세워 양무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다. 양무운동은 서구의 근대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자강을 이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것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 군사력 증강이었다. 군사력 증강만이 국가를 강하게 한다는 근대의 논리는 린저쉬(林則徐)로부터 장즈동(張之洞)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지식인의 사유를 관통하는 이념이었지만,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관철된다.

‘부국강병’의 실현을 슬로건으로 전개된 메이지 유신은 동북아시아 근대기획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주도한 근대기획은 량치차오(梁啓超)나 유길준 그리고 김옥균 같은 지식인들의 정신적 요람이었으며, 또 개혁의 실패 후에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는 육체적 요람을 제공해 주었다. 서구의 수많은 번역서들과 일본의 지식인들의 사상이 이들의 정신세계에 양분을 제공해 주었다. 메이지 시대는 전통과 근대가 만나는 접점지역이었다. ‘푸쿠어창빙(富國強兵)’, ‘후코쿠 교헤이’ 혹은 ‘부국강병’으로 불리는, 기원전 중

국 진(秦)시대의 상앙(商鞅)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하는 상군서(商君書) 혹은 상자(商子)에 기원하는 개념이 메이지 유신 때 시대의 모토로 다시 태어났다. ‘부국강병’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의미를 강력한 군사력의 존재와 등치시키는 방식에서 찾아졌다. 경제적 논리와 군사적 논리를 결합시키고 이를 통해 강력한 국가를 형상화한다는 논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한국의 근대기획을 꿰뚫는 핵심논리가 되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현재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경제적 논리와 군사적 논리는 도덕적 논리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완이 되었을 때 더욱 강력하게 자신을 전개시킬 수가 있다. 도덕적 논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종결짓고 전쟁과 팽창의 길로 나가는 시점에 나온 1890년의 교육칙어(敎育勅語)에서 나타난다. 교육칙어는 일본이 선조들의 ‘도의국가실현’이라는 원대한 이상을 기초로 생겨난 나라이며, ‘충효’를 주축으로 전체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오늘날의 일본에 이르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힌 뒤, ‘자식은 부모에 효를 다하고, 형제자매는 서로 힘을 합쳐 도우며, 부부는 사이좋게 지내며, 친구는 서로를 믿으며, 그리고 자신의 언동을 신중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손을 뻗어 학문에 힘쓰며, 직업에 전념하고, 지식을 쌓으며, 인격을 닦고, 더욱 나아가, 사회공공을 위해서 공헌하며, 또 법률이나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명을 다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길은 요컨대 일본 국민이 걸어가야 할 길이며, ‘선조의 교훈’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칙어는 뮐러(Adam Müller)나 할러(Karl Ludwig) 그리고 슈탈(Julius Stahl)같은 19세기 초/중반의 독일 보수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전개된 유기체적인 “기독교 국가”론을 생각나게 한다. 교육칙어 속의 천황은 말하자면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일종의 출처(Herkunft)가 된다. “출처에 대한 호소”는 국민에게 “유사종교적 위상”을 부여해 줌으로써, 다시 말해 “전통적”인, 특히 “종교적인 동일성들(Identifikationen)”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것들이 각종의 “행위와 생각의 코디네이션의 토대”가 되도록 한다. 프로이센에서 “국가에 충성”이 기독교에 기반을 두어 근거 지워지고 있다면, 그와 유사한 병리적 학습과정이 일본에서는 천황제를 통해 나타났다.

메이지 유신은 ‘부국강병’과 같이 유신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던 또 다른 슬로건인 ‘문명개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서구의 근대문명을 받아들여 백성과 국가를 계몽한다는 이념이 갖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힘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대표로 하는 일본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미국이 일본에게 한 것처럼 일본도 조선에 신세대를 이룩해주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후쿠자와는 ‘문명’이라는 ‘을 만들어내고 일본을 ‘반개(半開)’의 나라로 규정하여 계몽의 필요성, 즉 문명개화의 당위성을 지적으로 정당화시켜 주었던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근대적인 계몽지식인이었다. 그에게 문명은 (서구의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식’과 ‘덕’에 있어서 진보를 화의했다. 그는 유교에 물질문명이라는 화의에서 ‘수리’에 대한 이해와 정신문명이라는 화의에서 ‘독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서구의 지식과 덕을 전면적으로 배워 나가 일본을 진보시켜야 한다는 이념을 전파시켰다. 이러한 진보의 이념은 일본이 (다른 주변 국가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서라도) 서구와 같은 ‘문명화된 국가’에 선착해야 한다는 ‘탈아입구(脫亞入歐)’의 논리로 표현되었다.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지식인으로서 후쿠자와의 계몽사상은 오늘날에도 지식인의 모델로서 간주될 만큼 참신한 생각을 담고 있다. 그 보다 한 세대 이후에 속하는 Kangyuei(康有爲)조차도 전통적 유교의 틀을 깨고 서구의 계몽적 지식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Kangyuei가 조국에 대해 제시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기존의 유교의 가르침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것을 재해석해서 만들어 낸 ‘대동’의 이념이 아니면 공자교(孔子教)를 중국의 국교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상이었다. 후쿠자와가 자신의 사유가 갖는 참신성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민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전쟁과 그 승리의 의미를 미화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정치공학을 위한 파편적 지식으로 만들었다면, Kangyuei는 진부함의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후쿠자와가 문명의 물신적 성격을 간파하지 못함으로써 지식과 문명에 대한 계몽 본연의 비판적 정신을 포기한 한계를 노정하였다면, Kangyuei는 계몽 본연의 비판적 정신의 영역에도 들어가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에 이르러 일본은 반개화된 상태를 넘어선 ‘개화된’ 민족으로 이해된다. 그는 그릇된 사회진화론의 해석에 입각해 일본과 같은 개화된 민족이 미개화된 민족을 지배하여 문명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가토 히로유키를 포함한 많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아시아를 ‘문명개화’시킬 수 있고, 시켜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서구가 서구 이외의 다른 지역을 침략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강자는 약자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 그것은 문명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그것은 사명의식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논리였다. 이러한 논리는 사실상 서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도 나타났던 근대 병리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후쿠자와의 사유세계를 지배했던 ‘문명개화’, ‘탈아’ 혹은 ‘탈아입구’의 논리는 서구적 지식과 도덕의 전격적 수용의 필요성 그리고 전통적 가치체계로서의 유교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전제는 이후에 1919년 5.4운동에서 절정에 이른 중국의 ‘신문화운동’ 전개의 이론적, 사상적 토대로도 나타나고 있다. 신문화운동의 주도적 지식인들이었던 천두슈(陳獨秀)와 후스(胡適) 같은 지식인들은 유교적 가르침과 제식, 윤리, 정치뿐만 아니라 낡은 예술과 종교 형식을 대체해야 할 새로운 이념으로서 서구적 지식과 도덕의 중심 개념인 ‘과학’과 ‘민주’에서 찾았다. 지식인들에게 그리고 량차치오(梁啓超)에게도 ‘과학’과 ‘민주’는 중국을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시켜 서구식 근대세계로 진입하게 하는 선행조건이었다. 루쉰(魯迅)은 이러한 생각을 문학으로 형상화시켰다.

중국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민주에 대한 대대적 요구운동을 시작하였는데, 187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880/81년에 절정에 이른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에 비교해 볼 때 아주 늦게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을 이해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은 1860년대에는 이항로와 기정진 등에 의해 그리고 1870년대에는 최익현 등에 의해 주도

된 위정척사운동의 강력한 전통에 의해 지배되어 왔는데, 이 전통은 유인석에 의해 주도된 1890년대의 항일운동에까지 근 3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이러한 전통의 최절정기를 이루는 것이 조선책략의 유포를 계기로 이루어진, 1881년의 이만손 등의 유생에 의해 주도된 개화반대운동, 즉 만인소와 이후에 전개된 척사상소운동이었다. 그것은 규모나 강도에 있어서는 아마도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에 비유될 수 있을 만큼 정국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양자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면 일본의 경우에 그것은 민주에 대한 대대적인 요구운동이었다면, 한국의 경우에 그것은 개화에 대한 반동운동이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1880년대에 김윤식에 의해 주창된 ‘동도서기론’이 등장하여 ‘문명개화’의 필요성이 제한적이나마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인들은 성리학으로 대변되는 전통 유교의 도덕과 제도에 집착하고 이와 동시에 그 이외의 모든 타 학문을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성리학적 지배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 지식인들은 아직 서구적 계몽의 빛을 받고 있지 않았다. 서재필, 윤치호, 남궁억, 장지연 등이 주축이 되어 전개된 1890년대의 독립협회운동 속에서 비로소 아주 미약하나마 민주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에 한국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민주에 대한 대대적인 요구운동이 전개되지 못했다.

동북아시아가 서구로부터 지식과 도덕을 받아들이는 시기에 민주에 대한 요구는 시대의 대세였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있는 근대의 중요한 유산들 중의 하나이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경우에는 패전을 통해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4·19민주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에 대한 시대의 요구를 형식적으로 충족시켰다. 중국의 경우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민주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원형이라 볼 수 있는 ‘자유민권운동’의 정신적 지주들 중의 한 지식인이었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는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진화론에 입각해 1886년에 출간된 자신의 책 ‘장래의 일본(将来の日本)’에서 민주주의 추세가 세계의 추세라고 시대정신을 읽었다. 그는 일본의 미래가 스펜서가 그렇게 이해했듯이 군사 혹은 병영사회로부터 ‘산업’사회, 따라서 당연히 ‘민주’사회에 이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도쿠토미 소호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개혁이라는 자신의 청년시절의 이상을 포기하고 청일전쟁 후에 제국주의 일본을 옹호하는 군국적 민족주의자의 길을 밝기 시작했다.

서구로부터의 폭력적 위력을 통한 충격적 경험이 동북아시아의 지식인들과 관료들로 하여금 근대문명을 물신화시키는 첫 계기가 되었다면 청일전쟁은 그 두 번째 계기가 된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지식인들과 관료들이 청일전쟁에서 표출된 근대문명의 위력적 실체를 경험하였다. 문명이라는 이념의 전쟁은 권력의 쟁탈을 위한 실제전쟁으로 현실화되었다. 청일전쟁은 오늘날 동북아에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하나의 대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사적 사례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동북아에서 평화의 정착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다. 근대문명이 갖는 물신적 성격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이 바로 이 전쟁을 필연적으로 가능케 했고 더 나아가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자

국의 발전 모델로 삼고 배우려 했던 역사적 아이러니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갑신정변은 이러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되풀이하여 보여 주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였다. 무엇보다 중국은 ‘부국강병’을 모토로 서구의 군사시스템의 도입을 본질로 하는 ‘무술변법(戊戌變法)’이라는 대대적 서구화를 시도했다.

전쟁에 대한 실제 경험은 후쿠자와와 도쿠토미 소호와 같은 비판적 지식인의 계몽 본연의 저항정신 혹은 칸트적 의미의 자기사유(Selbstdenken)를 빼앗을 만큼 위력적인 것이었다. 근대문명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다시 한 번 결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계기는 러일전쟁이었다. 물신화된 근대문명은 일본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팽창침략정책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원천이 되었다. ‘산업’은 이렇게 물신화된 근대문명의 토대였다. 물신성은 지식의 비판적 힘을 빼앗았다. 도쿠토미 소호의 믿음과는 반대로 일본은 산업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스스로도 일조한) 극단적 군사사회로 퇴보했다. 한국도 역시 최근래까지 일본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밟은 적이 있다. 산업과 전쟁 및 폭력 그리고 지식의 변증법은 오늘날 해결되어야 할 동북아시아의 근대기획의 핵심적 문제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서구적 지식과 산업에 기반한 체제변환의 문제, 즉 근대세계로 편입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당시의 한중일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각각의 흥망을 좌우하였던 최대의 중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체제 변환에 실패한 중국과 한국의 경우이든 성공한 일본의 경우이든 간에 결과는 혹독했다. 중국과 한국은 타국에 의해 반식민화 혹은 식민화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일본은 침략과 전쟁을 중심으로 전개된, 표면적으로 국가가 성공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일련의 평화과외적 논리의 실현을 통하여 (타이완 점령, 메이지 유신의 종결 시점에 이루어진 강제적인 한일우호조약(1876), 그리고 청일전쟁(1894/95) 승리, 의화단사건(1900) 진압에 서구열강과 공동개입, 영일동맹(1902), 최후의 러일전쟁(1904/5) 승리 등) 주변국이 꺾어야만 했던 식민화/반식민화라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하더라도, 이와 상응하는 대가를 또 다른 방식으로 치러야만 했다. 전쟁 승리의 관건은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동원하고, 조직하며, 그리고 필요한 곳에 투입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처럼 일본에 있어 전쟁이나 침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는 사회의 재조직화와 함께 마련되어졌다. 사회의 재조직화는 군사적 수준에서는 국민개병제의 성립을 통해 완성된다. 일본은 1873년에 이미 징병제에 기초를 둔 국민개병제를 통해 이를 완성시켰다. 국민개병제의 도입 후 다음 해에 일본은 이후에 계속 있을 침략전쟁의 신호를 알리는 타이완 점령에 나섰다. 전쟁과 사회의 재조직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회의 재조직화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의 ‘합리화’(Max Weber)라는 의미에서 국민을 국가라는 하나의 함선을 구성하는 각 단위들의 부품으로 만들고, 또한 어떤 환경에서든 그 함선을 효율적으로 움직여 나가기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군(皇軍)’은 이를 위한 최상의 부품이 되었다. 체제의 효율적 작동은 국민의 절대적 복종과 그러한 복종을 강요하고 내면화시키기 위한 제도들과 가치들에 의해 보장되었다. 이것이 중국이나 한국 보다 일찍이 체제전환에 성공한 일본이 지불해야 할 대가였다. 이 대가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일본인들의 행태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다고 본, 오늘날 아직 일본의 문제로 남아있는 반민주적인 심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문명개화’ 혹은 ‘탈아’의 연장 논리라고 볼 수 있는 ‘신문화운동’은 계몽적으로 독립된 개인의 모습을 이상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식 ‘탈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화운동은 후쿠자와가 초기 이상으로 상정했던 독립된 계몽적 개인보다 훨씬 급진적이고도 과격한 인간상을 그리고 있다. ‘신문화운동’의 ‘신(新)’은 (그리고 량치차오의 ‘신중국(新中國)’과 ‘신민(新民)’ 개념의 접두어 ‘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감성과 과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근대문명에 대한 수용이 더디고 늦어질수록 따라서 현실이 보다 암울하게 받아들여지면 질수록 근대문명의 수용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욕구는 그만큼 과감해지고 과격해진다. 중국의 지식인들이 동북아시아의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도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실천화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서구로부터 수입된 사회주의를 통해 하나의 국가체제를 현실화시킴으로써 표면적으로는 ‘탈아’에 성공한 듯이 보였다.

그런데 한국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주변국으로 전락한 중국이 ‘근대 이념들의 최종 귀결’(Friedrich Nietzsche)인, 따라서 인간 이성의 최고의 합리주의의 발현이자 휴머니즘의 최고의 산물인 사회주의를 수용하여 당시에 동북아시아 근대의 첨단에 서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 서구로부터 가장 선진적으로 근대문명을 수입해 ‘탈아’에 성공한 일본의 경우도 그 귀결은 파시즘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휴머니즘의 최고의 산물인 사회주의를 중국이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 하나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의미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 것이 1989년의 6.4 천안문 학살사건이었다. 그것은 중국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중국이 20세기 초기에 한 때 스스로에 의해 대대적으로 제기되었던 ‘민주’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 아직 전근대의 미몽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세기 초중반의 중국의 지식인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사회주의였다면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그것은 근대 전반의 문제였다. 물론 근대전반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문제는 중국지식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량치차오는 1차 세계대전 후 있는 유럽여행을 통해 물질적 이해관계와 욕망 그리고 경쟁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는 서구의 근대문명의 실상 목격하고 이를 동시대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근대의 문제는 ‘문명개화’와 ‘탈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일본 지식인들의 화두가 되었다. 메이지 시대의 지식인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는 1890년대 초에 근대화를 통해 상실되어가는 인간성의 문제 그리고 근대문명 속에서 지켜내야 할 ‘평화’의 가치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많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근대인’, ‘근대사상’ 그리고 ‘근대문명’을 비판하고 회의하고 경멸하였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1942년 여름에 소위 말하는 교토학과 철학자들과 일본의 낭만파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근대의 초극(近代の超克)’을 주제로

논쟁을 했다. 근대의 초극은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의 초극, 경제에서는 자본주의의 초극, 사상에서는 자유주의의 초극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것은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의 총동원 태세를 확립하는 일을 과제로 내세우며,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 협동체’, 대내적으로는 ‘국가 공동체’라는 기치를 내걸고 천황제 국체하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의 재편성을 강행하는 역사적 정황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존립”했다는 결정적 한계를 노정했다.

III. 맺는말: 근대기획의 완성의 문제

동북아시아에 있었던 ‘문명개화’와 ‘탈아’의 실험은 ‘근대의 초극’으로 일단 귀결되었다. 일본은 자신을 문명화시킨 ‘문명개화’의 국가들을 태평양 전쟁기간 중에 더 이상 문명국 으리 간주하지 않고, ‘귀축미영(鬼畜米英)’로 몰아붙이면서 ‘근대의 초극’을 실현시키려고 했다. 근대문명은 서구로 하여금 전쟁 및 식민지개척과 결부된 제국주의와 팽창주의로 나아가게 하였던 원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서구에 대항하여 궁극적으로는 ‘세계권력정치’로 나아가갈 수 있었던 물질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각국가들이 진보의 원천으로 믿고 있었던 신과 같은 존재였던 근대문명은 그것이 실제 현실의 모습이든 아니면 초극의 대상이었던 간에 동북아시아에 혼란과 오류 그리고 억압과 파멸을 가져왔다.

중국은 현재 신문화운동과 5.4운동에서 시도했던 ‘탈아’의 논리 내지는 전반서구화의 논리에 입각해 근대문명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이 막강한 경제와 기술력을 동원해 개발해낸 각종의 최신의 첨단무기들은 오직 경제력과 군사력만이 근대문명을 말해 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과거였다. 다른 한편 중국은 전세계에 중국의 (유교)문화를 알린다는 취지로 2004년부터 전 세계에 설립되기 시작한 ‘공자학원(孔子學院 Confucius Institute)’의 확산을 상징으로 하는 입중화(入中華)의 길로 나가고 있다. 오늘날의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경우 서구식(미국식) 근대문명의 도입을 통해 흡사 ‘탈아입미(脫亞入美)’의 길을 가는 듯하다. 일본이 선례로 보여주듯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탈아’의 물질 토대가 된다. 한국은 독재라는 극단 속에서 성공적인 산업화를 마무리함으로써 탈아의 물질토대를 마련하고 이제 이에 상응하는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근대문명이 가져다준 여러 혜택들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것들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이 영어 혹은 미국어(美國語)라는 가치이다. 그것은 언어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치가 되어 지식과 산업 기술 과학 도덕이라는 전체 한국인의 삶의 영역에 관철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탈아’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과거였다. 한국이 ‘탈아’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면, 북한에서는 성리학적 학문과 사상만을 고수하는 것이 올바른을 지키는 것이며, 거짓된 것을 물리치는 것이라는 위정척사((斥邪)衛正)의 근본이념이 사회주의의 존속을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왕조적 전제주의의 정신적 토대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은 두 개의 극단을 달리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이성적 자각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과거에 동북아시아의 근대 기획 속에서 인간의 이성적 자각이 사회적 정치적 성숙을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것이 파멸을 가져왔다면 오늘날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의 이성적 자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계몽이란 맥락에서 이성은 과연 오늘날의 동북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실천적인가 아니면 도구적인가? 실천적이라는 의미에서 비판적 개인은 존재하고 있는가? 이성과 계몽에 근거한 낙관이나 자기도취에 대해서는 우려와 비판을 보내지만, 주체의 반성적 능력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칸트적 계몽이 상정한 주체의 본래적 의미로 돌아가고 있는 하버마스의 생각은 문제 해결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예컨대 하버마스는 미완의 프로젝트로서 근대를 말하면서, 경제적 및 행정적인 합리성의 척도들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척도들”에 기반을 둔 선험적 영역들, 즉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척도들”에 기반을 둔 “삶의 영역들 (Lebensbereiche)”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삶의 영역들이 “문화적 전수의 임무, 사회적 통합의 임무 그리고 교육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의 주체의 문제를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주체는 어찌되었든 간에 ‘경제적 및 행정적인 합리성’과는 분명히 차별되는 선험적-이상적 의미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담지자이며, 따라서 문화와 사회적 통합 혹은 교육으로 이해되는 ‘삶의 영역들’에 부과된 목적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하버마스의 생각은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다소간 회의적으로 다가 올 수가 있다. 왜냐면 이성의 선험적 자기비판능력을 가진 주체를 상정하는 시도 자체는 그러한 이성의 담지자로서 주체가 과연 원래 계몽이 상정했던 의도에 따라 자신과 세계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항상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기비판의 능력을 가진 주체는 어찌면 경험적으로 구성되어 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참고문헌]

- 강상중. 2004. 임성모 역.『내셔널리즘』.이산.
-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2003. 이승연 역.『동아·대동아·동아시아. 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역사비평사.
- 구건서. 2001.『일본지식인의 사상』. 현대미학사.
-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 1996. 박미애 역.『문명화과정』. 한길사.
-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2004. 서광덕·백지운 역.『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 2002. 임성모 역.『전장의 기억』. 이산.
- 리쩌우(李澤厚). 2005.『중국근대사상사론』. 한길사.
-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81. 박준황 역.『일본의 현대사상』. 종로서적.
- _____. 1988. 박충석·김석근 역.『충성과 반역. 전환기 일본의 정신사적 위상』나남.
- _____. 1997. 김석근 역.『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한길사.
- 모리스 메이스너. 1992. 권영빈 역.『이대조: 중국사회주의의 기원』. 지식산업사.
- 쑨꺼(孫歌). 2003. 류준필 역.『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창작과 비평사.
- 에드워드 사이드 저. 1999. 박홍규 역.『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 왕후위(汪暉). 2003. 이육연 외 역.『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작과 비평사.
- 이성규. 1992. 중화사상과 민족주의.『철학』 37.
- 최치원. 2006. 「근대에 대한 하나의 사변 - 동북아 평화문제의 의제화를 위한 시론」.『철학연구』31.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 풍우란. 1999. 중국철학사(하). 까치글방.
- 호적(胡適). 1972. 민두기 편역.『호적문선』. 삼성문화재단.
-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2003. 남상영·사사가와 고이치 옮김.『학문의 권장』.소화.
- Geiss, Imanuel. 1992(1986). Geschichte im Überblick. Daten und Zusammenhänge im Überblick der Weltgeschichte. Hamburg.
- Habermas, Jürgen. 1981. “Die Moderne – ein unvollendetes Projekt”. Kleine Politische Schriften I–IV. Suhrkamp, Frankfurt am Main.
- _____. 1985.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 II. Suhrkamp, Frankfurt am Main.
- _____. 1988. “Der normative Gehalt der Moderne”.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Suhrkamp, Frankfurt am Main.
- Hobsbawm, Eric. 1997.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s Century 1914–1991. Abacus: London.
- Kant, Immanuel. 1956. Kritik der reinen Vernunft. Raymund Schmidt (Hrsg.). Felix Meiner, Hamburg.
- _____. Unveränd. Nachdruck 1974 der 9. Aufl. v. 1929.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Karl Vorländer (Hrsg.). Felix Meiner, Hamburg.

- _____. 1968.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Theorie–Werkausgabe Bd. 12). Wilhelm Weischedel (Hrsg.). Suhrkamp, Frankfurt am Main.
- Levenson, Joseph R. 1965(1958).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The Problem of Intellectual Continuit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Masao, Maruyama. 1969. *Thought and Behaviour in Modern Japanese Politics*. Oxford.
- Negt, Oskar. 1988. *Modernisierung im Zeichen des Drachen. China und der europäische Mythos der Moderne*. Frankfurt am Main.
- T'ang, Leang-Li. 1927. *China in Aufruhr*. Leipzig/Wien.
- Tang, Xiaobing. 1996. *Global Space and the Nationalist Discourse of Modernity: The Historical Thinking of Liang Qichao*.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Yukichi, Fukuzawa. 1973. *An Outline of a Theory of Civilization*, tr. David A. Dilworth and G. Cameron Hurst. Tokyo.
- Zarrow, Peter. 2004. "Late Qing Reformism and the Maiji Model: Kang Youwei, Liang Qichao, and the Japanese Emperor." *The Role of Japan in Liang Qichao's Introduction of Modern Western Civilization to China*. Joshua A. Fogel eds. Berkeley, Calif.: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enter for Chinese Studies.
- Zhan Tuosheng. March 29, 2006. "East Asian Perspectives Outline Path to Progress". China Daily.

전쟁과 정의: 한국전쟁에 있어서 정당성 문제

서희경(진실화해위원회)

I. 문제제기: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가?

전쟁에서 정의가 존재하는가? 이 글의 목적은 한국전쟁에서 정의의 문제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생존과 승리만이 추구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전쟁 상황에서 정의를 논하는 것은 무용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전시에는 법이 정지된다”(Inter arma leges silent)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 글은 전쟁에서도 정의와 법이 존재한다는 정의전쟁론의 입장에 서서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정당성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체로 군사학과 정치학(국제정치학), 역사학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¹⁾ 군사학은 한국전쟁을 ‘군사’적인 성격의 문제로 접근하여 주로 전투사와 전투 상황을 고찰하였다.²⁾ 정치학과 역사학은 냉전과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한국전쟁을 다루었다.³⁾ 그런데 이상의 한국전쟁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는 대체로 원인론과 고증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전쟁의 원인(기원)은 무엇이고, 누가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 의해 접근되었다. 그 반면 한국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전쟁은 어떻게 이해되고 판단될 수

- 1) 한국전쟁 연구를 정치 수준의 연구와 사회 수준의 연구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전 연구는 대체로 전자에 해당된다. 1990년대 들어와서야 비로소 전쟁에서의 사회 성원들의 반응과 피해, 학살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 2)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D.C.: U.S.G.P.O., 1961);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한국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에서 1970년–1980년 동안에 간행된『한국전쟁사』 11권, 1980년–1995년 동안에 간행된『한국전쟁전투사』 27권, 1996년–2003년 동안에 간행된『한국전쟁자료총서』 72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 3)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N. Y., Harper & Row, 1972); James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85); John Merrill, *Korea–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Newark: Univ. of Delaware Press, 1989);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6–1950*(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90); 和田春樹,『朝鮮戰爭』(東京: 岩波書店, 1995); 김영호,『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 두레, 1998); 이완범,『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서울: 백산서당, 2000); 박명림,『한국 1950: 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 2002); 정병준, 한국전쟁』(서울: 돌베개, 2006).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드물었다.⁴⁾ 이 글의 목적은 한국전쟁의 개시와 수행, 그리고 한국전쟁에 대한 개입과 관련하여 특히, 정의전쟁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정의전쟁론은 전쟁에 대해서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전쟁이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정의전쟁론은 현실주의와 평화주의를 지양하고자 한다. 현실주의는 ‘전쟁 수행에는 권력과 이익, 국가 안보가 전쟁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므로 전쟁에는 정의와 같은 도덕적 판단이 적용될 수 없다(nonmoral)’고 본다.⁵⁾ 반면에 평화주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자체는 부도덕하다(immoral)’고 본다.⁶⁾ (Michael Walzer, 1977, 3).

본고는 정의전쟁론 중에서도 특히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에 있어서 여러 정당성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⁷⁾ 월저는 정의전쟁론의 부흥에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자,⁸⁾ 전쟁행위에 관한 “존경받는 재판관”(a respected judge)으로 평가되어 왔다.⁹⁾

-
- 4) 박명림의 세 문헌도 기본적으로 원인론과 고증론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의미 분석 역시 지향하고 있다.)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서울: 나남, 200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서울: 나남, 2003a);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서울: 나남, 2003b) 참조.
 - 5) 현실주의자들은 정의전쟁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즉, 전쟁의 동기를 정의의 실현에 둬으로써 적을 부정의한 사악한 세력으로 폄하하게 되어 적의를 가중시켜서 전쟁의 참화를 더욱 부채질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의전쟁론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정의로운 전쟁은 결국 성전(crusade)으로 변하게 되고, 정치가와 군사 지도자들은 그들의 정당한 명분(just cause)에 맞는 전쟁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연합군이 나치 독일을 인류의 공적인 악의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연합군이 패할 수 있는 “극도의 비상상황” 아래에서는 독일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 폭격도 정당화된다고 주장한 점에서, 월저는 결국 이러한 현실주의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했거나 현실주의자로 귀착되고 만다고 비판이 제기되었다(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Basic Books, INCp, 1977), 110; 박정순, “마이클 월저의 정의전쟁론”.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가』(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126-127.
 - 6) 평화주의를 비판하는 월저의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폭력 저항운동이 논리적으로 정의전쟁론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비폭력 저항운동의 성공은 침략자가 민간인에 대한 면제성 원칙을 철저히 외면하는 테러리스트 전략을 취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 그 변경 가능성은 적이 전쟁수행에서의 정의와 법규를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월저는 자신의 저서를 “전쟁의 제약은 평화의 시작”이라고 하였다.(박정순 2006, 129)
 - 7) 월저는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계기로 기고한 논문들을 묶은 『정의와 불의의 전쟁』(*Just and Unjust Wars*)에서 정의전쟁론을 제기하였다(Michael Walzer 1977, 45). 정의전쟁론에서 말하는 전쟁수행법(*jus in bello*)은 국제인도주의법과 전쟁법(law of war), 그리고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과 유사하다. 이 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국제협약들로는 1948년 대량학살협약(Genocide Convention)과 1968년의 무력분쟁시 인권(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에 대한 결의문 등이 있다. 이 법에 따라 국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의 하나는 1998년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시에 개인이 행한 일들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 8)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서 정의전쟁론에 대한 논의를 크게 자극했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쟁에 관한 도덕적 논증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다. 결국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 정의전쟁론은 학문적 주제가 되었다. 즉, 국가는 정의롭게 싸워야 할 이유를 고려해야만 되었으며, 정의는 군사적 필요성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Michael Walzer, "The Triumph of Just War Theory and The Dangers of Success," *Social Research*, vol. 69(2002a), 20-22.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왈쩌는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쟁의 개시 및 개입은 순전히 전략적 필연성에 따른 기계적인 결정이 아니고 인간 의지를 통한 결정의 산물이므로, 도덕적 판단과 비판이 따를 수 있다고 본다(Michael Walzer, 1977, 12-14).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그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공공적 여론으로 혹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으로 찬성과 이의를 비판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Michael Walzer, 1977, 64, 301).

둘째,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just cause)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침략 전쟁은 정치공동체의 정치적 주권과 영토, 구성원의 생명을 침해한 하나의 범죄이다.¹⁰⁾ 따라서 ‘침략자에 대항해 싸우는 자기방어 전쟁’¹¹⁾과 그러한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처벌’의 경우는 정당하다(Michael Walzer, 1977, 51-52). 나아가 왈쩌는 통상적인 인식과 다른 정의전쟁의 유형으로 선제방어전쟁(preemptive strikes, legitimate anticipation)과 개입 전쟁(intervention)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전쟁을 개시한 국가의 정치·군사 지도자와 전쟁 수행의 정의를 어긴 장교와 병사들에게는 전쟁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부정의한 전쟁을 시작한 국가의 시민들에게는 전쟁을 막아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가 있다(Michael Walzer, 1977, 301).

이런 근거에서 왈쩌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Michael Walzer, 1977, 292). 이 재판에서는 침략 전쟁을 개시한 국가의 정치·군사 지도자 등 전쟁 정책결정에 책임이 있는 자를 전쟁범죄로 처벌했다. 또한 병사들과 장교들이 전쟁의 열기와 상관의 명령에 의해, 그리고 큰 위협이 없는데도 자기방어를 위해 과도한 공격 행위를 한 경우, 전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예컨대, 왈쩌는 민간인의 인권을 잔혹하게 유린한 베트남의 “미라이 학살”은 명령자와 수행자 모두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Michael Walzer, 1977, 309) 물론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부정의한 전쟁을 시작한 국가의 시민들도 책임이 (있다.) 특히 민주국가의 시민일수록 그 책임은 더 커진다. 즉 민주적인 비판이 가능한 국가의 시민에게는 부정의한

9) Gray Wills “What is a Just War?”,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18 November 2004), 5.

10) 전쟁범죄를 열거하면, 1) 부상자, 병자, 무기를 버린 투항자 등, “전투능력을 상실한 인원”에 대한 살상행위, 2) 배신행위(treachery)를 통한 적군 또는 적국민 살상행위, 3) 포로, 부상자 및 병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포로 송환의 부당한 지연행위, 4)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살해 또는 공격과 그들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몰수, 파괴 또는 약탈, 5) 점령지 주민으로부터 적군 관련 정보 제공의 강요 행위, 6) 기타 헤이그 및 제네바 협약에 대한 위반행위 등이 있다.

11) 롤즈의 경우에도 정의전쟁론의 논리 속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규범적 판단의 핵심은 자기방어의 권리이다. 각각의 독립된 국가와 민족이 자기방어의 권리를 지니는 것은 이들이 내부적으로 나름의 공공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선을 실현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전쟁론자들은 뚜렷한 위협에 대한 정당한 방어에 일환으로써 순수한 방어 전쟁뿐만 아니라 선제공격과 예방전쟁 등도 평화의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무력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송경호,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한계: 존 롤즈의 「만민법」에 나타난 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2007). 39.

전쟁을 막아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가 있다.

넷째, 정의전쟁론은 전쟁 개시가 위법이라도 전쟁 수행 행위에는 합법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즉, 국가의 전쟁행위가 위법일지라도, 전투원의 행위는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은 국가의 문제이고, 전쟁의 구체적 수행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비전투원은 전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왈쩌는 또한 비전투원의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정당화해왔던 “이중효과의 원칙(the principle of dual effect)”을 보다 엄밀하게 보완하고자 하였다.¹²⁾

이 글은 전쟁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살펴보고자 한다.¹³⁾ 첫째, 전쟁 개시의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남북한 양측 중 어느 측이 ‘침략으로부터의 방어’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전쟁 개입에서의 정당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특히 미국 및 유엔, 소련과 중국이 어떻게 전쟁을 인식하고 한국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었는지, 그 개입의 의도와 과정, 그리고 절차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전쟁 수행의 정당성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과 개전 직후 국민보도연맹원 처형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전쟁 개시·개입과 수행의 책임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한국전쟁 개시의 정당성 문제

전쟁 개시가 정당화(jus ad bellum)되기 위해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¹⁴⁾ 첫째, 정당한 이유(just cause)가 있어야 한다. 공격에 대한 방어, 무고한 생명들의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정당한 의도(just intention)가 있어야 한다. 앞의 정당한 이유가 바로 전쟁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정당한 의도는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의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셋째, 정당한 권위에 의한 공개적 포고(public declaration by a legitimate authority)가 있어야 한다. 전쟁은 합법적인 권위에 의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국의 시민들 및 적국에 대한 공개적 선언 등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12) 부수적 피해란 전쟁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뜻한다. 즉, 공중폭격의 경우, 비전투원의 사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이중효과’란 적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아군 및 민간인의 피해도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또는 결과를 뜻한다.

13) 이 논문에서는 전쟁종결의 정당성(jus post bellum)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처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어야 하며, 전쟁 이후에 전쟁 이전의 상태로 어떻게 복귀하느냐의 문제 또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Michael Walzer, 1977, 121-122.

14) Brian Orend, *Michael Walzer on War and Justice*(Montreal & Kingston & London & Ithac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0), 4, 87. 중세 전쟁의 무분별성과 무차별성을 제한하고자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정당한 전쟁의 조건으로 적절한 권위(proper authority), 정당한 이유(just cause), 그리고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를 제시했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정당한 이유, 비례성(proportionality), 성공가능성, 공개적인 전쟁선포, 합법적 권위, 그리고 최후수단(last resort) 등을 제시했다.

넷째, 전쟁은 최후 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 전쟁은 평화적 해결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외교적 노력과 협상, 그리고 국제적 제재와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한 뒤에만 전쟁개시가 정당화된다.¹⁵⁾

정당한 목적은 정의전쟁론의 핵심이다. 예컨대, 공공선 및 평화의 보호와 설립 등은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를 가진 목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1. 전쟁 개시의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의도의 존재 여부

전쟁 개시의 정당성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전쟁 발발 주체 및 평가에 관해서는 전쟁 발발 시기부터 오늘날까지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¹⁶⁾ 그러나 왈쩌에 따르면, 북한의 남침은 무단한 침략이며, 이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응전은 “통상적인 정당한 방어전쟁”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문제에 관해 남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공식 교과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남한의 교과서는 “북한 정권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무력 남침을 준비하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을 감행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둘째, 『미국사』(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와 『20세기의 세계』(World Twentieth Century)는 각각 “북한군의 남침으로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1949년과 1950년 사이의 겨울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한 침공의 승인을 간청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허락 없이 행동할 수 없었다”고 서술하였다.¹⁷⁾ 미국 교과서는 한국전쟁이 스탈린에 의해 주도되고,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보았다. 이는 전통주의적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¹⁸⁾

15) 왈쩌는 전쟁 개시의 정의 요건으로 성공가능성(probability of success)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측면도 고려한다. 전자는 전쟁으로 유효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에만 전쟁이 허용된다는 것이며, 후자는 전쟁으로 야기될 피해가 전쟁 수행으로 얻어질 목적보다 크다면 전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은 전쟁 수행의 정당성 문제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일단 위의 네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6) 북한과 소련은 현재에도 한국전쟁의 성격을 민족해방전쟁과 조국통일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17) 박은영, “한국전쟁 관련 교과서 비교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7), 72. 그러나 남한 교과서는 한반도 내에서의 북한과 남한의 내부적 모순으로 인한 내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남한 지원, 공산 국가인 중국 인민군의 북한 지원 등으로 국제전적 성격으로 확대 되어 가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교과서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남침으로 서술하였지만, 국제질서 하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어 남한과 북한의 대립 및 내부적 모순을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다.

18) 전통주의 입장과 수정주의 입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시작된 미국과 소련에 의한 냉전체제의 기원을 분석하는 서로 대립되는 두 입장이다. 전자는 냉전의 원인을 소련의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대외정책에서 찾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이를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에서 찾고 있다. 한국전쟁의 기원을 다룸에 있어서도 두 입장은 냉전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한국전쟁에 적용시킨다. 예컨대 전통주의 시각에서는 냉전이 소련에 의해 시작되었듯이

셋째, 1950년 6월 26일 김일성은 “매국역적 리승만 괴뢰정부의 군대는 6월 25일 38선 전역에 걸쳐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하였다)”¹⁹⁾고 방송하였다. 또한 박헌영은 미국이 참전한 7월 1일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시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동족상쟁을 폭발시킨 남조선괴뢰도당 --- 리승만 정부는 자기의 미국 상전의 지시에 의하여 6월 25일 조선에서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²⁰⁾ 북한의 교과서『조선력사: 조청반응』에도 “북한은 오랫동안 전쟁준비를 한 미제국주의와 이승만이 무력 침공을 하였다”고 서술하였다²¹⁾

요컨대, 남침설과 북침설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²²⁾

학계에서는 북한이 사전에 치밀히 계획하여 6월 25일 전면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점은 북한 인민군 내부의 「공격작전용 조선인민군 정찰계획」(1950. 6. 20)²³⁾과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235군부대 참모부)²⁴⁾, 그리고 「정찰명령 제1호」(1950. 6. 18)²⁵⁾ 등에서 확인된다.²⁶⁾ 특히 정찰명령 제1호는 소련이 북

한국전쟁도 소련에 의해 도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입장은 한국전쟁을 냉전의 한 산물로 봄으로써 한반도 내부 문제를 간과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비판은 1970년대부터 Robert Simmons, Bruce Cumings, John Merrill 등의 수정주의 학자들에 이루어졌다. 이들은 조선 왕조 후기부터 자라온 사회경제적 모순에 주목하고 그것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더욱 심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반제·반봉건의 성격을 띠는 항일 독립투쟁 과정 속에서 민족의 제 모순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이 과정에서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깊어져 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고 결국 적대적인 두 정권이 수립되어 각각 상대방을 흡수 통합하려는 의도의 결과로 한국전쟁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외인에 역점을 두고 접근하면 한반도 내부에서 실제로 진행된 좌우익 투쟁이나 남북한 대결의 심각성이 무시되고 내인에 치우칠 때에는 한반도의 내부적 요인들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강대국들의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적실성 있는 접근은 국제적 성격과 내부적 모순을 함께 갖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 『조선중앙연감』1951-1952, p. 13; 박명림, 2003 a, 309 재인용.

20) 『조선중앙연감』1951-1952, pp. 91-92; 박명림, 2003, 311 재인용.

21) 1950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파리 특파원이었던 스톤(Isidor F. Stone) 등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이승만의 자극 및 도발에 의한 북한의 보복 전쟁’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모든 주위 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이승만이 힘의 평행을 교차시킴으로써 북한이 보복해 오리라는 판단 하에 그들을 고의로 자극시켜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북쪽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완전히 땃에 걸린 것이다.(Monthly Review, 1951. 8, 114-115)

22) 전쟁 발발 당시, 세계의 보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남한의 북침을 주장한 언론은 소련의 『프라우다』, 중국의 『인민일보』, 북한의 『로동신문』, 미국의 *Daily Worker* 등이었다. 반면에 *The Honolulu Advertiser*,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다고 보도하였다.

23) NARA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Entry 300C, Box 24, ATIS Document no.200686, Intelligence Plan of the North Korean Army for a Attack Operation; 박명림 2003a, 414-415; 정병준 2006, 755-760 참조.

24) NARA, ATIS Document No. 201103; 정병준 2006, 762-766 참조.

25) NARA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Box1, Issue No. 1 Item 2; 박명림 2003a, 409-412 참조.

26) 한국전쟁에 관한 오랫동안의 수많은 논쟁은 개전 당일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느냐 하는 점이였다. 예컨대, 해주북침설, 해주공격설, 해주점령설 등에 기초한 남침유도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의 남침계획 수립에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쟁 목적과 의도는 정당한가? 북한이 전쟁을 개시한 이유는 1949년 초부터 대외적으로 강력히 표명되었던 ‘국토완정론’에서 엿볼 수 있다. 김일성은 1949년 신년사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쫓기하자”에서 “공화국 중앙정부는 머지않은 장래에 남반부의 농민들도 북반부의 농민들처럼 토지의 주인으로서 토지계획의 혜택을 받게 되며 노동자들은 노동법령의 혜택을, 녀성들은 남녀평등권의 혜택을 받고 자기 조국의 완전한 주인으로 될 그 시각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또한 “미군을 조선에서 몰아내고 친일과 민족반역자의 소굴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주구인 남조선괴뢰 ‘정부’, 망국 괴뢰정부를 타도 분쇄함으로써 국토의 완정과 완전 자주 독립을 촉진시키라”고 강조하였다.²⁷⁾ 요컨대, 김일성은 한국전쟁의 목적이 평등과 독립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전쟁 이유 및 의도는 정의로운가? 이에 대한 판단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은 존재할 수 없다. 즉, 필자가 남한의 체제와 그 이념을 지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견해라는 점에서 필자의 견해를 절대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쟁 목적과 의도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이라면, 판단 기준은 절차적인 것만이 남는다. 왈찌는 공격에 대한 방어, 무고한 생명들의 보호,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만이 정의로운 전쟁으로써 허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북한의 전쟁은 “진정한 불의의 기습남침”이었고²⁸⁾ 이에 대한 남한의 대응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의 방어전쟁”으로서 정당화된다고 본다.

2. 전쟁개시에서 공개적 선전 포고와 최후수단 조치의 정당성 문제

다음으로, 공개적 선전 포고 (public declaration by a legitimate authority) 문제를 살펴보자.²⁹⁾ 여기에서는 특히 허위 선전포고하거나 정식 선전포고하지 않은 전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은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국의 시민들 및 적국에 대한 공개적 선언을 함으로써 수행되어야 한다. 전쟁 개시 측이 전쟁 이유에 대해 통고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쟁에 호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고 절차는 관행적으로 외교사절을 거친 정식문서로써 통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선전포고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면서 치러진 전쟁은 드물다. 한국전쟁의 경우, 조선인민공화국 내무성은 6월 25일 오전 11시

그러나 북한 내부의 공격 및 전투명령 관련 문서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27) 김일성,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쫓기하자”, 『김일성저작집』제5권, 1-13; 박명림, 2003a, 87에서 재인용.

28) 정병준, 2006, 683.

29) 선전포고 후에 적대행위가 있는 것이 보통이나, 적대행위 후에 선전포고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일본의 진주만공격은 1941년 12월 7일에 있었고, 일본의 정식 선전포고는 66시간 후에 있었다.

에 평양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 발표하였다. 무초가 국무부에 보낸 보고 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일 새벽에 남조선 괴뢰 정부의 소위 ‘국방군’은 38선 전역에서 북쪽으로 경악할만한 침략을 개시하였다. 이 놀랄만한 군사행동을 취한 적들은 해주·금천·철원 등 세 지역에서 38도선 1-2Km 북쪽 지역으로 침략하여 왔다. 조선인민공화국 내무성은 인민공화국 방위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 적을 쫓아 버렸다. 이 순간 우리 방위군들은 불굴의 반격작전으로 적에 대항하고 있다. 인민공화국 군대는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양양 북쪽까지 진격하는데 성공하였다. ... 인민공화국은 내무성으로 하여금 남한 괴뢰정부에게 그들의 무모한 모험으로 인해 죽음이 초래되었으며, 괴뢰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도록 하였다.³⁰⁾

북한은 이상과 같이 남한 국방군의 북침에 대응하여 인민공화국 방위군이 반격작전을 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던 것이다. The New York Times와 The Washington Post는 6월 25일 오전 11시의 이 방송이 북한의 선전 포고였다고 보도하였고,³¹⁾ 또한 당시 트루만과 국무장관 등은 무초로부터의 즉각적인 전쟁 발발 보고를 통해 북한의 침략이 “완전히 준비된 공격”이며, “북한은 사실상 선전포고인 선언을 방송”한 것으로 인식하였다.³²⁾ 북침과 관련한 학계의 오랜 논쟁을 고려하면, 당시 미국정부와 언론의 즉각적 판단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공식발표는 허위였고 절차도 문제였다. 따라서 남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은 허위였지만, 선전포고로 인식하였다.

한편 미국은 개전 초 즉각 군사개입을 발표하여 공식적인 선전 포고를 하였다. 6월 28일 새벽 1시경(워싱턴 시간: 6월 27일 낮 12시) 트루만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정부군이 북한의 침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침략군에게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38도선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저는 미공군 및 해군으로 하여금 한국정부군에 원호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은 공산주의가 독립국들을 정복하기 위해 파괴공작의 범위를 넘어 이제는 무력침공과 전쟁수단을 사용하게 된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들어내고 있습니다. ... 공산군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대만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의 당연한 결과로서 중화민국 정부에게 본토에 대한 해·공군의 작전 일체를 중지할 것 요구합니다. 제7함대는 이의 실행을 관찰할 것입니다. --필리핀 주둔 미군의 강화와 필리핀 정부에 대한 군사원조의 축진을 지시했습니다. 인도지나에 있어서의 프랑스 및 연합국의 군대에 대한 군사원조의 제공을 촉진할 것입니다. ...국제문제에 있어서 무력 지배로의 회귀는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은 법의 지배를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³³⁾

3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VII, Korea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132.

31) NYT, 1950. 6. 25, 1, 21; WP, 1950. 6. 25, 1. 4.

32) 해리 트루만 손세일역, 『시련과 희망의 세월』(서울: 지문각, 1968), 310.

트루만은 이상과 같이, 38선 이남에 미 공군과 해군이 참전하며,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견하고, 필리핀과 인도차이나 반도에 군사원조를 강화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³⁴⁾ 이 발표는 6월 27일 오후 12시경(워싱턴 시간: 6월 26일 낮 11시 45분)에 트루만이 맥아더에게 지시한 훈령 내용보다 더 명백한 것이었다.³⁵⁾ 그러므로 6월 28일의 이 공식성명은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최초의 공식 성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성명은 6월 28일 낮 12시경(워싱턴 시간: 27일 밤 11시 45분)에 있었던 UN의 제2차 안보리 결의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었으며,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기 직전에 공포된 것이었다.

한편, 북한의 전쟁 개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내각 합동 비상회의를 소집하였다. 북한최고지도부를 전부 비상소집하였던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남한의 최고지도부 대응과 대조를 보인다. 6월 26일에는 김일성을 위시하여 7인 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본격적인 전시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북한은 6월 27일에 북한 내부에 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³⁶⁾ 전시상태 선포와 함께 “국가보위, 사회질서 및 국가 안전을 위한 부문에서의 국가주권기관의 일체 업무는 지방 군정부로 이양”되었다. 북한은 미군의 개입이 명확해진 7월 1일 1914년에서 1932년 사이에 출생한 전 인민들에 대한 동원령을 선포하였다.³⁷⁾

북한군 중견 및 하위 장교들이 전쟁 선제개시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것은 집결지에서 소련 고문과 민족보위상 최용건,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두봉 등 고위지도자들의 훈화를 들은 뒤였다.³⁸⁾ 일반 병사들은 사전에 전쟁개시를 몰랐거나 아예 북침으로 알고 전쟁에 임했다.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전쟁을 인식해 갔던 것일까? 전쟁 당시 은행 조사부에 근무했던 장영창³⁹⁾은 6월 25일 오후 “오늘 새벽 4시를 기해 돌연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총공격을 개시해 왔다. 현재 해주, 장단, 개성, 동두천, 춘천, 강릉, 의정부 등의 각 지점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호위를 통해 전쟁 발발을 알게 되었다.⁴⁰⁾ 그는 또한 6

33) 해리 트루만, 1968, 315.

34) 이 결정은 6월 26일 오후 9시에 제2차 Blair House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트루만은 6월 27일 의회지도자들과 한국문제에 관해 의견을 경청했다. 해리 트루만, 1968, 314.

35) 그 훈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보급품을 한국에 보내고, 2) 조사단을 파견하며, 3) 제7함대를 일본 해역으로 이동시키며, 4) 미국인 철수를 위하여 미공군을 이용하도록 하고, 5) 소련의 다음 행동에 대하여 검토할 것.

36) 박명림, 2002, 82.

37) 7월 1일경에는 북한의 서울 시민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다. 장영창에 따르면, 서울 진주 2-3일은 전체 서울 시민들을 공산주의에 대한 찬동자라고 간주하여 시민들에 대해서 포섭주의와 온정주의를 써 왔는데, 7월 1일을 전후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전체 서울시민들을 일단 반동층으로 보고, 냉정하고 무자비한 수단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시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식량배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장영창, 『찢겨진 조국의 하늘 밑에서』(서울: 동지사, 1983), 78-79.

38) 박명림, 2003a, 420.

39) 장영창은 1920년 11월 11일에 출생하여 일본 니혼대학교 영문학과를 중퇴한 후, 리더스다이제스트 한국지부 행정 보좌관, 한국일보 조사부 부장, 통일문학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5년에 사망했다.

월 26-29일의 서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월 26일: “은행 본관의 영업실이 예금을 찾으려고 밀려닥치는 손님들로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긴급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 정부 고관들이 피난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 미국대사관 앞에 붉은 대형버스가 20대 가량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버스 안에 서류 봉치를 집어넣느라고 야단들이었다” ... 오후 늦게 의정부 근처에서 장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토를 경작하는 소작인의 아들이 우리 집으로 피난을 왔다. 그는 자기가 사는 부락에 돌연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늙은 할머니를 모시고 도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⁴¹⁾

6월 27일: 은행에 도착해서 조사부실에 들어갔을 때, ... 우리 은행 3층을 빌려 쓰고 있는「텍사스 석유회사」의 미국인 직원들도, 분주히 서둘러서 피난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북괴군들이 이미 우이동을 지나서, 화장터 근처에 있는 무슨 중학교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 나는 어떤 말을 신용해야 좋을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포성과 총성은 틀림없이 가깝게 들려오고 있었다. ... 어제까지만 해도 북으로 달려가던 국군이였다. 그러던 것이 웬일인지 지금은 그 방향이 바뀌어져서 남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이 위험하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이 위험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믿으려 들지 않았다(다). ... 은행에서는 2개월 분의 급료와 양곡대금을 미리 앞서 지불해 주었다. ... 그러나 어느 시장에도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구경을 할 수가 없었다. ... 대청에 놓여 있는 라디오를 누가 틀었는지 ... 모운숙 여사의 간단한 시낭독이 끝나자, 정훈국으로부터 전과발표를 했다. 지금 서울의 장안에 들려오고 있는 포성은 영등포에서 미군의 정예부대가 의정부 방면의 전선을 향해서 장거리포의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군 폭격기가 적군 탱크를 전부 파괴해 버렸으며, 적군 비행기 2대를 의정부 근처의 논 속에 추락시켰다고 했다. 이 발표를 듣고서 포성에 대한 나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

6월 29일: ... 정오가 조금 지나 청년 한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다.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나오라는 말을 전하고 가버렸다. ... 가는 도중에 한강의 인도교가 파괴되어 이제는 더 이상 남쪽으로 피난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⁴²⁾

그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서울 시민들은 전쟁 발발을 6월 25일 당일 호외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으나, 정부의 허위 발표로 인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역사학자 김성철의 기록에 따르면, 6월 27일 아침 신성모 장관은 수원으로 정부가 천도함을 방송하였다. 그러나 오후에 이는 오보이고, 정부는 대통령 이하 전원이 평상시와 같이 중앙청에 집무하고 있고, 국회도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⁴³⁾ 그러나 모두 허위였다.

이상의 사실을 보면, 북한은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허위로 발표했으므로 정의전쟁론의

40) 장영창, 1983, 9.

41) 장영창, 1983, 15, 17.

42) 장영창, 1983, 32.

43) 김성철, 『역사 앞에서』(서울: 창비, 2009), 72, 76.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점에서 북한의 전쟁개시는 부정의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명확히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의의 원칙을 준수했다.

다음은 북한의 개전이 최후수단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은 평화적 해결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전쟁은 심각한 피해로부터 공공선을 보호하거나, 잘못된 사안을 바로 잡거나 잘못을 처벌하는 등의 정당한 요인(just cause)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무력 사용을 위해서는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를 표명해야 한다. 이는 무력사용의 목적이 침략, 지배, 무자비한 증오와 같은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보호, 복구, 혹은 설립이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국가는 전쟁을 결정하기 전에 평화주의에서처럼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협상, 그리고 국제적 제재와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은 모두 평화적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고, 모두 군사적 대결을 우선했으며, 호전적이었다.

1949년 미소 점령군이 철수하면서, 한반도의 적대적인 두 정부는 점차 무력충돌의 방향으로 치달았다. 남한과 북한은 자기 방식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내세우며, 군비 경쟁과 접경지역 무력 충돌을 격화시켜왔다. 예컨대, 1949년 여름부터 38선에서는 남북한 병사 간에 전투가 계속되었고, 남한 내에서는 남로당의 ‘인민유격대’와 북한에서 파견된 정규 게릴라 부대들이 각지에서 전투를 벌였다. 1949년과 1950년 겨울에 걸쳐 남한 정부는 주요 게릴라 거점들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군비 증강을 가속화하였다. 북한은 6월 전쟁 발발 직전에도 두 차례 걸쳐 위장 통일 공세를 폈다.

III. 한국전쟁 개입의 정당성

전쟁 개입의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특히 미국 및 유엔, 소련, 중국의 개입과정과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왈쩌는 국가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주권의 방어뿐만 아니라 긴요한 사회적 권리들이 침해될 때, 타국이 자국을 보호할 수 없는 국가를 대신해서 개입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하였다.⁴⁴⁾ 그리고 그는 이 개입(intervention)을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⁴⁵⁾ 첫째, 내전중인 국가의 한 당사자에 대한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서 다른 당사자를 지지해 주는 역개입(counterintervention)이다. 이러한 개입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균형에 있고, 역개입의 적법성은 합법정부의 요청에 있다. 둘째, 다민족 국가에서 발생하는 분리독립운동(secession)과 민족해방운동(national liberation)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이다. 이 개입의 대상은 민족자결적인 관점에서 정당성을 지닌, 그리고 미래의 독립을 위한 헌신과 대표성을 지닌 정치공동체에 한정된다.⁴⁶⁾ 셋째, 극심한

44) Michael Walzer, 1977, 85, 108.

45) Michael Walzer, 1977, 101-108.

46) 탄압받는 분리운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개입이다. 다민족국가에서 중앙권력에 항거하는 민족적, 정치적 분리운동을 중앙권력이 무력으로 탄압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것이 개입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이 독자적인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을 위한 진지한 능

인권적 재앙을 구제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다. 대규모의 끔찍한 인권침해, 예컨대 광범위한 규모의 학살이나 노예화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에 개입한 세 국가의 개입유형은 왈짜의 분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및 유엔의 개입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즉각 군대를 파견한 미국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군사개입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소련과 북한의 주장대로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내부 문제였으며, 미국을 위시한 유엔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인가? 유엔군 창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유엔군 창설을 불법적인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군사개입은 왈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의도(just intention)를 지닌 것인가?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김일성이 미국의 참전을 예상했는가 의 여부, 그리고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전쟁이 ‘내전’ 아닌 ‘세계 전쟁’으로 전이되었는가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⁴⁷⁾ 또한 미국의 대유엔정책을 제한전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고찰한 연구가 있으며,⁴⁸⁾ 한국전쟁에 대한 UN 조치 및 미국의 개입에 관한 법적 평가 등이 검토되었다.⁴⁹⁾ 요컨대, 선행연구는 주로 실증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따라서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군 파견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즉, 유엔 헌장 제2조 7항의 국가의 국내 관리권에 대한 불간섭 조항을 근거로 하여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국내문제이며, 유엔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⁵⁰⁾ 반면에 마이클 왈짜의 논의에 따르면,

력과 노력을 보여야 하고 그리하여 외부의 무력적 간섭이 헛수고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테면, 대표성, 정당성, 미래의 독립을 위한 헌신적 투자 등을 실증해 보여야 한다. 그리하여 종종 국제법으로 교전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 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 (정태욱, “마이클 왈짜의 정전론(正戰論)에 대한 소고 - 선제방어전쟁(preemptive war)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Vol.6, No.1(2003), 161-162).

47) 박명립, 2003, 305-326 참조. 그는 미군개입 여부가 “실제 전쟁의 전개과정에서 전쟁의 방향을 좌우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에 불구하고 최용건 외에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매우 낙관하였다”고 하였고(박명립, 2003, 308-309), 이러한 낙관은 “명백한 오인의 산물”이라고 하였다.(박명립, 2002, 107) 또한 그는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의 논의 과정에서도 “일본 주둔 미군과 일군(日軍)의 참전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참전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상정되었었다”고 주장하였다.(박명립, 2003, 317) 또한 그는 한국 전쟁은 “전쟁이 발발한지 만 하루가 못되어, 이 전쟁은 동경의 맥아더를 거쳐 워싱턴으로 옮겨가 미국과 유엔의 전쟁, 그리고 세계의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박명립, 2002, 120). 그는 “이 신속한 전이는 20세기의 다른 전쟁, 이를테면 베트남 전쟁이나 걸프전쟁과 비교하여 한국 전쟁의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이승만은 크게 성공한 것이었고, 전쟁은 세계 최초로 유엔의 경찰행동에 의해 치러지게 되었다”고 하였다(박명립, 2002, 120).

48) 서주석,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연구: 미국의 전쟁제한정책 결정과정과 그 원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1986).

49) 김명기, “국제법상 한국동란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명대논문집』Vol. 14(1983). 법실증주의적 접근은 대체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조항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 평가를 시도한다.

미국과 유엔의 한국전쟁 개입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통상적인 방어 전쟁이지, ‘내전의 한 당사자에 대한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서 다른 당사자를 지지해 주는 의미에서의 역개입’은 아니라고 하였다.⁵¹⁾

그러나 필자의 검토에 따르면, 미국 및 유엔의 개입은 형식상 ‘방어를 돕기 위한 개입’이었고, 왈찌가 분류한 개입 중에서는 역개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아래의 트루만 및 애치슨의 인식에서도 확인되며, 그리고 더욱이 휴전당사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분명하다.

더욱이 미국의 최고지도자들은 한국전쟁을 크게 네 가지 차원, 즉, 첫째, 미소의 대결, 둘째,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대결, 셋째, 유엔 대 반유엔의 대결, 넷째, 인류 운명이 걸린 대결로 인식했다. 즉, 미국의 리더들이 한국전쟁을 남북한의 전쟁으로만 인식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내용상 ‘남한의 방어전쟁’이라기보다 미국, 자유진영, 유엔, 그리고 인류를 위한 방어 전쟁이었다. 이점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주한 미국대사 무초(John J. Muccio)는 한국군 및 한국군사고문단(KMAG)로부터 한국전쟁 발발에 관해 보고를 받은 후, 6월 25일 오전 10시(워싱턴 시간 24일 밤 9시 26분)에 “북한군의 침략이 4시 웅진에서 시작되어, 6시 개성, 춘천 지역과 동해안 강릉지역 등 육해 양면으로 확대되었고, 9시에 개성이 10대의 탱크에 의해 함락되었으며, 강릉의 전투상황은 불분명하다”라고 국무성에 보고하였다.⁵²⁾ 이후 국무장관 애치슨은 두 시간 후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쟁 발발과 관련하여 전화 보고를 했으며, 동시에 러스크(Rusk) 차관보, 페이스(Pace) 육군장관, 제습(Jessup) 대사 등과 상의하여 유엔 안보리 소집 건의를 결정했다.

또한 6월 25일 오전 10시경(워싱턴 시간) 주소련 미국대사 커크(Alan G. Kirk)는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적 군사행동은 명백한 소련의 도전이다. 이는 소련 공산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세계에서의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은 확고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타전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립은 미국정책과 미국이 지도하는 유엔 행동의 산물이며, 대한민국의 붕괴는 미국에 대해 일본, 동남아 및 다른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³⁾ 즉 커크는 북한의 남침이 내전의 형식을 띤 미소의 대결이자,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 불력의 대결임을 명백히 밝혔다.

한편 트루만 미대통령은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 자택에서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50) 유엔헌장 제 2 조 (...) 비회원국에 대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김명기, 1983, 169.

51) Michael Walzer, 1977, 100.

52) FRUS, 1950, 125-126.

53) FRUS, 1950, Vol. VII. 139.

공산주의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히틀러와 못솔리니, 그리고 일본인이 한 것처럼 꼭 같이 행동하고 있다. 만일 남한이 침략당하는 것이 목인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더욱 용기를 얻어 우리 해안에 보다 가까운 나라들을 공격할 것이다. 만일 자유세계로부터 아무런 반대 없이 한국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이 인정된다면, 어떤 작은 나라도 더 강한 공산주의 국가의 위협과 침략에 대해 저항할 용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도전을 받지 않고 내버려 두어 진다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것과 같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⁵⁴⁾ 또한 한국에 대한 이 불법적인 공격이 저지되지 않는 한, 유엔의 기반과 원칙이 위기에 봉착하리라는 것도 명백했다.⁵⁵⁾

이상의 트루만의 인식은 커크 보다 확대 심화된 것이었다. 즉, 북한의 침략은 1) 불력의 전쟁이자, 2) 유엔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며, 3) 3차 세계대전의 전조로 이해되었다. 트루만의 전쟁인식은 그야말로 한국전쟁에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었다.⁵⁶⁾ 한편 애치슨(Dean Acheson) 미 국무장관은 한국전쟁 발발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이 전쟁은 ---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리의 입장에 대한 공공연하고도 놀랄만한 노골적인 도전이었다. 이 도전에서 물러나는 것은 그에 대처할 우리의 능력에서 보아 미국의 힘과 위신에 극히 해로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련의 이해에 의해 중요한 지역이 정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말과 제스처로 저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힘의 행사를 위한 각오를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즉, 그는 북한의 도전을 저지하고, 미국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UN에서의 분쟁 조정 정도가 아니라 무력행사 즉, 군사 개입의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애치슨의 입장은 커크 보다도 제한적인 것이다. 그는 미국에 대한 도전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한 미국의 최고 결정자들의 인식은 상당히 유사하며

54) 트루만은 그의 회고록, 『시련과 희망의 세월』 서문에서 “내가 대통령직에 있을 동안 위급한 사태로 인한 혼란과 갖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지배했고 내가 생각하고 수행했던 다만 한가지 목표는 3차대전을 막는 것이었다”고 하였다(해리 트루만, 1968. 4). 주일 정치고문 시발드(Sebal) 또한 “소련의 반대 행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더라도 미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남한이 도발적인 무력 공격에 의해 점령되는 것은 곧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FRUS, 1950, Vol. VII. 140).

55)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NY: Doubleday, 1956), 332-333; 해리 트루만 손세일역, 1968, 309.

56) 트루만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우리의 연합국과 우방국에게 외교대표를 통해서 자유국가에 대한 이러한 무력침공에 대해 단호한 대항조치를 하는 것이 평화유지에 불가결하다는 미국의 견해를 전했다. 한국사태가 서방의 힘과 결의의 상징으로서의 중대성을 갖는 것임을 알리고자 했다. 지금의 단호한 결의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새로운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었다. ... 만일 우리의 지원 아래 수립되었고 유엔의 행동으로 그 자유가 확인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실패한다면 소련에 인접한 제국 인민들의 신뢰에 극히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남한에 대한 위협에 단호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란, 베를린 및 그리스에 이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활동에 대처하는 네 번째의 성공이 될 것이다. 해리 트루만. 1968. 315-316.

대결의지는 확고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초기부터 한국전쟁이 소련 팽창주의의 산물이며, 미국과 자유진영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즉각 대처해야 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즉각 “이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⁵⁷⁾ 미국은 이 위기를 타개하지 않으면, 미국이 수립한 대한민국의 파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해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도력이 손상되어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체제 구축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 이점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중국의 참전에 대한 모택동의 인식과도 동일하다.

이에 1950년 6월 27일 낮 12시(워싱턴 시간) 트루만 대통령은 북한과 소련의 예상과는 달리, “미공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⁵⁸⁾ 미국은 군사적 지원을 즉각적으로 밝혔던 것이다. 이에 전쟁개시 5일 만인 6월 29일 해질 무렵에 B-26 폭격기 18대가 평양비행장을 폭격하였고, 7월 1일에 미 제24사단 선발대가 부산에 상륙하였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실제 침략자는 북한이 아닌 소련이고, 소련의 이 도전에 대하여 유엔을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트루만과 애치슨의 최초 결정에 대해 미국 내에서 반론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⁵⁹⁾ 이러한 암묵적 동의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전쟁발발 두 달 전인 1950년 4월 14일에 채택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비밀 문서 NSC-68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소련의 군사력이 유럽과 중동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와 캐나다에까지 원폭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응할 미국의 군사력은 충분한 것이 못되므로 군사력의 증강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이었다.⁶⁰⁾ 그리고 이 문서의 핵심 사항은 소련의 군사적 진출로 자유주의 진영이 위협을 받는다고 간주되면 군사력을 행사하여 소련의 팽창을 봉쇄할 것을 표명한 것이었다. 요컨대, 미국의 군사개입 의도는 냉전체제와 대소 봉쇄정책이 위태로워지고, 세계적으로 미

57) 박명림, 2002, 159. 1951년 유엔군의 구성을 살펴보면, 지상군의 경우 미군의 비율은 50.32% 한국군은 40.10%, 기타 16개국은 9.58%, 공군의 경우, 미군은 93.38%, 한국군은 7.45%, 기타 16개국은 6.66%, 해군의 경우 미군은 85.89%, 한국군은 7.45%, 기타 16개국은 6.66%에 이르렀다. 재정면에서 유엔군의 파병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엔에서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참전 각국이 부담했으며 병참은 거의 미국이 지원했다. 김수오, “한국전쟁 중 미국의 대 UN정책: 전쟁의 정당화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1991), 31.

58) FRUS 1950 vol. VII, p.160. 워싱턴 시간으로는 6월 25일 트루만 정부는 또한 이 날 소련에게 북한이 남한 공격에 책임이 없다면,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즉각 북한 군대를 철수케 하라고 요구하는 각서를 보냈다. 이 각서에 대해 소련의 외무차관 그로미코는 주소련대사 Kirk에게 소련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남한 정권이 북침을 도발했으며, 또한 소련은 타국의 국내문제에 불간섭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소련의 당시 외무차관 그로미코는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불참하는 것은 미국의 반대로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중국이 안보리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이 기구가 합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Callum A.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N.Y: Free, 1986), 48.

59) 1950년 6월 28일 미 상원은 징병연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60) 이 NSC 68은 전쟁 발발 후, 7월 1일 초안이 다시 토의되고, 8월 25일 제4수정안(NSC 73)으로 다시 채택되었다.

국의 지도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었다.⁶¹⁾

이러한 미국의 전쟁인식 및 개입 의도가 정당한가는 매우 논쟁적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국과 유엔의 전쟁 개입 과정이 합법적인 권위에 의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세 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동의를 획득했다. 이러한 개입 절차의 정당성이 개입 자체의 정당성과 완전히 등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개입 절차는 전쟁 개입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긴급 서한에서 유엔 한국위원단은 “이 사태는 전면 전쟁의 성격을 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이 평화의 파괴(a breach of the peace)를 초래한다고 규정하고, 북한 당국에게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과 “북한 병력을 38선 이북으로의 철수시킬 것”을 결의하였다.(한국전쟁 관련 제1차 결의안)⁶²⁾ 이 결의안은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북한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침략국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하여 즉각적인 정전과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격퇴시키고 한국을 원상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한 시의적절한 결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6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대표의 불참 하에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으로부터의 병력에 의한 무력적 공격은 평화의 파괴를 구성한다(...) 유엔 가맹국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무력적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결의하였다.(제2차 결의안)⁶³⁾ 이 결의안은 미국 참전에 관한 트루만의 공식성명에 대한 재결의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제2차 결의안에 대해 당시 59개 유엔 회원국 중 53개국이 지지를 표명하고, 그 중 16개국이 군대의 파견을 신청하였다.⁶⁴⁾ 그러나 소련, 중공, 북한을 포함한 5개국은 소련과 중공의 결석을 이유

61) Callum A. MacDonald. 1986. 27.

62) United Nations, Document S/1501; FRUS 1950 vol. VII, 211.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결의안은 상임이사국들 중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9개국의 찬성과 유고슬라비아의 기권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라우 인도대사, 파지베이(Fawzi Bey) 이집트 대사, 스타벨(Bredo Stabell) 노르웨이 대사 등은 결의안 초안의 “침략 행위”용어 사용에 대해 반대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내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침략이라는 용어 사용을 반대하였다.

63) United Nations, Document S/1511. 미국의 결의안은 찬성 7(중화민국, 쿠바, 에쿠와도르,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미국), 반대 1(유고슬라비아), 결석 1(소련), 불참 2(이집트, 인도)로 채택되었다. 불참한 이집트와 인도 대표는 후에 기권이라는 의견을 표시하여 동결의안을 수락했다. 11개의 이사국들 중 유고슬라비아는 “한국은 강대국 세력권의 희생물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과 국제평화의 관점에서 스스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북한대표의 유엔 초청과 더욱 강력한 전쟁 중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결의안(S/1509)를 제출하였다.

64)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지상군 제공을 신청한 21개국 중 16개국이 실질적으로 한국 전선에 군대를 파견했으며, 해군 부대를 제공한 국가는 9개국, 공군 부대를 제공한 국가는 5개국, 기타 물자를 제공한 국가는 10여 개국에 달하였다. 한국전쟁 중 원조를 제공한 국가는 총 39개국이었는데, 그 중 이탈리아는 유엔의 비회원국이었다. 그리고 ILO, WHO, IRO 등 9개 국제기구가

로 이 결의안의 위법성을 주장했다.⁶⁵⁾ 그러나 이 표결 결과는 공산 진영의 대외정책상의 명백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1950년 7월 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한국전쟁과 관련한 제3차 결의안은 앞서 채택된 6월 28일의 결의안과 더불어 유엔군총사령부가 창설되는 근거가 되었다. 7월 7일의 결의안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거하여 군대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가입국은 미국 대통령 하의 연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며, “미국이 군대의 지휘관을 임명하도록 요청 한다”는 것이었다.⁶⁶⁾ (제3차 결의안) 또한 이 결의안은 “연합사령관의 재량에 따라 북한군에 대한 작전과정에서 각 참전국의 깃발과 유엔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결의에 의해 트루먼 대통령은 7월 8일 연합사령관에 맥아더(Douglas MacArthur)를 임명했다. 맥아더는 7월 24일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유엔군사령관으로서 미국동사령부(GHQ, Far East Command)와 유엔군사령부(GHQ, United Nations Command)를 통합 운영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사무총장이 아닌 ‘미국 대통령’의 결정 하에 운영되었다.

요컨대, 이상의 세 번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은 유엔군의 창설을 통해,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하였다. 즉, 제1차에서는 북한의 정전과 철군을, 제2차에서는 남한에의 군사 및 기타 원조 제공을, 제3차에서는 미국 대통령하의 연합사령부 구성을 결의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 전투를 지원할 유엔군의 지휘계통은 유엔사령관이 유엔에 직접 보고하고 유엔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합참의장, 국방장관을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계통을 통해 지휘를 받는 체계였다. 내전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유엔을 통한 미국의 개입으로 사실상 ‘미국의 전쟁’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미국 및 유엔의 전쟁 대응에 적극 지지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었으므로 7월 15일 맥아더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이양했다.⁶⁷⁾ 이승만은 맥아더에게 보낸 공한에서 “현재와 같은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맥아더 또는 맥아더가 위임한 사령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전하였다. 이에 맥아더는 7월 18일 회신에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접수했다.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국회의 비준에 의한 성문화된 조약이나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통고와 맥아더의 승인을 통하여 미국에 이양되었다. 비상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 본다면 적법 절차가 거의 무시되었다.⁶⁸⁾

각종 비군사 지원을 제공하였다. 김수오, 1991, 24. 31.

65) 김명기, 1983, 165.

66) United Nations, Document S/1588; FRUS 1950, vol. VII, p. 255. 영국은 한국에 대한 지원의 조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미국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의 창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결의 초안을 프랑스와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이 안은 7대 0, 기권 3(이집트, 인도, 유고), 결석 1로써 채택되었다.(S/1588)

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1981), 629-631.

68) 미국은 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작전지휘권과 미국의 군사개입 없이는 남한이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불가피한 현실, 그리고 남한정부의 휴전절대불가 입장 등을 이유로 한국이 전쟁의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에 한국대표가 참가하는 것을 적극 배제하였다.

9월 1일 트루만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한국인들은 그들의 소망대로 자유롭게 통일독립한국을 수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한국에 있어서 미국의 유일한 목적은 한국인이 그러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미국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 미국의 목적이 통일독립한국의 수립을 돕는다는 것이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주장은 순진한 명분론이다. 미국의 주된 목적은 그 보다도 자유주의 진영을 결속시키고, 그 안에서 자국의 지위와 이익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목적을 유엔의 대의 아래 수행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세계의 이익으로 만들어 싸웠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순진한 정의의 구현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적절하고 정당성 있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개입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미국의 국가 이익이 유엔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다 보편적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했다.

2. 소련 및 중국 개입

다음은 소련 및 중국의 개입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련과 중국은 한국전쟁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개입하였는가? 소련은 미국의 즉각적 개입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미국과는 다른 소련의 비공개적 개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소련이 미국의 즉각적 개입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즉각 개입하자, 소련은 한국 사태를 국내 문제로 규정하고 개입에 반대했다. 1950년 6월 29일 「미국정부에 보내는 소련정부의 성명」에서 소련은 “한국전쟁은 이승만의 복침에 의한 것이며, 유엔에서의 결정은 무효로서 미국의 개입은 철회되어야 하며, 특히 미국의 경찰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하였다.⁶⁹⁾ 이 성명은 6월 28일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공표에 대한 소련 최초의 공식적 대응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10여일 만에 유엔은 집단안전보장의 명목 하에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을 파견했다.

소련의 주장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첫째, 아무런 조사 없이 단지 미국 측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북한을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자로 규정하고, 남한에 군사를 원조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둘째, 유엔 결의의 내용이 한 국가의 내정 간섭과 관련된 중요한 결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임이사국의 찬성을 얻지 않고 자국의 불참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한국문제에 대한 결의는 모두 불법이다. 유엔 헌장 제27조 3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 전원일치를 포함한 7개국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결여되었다.(김수오 1991, 27) 요컨대, 소련은 미국이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엔에 의해 미국의 입장을 승인케 함으로써 내정 간섭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69) FRUS, 1950 vol. VII, 229-230.

주장하였던 것이다.

소련은 1950년 1월 13일부터 중화민국 대표가 유엔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항거로써 유엔안보리에 불참하고 있었다. 소련대표는 자국이 의장직을 맡게 되는 8월 1일까지 안보리에 불참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이 기간 동안에 안보리를 통해 한국전쟁과 관련한 세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8월 3일, 소련대표는 제482차 유엔 회의에서 “남북간의 투쟁은 내란이며 (...)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 간의 전쟁이며 국내적 분쟁”이므로 유엔의 개입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하였다.⁷⁰⁾

절차적인 측면에서 소련의 항의는 합리적이다. 미국은 유엔의 적법 절차를 상당정도 무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소련은 한국전쟁 개전의 직접 당사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침은 사실이 아니며 한국전쟁이 내전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즉, 소련은 기만에 의해, 그리고 ‘절차’에 의해 실질적 정의와 진실을 훼손하였다.

그러면, 소련의 개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자. 스탈린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결정적인 무기 전부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개입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전쟁발발 직후 현지에 파견된 고문단들을 대부분 철수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흐르시초프는 후일 “이러한 조치는 우리의 장교가 한 명이라도 생포되어 그것을 빌미로 미국이 우리의 전쟁 개입을 비난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라고 하였다.⁷¹⁾ 즉, 소련은 고문관 형식을 빌린 소규모의 참전 형식으로 전쟁을 개시하였다.

북한 민족보위성 공병국 훈련참모였고, 전쟁 당시 제2군단 공병 부부장이었던 주영복은 소련의 개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단 지휘부가 지촌리에 들어오자 소련군 고급「옴저버」들은 언제 어디로 갔는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공격작전이 계획대로 개시되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자 더 이상 (38 이남으로) 남하하지 않고 후방으로 돌아간 것이다. ... 미국은 세계평화 유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기치를 들고 개입을 합법화하고, 전세계 이목이 집중하는 가운데 때로는 지휘권마저 빼들고 싸우지만, 소련은 시종 이면에서 조종하거나 공작했다. 그들은 어떤 위성국가나 준예속국가에서도 해방과 혁명·계급투쟁을 구실로 양(陽)에서 나타나 음(陰)에서 사라지거나 음에 나타나 양에 사라졌다.⁷²⁾

요컨대, 공격 진영이었던 소련은 시종 이면에서 조종하고 공작하는 전략으로 개입하였다. 그 반면, 방어 진영이었던 미국은 참전을 공표하고, 지휘권을 장악하는 형태로 참전하였던 것이다. 주영복의 이러한 주장은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여러 미군정보들에 따르면, 전쟁 직전 소련군고문은 각 사단본부에 배치되었다. 규모는 대략 15명에서 17명 정도였다. 그들은 군사부분만이 아니라 선전부분까지 배당되어 있었다. 특수부

70) R.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1946–1967, Document and Commentary, II, Asia*(London: Oxford Univ. Press, 1970), 175.

71) Kikita Khrushchev, *Khrushchev Remembers— The Glasnost Tapes*(1990), 146; 박명림, 2002, 94 재인용.

72)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고려원, 1990), 268.

대, 이를테면 탱크부대나 포병부대 등에서 소련에서 제공한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대급까지 소련 고문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군정보는 38선 이남까지 따라온 소련군은 북한군 각 사단본부당 장교 10명, 사병 5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⁷³⁾

요컨대, 소련은 무기지원과 고문단 지원형식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하였다. 그리고 소련은 군사 개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참전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공개적인 장에서는 개입을 은폐하고 미국과 유엔의 개입을 비난했다. 그런 점에서 소련은 개입의 정당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기만과 은폐에 의해 유엔의 적법한 절차를 무력화하고자 했다. 이것은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공산주의의 대의라는 관점에서는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 정의라는 관점과는 배치된다.

다음은 소련의 개입 의도를 살펴보자. 우선 소련의 유엔안보리 불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탈린은 전쟁개시부터 안전보장이사회 불참의사를 갖고 있었다. 스탈린은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y Gromyko) 외무차관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치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로미코는 스탈린에게 “우리 대표가 결석하면 안보리는 뜻대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되며, “이 가운데는 다른 나라로부터 한국에 유엔군 가면을 씌운 군대를 파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명림은 “소련이 안보리에 참여하여 북한을 편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련 자신의 개입을 반증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중국의 유엔 가입과 같은 문제는 ‘표면적 명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국전쟁을 결정할 때까지의 과정처럼 참여거부로써 불개입을 보여주려 하였다”는 것이다.⁷⁴⁾

소련의 이러한 입장은 1950년 8월-9월에 개최된 안보리의 한국문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확인된다. 소련은 매달 알파벳 순서로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이 순환되는 관례에 따라 자신이 의장직을 맡게 되는 8월 1일부터 안보리에 참석하였다. 이에 7월 31일 안보리 회의(479차)에서 미국은 ‘남한에 대한 침략의 제소’에 관한 결의 초안(S/1653)을 제출하였고, 소련은 의장 직권으로 미국안과 함께 ‘중국의 대표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 인정’과 ‘한국문제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의 초안(S/1655)을 의제로 상정하였다. 8월 중 모두 14회의 안보리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중 13개 회의에서 한국문제가 토론되었으나, 소련과 미국 양 진영의 논쟁으로 일관하였다.⁷⁵⁾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복귀한

73) Daniel S. Stelmach, "The Influence of Russian Armored Tactics on the North Korean Invasion of 1950",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History, Saint Louis University(1973), 123-125; 박명림, 2002, 94 재인용.

74) 박명림 2002, 116.

75) 예컨대, 8월 4일 소련은 “분쟁의 두 당사자가 모두 참석할 것”을 주장하는 결의초안(S/1668)을 제출하였다. 즉, 소련은 “제1차 안보리 결의는 미국무성에 종속된 도구인 이승만 정권과 유엔 한국위원단 보고에 따른 일방적인 편견에 기초한 결의이다. 북한이 이 결의에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분쟁 당사자들을 모두 초청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가능케 한다. 북한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안보리가 전쟁을 중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대만, 노르웨이, 인도는 “제1차 안보리 회의에서 남한 대표(장면)만 초청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한 대표는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김수오. 1991. 34-35.

이래로 안보리는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을 채택하기 곤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미국은 소련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 총회 활동에 의존하게 되었다.⁷⁶⁾

요컨대 스탈린의 전쟁 의도 및 목적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통일을 위한 북한의 지원보다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였다. 중국 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에 의하면, “스탈린은 만일 소련이 전투기를 지원해 아군을 엄호했다가 우리가 패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말려들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던 것이다.⁷⁷⁾ 이 때문에 소련은 중국이 출병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대신 소련은 공군전투기들을 북한에 보냈다.⁷⁸⁾ 이처럼 소련은 중국을 전면에 내세우고, 미국은 유엔의 깃발아래 한국전쟁을 수행했다. 그것은 미소의 직접대결을 회피하려는 의도의 산물로서, 제3차 대전의 발발을 우려한 제한전쟁⁷⁹⁾의 수행방식이었다.

박명림 연구에 따르면, “전통주의의 가정과는 달리, 스탈린은 전쟁을 동의하면서, 또는 진행하면서 전쟁결정시의 동의는 물론, 전쟁의 진행과정이 보여주듯 획득가능해 보이는 소련국익을 추구하면서도 소심함을 넘어 교활하게 개입을 은폐하고 미국과의 대결을 회피하려 최대한 노력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이 통일의지를 활용하거나, 또는 그를 버리더라도 스탈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의 불개입 내지는 최소개입을 통한, 그럼으로써 미국과의 대결을 회피하는 가운데 추구되는 소련 국익의 확보였다”는 것이다.(박명림 2002, 27)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탈린의 개입 방식은 확실히 은폐의 부도덕함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과의 대결을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차 세계대전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에 비해 약세인 소련으로서는 전쟁 회피에 더 큰 국익이 있었던 것이다.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는 트루만에게도 동일했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 즉 제한전의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소련에게 더 절박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국의 개입을 살펴보자. 중국은 한국전쟁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참전의 의도는

76) 미국은 1950년 9월 중순 이후에 38선 북진과 북한지역 점령정책을 둘러싼 유엔의 승인, 그리고 11월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중국군의 참전을 둘러싼 논의를 유엔총회로 대응하게 되었다. 김수오, 1991, 39. 미국은 제5차 총회 의제에 “평화를 위한 단결된 행동”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기능이 총회를 통하여 논의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 등 7개국에 의해 제안된 이 결의안은 10월 19일 제369차 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50 대 5, 기권 3으로 통과되었고 이것은 11월 3일 유엔 총회 전체회의에서 결의문으로 채택되었다.

77) 홍학지, 『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60.

78) 할러데이(Jon Halliday)의 연구에 따르면, 소련항공기는 중국공군기의 색칠을 하였으며 조종사는 중국군 복장을 하였고 중국어를 쓰도록 교육받았다.

79) 제한전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이다: 첫째, 전쟁의 범위를 지리적 측면에서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국지전을 제한전이라고 한다. 특히 미국과 소련이 세계적인 차원의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양국 간의 전면전(general war)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둘째, 핵무기와 같은 특정 무기의 사용이 전쟁에서 제한될 경우, 제한전이라 한다. 셋째, 전쟁의 결과가 뚜렷한 승자 없이, 전쟁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게 전쟁이 종결되었을 때 제한전이라 한다.

무엇이었는가? 개입의 과정과 개입이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참전은 미국의 위협, 스탈린의 권고, 북한의 지원호소, 중국의 북한에 대한 동양적 의리⁸⁰⁾ 등의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이루어졌다.⁸¹⁾ 연구에 따르면, 전쟁 초기부터 소련과 중국은 미군과 남한군의 북진과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 모택동과 스탈린은 7월 초에 이미 미군의 38선 월경이 있을 경우, ‘참전(중국)–공군지원(소련)에 사실상 합의하고 있었다⁸²⁾

중국군의 한국전 개입 과정은 두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공공연하게 ‘유엔군 북진 시 개입’한다는 경고를 거듭하였다. 또한 소련 및 북한과의 협조 하에 실제 전선 부근에서 중공군 부대 이동 등의 개입 준비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안보리에 불참한 소련과는 달리, 중국은 보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중국의 대외적 경고 조치는 전적으로 중국이 전쟁을 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예컨대 8월과 9월에 걸친 미군기의 중국 연공 침범사건 등은 중국 내의 항미원조 운동을 고조시켰다. 유엔에서의 중국 대표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이 취한 정책 역시 중국의 대미인식을 악화시켰다. 9월 19일 UN 총회 결의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표권 불인정을 주장하고, 대만 대표권을 관철시켰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고조치 그 자체는 전쟁이라는 최후수단에 이르기 전, 중국이 취한 정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은밀하게 진행된 중국의 개입 과정을 살펴보자. 1950년 9월 15일 이후, 유엔군이 반격 작전에 성공하자, 김일성과 박헌영은 구원요청 친서를 스탈린에게 보냈다. 이에 스탈린은 10월 1일 주중 소련대사 로신(N. V. Roshchin)을 통해 모택동과 주은래에게 전문을 보내 중국의 참전을 강력하게 종용하였다. 이 날은 남한군이 38선을 돌파하고 맥아더가 북한에게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낸 날이었다. 스탈린의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 시점에 중국동지들이 북조선에 대한 지원확대를 고려중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최소한 5-6개 사단을 38선으로 이동시켜 중국군의 엄호 하에 북조선군 병력이 이북으로 빠지도록 도와주기 바람. 중국군은 물론 중국사령관이 지휘하되 의용군으로 위장하기 바람.⁸³⁾

이에 모택동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팽덕회를 총사령관으로 결정하고 출병 일자를 10월 15일로 결정하였다. 10월 2일 모택동은 당의 결정사항을 스탈린에게 전보로 알렸다.

우리는 지원군의 이름으로 일부 군대를 조선 국경 안으로 파견해 미국과 이승만 군대와 전투를 벌여 조선 동지를 돕도록 결정했습니다. 전 조선이 미국인에게 넘어가 조선의 혁명역량이 근본적인 실패로 끝난다면 미국 침략자들은 더욱 기고만장할 터이고 이것은 전 동양에 불리할 것임

80) 모택동은 자신의 장남 모안영(毛岸英)을 참전하도록 결정하였다. 모안영은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의 기요비서, 러시아번역, 사령부작전처 참모를 지냈다. 그는 1950년 11월 25일 미군기의 지원군사령부 폭격으로 사망하였다. 모택동의 지시로 모안영의 시체는 중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땅에 묻혔다. 박명립, 2002, 498-499.

81) 박명립, 2002, 496.

82) 박명립 2002, 465.

83) 『한국전쟁관련 러시아외교문서』, 55; 박명립, 2002, 469.

니다. ... 중국 군대가 조선 땅에서 미국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사상(우리는 지원군의 이름을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미국은 선전포고를 하고 중국과 전쟁상태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은 적어도 중국의 많은 대도시와 공업기지를 폭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해안지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⁸⁴⁾

이러한 모택동의 전쟁 인식은 트루만의 인식과 형식상 몇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모택동은 첫째, 남한이 미국의 괴뢰이며, 둘째, 미국의 개입은 침략이고, 셋째, 미국의 세력 확대가 공산진영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인식했다. 전쟁에 대한 인식은 이처럼 당파적인 것이다. 그러나 10월 4일에 개최된 중앙정치국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건국초기의 중국의 곤란한 상황을 들어 출병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참전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특히 팽덕회에게 “김일성이 위급하게 되었는데도 우리가 내버려둔다면, 후에 우리가 위급할 때도 스탈린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두가 이렇다면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것은 한낱 빈 껍데기일뿐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개입은 미소에 비해 수동적이고 강요된 것이었다. 그 이유는 건국초의 불안정과 국력의 열세, 그리고 진영내의 위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의전쟁론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자국의 안보위협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개입 이후, 주북경 인도대사 파니카(Panikkar)가 그 해결 방안으로 “중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 바와 같이,⁸⁵⁾ 국제회의에서의 사태 해결 노력이 보다 우선되어야 했다. 북한에서의 전쟁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잠정적이고 추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개입의 정당성은 제한된 것이다. 그런데 유엔과 국제정치에서의 미국 정부의 위협적인 태도는 중국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준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9일 홍콩 총영사 윌킨슨(Wilkinson)은 “중국의 국경지대 이익 보호 및 만주 피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불침공 선언이 필요하다”고 국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⁸⁶⁾

이상 중국의 개입은 북한을 도와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 보다는 자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북한 지역이 미국의 영향력 하에 떨어진다면, 중국의 안보위협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만주지역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정복한 이민족들의 발원지였으며, 19세기 중반 이후 1945년까지 러시아와 일본이 중국 침략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었다. 더구나 중국은 건국초의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리고 중국이 개입한 전쟁은 한국전쟁이라기 보다 미중전쟁 - 그들은 항미원조전쟁이라 했다 -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전쟁개입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의의 소지가 있다.

84) 홍학지, 2008, 59.

85) FRUS 1950, Vol.VII, 1093-1094.

86) FRUS 1950, Vol.VII, 1123.

IV. 한국전쟁 수행의 정당성

1. 이중 효과 원리와 미국의 공중폭격 사례

전쟁 수행에 있어서 정의(jus in bello)의 문제는 전시에 교전 당사국과 참전 군인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의 문제이다. 왈쩌가 제시한 전쟁수행의 정의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군사 및 정치 지도자나 전장의 병사가 전투의 승리 자체에 대한 고려 못지않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하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다. 즉, 전쟁은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와 목적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쟁의 공중폭격 문제를 살펴보자.

왈쩌는 전쟁 관습 혹은 규약(war convention)에 의거하여 전쟁수행에 있어서 정의의 기준을 구성하였다.⁸⁷⁾ 이러한 전쟁 관습 혹은 규약은 정당한 명분에 의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과 부정의한 명분에 의해 전쟁을 수행하는 양측 군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⁸⁸⁾ 그러므로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이 전쟁 개시의 정의를 위반한 경우, 전범으로 다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장교들과 병사들도 전쟁 수행의 정의를 어길 때는 전범 처벌의 대상이 된다.⁸⁹⁾ 다시 말하면, 전쟁 개시의 정의 여부에 관계없이 교전 당사국들의 군인들은 전쟁 수행의 책임 문제에 대해 “도덕적 동등자”(moral equals)가 된다.⁹⁰⁾

왈쩌는 전쟁 수행의 정의에서도 전쟁개시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가 전쟁 수행의 “근본적 원칙(fundamental principle)”이라고 주장한다. ⁹¹⁾ 그는 이러한 인권에 관한 근본적인 원칙으로부터 군인에 대한 무력사용의 허용과 민간인에 대한 무력사용의 금지가 도출된다. 첫 번째 전쟁 규약은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군인은 (그들이 부상당하거나 포로가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²⁾ 즉 군인

87) 전쟁관습은 “군사적 행위에 관련하여 우리의 판단을 형성하는 일련의 규범, 관행, 직무규정, 법률적 규정, 종교적 철학적 원리들, 상호 조정 방식”등을 지칭한다(Michael Walzer, 1977, . 44, 127).

88) Michael Walzer, 1977, 21, 127.

89) Michael Walzer, 1977, 289, 304, 58, 127

90) Michael Walzer, 1977, 127, 21. 이와 관련하여 롤즈는 “전쟁행위에 있어서 질서정연한 만민들이 세 종류의 집단을 신중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세 집단은 무법적 국가의 지도자들 및 관료들, 그 국가의 군인들, 그리고 그 국가의 민간인이다. 롤즈는 그 사회의 민간인 성원(civilian members)들은 전쟁을 준비하거나 일으키는 사람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쟁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및 군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존 롤즈, 장동진외역. 『만민법』(서울: 이끌리오, 2000), 152-153.

91) Michael Walzer, 1977, 135.

92) 마이클 월쩌는 ‘전쟁이 시작되면 군인은 부상 중이거나 포로로 잡힌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실정 전시법의 첫 번째 원리를 비판한다. 월쩌는 전쟁과 직접 관계 없는 ‘군인’은 비록 그가 군복을 입은 군인이라고 해서 정당하게 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판단을 위해 영국 공리주의자 헨리 시지윅(Henry Sidgwick)의 두 가지 원리, 즉 ‘유용성’(util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을 소개한다. 전쟁에서 과도한 위해(危害)가 아니라면 전시에 어느 정도의 위해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도한 위해’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기준은 일반적으로 ‘전쟁필요’로 불리는 전쟁의 승리라는 목적이다. 두 번째 기준은 비례성(proportionality)이다. 비례성의 원리는 이 위해의 정도를 전쟁승리라는

은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가지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⁹³⁾ 두 번째 전쟁 규약은 “비전투원은 언제든지 공격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전투원과 비전투원에 대한 구분 혹은 구별(discrimination)의 원칙과 전투에서의 비전투원의 면책 혹은 면제(noncombatant immunity)의 원칙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쟁 수행에서는 이상의 근본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전투행위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왈쩌는 “이중효과의 원칙”(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을 다룬다.⁹⁴⁾ 이중효과의 원칙은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투행위는 그러한 나쁜 결과를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왈쩌는 특히 폭격이 이중효과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하나는 적군을 사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처에 있는 어떤 민간인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⁹⁵⁾ 그러나 왈쩌는 이중효과의 원칙은 비록 비례성의 원칙의 제약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제약은 약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행위에 대한 “포괄적 정당화”(blanket justification)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한다.⁹⁶⁾

그래서 왈쩌는 여기서 이중효과의 원칙은 보완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중 효과는 단지 두 가지 결과가 두 가지 의도(double intention)의 산물일 때에만 옹호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선”이 성취되고; 두 번째, 예견할 수 있는 악이 가능한 한 축소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였다.

행위자의 의도가 좋아야 한다. 즉 그는 오직 수용할 만한 결과를 엄밀히 목표로 해야 한다. 나쁜 결과가 그러한 목적의 하나여도 안 되고, 그러한 목적의 수단이어도 안 된다. 발생할 나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 대한 손해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Michael Walzer, 1977, 155).

이러한 보완을 거쳐 왈쩌는 “만약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군인들의 생명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한다면, 그러한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⁹⁷⁾ 나아가 그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위험의 한계는 민간인들의 의도되지 않은 죽음과 합법적인 군사 작전 안에서” 라고 하였다.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와 비교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93) Michael Walzer, 1977, 138.

94) Michael Walzer, 1977, 153.

95) Michael Walzer, 1977, 155.

96) Michael Walzer, 1977, 153.

97) Michael Walzer, 1977, 156.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이중효과의 원리에 대해서도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왈쩌가 배척하려고 했던 효용의 결과 계산에 의존하는 공리주의의 입장과 왈쩌의 권리준거적인 정의전쟁론은 결국 그 구별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중효과의 원리는 적어도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는 교전 당사국가가 비례성의 원칙을 지킬 때만 적용 가능한 것이지, 침략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이 침략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철학연구회편,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가』(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147.

왈쩌는 군인이 민간인의 위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이 위험을 감수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인을 덜 희생시키는 작전을 검토하여 수행한 사례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공습 대신에 특공대의 기습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1943년에 노르웨이 특공대가 점령된 노르웨이 페어몽크(Vermrk) 지역의 중수공장을 파괴 했다. 그 특공대는 영국 특수임무부대 소속이었다. 그들은 독일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중수의 생산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영국과 노르웨이 장교들은 공중 공격과 지상공격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그들은 지상으로 접근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민간인들이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공대에게는 위험한 일이었다. 첫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34명이 죽었다. 더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두 번째 시도에서 그들은 사상자 없이 성공을 거두었다.⁹⁸⁾

두 번째는 이중효과 원칙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의 공중폭격 사례를 들 수 있다.⁹⁹⁾ 왈쩌는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폭격 위주의 군사작전을 수행하여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Just and Unjust Wars)에서 영국 기사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미군의 한 대대가 낮은 언덕 그늘로 천천히 진군하고 있었다. 적군도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그때 그 계곡으로 아주 잘 가고 있었다. 그런데 자동소총이 우리 주위에 먼지를 일으키며, 거친 소리를 내면서 불을 뿜었다.” 군대는 진군을 멈추고 엄호를 하기위해 뛰었다. 세대의 탱크가 올라왔다. ... 15분 안에, 몇 대의 전투기들이 도착했고, 그 전투기들은 “로켓을 장착하고 산허리로 날아들었다.” 영국인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물질적인 권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투기술이었다. “주의 깊은 진군, 적군 휴대무기 발포, 대포, 공중 공격 근접 엄호, 대포, 주의 깊은 진군, 기타 등등”. 그 기술은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는데, 효과는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그 기술은 민간인 남성과 여성,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대량학살하였으며,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것은 항상 폭격이었다. 그리고 폭격은 특징적인 이중 효과(double effect)를 가진다: 하나는 적군 병사들을 사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처에 있는 어떤 민간인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장교들이 포병과 조종사에게 민간인을 죽이도록 명령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는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하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염려인 것이다. 어떠한 병사도 전시에 자신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장교의 명령을 받고 싶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그러나 그는 병사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또한 민간인들의 생명도 소중히 생각해야만 한다. 장교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써 병사들을 구할 수는 없다.¹⁰⁰⁾

미군은 폭격보다 수색을 선행해야 했지만, 그 반대로 탱크 공격과 항공기 폭격을 앞세

98) Michael Walzer, 1977, 157-159.

99) 왈쩌는 한국전쟁의 공중폭격 사례와 노르웨이 베모르크 공습 사례를 들어 이중효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Michael Walzer, 1977, 154-156.

100) Michael Walzer, 1977, 154-155.

왔던 것이다. 왓찌는 군인이자면 민간인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미군의 전투방식과 관련한 유사한 사례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1951년 1월 경기도에서 폭격 피해를 당한 홍원기와 이병훈은 “미군이 공중에서의 근접지원 폭격을 먼저하고, 이후 육상에서 여러 차례 포를 쏜 다음 미군이 마을에 진주했다”고 진술하였다.¹⁰¹⁾

미 공군은 전쟁 초기부터 우세한 항공 전력을 바탕으로 제공권을 장악, 공중폭격을 통해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은 근접지원작전 등을 위해 대규모의 공중폭격을 실시했다. 한국전쟁기 공중폭격 대상의 선별에 대한 미군의 정책은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리지웨이 미8군 사령관은 파괴정책의 기준을 지시했다. 1951년 1월 2일, 그는 각 군단장에게 “남한에서의 파괴정책”(Demolition Policy in South Korea)이라는 지시서를 하달했다. 이 지시서는 파괴정책의 적법한 목표물을 군사시설 및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전신·전화·항만시설 등에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 기반 시설과 적군의 은신처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정책적으로 금지했다.¹⁰²⁾

그러나 전체적으로 리지웨이의 정책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 공군기록을 보면, 전쟁발발 1개월이 경과된 시기를 전후하여 미군 항공기의 공중폭격 목표물은 현격히 변경되었고, 특히 1951년 1월 4일 후퇴 시기에는 공중 공격 목표물이 더욱 확대되었다. 즉, 인민군의 군사목표물만이 아니라, 게릴라 및 인민군 병력이 은둔해 있을 수 있다고 의심되는 마을 민가, 도시 등에 대해서도 공중공격이 확대 실행되었다. 더욱이 북한 인민군과 중국군이 침투해 있던 지역에는 민가 등의 주거지와 상관없이 초토화 정책(scorched earth policy)을 실행하였다.¹⁰³⁾

왓찌는 전쟁 수행에서 전쟁의 목적인 승리와 무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금하며, 또한 승리와 관련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끼치는 위해에 비해 성과가 별로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전쟁수행을 최소한 합리적으로 만듦으로써 전쟁의 불필요

101) 「신청인 홍원기 녹취록(2008.01.24). 6; 「신청인 이병훈참고인 최홍섭 녹취록」(2008.01.16), 6; 진실화해위원회, 「경기지역미군폭격사건」, 『2008년하반기조사보고서 2(2008. 7.9-2009.1.5)』(2009), 473.

102) Correspondence Official, Matthew B. Ridgway Papers Series 2, Box 9, USAMHI; Letter from HQs EUSAK to Corps Commands, 2 Jan 1951, Box 87, Almond Papers, USAMHI

103) 이는 첫째, 북한 인민군의 전술변화 때문이었다. 개전 1달 후에는 미공군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인민군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었다. 인민군은 이에 주간에는 병력과 장비를 은폐하고, 야간에만 공격하는 전술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미 전폭기가 인민군을 발견하고 공격하기가 어려워졌다(Josept C. Goulden, *Korea, the Untold Story of The War* (NY: McGraw Hill Book Co., 1982) 170-171). 둘째, 적군이 피난민으로 위장할 수 있다는 미군의 인식 때문이었다. 미공군이 인민군의 병참선을 대량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군의 전방부대는 보급이 떨어지지 않았고 공격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은 민간인의 이동 자체를 금지하고, 특히 밤에 연대의 허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여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32nd Infantry Regiment Command Report for 8 Jan 51," in 7th Inf. Div. 32nd Inf. Reg., Army-AG Command Report 1949-54, Box: 3252, RG 407, NARA.

한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극도의 비상상황과 국민보도연맹원 처형 사례

다음은 전쟁 자체 혹은 개시의 정의와 전쟁 수행의 정의 사이의 딜레마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왈쩌는 침략에 맞서 방어전쟁을 시작한 당사국이 국가공동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결정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생존의 권리를 위해서 전쟁수행중의 규범에 구속받지 않고 비상한 수단을 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왈쩌는 이런 상황을 ‘극도의 비상상황’(supreme emergency) 또는 “공동체의 생존(collective survival)과 인권(human rights) 간의 갈등” 상황이라고 하였다.¹⁰⁴⁾

왈쩌는 극도의 비상상황과 관련하여 영국이 나치 독일에게 물리고 있던 상황을 예로 든다.¹⁰⁵⁾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국의 독일 도시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 공격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⁶⁾ 극도의 비상상황에서는 정치적 공동체의 생존과 자유는 최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독일 민간인의 권리는 오히려 유보될 수 있고, 공리주의적 계산에 대한 제약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직 승리를 위한 군사적 필연성의 법칙만이 작동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⁷⁾ 왈쩌는 이러한 극도의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인권의 침해를 명령한 더러운 손(dirty hands)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도덕적 비난과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¹⁰⁸⁾

왈쩌가 주장하는 이러한 극도의 비상상황과 관련하여 보도연맹원의 처형 사례를 살펴보자. 이는 국가의 안보(생존)와 국민 보호(인권) 간의 딜레마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전시 상황에서 체제 저항 세력 또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어디까지 인가하는 점과도 관련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르면, 평화적인 반대 절차를 준수하는 반대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관용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적인 반대의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에 의해 가치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자기 보존의 원리에 따라 동일하게 폭력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다.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기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전황이 다급하게 전개되자, 한국정부는 수감되어 있던 좌익 정치범들과 국민보도연맹원 등의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했다.¹⁰⁹⁾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당일부턴 치안국(치안국장 장석윤)은 도 경찰국에 예비검속자에 대한 연행 및 구금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 청도에서는 1950년 6월

104) Michael Walzer, 1977, 251, 325.

105) 왈쩌는 극도의 비상상황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였다. 예컨대, 왈쩌는 독일 드레스덴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경우는 연합군이 전세를 회복하여 유리하게 되었던 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극도의 비상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Michael Walzer, 1977, 261.

106) Michael Walzer, 1977, 253.

107) Michael Walzer, 1977, 228.

108) Michael Walzer, 1977, 323.

109)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사건형무소 재소자 집단 살해 사건과 이 여기에 해당된다.

25일 직후부터 9월 중하순 경까지 보도연맹원 등의 예비검속자들이 군경과 우익청년단에 강제 연행되어 청도경찰서 유치장, 농업창고, 지서 인근 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1950년 7월 8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는 지역 계엄사령부의 주도하에 계엄군, 방첩대(CIC), 헌병, 경찰 등이 합동으로 예비검속 및 처형을 진행하였다.¹¹⁰⁾ 울산 지역의 경우, 이들은 1950년 8월 5일-2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등급에 따라 울산군 온양면 대운산 골짜기 등에서 집단 총살되었다.¹¹¹⁾

보도연맹원에 대한 처형은 전쟁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국민보도연맹원 처형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양분된다.¹¹²⁾ 한편에서는 “좌익 채소자들이 인민군에 가담했다는 위기 경험과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당시의 전황이 정부로 하여금 좌익사범들에 대한 처형을 내리게 했”는데, 결국 이러한 조치가 “대한민국을 위험에서 건졌다”고 평가한다.¹¹³⁾ 즉, 보도연맹원 처형은 급박한 상황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¹¹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한 지역이 인민군에 의해 함락될 경우, 인민군에게 동조할 것이 예상되어 정치범과 사상범을 서둘러 처형한 것”이며,¹¹⁵⁾ 이들에 대한 처형은 “법적·제도적 근거에서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도연맹원 처형은 “불법적 학살이며, 국가범죄”라고 주장하였다.¹¹⁶⁾

그런데 국민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에 대한 처형은 한국정부가 급박한 당시의 전황과 위기의 경험, 그리고 공산군 점령 하에서 ‘적에게 협력할 가능성’ 등을 예단하여 결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전쟁발발 초기 인천소년형무소 등에서 170여명의 탈옥

110)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총살에 관한 상부지시는 제주의 경우에만 해병대 사령부(정보참모실)에서 직접 문서로 “예비검속자를 처형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진실화해위원회, 「제주예비검속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7. 7. 1 - 2007. 12. 31)』, 425-426).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 및 정부기관 핵심리더들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육군본부 정보국장 등 -의 개입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부 진술은 있지만, 직접적인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111) 진실화해위원회,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7. 7. 1 - 2007. 12. 31)』, 951.

112) 보도연맹원 등의 학살이 인종주의에 근거하여 인종의 전멸을 의도하기보다는 동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부분적·제한적 학살이었으므로 정치적 학살(political massacre)이라고 주장한 연구는 김동춘(2000)을 참조[김동춘, 『전쟁과 사회』(서울: 돌베개, 2000), 241-242]. 반면에 “불법적 학살이며, 국가범죄였고, 제노사이드였다”는 입장은 정병준(2004)을 참조.

113) 사상검사였고, 보도연맹 지도위원이었던 장재갑은 “당시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남한에는 1백만명 이상의 남로당원이 있으므로 서울을 뺏으면 피 한방울 안 흘리고 전국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1백만명 봉기를 일으킨다는 뜻이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보도연맹원을 학살한 것이 대한민국을 위험에서 건져줬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라고 말했다.(정희상, 『이대로 눈을 감을 수 없소』(서울: 돌베개, 1999), 217-229.

114) 한편, 군과 경찰의 보도연맹원 처형이 결과적으로 한국군과 경찰에게 “물러설 수 없는 사생 결단·불퇴전의 결의를 다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분석되기도 하였다. 즉, 보도연맹원 등의 처형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한국군과 경찰에게 물러서거나 돌아설 수 없는 곳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정병준 2004, 120).

115) 김동춘, 2006, 307.

116) 정병준, 2004, 95.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전형무소는 준폭동 상황이었다.¹¹⁷⁾ 상황이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법적 정의의 실현은 현장상황의 정도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도연맹원 사건 전체를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이 사건의 정당성 여부는 다음 다섯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판단해 볼 수 있다.

첫째, 예비검속자의 선정과 처벌에 대한 심사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한 것이었는지 살펴보자. 즉, 전쟁발발 이후 즉각적으로 구금된 이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들 중 처형대상자를 어떻게 심사 분류했는지 살펴보자. 구금된 국민보도연맹원 등의 예비검속자들은 전쟁 발발 전에 남로당 등의 좌익단체에 가입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미 「부역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명부에서 기재한 내용대로 이들이 좌익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의 전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예비검속자들이 보도연맹원으로 ‘부역자명부’에 기재된 경위는 매우 복잡하고, 억울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¹¹⁸⁾ 보도연맹이 창설되자, 대부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한 경우가 다수였다. 그리고 연행 및 구금 후에 이들에 대한 심사 분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처형자 선별 과정에서 이런 정황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그 기준도 일률적이지 않았으며, 지역에 따라 상이했다. 즉, 처형대상자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¹¹⁹⁾

둘째, 처형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비상하고 긴박했는지 살펴보자. 왈짜가 극도의 비상상황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도연맹원 등의 총살도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연맹원 등의 연행 및 구금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일제히 이루어졌으나, 학살 시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117) 당시 실제로 보도연맹원이 인민군에 협조하고 있다는 미군의 정보 보고가 있었다. ‘맥도널드(Donald S. Macdonald)보고서’에서는 “보도연맹원이 좌익재소자와 서울시내 좌익세력을 모아 인민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였다.(7. 11 대전에서 사회부장관 임태정과의 면담후 보고) 또 다른 보고에서는 “북한군 점령하의 서울에서 국민보도연맹 출신 자원자로 구성된 공산당 경찰은 거리를 순시하는 대신 초소나 경찰서에 앉아 있으며 비교적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1950. 7. 11 Records of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50. RG 59, NARA. 진실화해위원회,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7. 7. 1-2007. 12. 31)』(2008), 140.

118) 보도연맹원이 된 복잡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논을 분배해 주거나 특별배급을 준다’는 말에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 2) 어디 가입하는지도 모르고 보도연맹원에 가입하면 좋다고 해서 도장을 빌려준 경우이다. 3) 우익청년단체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4) 대한청년단과 같은 단체라는 말에 속아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도 있었다. 실제로 우익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원 53명도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었다.

119) Hee-Kyung, Suh. "Civilian Victims Before and During in Korean War". Presentation Paper of the 2009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nnual Meeting(2009. 3. 27). 17-18. 예컨대 제주도의 경우, 모슬포경찰서는 전체 예비검속자 344명을 등급별로 평가,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D등급은 해병대 당국에 인계송치되어 총살되었고 B등급은 석방 또는 구금되었다. D등급의 기준은 “등산 반도가담”, “좌익사상 포지와 지하공작”, “2.7사건 시 경찰관 불법체포와 감금, 총기탈취” 등이었고 B등급의 기준은 “남로당 가입”, “인민위원회 간부”, “부녀동맹원 활동”, “농민위원, 민애청원, 인민자위대원 활동” 등이다. D등급 109명, C등급 144명, B등급 68명, A등급 23명이었다(진실화해위원회, 「제주사건」, 456-457).

김해의 사례는 보도연맹원들의 처형일과 전황의 관련성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김해사건의 경우, 가장 많은 구금자들이 인민군이 금강방어선을 함락한 날인 7월 15~16일과 낙동강방어선에 육박한 날인 8월 1~2일에 행방불명되었다. 집단살해된 날은 전황이 극도로 불리했을 때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울산, 제주는 인민군에게 점령된 지역이 아니었는데도 예비검속조치와 처형이 진행되었다. 즉 이 지역의 경우는 군사상 불가피한 필요조치, 즉 극도의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처형 절차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자. 전쟁 발발 직후 좌익혐의자를 간첩죄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던 법으로는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구 형법」 등이 있었다. 이 중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에서, 그 외의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예비검속된 자들은 어떠한 재판과정도 없이 처형되었다.¹²⁰⁾ 전시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거에 좌익사상에 동조했다거나 관련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연맹원 등의 예비검속자들을 집단 살해한 행위는 전쟁수행의 정의에 현저히 위반되는 전범 행위라고 볼 수 있다.¹²¹⁾

넷째,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보도연맹원 처형 사건들은 상당히 일관된 지휘명령체계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군의 정보기관이 주도했다는 특징을 띤다. 즉, 거의 모든 국민보도연맹 희생 사건에는 CIC 등 군정보기관이 관여하였다.¹²²⁾ 보도연맹원 등의 예비검속자 연행, 구금, 처형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 및 정부기관 핵심리더들 -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육군본부 정보국장 등 - 의 개입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진술은 있지만, 이들이 처형을 직접 지시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시 고위지도자들의 개입에 대한 의혹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한 이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반면

120) 전쟁 발발 직후 좌익혐의자를 간첩죄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던 법으로는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구 형법」 등이 있었다. 이 중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에서, 그 외의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21) 한 나라의 정부와 그 주민과의 전쟁이 있을 경우,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1949년 8월 12일에 채택된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4개의 제네바협약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제3조 규정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1950년 7월 4일 이들 협약에 서명하였지만, 1966년 8월16일에 가입하였다. 미국도 1949년에 서명하였지만, 1955년 8월 2일에 비준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네바 협약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각국을 구속하는 조약으로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전에 대한 국제인도법이 1949년 이전에 이미 조약과 별도로 구속력을 갖는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조시현,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법적평가문제」, 『민간인집단희생사건학술시포지움자료집』(2008), 64.

122) ‘특무대’라고 지칭되는 부대의 당시 명칭은 ‘방첩대’이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이후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되자 육군 정보국은 전국 각지에서 첩보수집 및 방첩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육군 정보국(국장: 장도영) 제3과(특별조사와, 과장: 김창룡)는 미 제971 CIC로부터 방첩업무를 인수받아 CIC 기능을 수행하였다. 전쟁발발 이후 정보국 제3과는 제2과로 개편되었고, 각 도별로 지구과견대가 설치되었다. 육군 특무부대는 1950년 10월 21일 정보국에서 분리되어 육군본부 직할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군 정보기관에 대한 책임은 추궁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도연맹원 학살에 대한 책임은 매우 모호한 것이다. 예컨대) 한국전쟁이 없었어도 보도연맹원들의 집단학살이 이루어 질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 제공자는 전쟁을 발발한 측, 즉 북한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 책임은 직접적으로는 전쟁을 개시한 측에 있을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에 이르게 된 원인은 멀리 독립운동기의 정치적 분열로 인한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불평등한 토지분배, 해방 후의 친일과 처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국제정치적으로는 세계적인 냉전블록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도연맹원들의 비극의 책임은 전세계적 냉전과 식민지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 및 경제적 불평등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요컨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특정 사건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처럼, 한국전쟁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는 대체로 원인론과 고증론에 기초하였다. 반면에 한국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전쟁은 어떻게 이해되고 판단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 글은 마이클 월처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제기된 전쟁의 정당성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의 개시의 정당성 문제이다. 한국 전쟁 발발 주체 및 평가에 관해서는 전쟁 발발 시기부터 오늘날까지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월처에 따르면, 북한의 남침은 무단한 침략이며, 이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응전은 “통상적인 정당한 방어전쟁”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북한이 사전에 치밀히 계획하여 1950년 6월 25일 전면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김일성은 1945년 이후 사회주의 구축이 완료되자 ‘남한을 소멸시키고 북한체제로 국토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전쟁을 개시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허위로 발표하여, 정의전쟁론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즉, 이점에서 북한의 전쟁개시는 부정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침략전쟁을 개시한 북한의 정치 및 군사지도자는 전쟁 개시의 책임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원칙이기도 하다.

반면, 미국은 공식적인 참전성명을 명확히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의의 원칙을 준수했다.

또한 모든 국가는 전쟁을 결정하기 전에 평화주의에서처럼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협상, 그리고 국제적 제재와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은 모두 평화적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고, 모두 군사적 해결을 우선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전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둘째, 전쟁 개입의 정당성 문제이다. 마이클 월처의 논의에 따르면, 미국과 유엔의 한국

전쟁 개입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통상적인 방어 전쟁이지, ‘내전의 한 당사자에 대한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서 다른 당사자를 지지해 주는 의미에서의 역개입’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및 유엔의 개입은 형식상 ‘방어를 돕기 위한 개입’이었고, 왈짜가 분류한 개입 중에서는 역개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내용상 ‘남한의 방어전쟁’이라기보다 미국, 자유진영, 유엔, 인류를 위한 방어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한 미국의 최고 결정자들의 인식은 상당히 유사하며 대결의지는 확고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초기부터 한국전쟁이 소련 팽창주의의 산물이며, 미국과 자유진영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즉각 대처해야 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였다. 미국은 이 위기를 타개하지 않으면, 미국이 수립한 대한민국의 파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해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도력이 손상되어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체제 구축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

미국 군사개입의 주된 목적은 자유주의 진영을 결속시키고, 그 안에서 자국의 지위와 이익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으므로 미국의 개입 의도가 정당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은 매우 논쟁적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세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동의를 획득했다. 미국은 이 목적을 유엔의 대의 아래 수행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세계의 이익으로 만들어 싸웠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정의의 구현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적절하고 정당성 있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개입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미국의 국가 이익이 유엔 제도를 통해 보다 보편적 이익으로 여과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했다.

한편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즉각 개입하자, 소련은 한국 사태를 국내문제로 규정하고 개입에 반대했다. 미국이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엔에 의해 미국의 입장을 승인케 함으로써 내정 간섭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소련은 한국전쟁 개전의 직접 당사국이었다. 또한 북침은 사실이 아니며, 한국전쟁이 내전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스탈린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결정적인 무기 전부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개입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전쟁발발 직후 현지에 파견된 고문단들을 대부분 철수시켰다. 소련은 미국과 달리, 군사 개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공개적인 장에서는 개입을 은폐하고 미국과 유엔의 개입을 비난했다. 그런 점에서 소련은 개입의 정당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기만과 은폐에 의해 유엔의 적법한 절차를 무력화하고자 했다. 이것은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공산주의의 대의라는 관점에서는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 정의라는 관점과는 배치된다.

스탈린의 개입 방식은 확실히 은폐의 부도덕함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과의 대결을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차 세계대전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에 비해 약세인 소련으로서는 전쟁 회피에 더 큰 국익이 있었던 것이다.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는 트루만에게도 동일했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 즉 제한전의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소련에게 더 절박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참전은 미국의 위협, 스탈린의 권고, 북한의 지원호소, 중국의 북한에 대한 동양적 의리 등의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이루어졌다. 중국 개입은 북한을 도와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 보다는 자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중국군의 한국전 개입 과정은 두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소련 및 북한과의 협조 하에 실제 전선 부근에서 중공군 부대 이동 등의 개입 준비가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공공연하게 ‘유엔군 북진 시 개입한다’고 경고하였다. 정의전쟁론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자국의 안보위협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회의에서의 사태 해결 노력이 보다 우선되어야 했다. 북한에서의 전쟁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잠정적이고 추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개입의 정당성은 제한된 것이다. 그런데 유엔과 국제정치에서의 미국 정부의 위협적인 태도는 중국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준다. 그러나 중국은 전쟁개입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의의 소지가 있다.

셋째, 전쟁 수행의 정당성 문제이다. 왈쩌가 제시한 전쟁수행의 정의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군사 및 정치 지도자나 전장의 병사가 전투의 승리 자체에 대한 고려 못지않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하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다. 즉, 전쟁은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와 목적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왈쩌는 군인이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이 위험을 감수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인을 덜 희생시키는 작전을 검토하여 수행한 사례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웨이 페어몽크(Vermrk) 지역의 중수공장을 파괴하는데 공습 대신에 특공대의 기습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두 번째는 이중효과 원칙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의 공중폭격 사례를 들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폭격 위주의 군사작전을 수행하여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군은 수색이 먼저여야 했지만, 무엇보다 탱크 공격과 항공기 폭격을 앞세웠던 것이다. 왈쩌는 군인이란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군인은 위험에 처하게 된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에서도 민간인과 적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 왈쩌는 침략에 맞서 방어전쟁을 시작한 당사국이 국가공동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결정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생존의 권리를 위해서 전쟁수행중의 규범에 구속받지 않고 비상한 수단을 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왈쩌가 주장하는 극도의 비상상황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의 국민보도연맹원 처형 사례를 살펴볼 때, 이는 국가의 안보(생존)와 국민 보호(인권) 간의 딜레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시 상황에서 체제 저항 세력에 대한 보호 의무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과도 관련되어 있다.

보도연맹사건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전황이 다급하게 전개되자, 수감되어 있던 좌익 정치범들과 국민보도연맹원 등의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보도연맹원에 대한 처형은 전쟁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평가는 양분된다. 한편에서는 보도연맹원 처형이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했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도연맹원 처형은 “불법적 학살이며, 국가범죄”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국민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에 대한 처형은 한국정부가 급박한 당시의 전황과 위기의 경험, 그리고 공산군 점령 하에서 ‘적에게 협력할 가능성’ 등을 예단하여 결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발발 초기 인천소년형무소 등에서 170여명의 탈옥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전형무소는 준폭동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법적 정의의 실현은 현장상황의 정도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도연맹원 사건 전체를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에 대한 정당성 문제는 다음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판단해 볼 수 있다.

첫째, 예비검속자의 선정과 처벌에 대한 심사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한 것이었는가? 구금된 국민보도연맹원 등의 예비검속자들은 전쟁 발발 전에 남로당 등의 좌익단체에 가입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미 「부역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보도연맹원으로 ‘부역자명부’에 기재된 경위는 매우 복잡하고, 억울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연행 및 구금 후에 이들에 대한 심사 분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처형자 선별 과정에서 이런 정황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그 기준도 일률적이지 않았으며, 지역에 따라 상이했다. 즉, 처형대상자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처형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비상하고 긴박했는가? 왠지 극도의 비상상황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도연맹원 등의 총살도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해의 사례는 보도연맹원들의 처형일과 전황의 관련성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울산, 제주는 인민군에게 점령된 지역이 아니었는데도 예비검속조치와 처형이 진행되었다. 즉 이 지역의 경우는 군사상 불가피한 필요조치, 즉 극도의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처형 절차는 준수되었는가? 이들은 어떠한 재판과정도 없이 처형되었다. 전시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거에 좌익사상에 동조했다거나 관련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연맹원 등의 예비검속자들을 집단 살해한 행위는 전쟁수행의 정의에 현저히 위반되는 전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또한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보도연맹원 처형 사건들은 상당히 일관된 지휘명령체계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군의 정보기관이 주도했다는 특징을 띤다. 보도연맹원 등의 예비검속자 연행, 구금, 처형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 및 정부기관 핵심리더들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육군본부 정보국장 등-의 개입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진술은 있지만, 이들이 처형을 직접 지시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섯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도연맹원 학살에 대한 책임은 매우 모호한 것이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도연맹원들의 비극의 책임은 전세계적 냉전과 식민지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 및 경제적 불평등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첫째, 국가는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비상상황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은 국가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근대 계약론자들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마이클 왈쩌에 의하면, 국가 공동체의 정치적 주권과 영토 보전의 권리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로부터 유래 한다”고 밝히고, “생명과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우리가 전쟁에 관하여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에 있다”고 선언하였다.¹²³⁾ 이 논리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국가의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런 국가는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민간인 희생에 대한 또 하나의 주요한 주장이다.

그런데 홉스에 의하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자체가 인간에게 가장 비상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무리 나쁜 국가라 해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하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존재해야만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도 존재한다. 왈쩌 역시 개인의 권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한 사회적 상황 밖에서는 실현되기 힘들며, 또한 국가의 자기방어의 대상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뿐만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보장하는 공동적 삶의 양식이라고 단서를 단다. 그렇다면 국가는 자기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성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훼손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 복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요컨대 국가 없는 개인도 없고, 개인 없는 국가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함께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양날의 칼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공동적 삶의 양식이 실재하지 않거나 혹은 국가가 그러한 양식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침략에 대한 한 국가의 자기방어는 아무런 도덕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Michael Walzer, 1977, p.54, p. 58)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희생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적 삶의 양식’을 보호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즉, 국가가 자기 존립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궁극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정당화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를 공동적 삶의 양식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상 국가는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¹²⁴⁾

둘째, 군인의 행위 중 어느 것은 정당한 것이며, 어느 것은 범죄행위인가?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을 기본목적으로 삼는 군인의 행위 자체가 범죄이다. 그러나 국가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에 대한 군인의 살인행위는 애국적이고 위대한 행위이다. 나아가 군인의 일반적인 범죄행위도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여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저지른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된다. 이럴 경우, 한국전쟁을 전후해 무고하게 민간인을 희생시킨 군경토벌 부대나 민간 의용대의 살해 행위는 애국적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의 산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행위는 전쟁 수행의 규범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이런 경우에도

123) Michael Walzer, 1977, 91.

124) 프라실라 B. 헤이너(Priscilla Hayner)에 따르면, “아는 것(knowledge)과 인정하는 것(acknowledgement)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인정이란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정되지 않은 사실은 진실이면서도 마치 존재하지 않은양 취급된다는 것이다.” Priscilla B. Hayner, 주혜경 역, 안병욱 해제,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서울: 역사비평사, 2008), 10.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적 삶의 양식’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공직자 및 군인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공동적 삶의 형식에 부합한 것인지를 성찰해야 하며 범죄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최고위 공직자와 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는 과거 이들의 행위가 상황의 산물이라 해도, 그 행위가 도덕적, 정치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면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1981).
- 진실화해위원회,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7. 7. 1 - 2007. 12. 31)』(2008).
-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하반기조사보고서 2(2008. 7.9-2009.1.5)』(2009).
- NARA, RG 407, Army-AG Command Report 1949-54, Box: 3252, 32nd Infantry Regiment Command Report for 8 Jan 51," in 7th Inf. Div. 32nd Infantry Regiment.
- NARA, RG 59, Records of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50. 1950. 7. 11.
- USAMHI, Matthew B. Ridgway Papers Series 2, Box 9, Correspondence Official.
- USAMHI, Almond Papers, Box 87, Letter from HQs EUSAK to Corps Commands, 2 Jan 1951.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VII, Korea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 김동춘, 『전쟁과 사회』(서울: 돌베개, 2000).
- 김명기, “국제법상 한국동란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명대논문집』 Vol. 14(1983).
- 김성칠, 『역사 앞에서』(서울: 창비, 2009).
- 김수오, “한국전쟁 중 미국의 대UN정책: 전쟁의 정당화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1991).
- 박명립,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서울: 나남, 2002)
-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서울: 나남, 2003a)
-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서울: 나남, 2003b).
- 박은영, “한국전쟁 관련 교과서 비교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7).
- 박정순, “마이클 월저의 정의전쟁론”.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가』(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 서주석,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연구: 미국의 전쟁제한정책 결정과정과 그 원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1986).
- 송경호,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한계: 존 롤즈의 「만민법」에 나타난 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원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2007).
- 장영창, 『찢겨진 조국의 하늘 밑에서』(서울: 동지사, 1983).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고려원, 1990).
- 정병준, 『한국전쟁』(서울: 돌베개, 2006).
- 정태욱, “마이클 월저의 정전론(正戰論)에 대한 소고 - 선제방어전쟁(preemptive war)

- 론을 중심으로”,『법철학연구』Vol.6, No.1(2003).
- 정희상,『이대로 눈을 감을 수 없소』(서울: 돌베개, 1999).
- 조시현,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법적평가문제」,『민간인집단희생 사건학술시포지움자료집』(2008).
- 존 롤즈, 장동진외역,『만민법』(서울: 이끌리오, 2000).
- 프라실라 B. 헤이너, 주혜경 역, 안병욱 해제,『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서울: 역사비평사, 2008).
- 홍학지,『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 Brian Orend, *Michael Walzer on War and Justice*(Montreal & Kingston & London & Ithac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0).
- Callum A.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N.Y: Free, 1986).
- Gray Wills “What is a Just War?”,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18 November 2004).
-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NY: Doubleday, 1956); 해리 트루만 손세일역,『시련과 희망의 세월』(서울: 지문각, 1968), 310.
- Hee-Kyung, Suh. "Civilian Victims Before and During in Korean War". Presentation Paper of the 2009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nnual Meeting(2009. 3. 27).
-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New York: Basic Books, 1977).
- Michael Walzer, "The Triumph of Just War Theory and The Dangers of Success," *Social Research*, vol. 69(2002a).
- R.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1946-1967*, Document and Commentary, II, Asia(London: Oxford Univ. Press, 1970).

동아시아의 전환기 경험과 새로운 세기의 시대정신: 과거와 미래의 대화

강상규(방송대학교)

1. 세계사의 길목에서 길을 묻다

2001년 어느 날인가, TV 정규방송 중에 갑자기 난데없는 화면이 흘러나왔다. 뉴욕과 워싱턴의 낮익은 건물 속으로 민간 항공기가 차례로 돌진하는 모습과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영상이 담겨있었다. 이어서 화염에 휩싸인 쌍둥이 빌딩이 마치 거짓말처럼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지구상에 가장 높은 마천루 빌딩이 서있던 그 자리에는 거대한 잔해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너무나 드라마틱한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세계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쌍둥이 빌딩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마치 인류가 어렵게 구축해온 문명의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21세기의 벽두에 벌어진 이 뜨거운 사건은 새로운 세기가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된 미래로 이어지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21세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9.11테러로 불길하게 개막한 새로운 밀레니엄의 출발 이후 우리는 어떠한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소용돌이 위에 떠있는 것은 아닌가. 20세기말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과 ‘정보혁명’으로 표상되던, 향후 도래하게 될 ‘미래’ 매트릭스의 세계가 언제부턴가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새로운 ‘문명기준(standard of civilization)’을 창출하지 않으면 무한경쟁에서 뒤진다는 일종의 집단적 무의식이 유령처럼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대체 변하는 것은 무엇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한편 동아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은 오랜 기간에 걸친 중화질서의 경험과 19세기 서구 문명과의 폭력적인 만남, 20세기 일본제국/식민지의 체험과 아울러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두 개의 진영이 강력하게 대립해온 복잡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자문명과 고유한 문화적 공감대를 폭넓게 공유한다. 동아시아는 지금까지 여러 제국들의 부침을 경험하는 동안 독특한 정치적 관계와 정서를 형성해왔으며, 한반도의 운명도 지역질서의 명운과 줄곧 긴밀히 맞물려 진행되었다. 따라서 21세기에 세계적 차원

에서 진행되는 변화의 양상이 동아시아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흔히 현재의 상황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특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에는 현재의 상황을 다양하게 반추해볼 수 있는 수많은 위기상황이 존재한다.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려는 치열한 고민과 모색의 장면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살아온 우리 자신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외국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며 유용한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다만 역사에 대한 피상적인 검토를 넘어 과거와의 진지한 소통을 위해서는 과거로의 시간여행, 과거로의 추체험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과거의 상황이 현재 혹은 미래에 던지는 함의를 여러모로 부단히 반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채워져 있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을까? 거대한 전환의 과정에 한반도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떠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대응을 했던 것인가? 당시 동아시아 삼국의 각기 다른 선택은 이후 어떤 다른 결말로 이어졌는가? 동아시아의 19세기와 20세기, 21세기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전환기로서 19세기와 21세기는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애초에 역사는 왜 움직이는 것이며, 전환기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한반도에게 전환기란 무엇인가? 바꿔 묻는다면, 한반도는 통시적으로 볼 때 전환기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경험을 하였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최종적으로 다음 질문으로 귀결될 것이다. 새로운 세기의 한반도는 어디로 가야하며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본 연구는 21세기 지구적 차원에서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전환의 흐름을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맥락에서 더듬어보고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전환기 경험을 성찰해봄으로써 21세기 현재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징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2. 19세기 동아시아의 전환기 경험: 위기의식, 선택 그리고 좌절

동아시아의 19세기는 상이한 문명 곧 '동서문명'의 충돌이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기로서, 보통 '서세동점'의 시기로 표현된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왕의 고유한 패러다임을 밀어내는 과정이었으며, 기존의 문명기준이 새로운 문명기준에 의해 전복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것은 중화문명권의 관점에서 보면, '문명 기준'이 완전히 '역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상이한 패러다임의 만남과 충돌 속에서 빚어지는 고민과 혼돈, 모색과 좌절이 뒤섞인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였다. 당대의 일본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의 표현을 빌면, 19세기는 '마치 뜨거운 불과 차디찬 물이 만나는 것과 같고', '한 몸으로 두 인생을 겪는 것과 같으며 한사람에게 두개의 신체가 있는 것과 같은' 충격과 위기, 변동의 시대였던 것이다.¹⁾

1) 福澤諭吉, 「緒言」, 『文明論之概略』(東京: 岩波文庫, 1995) 참조.

19세기 동아시아의 중화질서(천하질서=중국적 세계질서)는 유럽발 근대국제질서라는 상이한 대외질서관념과 마주하게 된다.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예의 관념’에 기반한 중화질서로부터 ‘국가평등관념’에 근거한 근대 ‘국제’ 질서로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하는 패러다임의 변동을 겪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19세기 동아시아 삼국은 동일한 사태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의 패러다임 변동이 중화질서하의 ‘조공 책봉관계’에서 근대국제질서의 수평적이고 독립적이며 그런 만큼 ‘무정부적인 관계’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정부적 속성을 지닌 새로운 ‘무대’ 환경에서는 덕치(德治)나 예치(禮治), 왕도정치(王道政治), 사대자소(事大字小)와 같은 기존의 ‘연기’와는 다른 부국과 강병, 균세(均勢=세력균형)와 자강(自強)의 능력이 보다 중시되었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배우’들은 무대 밖으로 밀려났다.²⁾

하지만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에 나타난 ‘서구의 충격’이란 실제로 각국이 처한 각각의 외압의 성격이나 강도, 타이밍의 차이, 지정학적 위치, 기존 정치질서의 안정성 등의 여부에 따라 그 충격의 객관적 여파 곧 ‘위기상황’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각국의 중화문명 내에서의 위상과 중화문명의 수용 혹은 체감의 양상, 국가내부의 구조와 정치적 풍토 및 정체성, 고유하면서도 주요한 사유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 주관적 ‘위기의식’의 성격에도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했으며 이에 따라 대응방식도 달랐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19세기라는 전환기를 맞이하는 각국의 대응양상과 위기의식을 이해하는데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법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국공법, 곧 오늘날의 국제법은 19세기의 거대한 전환의 와중에서 당시 국가 ‘간’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번역되어 등장한 것으로서, 동아시아 삼국이 이를 수용하는 양상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³⁾ 잘 알려진 것처럼, 19세기 동서문명이 대면하는 현장은 물리적 폭력과 갈등을 수반하고 있었고 그 어지러운 현장의 한복판에는 서양국가와의 ‘조약’체결이라는 문제가 어김없이 얹혀 있었다. 만국공법은 이처럼 서구와의 대규모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불평등 조약의 체결이라는 새로운 위기상황의 접점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외적인 ‘독립(Independence)’을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간주하는 근대적 의미의 ‘주권’(sovereignty, Souveränität, Soveraineté)이라는 개념은 유럽이라는 기독교 문명권에서 중세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독특한 국

2) 하영선, 「네트워크 지식국가: 늑대거미의 다보탑 쌓기」,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서울: 을유문화사, 2006) 참조.

3) ‘만국공법’이란 미국의 국제법학자 헨리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국제법 서적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이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丁驥良, 1827-1916)에 의해 한역(漢譯)되어 『만국공법』이라는 책제목으로 출간(1864년)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번역어이다.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반세기 남짓 생명력을 유지하고 사용되었던 용어이다. 반면 만국공법 대신 ‘국제법’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1873년 일본의 미즈쿠리 린쇼(箕作麟祥, 1846-97)였다. 이후 국제법이라는 용어는 1881년 동경대학에서 국제법학과를 설치한 후 서서히 정착되는 과정을 밟아가게 된다. 강상규, 「근대 일본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87호 (1999): 41-42.

가 ‘간’ 관계를 배경으로 17세기를 전후해서 비로소 등장한 개념이었다.⁴⁾ 그런데 한자문명권에서 오늘날 사용하는 의미의 ‘주권(主權)’이라는 신생어는 마틴에 의해 번역된 『만국공법』을 통해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점은 『만국공법』, 곧 국제법 서적이 근대적인 서구국제질서의 행위주체인 주권국가의 권리와 규범 등을 다루는 책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만국공법은 주권국가(sovereign state)라는 ‘새로운 국가형식’과 함께 조약체제(treaty system)라는 ‘새로운 국가 간의 교제 및 교섭방식’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에 대두하게 될 새로운 문명의 문법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했다.

개화기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과 함께 마틴의 번역본 『만국공법』이었던 것도, 중국의 정관웅(1842-1922)이 국가경영에 관한 양무 지침서로 『易言』(1880-36편본, 1882-20편본)을 집필하면서 제1편을 <論公法>으로 구성한 것도, 그리고 조선의 승려 이동인(1849?-1881.3?)이 1879년 9월 김옥균(1851-1894), 박영효(1861-1939)의 후원과 일본 동본원사(東本願寺) 부산별원의 협력을 받아 비밀리에 일본에 밀입국한 이유가 다름 아닌 만국공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던 것도 모두 이러한 국가 ‘간’ 관계의 패러다임의 변환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어떤 식으로든 각국마다 전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⁵⁾

그런데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생한다. 동아시아 문명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중국은 이미 17세기 후반 네르친스크 ‘조약’(1689)을 체결한 바 있는가 하면, 아편전쟁 이전 린쩌쉬(林則徐, 1785-1850)의 경우와 같이 서구의 국제법에 주목하여 이를 이용한 선례가 있었다. 그러나 아편전쟁이후 서세동점 현상이 점차 심화되어가는 와중에서도 무려 20여년 이상 중국 측은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국 내부분제의 심각성이 외부문제에 관한 관심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양국가와의 양국 간 수평적 관계를 전제한 조약의 형식이나 혹은 불평등 조항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불이익이 다분히 편의적으로 고유의 중국적 세계질서의 논리 안에서 중국의 전통적 회유책 내지 시혜의 관점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총리아문의 지원으로 동문관에서 서양의 국제법 서적이 『만국공법』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면서(1864년), 중국은 비로소 ‘만국공법’이라는 서양의 새로운 문명기준에 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국의 만국공법에 대한 관심은 소극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서구 국제사회의 문명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내적인 최고성과 배타적인 독립성을 기본특징으로 하는 주권이라는 개념과 이른바 ‘국가평등관념’에 근거한 ‘주권국가’라는 행위자를 전제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청이 천하질서내의 예외적인 일부로서 인정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제국으로서 중화’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기왕의 중국적 세계질서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데에 중국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놓여 있었

4) 박상섭, 『국가/주권』(서울: 소화, 2008).

5) 이에 관해서는 丸山眞男・加藤周一, 『翻譯と日本の近代』(東京: 岩波書店, 1998), 119.; 鄭觀應, 『易言』第1篇「論公法」; 조동걸, 「奥村의 朝鮮國布教日誌」, 『한국학논총』7 (1985): 270.; 萩原延壽, 『遠い崖:アーネスト・サトウ日記抄, 14卷=離日』(東京: 岩波書店, 2001), 82~83 참조.

던 것이다.

게다가 만국공법으로 표상되는 서구의 문명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화이(華夷)관념’이라는 이념적 차원에서 보면, 중국인들은 지금까지 중화문명권에서 문명기준을 제공하던 입장에서 유럽 기독교 문명에 의해 스스로를 재편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말하며, 중화문명권의 문명기준이 역전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이민족들에 의해 수차례 정복당하는 와중에서도 수천 년간 문명의 중심을 견지하던 ‘中’國人들로서 이러한 사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단절’이자 스스로의 아이덴티티의 근간을 흔들여 놓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청이 스스로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만국(萬國)중의 일국(一國)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갖기 전에는, 청이 『만국공법』으로 대변되는 근대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청의 만국공법 활용이란 어떤 식으로든 ‘현상유지책’의 차원에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⁶⁾ 이것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기존의 중심축 혹은 주류세력이 갖는 고민과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로 여겨진다. 패러다임 전환기의 상황에서 기존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동아시아 문명권의 주변에 놓여있던 에도시기 일본의 대외관념은 화이사상의 영향 하에 놓여 있으면서도,⁷⁾ 중국의 화이관념에 비해 유연하며 능동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향성이 현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40년의 아편전쟁과 1853년 흑선의 내항으로 상징되는, 서세동점의 대세는 ‘일본식 화이사상의 정치적 군사적 경향성’ 및 ‘무사사회 특유의 긴장감’과 맞물려 화이라는 명분보다는 죽느냐 사느냐라는 긴박한 위기의식으로 이어져 양이(攘夷)로 표상되는 배외(排外)주의적 기운으로 나타났다.⁸⁾

하지만 외세배척의 기운이 일본 열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와중에서, 서양제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인식하고 그 저변에 놓인 서양의 과학기술을 섭취해서 국력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라는 전략적 인식이 생겨나게 된다. 이처럼 일본이 서양문명의 이질성을 비교 가능한 것, 수용 가능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었던 데에는 17세기 이래의 나가사키(長崎)와 란가쿠(蘭學)의 오랜 축적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서양관에서 볼 수 있는 상대적 유연성은 중국의 천하개념에서 드러나는 자기완결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⁹⁾ 이러한 와중에서 중화제국을 유린할

6) 강상규, 「중국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 25집 (2006).

7) 丸山眞男, 「近代日本思想史における國家理性の問題」, 『忠誠と反逆』(東京: 筑摩書房, 1992), 294-295.

8) 植手通有, 「對外觀の轉回」, 『近代日本政治思想史』(東京: 有斐閣, 1971).

9) 이처럼 중심보다도 주변이 변화의 상황 곧 전환기의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다소 역설적인 상황은, 예컨대 종속이론(dependence theory)의 관점에서는 결코 수용하기 어려운 논의이겠지만, 거센크론이 말하는 이른바 ‘후발주자의 이익(advantages of backwardness)’이나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검토한 폴 케네디의 저작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의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힘을 가진 서구 국가들 간에 통용되는 국가간 관계란 대체 어떤 것이며 기존의 중국적 천하질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화질서의 주변에서 화이사상을 섭취하고 있던 일본, 더 정확하게는 막부를 비롯한 지배세력과 하급무사들, 그리고 지식인들의 최대의 관심이 아닐 수 없었고, 『만국공법』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¹⁰⁾

만국공법에 관한 초기 일본연구자인 오시다케 타케시(尾佐竹猛)의 표현을 빌면, “지금까지 나라 문을 닫고 살아오던 우리국민은 처음 각국의 교통에도 조규(條規)가 있다는 것을 알아 식자(識者)들은 다투어 이 책을 읽게 된 것”이다.¹¹⁾ 이러한 과정에서 오랑캐로 간주되던 서구가 새로운 ‘문명기준’으로 인식되게 되는데, 후쿠자와의 『문명론의 개략』은 새로운 문명기준이 서구로 바뀌었다는 것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전략을 가장 명료하게 제시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한편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1871년 후반 구미지역에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1825-83)를 특명전권대사로 한 구미사절단을 파견한다.¹³⁾ 조약개정교섭에 실패한 사절단 일행은 제국주의전야의 유럽의 국제정치를 견문하고 서양문명의 양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게 된다. 이들의 눈에 비친 근대서구의 국제질서란 요컨대 ‘열국평등(列國平等)’ 보다는 오히려 ‘약육강식(弱肉強食)’ ‘만국대치(萬國對峙)’의 상황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이는 일본 무사사회의 전통적 관념인 ‘실력상응원리’에 따라 해석, 수용되어졌다.¹⁴⁾

이와쿠라 사절단은 만국공법이 약소국에게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자주적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국력을 진흥시켜 실력으로서 국권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과 아울러, ‘소국이라는 관념에서 대국지향으로’ 근대일본의 지향할 방향을 바꾸어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등을 겪으면서 일본의 위정자들은 일본이 만국공법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밖’에 놓여있는 나라가 아니라 명실 공히 새로운 국제질서의 행위주체가 되는 것을 확고한 국가목표로 인식해가게 된다.¹⁵⁾

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Random House, 1988).

10) 吉野作造, 「我國近代史に於ける政治意識の發生」, 『吉野作造選集』11(東京: 岩波書店, 1995).

11) 尾佐竹猛, 『近世日本の國際觀念の發達』(東京: 共立社, 1932), 34.

12) 福澤諭吉, 「西洋の文明を目標とする事」, 『文明論之概略』 참조.

13) 이와쿠라 사절단의 목적은 크게 조약개정교섭, 서구의 제도 및 문물의 시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로 방문한 미국에서 조약개정교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미제국의 시찰에 전념하게 된다. 사절단에는 이와쿠라 도모미를 비롯하여, 오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1830-78), 기도 타카요시(木戸孝允, 1833-77),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등 메이지의 거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다. 이와쿠라 사절단에 대해서는 田中彰, 『脱亜の明治維新: 岩倉具視を追う旅から』(東京: NHKブックス, 1984) 참조.

14) 坂本多加雄, 「萬國公法と文明世界」, 『日本は自らの來歴を語りうるか』(東京: 筑摩書房, 1994).

15) 강상규, 「근대 일본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87호 (1999).

한편 동시대 조선의 위정자와 일반 지식인들은 사상적으로 매우 고립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전통 지식인들은 17세기의 장기간에 걸친 ‘혼돈’의 와중에서 등장한 존주론(尊周論)의 언설에 따라, 주체와 객관적 세계간의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세계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 경직된 자세를 일상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환언하면, 조선 성리학의 다양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항심(恒心)과 항산(恒産)의 두 개의 날개로 왕도정치의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던 기왕의 균형 잡힌 사유체계가, 17세기 이래 위기상황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이후 ‘항산의 보장 없는 항심’의 강조를 통해 ‘정신주의’적 경향이 짙어져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타협과 조정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의 논리가 옳고 그름(正邪)의 분별을 중시하는 ‘규범과 윤리’의 논리에 의해 재단되고 억압되는 사태가 일상화되면서, 모든 논의가 <군자 대 소인>이라는 소모적 이분법으로 귀결될 소지가 커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요컨대 조선의 사상계가 이단이 아닌 정통, 이(夷)가 아닌 화(華), 실리가 아닌 의리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서, 견제와 균형, 타협과 조정을 이끌어내던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의 유연한 소통공간이 심각하게 경직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⁶⁾

더욱이 19세기 벽두에 정조가 승하하게 되면서 조선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물론 모든 서양서적의 도입이 금지된다. 이후 조선은 사상적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아편전쟁 이전부터 조선의 해안에는 이양선(異樣船)이라 불리는 서양 선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시간이 갈수록 그 출현하는 빈도가 늘어갔다. 천주교가 서구의 이념적 도전을 상징한다면, 포경선과 군함을 포함한 이양선은 서구제국주의의 경제적 군사적 도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19세기 중반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를 통해 조선은 서구의 군사력과 직접 충돌한다. 당사국 모두가 상대방을 야만으로 규정한 이 두 차례의 충돌에서 조선은 승리한 듯 보였다. 대원군의 리더십과 독려 속에 치러진 서양 열강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조선을 방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적 차원의 자신감과 일체감을 불러일으켰고 나라 전체가 오랑캐를 격퇴시켰다는 승리감에 들뜨게 했다. 이는 당시 중국과 일본의 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특기할 만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승리로 조선이 서세동점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조선의 ‘배외적(排外的)’인 태도는 한층 확고한 원칙이 되어 좀처럼 바꾸기 힘들게 되었으며 서양 열강 및 주변국과의 긴장관계를 극도로 고조시킴으로써 조선의 대외적인 입지를 위태롭게 하였고 아울러 조선의 위정자와 지식인들로 하여금 세계정세와 시대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패러다임 전환기 조선에서 나타난 하나의 거대한 패러독스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의 지정학적 외벽인 중국과 일본이 이미 지구적 규모에서 구미 열강의 세력균형 구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조선은 세계의 대세를 외면함으로써 오히려 소중한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16) 강상규, 「朝鮮の儒教的政治地形と文明史的轉換期の危機」, 東京大學 博士論文 (2005): 1章 3節.

당시 조선의 전통적인 유자 지식인들은 서양세계를 자기들이 살아가는 ‘문명’세계에 대한 반대의 이미지로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전통적인 화이관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병인양요를 비롯하여, 오페르트 도굴사건(1868),¹⁷⁾ 신미양요 등 서양과의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만남과 충돌 과정 속에서 확산되어갔다. 서양의 ‘야만성’을 확인할수록 ‘예의지방(禮義之邦)으로서 조선’이라는 문명국가로서의 자부심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확고해져갔고 그런 만큼 개화개방과 부국강병이라는 시대조류와는 멀어져갔다.

이처럼 외부세계와 정치적, 사상적으로 유연하게 타협하고 조정해나갈 여지가 현실정치의 장에서 거의 봉쇄된 가운데 대다수의 조선의 위정자와 지식인들은 기존의 화이관념의 연장선상에서 눈앞에서 전개되는 대외정세를 양이(洋夷)라는 새로운 위협적 요소의 ‘양적’ 증가라는 일종의 ‘현상적’인 차원의 변화로만 해석하려 했다. 그리하여 조선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질서 자체가 근저에서부터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가능한 한 ‘천자의 나라’, 중국의 보호우산 속에 편승하려는 의식에 젖어들게 된다.

하지만 조선 정계 ‘안’에서도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세력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었다. 1882년 8월 국왕이 내린 교서는 이처럼 세계의 달라진 변화상에 주목하고 달라진 무대에 새롭게 적응하겠다는 조선 정부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¹⁸⁾ “만국병립의 상황이 바로 세계적 대세이며, 종래의 배외정책이나 양이(攘夷)적 관념은 조선을 세계 속에서 고립시켜 위태롭게 할뿐이다. ‘국가평등’ 관념에 입각한 새로운 만국공법적 질서에 근거해 조선의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해나갈 것이다. 다만 서양과 공법에 입각해 조약을 맺는 것과 사교(邪敎, 천주교)의 확산은 별개의 문제이다. 조선의 ‘문명국가로서의 자부심’은 견지하되, 서양의 발달된 기술은 ‘이용후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라고 조선의 국왕이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의 변화상에 주목하고 달라진 무대에 새롭게 적응하려는 모습은 국내외의 다양한 비판과 견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 와중에서 나타난 임오군란이 주로 외래와 고유의 제요소,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전통주의자들이 주도하여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갑신정변은 당시 조선의 협소한 정치공간에서 보다 급진적

17) 오페르트 도굴사건이란 1868년 4월 18일 독일인 오페르트(Oppert, Ernst Jacob, 吳拜, 1832~1903)가 대원군의 선친인 남연군(1788~1836)의 묘를 도굴하려다 발각되자 도주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서양 오랑캐의 야만성을 여지없이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충격을 그리피스(Griffis, William Elliot, 1843~1928)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선인들은 무덤이 파헤쳐지거나 앓을까 하는 두려움에 싸이게 된 것이 분명하다.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주된 목적은 시체를 파헤치고 인간의 가장 성스러운 본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엄연한 사실로 입증되었음을 그들은 목격한 것이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서양인들은 야만족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도둑이라고 조선 사람들은 확신하게 되었다..” W. E. 그리피스, 신복룡 역, 『은둔의 나라, 한국』(서울: 평민사, 1985), 511~512. W. E.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London: Alles, 1882).

18) 『승정원일기』 고종 19년 8월 5일

인 방식으로 철저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진보주의자들이 주도한 사건이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동아시아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점에서 국왕이 주도하던 개화 자강정책의 속도와 변화의 폭을 너무도 과격했으므로 받아들이는 대다수의 세력과 너무도 온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수의 세력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객관적인 ‘속도’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속도감’이 대단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 ‘상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문제는 당시의 개혁속도의 완급(緩急)여부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축적되어온 사상적 경직성과 무책임한 정치적 관행, 그리고 그것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지 못한 조선의 정치엘리트와 지식인들의 의식과 태도에서 찾아야할지 모른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정반대되는 방향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주도한 사건들이었지만, 타협과 조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급격한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그 과정상의 특징이나, 동아시아 질서가 변동하면서 ‘조선문제’가 첨예한 국제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던 와중에서 발생함으로써 주도세력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공히 외세의 간섭을 불러들이고 그 간섭을 질적으로 심화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매우 닮은 것이었다.

이후 갑신정변의 여파로 인한 강렬한 보수회귀의 분위기 속에서 친(親)중국 세력의 득세와 중국의 중주권 획책, 왕권에 대한 견제가 보다 강화되었고, 이로 인한 정치적 구심축의 균열이 더욱 진행되면서 결국 사태는 동학 농민봉기라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와 외세의 개입에 의한 무자비한 탄압, 그리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외세간의 전쟁으로 귀결되어지게 된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끊임없는 엇박자로 사태가 전개되어가는 양상은 문명사적 전환기의 조선이 주권국가간의 근대국제질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급격하게 봉쇄되어가게 되는 경위를 보여준다.¹⁹⁾

19세기에 나타난 이질적인 문명 간의 만남과 문명기준의 역전이라는 사태는 ‘조선중화주의’라고 부를 만큼 강한 문명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견지하던 조선 지식인들에게 ‘문명의 세계가 야만으로 전락하고 금수들의 세계가 문명세계로 둔갑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뒤집어지는[天崩地壞]’ 혼돈의 상황이었다. ‘살고 싶다. 의롭고 싶다. 그러나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택하겠다’(『孟子』)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자들에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부국강병’으로 매진하라고 하는 것은 ‘문명세계에서 걸어 나와 금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만큼이나 사상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변화였던 것이다.

여기에 아울러 한 가지 부언해두고 싶은 점은 조선 정치개혁 논리에서 내장되어있는 ‘동도서기(東道西器)’적 사유방식에 담겨진 문제이다. 동도서기적 사유는 ‘문명사적 전환기’ 조선의 협소한 정치공간에서 정치적 마찰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절충적으로 개화 자강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19세기 패러다임 전환의 상황에서 나타난 중국의 중체서용(中體西用)이나 일본의 화혼양재(和魂洋才)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방식을

19)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서울: 논형, 2008), 49-50.

보여준다는 점은 모두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동도서기적 사유방식은 근대국가의 생존문법으로 새롭게 등장한 내셔널리즘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유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명사적 전환기’에 나타난 중체서용이나 화혼양재의 사유방식은, 각각 ‘중체(中體)’ 및 ‘화혼(和魂)’이라는 독자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여, <중화문명 vs. 서양> 혹은 <대화혼(大和魂=일본정신) vs. 서양>이라는 이분법적 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취시킴으로써 스스로를 국제관계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독자적 주체로서 인식하기 쉬운 반면, 동도서기론은 조선이라는 일국적 범위를 넘어선 동서문명의 대비 위에서 사유가 전개되고 있어 조선의 근대국가로서의 독자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상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화질서 내에서 조선이 흔히 동국(東國)으로 불려왔다는 점, 그리고 17세기 후반 이래 중화문명의 정수를 오로지 조선이 승계하고 있다는 조선중화사상이 19세기 후반에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당시 조선의 유자들에게 동도(東道)란 사실상 중화문명을 정통으로 승계하고 있는 조선의 문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동도(東道)는 중화문명 혹은 동양문명의 정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제국으로서 중화’인 청국에 대해 친화적인 감정을 부여하고 현실적으로 이에 편승하려는 의식으로 이어지기 쉬웠으며, 이후에는 아시아주의 혹은 아시아 연대론으로 휩쓸리기 쉬운 사상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당시의 ‘문명개화’의 논리가 일반적으로 서양을 새로운 문명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동도서기론의 심층에 깔려있는 동서의 이항대립적 사유방식은 자기비하와 열등감에 빠진 지식인들을 일종의 ‘서도서기(西道西器)’ 곧 일방적인 서구식 문명개화론으로 전향하기 쉽게 만드는 인식론적 매개고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²⁰⁾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삼국에 핵심화두로 등장한 ‘문명개화’와 ‘자주 독립국가’는 이처럼 구미의 근대국제질서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한 일종의 ‘시대정신(zeitgeist)’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일찍이 간파한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론의 개략』에서 “문명을 아무리 고차원적인 것으로 발전시킨다하더라도 전국의 국민에게 한조각의 독립심이 없다면 문명 역시 일본에는 소용이 없으며 그것을 일본의 문명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다”고 설파하게 된다.²¹⁾ 그러나 다음에 소개하는 것처럼 후쿠자와의 통찰력은 이후 ‘부국’과 ‘강병’으로 지나치게 경도되면서 일본을 침략적인 ‘제국’으로 질주하게 만든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결국 지금의 금수와 같은 세계에서는 (중략)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죽이는 것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일신처세(一身處世)의 길 역시 이와 같다. 그렇다면 만국교제의 길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화친조약이나 만국공법은 대단히 우아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오직 명목상 그런 것이며,

20) 강상규, 앞의 책, 203-204.

21) 福澤諭吉, 『文明論の概略』, 292.

교제의 실체는 권위를 다투고 이익을 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세계고금(世界古今)의 사실을 보라. 빈약무지(貧弱無智)의 소국이 조약과 만국공법에 잘 의뢰하여 독립의 체면을 다한 사례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바이다. 오직 소국뿐 아니라 대국 사이에서도 바로 대립하여 서로가 그 틈을 엿보며 파고 들어갈 틈이 있으면 그것을 간과하는 나라는 없다. 이것을 엿보고 이것을 살피며 아직 발하지 않는 것은 병력강약(兵力強弱)의 한 가지에 달려있을 뿐이며 그다지 의뢰할 수 있는 방편이 없다. 백 권의 만국공법은 여러 대의 대포만 못한 것이며, 여러 화친 조약은 한 상자의 탄약만 못한 것이다. 대포와 탄약은 있을 수 있는 도리를 주장하는 준비가 아니라 없는 도리를 만들어내는 기계이다. 각국 교제의 도(道)는 죽느냐 죽이느냐에 있을 뿐이다.²²⁾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정에서 나타난 문명기준의 역전은, 후쿠자와에게서 나타나는 것처럼, 힘에 대한 숭배와 약육강식, 우승열패적 세계관으로 이어졌으며, 불행히도 이에 대한 제동은 걸리지 않았다. 서구의 근대가 출현하여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근원적인 회의와 모색 그리고 개인의 발견과 자각이 일본의 지식인을 비롯한 학생,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은 하였으나 그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전망의 발견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²³⁾ 이처럼 원리적 보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의 결여는 ‘되어가는 형편’, ‘세계의 대세’에 대한 상황추수적 자세를 일반화시켰을 뿐 아니라,²⁴⁾ 행위의 가치 기준을 일본의 ‘국체’와 같은 자의적이고 신화화된 세계에 의탁하게 함으로써, 일본적 특수성의 틀 안에 모든 세계를 억지로 담아내려는 작위적이고 현상타파적 인식의 사상적 모태가 되었고 근대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를 불행한 궤도로 몰아넣게 된다.²⁵⁾

한편 부국강병의 광풍에 가위눌린 조선인이나 중국인에게 힘에 대한 숭배와 우승열패적 세계관은 자기 전통에 대한 부정과 멸시의 자세로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 유학 시절(1888년 11월-1893년 10월) 윤치호(1865-1945)가 남긴 일기에는 좌절한 조선 지식인의 ‘철저한 자기부정’과 ‘힘의 논리에 대한 강한 긍정’이 다음과 같이 짙게 묻어있다.

하나의 민족이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을 때,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더 개화되고 더 강한 인민에게 통치 받고, 보호받으며 가르침을 받는 것이 더 좋다.²⁶⁾

22)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慶應義塾 編, 『福澤諭吉全集』4卷(東京: 岩波書店, 1970), 636~637.

23) 이에 관해서는,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서울: 한길사, 1997).; 마루야마 마사오, 박충석·김석근 역, 『충성과 반역: 전환기 일본의 정신사적 위상』(서울: 나남출판사, 1998).; 이시다 다케시, 황원권 역, 『日本の 정치문화』(서울: 학민사, 1984) 등을 참조.

24)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일본인들에게 나타나는 원리적 보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나 천착의 결여에 대해서 일본의 이중성(Japan's duality) 혹은 일본의 애매모호성(Japan's ambiguity)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러한 보편성의 결여는 전후에도 줄곧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Kenzaburo Oe, "Japan's Dual Identity: A Writer's Dilemma", in *Postmodernism and Japan*, eds. Masao Miyoshi and H. D. Harootunia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9).

25) 강상규, 「일본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연구시론: 근대 일본의 에피스테메로서의 국체」, 『國際/地域研究』 7권3호 (1998).

26) 『윤치호일기』1889년 12월 24일

나는 조선 독립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부를 두고는 독립해도 민족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애족적이고 인민의 복지에 호의적인 관심을 가진 더 나은 정부를 가지면 다른 나라에 종속되었다하더라도 실제로는 재앙이 아닙니다.²⁷⁾

실제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정의가 아니고 사실상 힘이다. 힘이 정의라는 것이 이세상의 유일한 신이다.²⁸⁾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리는 같은 인종이나 민족의 구성원들 사이에 결코 유효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인종이나 민족 사이에서는 이 원리가 확실히 진리이다. 민족에게 약함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민족 사이에는 힘이 정의이다.²⁹⁾

19세기 문명사적 전환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한반도의 국권 상실과 식민지 체험은 거시적인 민족국가의 맥락에서 보면 주체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강렬하고 배타적인 저항민족주의를 탄생시키는 분노의 원천이 되었고 후일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어지는 국제정치적 기원이 되었다. 한국인들이 나라를 잃은 후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선구적 존재인 신채호(1880~1936)나 박은식(1859~1925) 등은 유교를 망국(亡國)의 주범으로 지목했다.³⁰⁾ ‘예의지방(禮義之邦)’을 지향하던 의식은 ‘사대주의’로 이해되거나 ‘노예적 사상’으로 간주되었고, 이른바 ‘문약(文弱)’은 개혁되어야 할 낡은 전통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식민지 체험은 또한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국인의 공공의식과 공공선의 왜곡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었다. 식민지 하에서 한국인에게 조선은 불식되어야 할 부정적인 대상이었고 제국 일본은 모방하고 지향해야만 될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일본에 동일화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내면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개인의 미시사의 영역에서 보면 총력전을 띤 20세기 전쟁 동원의 양태는 전장의 규율이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함으로써 삶의 공간, 일상의 영역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다. 동일한 문명 내부의 역전 현상으로 말미암아 한국인은 내면에서 제국 일본이라는 타자에게 가위눌림을 당하면서 타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면서 한편으로는 타자의 힘을 동경하는 정신적 공황 상태를 맛보게 된다. 힘에 대한 선망과 공포 사이에서 ‘우승열패의 세계관과 자기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 나아간 윤치호의 슬픈 독백은 ‘일제강점기’와 ‘분단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인들이 압축적으로 근대를 살아오는 동안 유령처럼 한반도를 배회하게 되었다.³¹⁾

27) 『윤치호일기』1889년 12월 28일

28) 『윤치호일기』1890년 2월 14일

29) 『윤치호일기』1891년 11월 27일

30) 신채호, 「朝鮮歷史上千年來第一大事件」(1925).; 박은식, 『몽배 김태조(夢拜金太祖)』(1911).

31) 강상규, 앞의 책, 51-56.

3. 21세기의 전환과 동아시아: 연속과 불연속

20세기는 혁신의 시대였다. 거대한 공장에서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대량으로 상품이 쏟아져 나온다. 백화점에는 온갖 상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사람들은 욕망을 소비한다. 근대 문명이 안고 있는 문제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을 부추기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는 점점 더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 인류의 미래는 오늘 보다 더 나은 장밋빛으로 인식된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서구의 지성들이 ‘세계사의 발전 법칙’을 근대인의 상식으로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역사의 발전단계’ 운운하는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직선적 역사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다소 불안하더라도 직선으로 치달리는 역사의 기관차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게 된다.

인류의 20세기는 에릭 홉스바움(Hobsbawm, Eric John ernst, 1917-)의 표현을 빌면 ‘극단의 시대’였다. 한편으로는 인류가 과학기술혁명 등에 힘입어 전에 없는 풍요로움을 구가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전쟁과 핵무기의 등장, 군비경쟁의 악순환, 내란, 이념대결, 집단적 광기와 학살, 혁명과 파괴와 같은 상처로 얼룩진 시대였기 때문이다. ‘극단의 시대’인 20세기에 동아시아의 한중일 삼국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필설로 읊기기 어려운 깊은 상흔을 입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19세기가 문명사적 전환기로서 외래의 문명기준에 의해 고유의 문명기준이 뒤집히는 ‘문명기준의 역전’의 시기였다면, 동아시아의 20세기는 ‘근대 따라잡기’의 세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20세기에 구체적으로는 서로 매우 다른 궤적을 밟은 듯 보였지만, 각국의 위기의식과 대응방식이 겨누는 창끝이 결국 ‘근대 따라잡기’라는 동일한 하나의 과녁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1세기 인류는 디지털화된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컴퓨터의 성능향상과 네트워크의 발달에 힘입어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수단과 고급정보에 접근하여 획득하는 속도 및 규모가 눈부시게 변화한다. 지구상의 국가, 지역, 시민들의 정보기술력의 격차가 21세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바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지식과 정보를 혁신으로 이어주는 정보처리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 이른바 ‘정보혁명’이 자리하고 있다. 사회조직의 네트워킹 형태는 다른 시공간에서도 존재해왔지만, 새로운 정보기술 패러다임은 이 네트워킹 형태가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파급되도록 하는 물질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류는 지구화의 흐름과 정보혁명 시대의 도래에서 비롯한 ‘거대하고 복합적인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³²⁾

동아시아의 19세기 전환기 경험이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문명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32) Manuel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lden, MA: Blackwell, 2000).; 하영선 편, 『변화하는 세계 바로 보기』(서울: 나남출판사, 2004).;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서울: 을유문화사, 2006).

문제였다면, 동아시아의 21세기 전환은 정보혁명과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 무한경쟁의 속도전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게 있어 19세기의 전환이 문명기준의 뒤바뀜이라는 문제였던 만큼, 주권국가 간의 국제질서나 부국강병과 같은 외래의 문명기준을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으나 여기에는 따라잡아야 할 목표와 선두주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힘들더라도 선두주자를 보면서 ‘근대의 문법’을 열심히 배우고 따라가면 길이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기의 상황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안개에 휩싸여 있는데다 모두가 아직 걸어보지 못한 미답(未踏)의 초행길인지라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아시아는 전통적인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지역이다. 지역 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운영방식 등 체제 간의 상이함이 존재하며, 각국 간의 안보현안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의논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 그리고 20세기 불행했던 침략과 수탈의 역사에 관한 진지한 대화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기중심적인 ‘편의(便宜)적 해석’이 무성한 만큼 열등감과 두려움, 적대감과 상호불신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 그런 만큼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항시적으로 잠복하고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용트림을 할 기세를 하고 있다.

다시 21세기의 생활현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쉬지 않고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위에 몸을 바짝 붙이고 긴장한 채 계속 너트를 조여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미 공장의 노동현장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채플린의 「모던타임스」(1936)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모습은 어느덧 현대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선착순 경주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경주에서 낙오한 자, 곧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정보혁명,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이러한 현상이 그저 진보, 혁신, 갈망, 성취, 갈등, 고독이 뒤섞인 소용돌이로 비춰질 뿐이다. 개인의 실패는 다소 운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나의 경쟁력이 뒤쳐지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처음부터 줄곧 계속된 근대사회의 특징이었다.

‘무한경쟁’의 원칙에 의해 질주하는 근대 패러다임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마이더스의 손(Midas touch)’을 연상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건드리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신시켜 놓았고, 현대인은 모두가 자신이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주인공이 되기를 잠시나마 꿈꾸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마이더스는 온 세상을 황금으로 만들 수는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지는 못했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신기술을 확보하려는 무한경쟁의 불똥이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쉼 없이 계속되는 속도경쟁은 지구자체의 자정능력을 흔들어놓고 평형능력을 깨뜨리는가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행위이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모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매우 재앙적인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사례를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비유는 매우 극명하게 보여준다. 개럿 하딘(Garrett Hardin, 1915-2003)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비유를 통해 “개별 행위자들이 공공의식에 입각

하여 스스로 자제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동체의 다른 사용자들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공유자원은 궁극적으로 고갈될 것이며, 자제하는 사람들만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기 이전의 ‘좋은 시절’에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³³⁾ 21세기 인류는 이러한 문명사적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4. 역사를 움직이는 힘과 전환기의 두 얼굴

가재 한 마리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니, 뭔가 이상해 보인다. 주변을 의식이라도 한 듯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자신의 보호막인 두툼한 외피를 벗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탈피(脫皮, exuviation)'의 현상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큰 집게발과 몸통을 기왕에 자신을 감싸고 있던 단단한 껍질 사이로 빼낸다는 것이 간단한 작업일리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재가 탈피를 하는 동안 다른 가재나 주변 물고기의 공격이라도 받게 되면 그야말로 가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그래서 탈피를 준비하는 가재는 본능적으로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어 간다. 가재에게 탈피는 곧 '위기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그러면 가재는 이처럼 대단히 위험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탈피를 하는 것인가. 탈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가재의 몸은 자신을 감싸주는 단단한 껍질 속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가재의 몸을 보호하는 딱딱한 껍질은 자라나질 않는다. 그러다보니 여태까지 가재를 보호해주던 기왕의 ‘껍질’이 어느 순간부터 가재의 ‘몸’에 비해 작아지는 시점, 곧 '모순(矛盾)'이 발생하여 서로 대립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재에게 탈피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몸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가재는 필연적으로 여러 차례 탈피를 해야 하며, 탈피에 수반되는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게 되면 가재에게 탈피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로 탈바꿈하게 된다.

가재의 몸을 ‘내용’에 비유한다면 가재의 껍질은 일종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과 형식이 서로 잘 어우러지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변해간다. 그러나 껍질은 단단하고 딱딱해서 변하지 않는다. 즉 가재의 내부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 대립과 모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양자 간의 긴장과 갈등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몸이 커져감에 따라 현재 변화하고 있는 내용과 기존의 형식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그 '모순'이 심화되면, 변화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형식, 곧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가재의 삶을 ‘역사’에 비유한다면 가재의 탈피는 기존의 틀 곧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기’에 해당한다.

33) 1968년 개릿 하딘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장기적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유 환경 자원들을 남획하고 왜 과도하게 개발하는가를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모델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Tragedy_of_the_commons

인간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 차있다. 더욱이 개개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는 더욱
 욱 그러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끊어
 지지 않는 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움직이게 마련이며, 전환의 시점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³⁴⁾

그러면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적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다시 가재의 탈피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게 된다. 가
 재와 같은 갑각류가 탈피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단단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껍질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더욱 크고 단단한 껍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가재
 가 마법이라도 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혹시 막 탈피를 마
 친 가재에게는 껍질이 존재하지 않다가 탈피를 마친 후에 다시 생기는 것인가? 가재의
 탈피 과정을 관찰해보면, 어렵사리 막 탈피를 마친 가재의 몸에는 분명히 새로운 보호막
 이 씌워져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가재선생이 온몸으로 보여준 해답은 의외로 명쾌한 것이었다. 새로 생겨난 껍질은
 기존의 단단하던 보호막과는 다르게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했기 때문이다. 탈피를 앞둔
 가재의 새로운 껍질은 탄력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기왕의 강하고 단단한 껍질 속에서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속살에 밀착된 형태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탈피를
 무사히 마친 뒤 가재의 새 껍질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다시 단단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다. 이렇게 가재는 새로운 외피를 둘러쓴 모습으로 거
 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림1) 탈피를 끝낸 가재와 벗겨진 기존의 외피

가재의 탈피과정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위기’가 수반되는 정황을 이해하게 해주며,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되면 전환기는 새로운 ‘기회’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증하
 게 보여준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를 가재의 탈피를 통해 유

34) 강상규, 앞의 책, 서문 참조.

추한다면, 전환기적 상황일수록 '발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야말로 전환기의 위기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환언할 수 있을 것이다.

5. 한반도의 전환기 경험과 현재적 함의

21세기의 '거대하고 복합적인 전환'의 시기에 미래사회는 어디로 가게 되며, 동아시아는 어디로 가게 될까?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이와 맞물려 있을 것인가? 21세기의 전환의 시점에서 한반도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정해진 답이 있을 리 없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한반도가 지나온 역사적 전환기의 경험을 반추해봄으로써 이러한 미래를 향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더듬어 보려고 한다. 한반도가 속한 정치지형이 역사적으로 변동한 시점은 언제이며, 한반도는 이러한 전환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경험을 했던 것인가? 거꾸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며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려면 우선 우리 한반도가 경험해온 거대한 지각변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는 탈냉전이후의 거대하고 복합적인 전환기의 와중에 서있다.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기 시작하면 20세기 중엽의 '냉전'의 시작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전에 기왕에 근대국제질서를 주도하던 유럽 세계가 상대적으로 몰락하게 되고 미국과 소련이 부상하게 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19세기의 '서세동점'이라는 전환기와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전환의 와중에서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가? 탈냉전이 동아시아에서 뒤늦게 전개되고,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이 지점은 괄호 안에 넣어두도록 하자. 트루먼 닥트린 등을 기점으로 20세기 '냉전'의 기운이 한창 형성되기 시작하던 무렵 1950년 한반도에서는 6.25전쟁 곧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는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반도는 이미 일본 제국주의에게 국권을 상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하자 그것은 한반도의 '해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해방은 동시에 '분단'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세기 '서세동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征韓論)이 부상했고, 중국에서는 조선을 근대 국제법적 차원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중일 간의 각축은 서구 열강들과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맞물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싸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비화되었고 이는 결국 대한제국의 '국권상실'로 이어졌다.

내친 김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자. 현재 세계질서의 패권이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이전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1세기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화두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17세기 중엽 중화질서의 패권이 한족(漢族)에서 만주족으로 이동하게

되는 ‘명청교체’라는 사태가 중화질서에서 살아가던 한반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였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한반도는 두 차례의 전란(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경험하게 된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16세기 말 이웃나라 일본은 전국시대(戰國時代)가 종언을 고하고 17세기 초 결국 도쿠가와 막부가 탄생하게 되면서 에도시대가 열리게 된다. 바로 한반도의 이웃나라인 일본이 격변기의 상황을 겪는 와중에 한반도는 두 차례의 왜란(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치러야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한반도가 이처럼 전환기적 상황마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긴장관계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동아시아 정치질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가 이처럼 전환기적 상황마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긴장관계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된 데는 한반도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은 중국 중심의 문명권이자 한자문명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곳으로서 한반도는 중국이라는 대륙세력과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이 만나는 길목에 위치한다. 이와 아울러 19세기 후반부터는 미국과 유럽열강들이 해양세력에 그리고 러시아(소련)가 대륙세력에 합류해 들어왔다. 예컨대 19세기에 기록된 다음의 두 문건은 국제정치의 장(場)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조선을 식민지로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프랑스) 황제의 보호령으로 함으로써 조선이 (프랑스에) 어떠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것이 장차 중국과 일본에서 발생할 분쟁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할지는 지도를 한 번 보시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³⁵⁾

조선이라는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과 일본의 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할 진대,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³⁶⁾

첫 번째 문서는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 처형(병인박해, 1866) 소식을 전해들은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 벨로네(Claude M. Henri de Bellone, 伯洛內, ?~1881)가 본국의 외무장관에게 조선을 공격할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의 내용이며, 두 번째 글은 일본 주재 중국 참찬관 황준헌(1842~1905)이 조선에서 건너온 제2차 수신사 김홍집(1842~1896)에게 써서 건네준 『조선책략』의 서두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언급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보면, 냉전이 ‘해체’되는 21세기 벽두의 새로운 변화의 와중에서 동아시아 위기의 초점으로

35) Correspondance politique. Chine. no. 41. 1865-6, folio. 296.; Yongkoo Kim, *The Five Year's Crisis, 1866~1871: Korea in the Maelstrom of Western Imperialism* (Incheon: Circle, 2001), 31에서 재인용.

36) 황준헌·조일문 역주, 『조선책략(朝鮮策略)』(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77), 10.

‘북핵문제’가 떠오른 것도 단순히 역사적 우연이라고만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주요한 위기상황과 역사적 전환의 시기 간에 존재하는 긴밀한 상관관계에 주목하지 않고 한반도가 단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많은 외침을 겪어왔다’는 식으로 막연하고 평면적으로 기술하거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거대한 전환기마다 거의 예외 없이 한반도에서 반복되어 나타났던 국제정치적 사건들의 현재적 함의가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맥락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 우연적 혹은 일회적인 ‘과거완료형’의 사건으로 이해되고 만다면, 전환기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이 던지는 간곡한 메시지를 간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환기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과 ‘구조적’ 사례들은 한반도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며 또한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아울러 한반도의 역할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준다. 한국의 정치가 국제정치 혹은 세계정세에 대한 안목을 왜 동시에 필요로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역사적 시야가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6. ‘다중거울’과 미래의 선택

거대한 기계문명과 하이테크놀로지 혁명, 그리고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은 전 지구를 무한경쟁의 속도전이 치러지는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시장만능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구조조정이 현대인의 일상을 위협하며, 지구적 차원에서나 일국적 차원에서나 양극화, 격차사회의 간극은 나날이 확대되어가는 양상이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평형상태의 와해를 어떠한 계기를 통해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위에서 나날이 균질화 되어가는 세계에서 어떻게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현실적 묘안을 찾아갈 것인가? 현대사회의 익명성에서 비롯되는 무책임성과 공공성의 해체, 자유주의의 왜곡을 어떻게 견제해야하는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증대와 위험사회로의 진행양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동아시아에 만연해있는 민족주의와 배타적인 자국중심주의의 독소를 어떻게 해소해갈 것인가? 일방적이고 단정적인 효율성과 합리성의 신화를 던고 어떻게 다채로운 다성악적 화음을 구사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문제는 환언하면 ‘거대하고 복합적인 전환’의 패러다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외치는 검은 피부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나, ‘생활정치’라는 구호에 익숙해있던 일본의 유권자들이 전후 줄곧 지속되던 자민당 체계를 갈아치운 것은 ‘변화’에 대한 의미심장한 열망의 분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기만 하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이 검은 품고 양쯔강을 건너다 그만 강에 검은 빠뜨리고 말았다. 그는 나중에 찾기 위해 검은 떨어뜨린 곳에다 주머니칼로 표시를 해두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는 표시해둔 곳으로 내려가 검은 찾으려 했으나 검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에 얹힌 이야기다.³⁷⁾ 누구나 들으면 실소를 금하기 어려운 무슨 바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관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문제는 요컨대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흐르는 강물 위에 서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의 행위는 매우 정당한 대응방식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주구검이라는 고사성어는 게임의 룰이 변하고 경기장이 바뀌는 상황 즉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를 이해할 때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간주되던 방식이 전환기의 상황, 즉 새롭게 부상한 패러다임에서는 이미 전혀 ‘비’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명료하게 시사해주기 때문이다.³⁸⁾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환을 감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19세기 조선의 전통주의자들이 화이관념의 연장선상에서 눈앞에서 전개되는 대외정세를 양이(洋夷)라는 새로운 위협적 요소의 ‘양적’ 증가라는 일종의 ‘현상적’인 차원의 변화로만 해석함으로서, 조선이 속해있는 동아시아 질서 자체가 근저에서부터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사례는 실제로 패러다임의 변환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드러내준다. 더욱이 패러다임의 변환을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정치 공간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안과 밖’으로 광범위한 동의를 끌어낸다는 것은 훨씬 더 난해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이 탄력성을 상실하면서 ‘군자 vs. 소인’의 이분법이 횡행했고, 19세기의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문명 vs. 야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분하려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식민지와 냉전, 분단과 산업화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민족 vs. 반민족’, ‘친북 vs. 반공’ ‘좌익 vs. 우익’ ‘민주 vs. 반민주’ ‘영남 vs. 호남’ ‘친미 vs. 반미’ ‘보수 vs. 진보’ 등의 편가르기가 일상화되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상극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벽을 넘어 ‘상생과 화해’의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대의 문법을 넘어 ‘새로운 관계맺음’을 하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는 역사와 세계를 비춰보는 보다 다양한 거울들, 일종의 ‘다중거울’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³⁹⁾

37) 『呂氏春秋』

38) 강상규, 앞의 책, 56.

39) 필자가 ‘다중거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거울이란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는 도구이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 개의 거울을 필요로 한다. 즉 자동차의 양 측면에 달려있는 두 개의 사이드 뷰 미러와, 중앙에 있는 리어 뷰 미러, 그리고 사각지역을 비추기 위해 또 다른 작은 미러들을 부착하게 된다. 이때 각각의 거울들은 어떤 측면을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하여 주변의 상황을 과장된 모습으로 비춰준다. 각각의 거울들은 모두 유용한 것이지만,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충분하거나 완벽하게 주변을 비춰주지는 못한다. 능숙한 운전자는 이러한 다양한 거울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맞춰가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도로 위의 상황을 읽어가며 차를 조정한다. 일상의 안전운전

앞서 가재의 탈피를 통해 길게 언급한 바와 같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간의 긴장, 그 내적 모순위에 진행되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기회’일 수 있다. 더욱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 전환의 한복판에서 씨름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인류 보편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발상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과거와 미래를 향해 두 개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 “우리가 당시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과거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수반하는 질문이라면,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하는 물음은 미래를 향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책임 있는 지속가능한 선택을 하게 될지를 되묻는 질문이 될 것이다.

19세기 중엽 조선은 기존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과의 전면적인 만남을 목전에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처럼 변화하는 세계를 직시하려는 책임감과 비전을 갖춘 정치세력이나 지식인그룹은 좀처럼 부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눈을 감는다고 해서 거대한 변환의 수레바퀴가 그냥 조선을 피해가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조선의 약점을 더욱 철저하게 파고들면서 짓밟으려 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전환기의 기로에 섰다.

을 위해서도 이처럼 다양한 거울과 아울러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안목과 노련함이 동시에 요구되는데, 깊은 역사의 심연과 복잡하게 변화하는 거대한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오늘을 헤쳐 가는 데는 얼마나 다양한 ‘다중거울’과 이를 활용하는 안목과 능력이 필요할 것인가.

참고문헌

- 『孟子』『承政院日記』『呂氏春秋』『윤치호일기』『易言』『萬國公法』
강상규. 2008.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 서울: 논형.
그리피스, W. E. 신복룡 역. 1985. 『은둔의 나라, 한국』. 서울: 평민사. Griffis, W. E.
1882. *Corea: The Hermit Nation*. London: Alles.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1997.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서울: 한길사.
마루야마 마사오. 박충석·김석근역. 1998. 『충성과 반역: 전환기 일본의 정신사적 위상』.
서울: 나남출판사.
박상섭. 2008. 『국가/주권』서울: 소화.
박은식. 1911. 『몽배 김태조(夢拜金太祖)』. 『박은식전집(朴殷植全集)』중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5)에 수록
신채호. 1925. 「朝鮮歷史上一千年来第一大事件」. 『단재신채호전집(丹齋申采浩全集)』하
권, (을유문화사, 1972)에 수록.
이시다 다케시. 황원권 역. 1984. 『日本の 정치문화』. 서울: 학민사.
하영선 편. 2004. 『변화하는 세계 바로 보기』. 서울: 나남출판사.
하영선·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서울: 을유문화
사.
황준헌·조일문 역주. 1977. 『조선책략(朝鮮策略)』.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植手通有. 1971. 「對外觀の轉回」『近代日本政治思想史』. 東京: 有斐閣.
尾佐竹猛. 1932. 『近世日本の國際觀念の發達』. 東京: 共立社.
坂本多加雄. 1994. 「萬國公法と文明世界」『日本は自らの来歴を語りうるか』. 東京: 筑摩書
房.
田中彰. 1984. 『脱亜の明治維新: 岩倉具視を追う旅から』. 東京: NHKブックス.
萩原延壽. 2001. 『遠い崖:アーネスト・サトウ日記抄, 14卷=離日』. 東京: 岩波書店.
福澤諭吉. 1970. 「通俗國權論」. 慶應義塾 編. 『福澤諭吉全集』4卷. 東京: 岩波書店.
_____. 1995. 『文明論之概略』. 東京: 岩波文庫.
丸山眞男. 1992. 「近代日本思想史における國家理性の問題」『忠誠と反逆』. 東京: 筑摩書
房.
丸山眞男·加藤周一. 1998. 『翻譯と日本の近代』東京: 岩波書店.
吉野作造. 1995. 「我國近代史に於ける政治意識の發生」『吉野作造選集』11. 東京: 岩波書
店.
Castells, Manuel. 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lden, MA: Blackwell.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Kennedy, Paul. 1988.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Random
House.

Kim, Yongkoo. 2001. *The Five Year's Crisis, 1866~1871: Korea in the Maelstrom of Western Imperialism*. Incheon: Circle.

Oe Kenzaburo. 1989. "Japan's Dual Identity: A Writer's Dilemma". Masao Miyoshi, H. D. Harootunian eds. *Postmodernism and Japa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강상규. 1998. 「일본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연구시론: 근대 일본의 에피스테메로서의 국체」 『國際/ 地域研究』7권 3호.

_____. 1999. 「근대 일본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87호.

_____. 2006. 「중국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25집.

_____. 2005. 「朝鮮の儒教的政治地形と文明史的轉換期の危機」. 東京大學 博士論文.

조동걸. 1985. 「奥村의 朝鮮國布教日誌」 『한국학논총』7.

제3부

유럽의 경험과 성찰:
근대와 이성의 재해석

근대 산업주의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19세기인들의 미래에 대한 투사

홍태영(국방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유토피아를 포함하지 아니한 세계지도는 쳐다볼 가치가 없다”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은 그만큼 인간에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토피아 혹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전망 혹은 바램은 시간적으로 고대 이래로, 공간적으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하여 왔다. 현재 그리고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곳 그리고 다른 시간에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 혹은 그러한 공간은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것은 먼 미래의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미 존재한 적이 있는 것 - 동양에서 요순시대, 루소에게서 황금시대 등 - 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플라톤 이래 르네상스 시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까지의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은 주요하게는 ‘평화’와 ‘안녕’ 그리고 아우타르키적 삶을 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근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도 질적인 변환을 겪는다. 유토피아에 대한 연구는 ‘장소유토피아’ 즉 플라톤의 전통을 수용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생각은 주로 섬이라든가 반도와 같은 공간적인 영역 - 홍길동의 ‘율도국’도 동일하다 - 을 통하여 형상되었다가,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전 미래지향적 사고 형태를 지닌 ‘시간 유토피아’로 변화된다. 즉 공간적 형태의 유토피아주의에서 시간적 과정의 유토피아주의로의 변화이다.¹⁾

‘시간 유토피아’의 형성은 근대적 시간 개념의 형성 즉 ‘진보’라는 개념의 형성에 그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선형적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그것의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의 진보 개념 속에 시간의 선형적인 흐름이 존재하고, 그 시간의 흐름은 동력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그 흐름에 새로운 동력을 제시한다거나 새로운 자극을 가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단축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근대의 진보적 사고들 속에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근대’의 특징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 두가지 사건이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이다. 전자는 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인간 주체가 정치적 주체로서 자리잡는

1) D. Harvey,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최병두 외 역. 서울: 한울, 2001, 238쪽.

계기가 되었고, 후자는 인간 주체가 자연에 대한 지배를 분명히 하는 계기로서 보여졌다.

이러한 사건들의 영향 속에서 등장한 19세기에서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의 출현이다.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를 선택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이데올로기들은 자기나름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그러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주체와 방식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들 이데올로기들은 프랑스혁명과 산업 혁명이 가져온 결과로부터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대부분은 유사한 출발점을 보이고 있다. 즉 새롭게 등장한 인간이라는 주체를 어떻게 새롭게 평가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적 임무를 맡길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산업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산업 문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로부터 새로운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주요하게 등장한 이 두가지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으로 집약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19세기 초반기에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19세기가 끝나고 산업의 발달 즉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결과는 결코 낙관적 전망에 머물게 하지는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서 경제불황과 공황 등이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라는 유토피아가 실험에 들어가면서 등장한 것은 오히려 비관적 전망이었다. 이러한 것은 특히 소설의 형태를 띠고 많이 등장하였으며, 이른바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다.

사실 19세기에 등장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와 그 발전에 대한 전망의 차이일 뿐이다. 즉 두가지 미래에 대한 상(像) 모두가 그 출발과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다만 미래에 대한 낙관과 비관의 차이라는 극히 미묘한 차이 – 또 달리 말하면 아주 큰 차이이기도 하다 – 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주로 19세기 전반기에 유토피아의 전망에 우세하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디스토피아의 전망이 우세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디스토피아에 대한 전망은 유토피아적 전망이 실현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은 물론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보면서 내놓은 전망들이다. 따라서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 이후 디스토피아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시간적 순서이거나 병렬적인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19세기 산업주의 나아가 근대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근대를 넘어선 새로운 전망의 가능성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즉 ‘새로운 시대정신’ 혹은 21세기에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을 새롭게 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바에서이다. 따라서 마지막 절에서는 앞의 두가지 논의들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새로운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유토피아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을 살펴보면서 이 글이 주목하는 부분은 새롭게 탄생한 근대적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들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는가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의 조직화의 방식에 대한 이해이다. 19세기에 산업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확대와 전일화와 그에 따른 개별 인간 삶의 변화 등을 겪었다. 그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모색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유토피아라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현재의 삶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현재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침의 역할도 하였다. 즉 미래의 ‘역사’가 현재를 규정하는 것이다.

II. 산업주의의 낙관적 전망으로서 유토피아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선 등장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다. 그것은 근대 이성의 기획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로부터 유추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이다. 프랑스 혁명이후 콩도르세, 생시몽, 콩트 등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은 실현가능한 새로운 미래의 모습으로서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실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실의 운동의 가속화시켜 시간 압축의 효과를 가져오고자 한다.

18세기 계몽시대와 프랑스혁명을 잇는 인물이었던 콩도르세는 『인간정신 진보의 역사적 소묘』에서 진보의 매개물로서 과학을 제시하고, ‘완전성의 법칙’과 ‘진보의 법칙’이 실현되는 역사적 필연으로서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다. 프랑스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가 제시한 공교육에 대한 제안 속에서 그는 보편 교육의 평등한 실현을 통해 인간의 완전성을 증대시키며, 그것을 통해 시민은 국민적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이 되며 계몽이 보편화됨으로써 세계주의를 지향하고 동시에 ‘정직한 인간의 인터내셔널’을 통해 실현되는 진보의 전망을 제시하였다.²⁾

콩도르세는 역사를 열 개의 시대로 나눈다. 정태적인 부족사회에서 농업과 알파벳의 발견, 그리스인들의 재능의 개화와 쇠퇴, 중세의 오랜 퇴보, 창조력의 부활과 르네상스, 그리고 인쇄술의 발명이 여덟 번째 시대에 이른다. 아홉 번째 시대는 데카르트에서 프랑스혁명에 이르는 시대로서 진정한 폭발적 진보의 정점에 해당하는 시기이다.³⁾ 그리고 열 번째 시대는 합리적 예언에 기초한 인류의 무한한 진보와 완전해질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는 시기이다. 데카르트의 이성의 발견과 계몽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프랑스혁명을 통한 구체적인 실현을 보면서 콩도르세는 인류의 진보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그리고 무모한 낙관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보의 자연스럽고 또한 당연한 전망은 이후 생시몽, 콩트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한 생시몽의 ‘산업사회’, 콩트의 ‘실증주의 시대’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를 그리고 있다. 이것들은 근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 속에서 과학기술의 극한적 발전에 기반한 일종의 ‘기술적 유토피아’라고 불릴 수 있는 전망이다.

생시몽은 인류발전의 최종적인 체계로서 산업체제를 상정하였다. 그는 산업자 – 산업 부르조아지 – 가 유한자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인류역사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산업계급만이 유용한 계급”이며 마침내는 “단일계급”이 됨으로써 계급적

2) M. de Condorcet,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장세룡 역. 서울: 책세상, 2002.

3) 장세룡, “해제: 마르퀴 드 콩도르세: 정치, 역사의 진보”,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서울: 책세상, 2002.

인 갈등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였다.⁴⁾ 생시몽은 산업체제에서 절대적인 평등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형제애의 원칙에 기반한 신기독교를 통해 각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박애주의적 감정을 깨우는 일과 그 박애주의를 통해 사회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⁵⁾ 새로운 산업체제에서 시민은 새로운 연합체의 성원으로서 신분이 변하게 되면 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과 재능, 자본에 의존하여 생산도구의 관리에 참여하고 또 이러한 세가지 바탕 위에서 생산된 부의 몫을 받음으로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된다. 종교적으로 정치는 경찰의 역할로 축소되고 인간에 대한 통치는 과학자 집단의 후원아래 사물에 대한 관리로 대체된다. 생시몽은 이 과학집단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고, 지식의 교회는 전통적 세계의 비합리주의와는 반대로 과학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종교의 관리자가 된다.⁶⁾

생시몽의 산업체제에 대한 전망은 과학과 산업의 힘에 근거한 산업주의에 대한 거의 물신적인 믿음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생시몽주의자들은 산업계급 혹은 생산자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대기업가들에 대한 기대로 옮겨갔다. 프랑스 철도산업의 선구자인 페리에(Perrier) 형제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산업문명의 선두에 서있던 철도에 대한 기대는 말그대로 유토피아적이었다. 생시몽주의자 페케르는 철도가 인간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공장에 노동자들이 거대한 무리로 모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도나 증기선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여행은 현저하게 평등과 자유의 느낌을 촉진시키고 이에 익숙해지도록 할 것이다. 철도는 원하던 방식대로 진정한 박애에 기반한 사회관계가 지배적인 관계가 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민주주의 선창자들이 과장해서 표현하는 예언 이상으로 평등구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 모두가 가능해질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하고 모든 사회계급들이 철도 등에서 만나,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각양의 운명들, 사회적인 차이, 개성들, 행동 양식들, 습관들, 의상들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생생한 모자이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거리감각 역시 동일하게 줄어들게 된다.”⁷⁾ 또한 생시몽주의자로서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 시기 영불무역자유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프랑스 측의 대표 슈발리에르는 “지중해는 동양과 서양의 결합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동력이 철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⁸⁾

생시몽의 영향은 콩트에게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실증주의 과학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그것이다. 콩트는 인간정신의 발전 단계를 3단계 즉, 신학의 단계, 형이상학의 단계, 실증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신학의 단계는 인간 지성의 출발점이고, 실증의 단계는 인간 지성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콩트에 의하면 인간 정신의 역사는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 정신의 자발적 축소의 역사이자 실증정신의 점진적 부상의 역사이다. 실증주의의 궁극적

4) 최갑수, 「생시몽의 사회사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207-210.

5) 최갑수, 「생시몽의 사회사상」, 247.

6) Y. Dilas-Rocherieux, 『미래의 기억 유토피아』, 김휘석 역, 서울: 서해문집, 2007, 132.

7) W. Schivelbusch, 『철도여행의 역사』, 박진희 역, 서울: 궁리, 1999, 94)

8) J.-B. Duroselle, "Michel Chevalier, Saint-Simonien", *Revue historique*, Avril-Juin. 1956에서 재인용.

목표는 “현실적 학문을 일반화시키고 사회생활의 기술을 체계화시키는 것”이다.⁹⁾ 콩트는 실증주의에 근거한 인간 사고의 실질적인 체계화와 그에 기반한 도덕적 권위의 형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재조직화를 전망하고 있다. 콩트는 『실증주의 서설』 결론에서 “사랑은 우리의 원칙, 질서는 우리의 토대, 진보는 우리의 목표”라고 제시하고, 이것이 “실증주의가 감정과 이성과 행동 사이의 변경할 수 없는 조합을 통해 인간의 모든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을 체계화함으로써 시작하게 된 궁극적 체제의 기본 성격”이라고 정리한다. 콩트는 이성과 감정 사이의 일정한 조합을 염두해 두지만, 결국은 “유일하게도 이성만이 다양한 현상들을 규제하는 모든 자연스런 법칙에 따라 당연히 인간생활 전체를 이끌어가게 마련인 기본질서를 드러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생시몽이나 콩트에게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도식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더불어 결국 인간들의 공동체적 삶을 최종적으로 가능케 하는 ‘종교적 형태’에 대한 의지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제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에 의한 산업주의의 결함을 보충하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과학기술의 근저에 있는 실증주의적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 유토피아가 실현된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벨라미(E. Bellamy)의 소설 『뒤를 돌아보면서(Looking Backward 2000-1887)』(1888)이다. 벨라미는 19세기의 사회적 모순, 산업사회의 후진성을 고발하고 21세기의 발전된 산업사회를 유토피아 양식으로 표현, 대비시키고 있다. 이 시간의 흐름은 단지 “한 세기가 흘렀을 뿐이지만, 세계사에서 수천년 동안의 변화에 비견될 만”하다라는 언급에서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시간의 응축 효과를 보여주는 예이다(58).

국가는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기업연합이자 기업조직으로서 유기적 통일체로 변모되어 유일의 고용주이자 자본가로 기능한다. ‘산업군대’는 국가가 운영하며, 모든 인민들은 ‘산업군대’에 피고용인이 되어 평등하게 복무한다. 이 체제 하에서 모든 노동자들은 산업군(industrial army)에 소속되고 산업군에서 산출되는 모든 생산물은 모든 인민에게 평등하게 분배된다. 산업군의 조직은 모든 남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받은 다음 21세부터 45세까지 산업군에 소집되어 복무하는 것을 주요한 틀로 한다. 여기에서 산업군에의 복무는 노동자들의 조직화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오히려 마키아벨리적인 공화주의적 특징 즉 ‘시민적 휴머니즘’의 의미를 더 강하게 풍기고 있다. 더 나아가 벨라미의 산업군이라는 노동자들의 준군사적 조직이 스파르타의 군사조직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¹⁰⁾ 이러한 것은 이전세기에 대한 비판 - 사실상은 벨라미가 살던 시대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서 - 으로서 과도한 개인주의와 공공정신이 조화되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제시된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에서 자생적 사회주의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벨라미의 유토피아는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산업주의의 폐해를 공화주의적 사회주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9) A. Comte. 『실증주의 서설』, 김점석 역. 서울: 한길사. 2001, 30.

10) 손세호. “19세기 말 미국 사회주의 사상의 성격 - Edward Bellamy의 ‘공화적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1집. 1993.

노동자들은 공화주의적 원칙의 교육이 중요해진다.

19세기에 ‘사회과학(social science)’이라는 용어는 1820년대 이래 콩트, 밀 등에 의해 상용되어 왔다. 콩트는 사회학(sociologie) 혹은 사회물리학(physique socia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것의 의미는 사회를 연구대상에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 가능하고, 그에 따라 과학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과학적 법칙의 유추가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보여준 것이다. 나아가 자연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장악력을 증가시키고 있었고 그에 따른 낙관적 전망은 과학기술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낳았던 것이다. 그에 따라 산업주의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근거하여 미래의 유토피아를 그릴 수 있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져오는 빈곤과 노동조건의 열악 등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따름이었다.

III. 산업주의에 대한 비판과 희망으로서 유토피아

19세기 산업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현실의 변화는 지대한 것이었다. 엄청난 사회적 부가 증대한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져온 폐해 역시 컸다. 따라서 산업주의의 발달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한 비판과 그러한 산업주의에 근거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역할로서 유토피아가 존재하였다.

우선 19세기 동안 많은 이들에 의해 자본주의적 산업의 발달이 가져온 현실의 노동자의 삶의 변화가 묘사되었다. 빌레르메(L. Villermé)의 『면공업, 모직공업, 견직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관한 보고서(Tableau de l'état physique et moral des ouvriers employés dans les manufactures de coton, de laine et de soie)』(1840)는 당시 사회분석에 대한 탁월한 저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경우 로랑(E. Laurent)의 『궁핍화와 상호조합(Le paupérisme et les associations de prévoyance)』(1856)처럼 궁핍화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도덕의 향상, 상호조합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그것은 당시 자유주의나 혹은 기독교적 경향의 많은 박애주의자(philanthrope)들에게 당연한 방식이었다.¹¹⁾ 하지만 엥겔스는 자신의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에서 노동자계급의 상태가 “모든 사회운동의 진정한 토대이자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산주의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¹²⁾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책을 찾는 가운데 유토피아적 전망이 위치한다.

푸리에는 산업주의가 가져온 폐해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의 제시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푸리에가 상정하고 추구했던 인간은 근대의 초입에 등장하고 가정되었던 인간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인간이었다. 19세기 초반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맞물리면서 가정되고 현실화되는 인간의 모습은 이성적 인간이었고, 자유로운 계약의 주체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푸리에의 사상은 도발적이었다. 그는 획일주

11) G. Procacci. *Gouverner la misère*. Paris: Seuil, 1993; F. Barret-Ducrocq. *Pauvreté charité et morale à Londres au XIXe siècle*. Paris: puf. 1991; R. Castel. *Les métamorphoses de la question sociale*. Paris: Fayard, 1995.

12) F. Engels.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 박준식 외 역. 서울: 두리, 1988, 18.

의적 거대원리에 대항하여 오로지 개인들에서 출발하여 사회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¹³⁾ 그는 산업사회에서 개인들의 노동이 빈곤을 가져오고 억압적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인간의 정념(passion)에 근거하고 그 정념이 실현되는 공간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푸리에에는 사회계약을 논박하고 인간의 결합들 하나하나에 긍정적인 지위를 부여하면서 그 결합들이 다양성 속에서 조직화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¹⁴⁾ 푸리에가 구상하였던 팔랑스테르에서 개인의 욕구와 공동체 사이에 모순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 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노동은 매력적인 것이 되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정념을 발휘하는 공간으로서 생활의 터전이 된다.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인물로서 평가되는 푸리에에게서 권력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는다. 푸리에의 경우 권력이 더 이상 팔랑스테르 사회의 기본단위인 팔랑스의 조직에서 최종목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을 대체하는 것은 바로 정념들이다.¹⁵⁾ 정념을 발산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유로운 결합으로서 팔랑스테르는 구성되며, 권력의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모든 인간은 신으로부터 고유한 열정을 부여받았으며, 그 “모든 열정을 자유롭게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¹⁶⁾ 푸리에가 꿈꾸었던 팔랑스테르는 개인들의 열정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의 열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맑스와 엥겔스는 생시몽의 산업체제나 푸리에의 팔랑스테르를 통한 유토피아의 구현이라는 사상들을 유토피아적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맑스와 엥겔스에게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전망은 역시 유토피아로서 존재하였다. 그리고 많은 부분 그들 유토피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시사받은 점들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맑스와 엥겔스에게 유토피아로서 공산주의는 동시에 현실의 운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로서 제시된 측면과 동시에 현실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자운동으로서 존재하였다. 노동자운동은 유토피아로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자본주의 사회 내의 커다란 주체적인 흐름으로 간주되었다. 주체에 대한 문제설정은 맑스의 공산주의가 유토피아주의적 공산주의와 구별짓는 점이다.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문구가 말하고 있듯이, 잃을 것은 죄수를 밖에 없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는 유토피아인 공산주의로의 이행의 주체로서 설정된다. 그들은 현실의 자본주의적 노동과정 속에서 임금투쟁과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서 거듭난다. 또한 노동자 정당과 노동자 운동 그리고 맑스주의 이데올로기의 지속적인 결합을 통해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사유하고 실행해 옮긴다. 이것이 현실적인 운동으로서 공산주의적 경향인 것이다. 이 주체의 문제는 또한 푸리에에게서 존재하지 않았던 권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맑스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기로 칭하고 있다. 이 시기는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프롤레타리아

13) Y. Dilas-Rocherieux. 『미래의 기억 유토피아』, 2007, 146. 푸리에에는 유토피아에 대해 사고하면서 개인성에 대해 탐구한 유일한 경우로 평가된다. Th. Paquot. 『유토피아』, 조성에 역. 서울: 동문선, 2002, 23.

14) Y. Dilas-Rocherieux. 『미래의 기억 유토피아』, 2007, 149.

15) Th. Paquot. 『유토피아』, 2002, 66.

16) 변기찬. “푸리에(Charles Fourier)의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역사와 경계』, 49집. 2003, 97에서 재인용.

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비상시기이며, 중국적으로 국가권력의 소멸을 준비하는 이행의 시기이다.

구체적인 운동으로서 맑스주의와 노동자 운동과의 결합을 사유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과 더불어 맑스주의 내의 유토피아적 경향성 역시 존재한다. 유토피아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유토피아에 대한 묘사였다. 나아가 현실에 대한 거부이면서 동시에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은 구체적인 실현 의지를 가지고 현실에 작동하는 운동에 따라서는 부수적인 효과의 측면이기도 하다. 맑스에게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다양한 모순들이 해결되는 곳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계급 적대로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의 해소는 물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 도시와 농촌, 남성과 여성의 대립의 해소가 실현된다.

맑스가 먼 미래의 공산주의를 묘사할 때는 말 그대로 유토피아적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몽상적으로 그리고 있다고만은 볼 수 없다. 맑스가 그리는 유토피아는 구성원 자유가 실현되는 곳이며, 그러한 구성원들의 자유의 실현이 결코 공동체의 구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된다. 맑스가 몇몇의 곳에서 그리고 있는 공산주의의 모습을 살펴보자. 우선은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는 아침에 일을 하고 낮에 낚시를 하고 밤에는 독서를 하는 곳으로 묘사된다. 이후 「고타강령비판」에서 공산주의는 두 단계로 나타난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즉 아직은 자본주의 사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서 “개개인은 정확히 자신이 주는 만큼 사회로부터 돌려 받게 된다.” 이 경우 불평등한 개인의 소질, 자연적인 노동능력에 따른 특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맑스는 “모든 권리가 다 그렇듯이 그 내용상 불평등한 권리”라고 본다. 하지만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되면, “개인이 노예처럼 분업에 예속하는 상태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이 사라지고 나면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일차적인 욕구가 되며, 개인들의 전면적인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성장하여 집단적인 부의 모든 원천이 흘러넘치고, 그 때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부르조아적 권리의 좁은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고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이러한 유토피아로서 공산주의에 대한 묘사에서 탈근대적인 측면으로 새롭게 강조되는 부분은 맑스 및 맑스주의에서 ‘정치’에 대한 사유이다. 오랫동안 맑스가 말했던 ‘국가 소멸론’의 테제는 공산주의에서 동시에 ‘정치’의 소멸로 이해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억압적 기구로서 국가의 소멸과 함께 맑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새로운 실천’을 사유했다고 평가된다. 공산주의로 이행 속에서 ‘국가파괴로의 경향’과 함께 ‘정치의 새로운 실천의 형성 경향’을 파악하게 된다.¹⁷⁾ 이러한 측면이 맑스주의가 생시몽주의의 틀을 벗어나 푸리에와 같은 개인들의 열정의 문제를 사유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묘사들을 종합해 볼 때, 맑스는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에서 개인의 자유의 실

17) E. Balibar. “‘공산당선언’의 정정”, 이해민 역. 『역사유물론 연구』, 서울: 푸른산. 1989, 106-107.

현과 공동체의 조직화라는 과제 사이에 어떠한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푸리에의 유토피아적 전망과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앞서 언급한 콩트나 생시몽의 논리가 거대구조 속에 개인들의 배치라고 한다면, 푸리에와 맑스에게서 중요한 점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라는 시각이다.

IV. 산업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디스토피아

반면에 디스토피아를 구상하는 경우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경우와 유사하지만, 당연히 디스토피아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디스토피아로의 경향을 보여주면서 비판으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나아가 디스토피아는 앞의 유토피아의 경향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 즉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경우의 주요한 특징은 그것이 소설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1924)에서부터 조지 오웰의 『1984』(1949)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헉슬리와 조지 오웰의 작품들은 주요하게 전체주의적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그것은 단지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첫 번째 경향의 유토피아에 대해서 역시 비판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근대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갖는다. 헉슬리가 말하는 ‘포드 기원’ 등의 표현은 포드주의의 극단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기술적 유토피아의 허구를 그리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소련이라는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 역시 보이고 있다. 실제 1920-30년대 소련과 미국은 동시에 자신들의 기술적 유토피아라는 공동의 목표 속에서 극단적인 실험들을 행하였다. 소련과 미국의 그들의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헉슬리나 오웰의 눈에 그것들은 한갓 몽상이었을 뿐이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의 서문에서 과학의 발전과 그에 따른 권력의 집중의 경향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응용과학이 정말로 발전을 보게 된 이후에 계속되어 온 바로 그런 종류의 잡아늘리고 잘라버리는 행위가 약간 늘이고 줄이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번만큼은 과거보다 그것이 상당히 더 심해질 것이다. 결코 고통스럽지 않은 이런 현상은 지극히 중앙집권화된 독재 정부들에 의해서 획책될 것이다. 곧 닥쳐올 미래는 방금 지나간 과거와 비슷하겠고 가까운 과거에서는 대부분이 무산층인 사회에서 대량생산을 지향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기술상의 개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항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을 자아내는 경향을 그러내었으므로 그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서 권력은 중앙으로 집중해 왔고, 정부의 통제력이 증가했다.”(11)

“정말로 능률적인 전체주의 국가라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정치적 우두머리들로 이루어진 간부진과 그들이 거느린 다수의 관리 층이 노예생활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압할 필요가 없는 노예

들을 통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사랑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오늘날의 전체주의 국가들에서는 선전부서장들과 신문편집인들과 학교선생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다”(12)

이러한 헉슬리의 지적은 굳이 우리가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아도르노의 문화산업에 대한 지적들, 그리고 알튀세르가 지적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의 다양한 활동이라는 분석 등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조지 오웰의 『1984』에 그려진 새로운 세계로서 ‘오세아니아’는 20세기 전반기 등장한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에 기술적인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을 덧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동물농장』의 연장선 상에서 존재하지만은 않는다. 즉 소련 사회주의의 극단이 아니라 근대사회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책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물론 산업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이다. 인간의 삶은 철저하게 통제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단순히 일상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사고방식과 그 내용까지 철저하게 통제된다. 푸리에가 유토피아에서 마음껏 펼쳐지기를 바랬던 인간의 열정은 철저하게 억압된다.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통제되는 것은 물론이다.

작자인 오웰이 보여주는 사회에서 당이 인간을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무의식까지 통제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려 한다는 점들이 곳곳에서 보여진다. 주인공 윈스턴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기억과 관련한 것들이다. 현재의 상황이 변하면 과거의 기억을 다시 만드는 일이 그의 직업이다. 당의 슬로건 역시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53)라고 밝히고 있듯이, 오세아니아 사람들의 기억을 만드는 것은 곧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상은 물론 시공간을 넘어서는 지배의 일상화이다. 일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언어에 대한 통제이다. 그와 관련한 일은 매일 수십, 수백개의 단어를 없애는 일이다. 최소한의 필요 속에서 낱말이 존재할 뿐이며, 보조적인 단어들은 삭제된다. 당의 중요 행정기관의 명칭이 실재와 정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그러한 연장선상이다. 평화부는 전쟁을, 진리부는 거짓말을, 애정부는 고문을, 풍요부는 굶주림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들이다. 당의 감시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실 중의 하나는 잠꼬대에서 말을 실수하는 사람을 체포한다는 것이다. 감시체계가 인간의 무의식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 예이다.

『1984』이나 『멋진 신세계』 두 책 모두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금지된다. 『1984』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줄리아와 연인 관계를 맺는다. 사실 철통 같은 감시체계에서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조차도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그러한 감시망을 뚫고서 섹스의 쾌락을 맛보고 사랑을 느낀다. 사실 “만족을 위한 성행위는 반역이었고, 성욕은 사상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97). 두 연인은 철저한 감시망을 뚫고서 자신들에게 억눌려 있던 자유와 인간에 대한 애착을 맛본다. 『멋진 신세계』에서 사랑은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성행위만이 가능하다. 주인공은 신세계의 여성 레니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청혼을 하지만, 이미 구세계의 것이 되어버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레니나는 기계적으로 성행위를 위한 준비를 한다. 『1984』에서 윈스턴과 줄리아가 사랑

을 속삭이던 낡은 다락방은 일조의 해방공간이자 저항의 공간이다. 도시 밖을 산책하면서 발견한 고물상 그리고 그곳에 널려 있는 과거의 유물들 그리고 둘만의 공간인 다락방은 “또 하나의 세계였고 멸종된 동물들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과거의 주머니”였다(236). 『멋진 신세계』에서나 『1984』에서 모두 사랑이라는 감정은 철저하게 없어져야 할 것으로 묘사되며, ‘만인은 만인을 위한 공유물’이라는 의미에서 성행위라는 유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멋진 신세계』에서 세익스피어의 작품은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는 매개체이다. 세익스피어의 작품은 말 그대로의 ‘신세계’와 대비되어 등장한다.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곳이다. 주인공 존은 끊임없이 세익스피어를 읽으면서 새로운 어휘에 눈뜨고 어휘들의 신비한 마력에 빠져든다. 존은 신세계 시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시위를 주도하다가 무스타파 몬드 총통에게 소환당한다. 그 자리에서 존은 자신은 편안한 삶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인간의 선택, 그리고 시”라고 말한다(299).

두 개의 책 속에서 그려지는 ‘유토피아’에서 인간의 감정은 새롭게 구성된 사회 속에서 다시 길들여지거나 조정된다. 『멋진 신세계』의 경우 이미 태아 시기부터 인간의 감정들을 일정한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결국 윈스턴이 오브라이언의 함정에 빠져 사상경찰에 체포되고 고문과 세뇌 속에서 연인마저 배반하고 당이 원하는 것 모두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하지만 당이 행하는 것은 단순한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인민 모두의 머리 속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결국 너희들은 당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오브라이언의 단언처럼 윈스턴은 그렇게 되어 가면서 죽음을 맞이한다. 고문을 통해 단순히 죄를 고백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시키는 것이 당의 목표였다.

『1984』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회는 약간은 세련되지 못한 ‘판옵티콘’의 사회일 것이다. 푸코가 말하고 있는 판옵티콘의 사회의 경우 구성원들은 사회적 규율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훨씬 더 세련된 규율 사회일지 모른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1984』에서 그리고 있는 사회 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우리는 통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시나 그러한 우려 속에서 헉슬리나 오웰은 자신들의 작품 속에서 산업주의의 극단으로서 ‘디스토피아’를 그렸을 것이다.

V. 산업주의의 현실들

현실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지니면서 동시에 그것의 실현가능성을 염두해 두었던 유토피아에 대한 기획들이 현실화되는 것은 말그대로 현실적인 것이었다. 유토피아적 사유들은 사회적 현실에 적응해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유토피아로서의 의미는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푸리에의 팔랑스테르가 현실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유사한 흐름 속에서 고갱이 파밀리스테르를 실험한 적이 있다. 그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지만, 푸리에의 그것과의 근본적인 차별성을 갖는다. 푸리에의 팔랑스테르

의 기본적인 출발은 개인의 정념을 통한 즐거운 노동의 추구하고 그것들의 자연스러운 조화였다면, 고갱의 파밀리스테르는 노동의 즐거움과 성과에 대한 올바른 분배를 통해 물질적, 도덕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¹⁸⁾ 현실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 속에서 유토피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일종의 고립된 섬을 만드는 방식이었고, 현실적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말그대로 유토피아적 실험에 그치거나 아주 현실적인 적응 혹은 현실화된 정책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었다.

19세기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노동자 혹은 빈민의 문제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서 제기되었다. 앞서 다양하게 살펴본 유토피아에 대한 사유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답변들은 어떠하였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부르조아지의 현실적 전략 중의 하나는 박애주의(philanthropism) 전략이었고, 구체적인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간의 실현으로 나타났다. 박애주의 전략은 대중적인 빈곤과 폐폐에 대해서는 세심한 조사와 탐구를 통해 현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19세기 박애주의는 대중들을 포섭하고 통제하기 위해 주요하게 두 개의 축을 통해 전략을 구사하였다. 하나는 사회적 보조(assistance)의 축이고 다른 하나는 위생주의적 축(pôle médical-hygiéniste)이었다,¹⁹⁾ 이 두 축을 통해 “인구를 보호하고 형성하는 실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하였다.

19세기 부와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지리적 불균등발전이 발생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교외의 ‘프라이버토피아(privatopias)’가 형성된다. 19세기 런던의 교외지역은 소수 엘리트들을 위한 선택된 피난처로서 시작되었고, 거의 영국 중산층의 지배적인 가정형태가 되었다.²⁰⁾ 사실상 이것은 도시의 ‘문이 있는(gated) 지역사회들’로서 스스로 폐쇄되면서 시민권, 사회적 소속감, 상호부조의 개념들을 훼손시키기 까지 한다.²¹⁾ 이러한 프라이버토피아 형태의 제한적 공간 내에서의 유토피아적 발상은 토마스 모어시대까지 이루어졌던 공간적 유토피아의 재현이다. 즉 특정한 공간 내에서 유토피아의 실현이라는 사고이다.

20세기에 들어서 생시몽주의와 푸리에주의 도시 계획안을 나름대로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이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이다. 그의 작품 「현대도시(La ville contemporaine)」는 생시몽주의를 실현하고 있다.²²⁾ 산업계층의 엘리트는 도시 내의 호화로운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며, 하위계층은 교외의 전원아파트에 거주한다. 생산과 행정의 위계질서에 따라 거주형태와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후 「빛나는 도시(La ville radieuse)」에서 르 코르뷔지에는 생시몽주의와 푸리에주의를 결합하고자 한다. 「빛나는 도시」에는 끊임없이 연속되는 공원 속에 기둥과 같은 원형적 유형의 개방된 도시이며,

18) 민유기. “고갱의 파밀리스테르 이상적 공동체”, 『프랑스사연구』, 2005.

19) J. Donzelot. La police des familles.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1977, 56.

20) R. Fishman. 『부르조아 유토피아』, 박영한 외 역. 서울: 한울. 2000, 101.

21) D. Harvey.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2001, 210.

22) 정진수. “Le Corbusier의 都市案에서 그의 理念과 住居建築에 관한 考察”, 『大韓建築學會論文集』, 5권 3호, 1989, 41.

개인들은 반복되는 생활단위 내에 정원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은 전원과 도시를 동시에 즐긴다는 의미로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안이 실현되는 방식은 20세기 초반 대도시의 인구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단위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사실상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나는 근대도시 주거계획에서는 강조되는 부분은 기능과 효율성의 측면이었고, 인간본질의 측면은 뒤로 밀려났다. 유토피아적 공간은 고립적이거나 선택적 혹은 제한적으로만 존재 가능할 뿐이었다. 1933년 근대건축국제회의(CIAM - Les Congrè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e)에서 채택된 <아테네 헌장>은 현대 도시의 기능으로 네가지, 즉 주거, 여가, 노동, 교통을 채택하였고, 르 코르뷔지에의 영향은 강력하였다.²³⁾ 그것은 현실적인 자본주의적 도시에 대한 구상이었다.

20세기 두 개의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의 기술유토피아일 것이다. 두나라 모두 19세기인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시도들이었다.

1917년 러시아의 혁명은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구체적인 실험과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신경제정책을 실험하면서 레닌은 사회주의는 곧 포드주의와 노동자통제를 결합시킨 것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신경제정책 속에서 전기화는 기술적인 프로그램이자 정치적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국가전기화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전기화는 경제의 재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 나라를 서유럽의 가난한 사회에서 전기와 라디오가 가득 찬 근대적이고 문화적인 사회로 탈바꿈시킬 것이다.”²⁴⁾ 신경제정책 속에서 근대적 과학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은 자본주의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존재했으며, 다만 소유권의 노동자 혹은 노동자 국가로의 이전이라는 단서만 존재할 뿐이었다. 스탈린에 의해 강력히 추진된 산업화 그리고 테일러주의를 대체한 스타하노비즘은 1930년대 소비에트 노동의 모델이 되었다. 2차대전이 끝난 뒤 “서구 따라잡기”는 자본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²⁵⁾ 1844년 맑스가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인간소외의 극복은 인간과 자연의 화해, 즉 “인간의 실현된 자연주의 그리고 자연의 실현된 인간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비록 레닌이 처했던 현실이었던 제국주의에 둘러싸인 ‘일국 사회주의’의 건설이라는 과제와 맑스의 유토피아로서 공산주의 사이에 간극이 불가피하게 존재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현실 속에서 구체화된 사회는 유토피아와는 너무나도 멀었다. 또한 그 구체적인 노력 속에서도 유토피아로의 지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미국 역시 동일한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의 연호가 ‘포드 기원 〇〇〇년’이듯이 포드주의는 20세기 초반 등장하여 미국 자본주의의 대량생산 대량 소비 체제를 가져온다. 이른바 풍요의 시대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품게 하였다.

23) 스즈키 히로유키, 『서양 근현대 건축의 역사』, 서울: 시공사, 2003.

24) S. Buck-Morss, 『꿈의 세계와 파국. 대중유토피아의 소멸』, 윤일성 외 역, 부산: 경성대 출판부, 2008, 174에서 재인용.

25) S. Buck-Morss, 『꿈의 세계와 파국. 대중유토피아의 소멸』, 2008, 167.

1920년대 미국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를 만드는 듯 하였다. 1920년대 중반 경 미국 가구의 60%이상이 전기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이 전세계 전기발전량의 절반이상을 소비했다.²⁶⁾ 2차대전이 끝나고 난 시점에서 미국 산업은 과학기술에 대한 주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의 하루 생산량이 유럽노동자들보다 2~5배 더 많았다.²⁷⁾ 이미 영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식 사회의 모델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세계의 미국화가 시작되었다. 포드주의의 일관작업체계에 기반한 기술패러다임과 법인자본주의의 막대한 생산능력은 미국식 근대성의 체계의 등장을 가져왔다.²⁸⁾ 미국은 ① 법인자본의 잠재적 분배력, ② 자본-노동의 갈등을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문제로 전환하는 거시경제 조정을 통해 완전고용을 약속한 국가의 ‘중립적’ 조절장치와 노동력 관리정책 등에 기초해,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없이도 대중노동자에게 일할 권리와 소득에 대한 권리를 부여했다.²⁹⁾ 이러한 대중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는 미국의 헤게모니 속에서 높은 대중소비에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 시민’의 권리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것들을 테일러는 네덜란드의 상인적 근대성에서 영국의 산업적 근대성을 거쳐 미국의 소비적 근대성으로 진화했다고 근대성의 근대화를 파악한다. ‘모두를 위한 대중소비’를 약속한 미국의 소비적 근대성은 모더니즘 건축양식에서 드러나는 안락에 대한 경멸과 대조적으로 핵가족을 위한 소비적 안락이 집중된 장소로서의 ‘교외주택+쇼핑몰’로 상징되는 일상적 ‘안락의 민주화’를 표상한다.³⁰⁾ 하지만 소비적 근대성의 이면에는 그것이 요구하는 소비자가 될 수 없었던 많은 하층민들 특히 흑인을 위시로 한 유색인종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임금 노동자층은 다양한 형태의 이민노동자로 유입되고 있다.

결국 20세기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산업주의가 현실 속에서 가능한 형태들을 실험해 보는 세기였다. 사실상 꿈꾸었던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었고 오히려 디스토피아의 모습에 더 가까워 보일 수 있다. 단순히 경제적 삶의 윤택함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권력의 망의 존재 때문이다. 그것은 푸코의 상이한 방식으로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VI. 새로운 유토피아를 위하여

26) P. J. Taylor. "헤게모니 순환으로서의 '미국의 세기'", 백승욱 편.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서울: 그린비. 2005, 61.

27) P. J. Taylor. "헤게모니 순환으로서의 '미국의 세기'" 2005. 65.

28) 산업자본주의 시대 영국식 가족자본주의는 1920년대 이후 미국식 법인자본주의 체제로 대체된다. 미국의 법인가업들은 제품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다부문 조직구조의 채택을 특징으로 하는 대개편을 단행했다. 미국의 법인자본주의는 상품과 시장 다양화의 방향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고객을 "제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Arrighi, G. Barr, K. Hisaeda, S. "기업의 변천", 최홍주 역. 『체계론으로 보는 세계사』, 서울: 모티브북, 2008.

29) 안정옥. "소비적 근대성과 사회적 권리", 백승욱 편.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서울: 그린비. 안정옥 2005, 95.

30) P. J. Taylor. Modernities: A Geohistorical Interpretation.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99, 211.

프랑스 공산당은 1978년 22차 당대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 폐기를 선언하였고, 2000년 3월의 30차 당대회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결정론과 혁명적 폭력에 대한 포기를 선언한 후 ‘자본주의 추월계획’을 중심으로 공산주의를 재활성화하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맑스주의가 이전의 유토피아에 대한 사유들을 공상적이라고 비판했던 이유는 그러한 사유들에서 이행의 문제 즉 주체의 문제와 권력의 문제의 부재때문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프랑스공산당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혁명의 폐기는 사실상 맑스주의를 유토피아의 공상성에 한정하여 두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사회주의’의 실험은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맑스주의가 유효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맑스주의가 제기한 문제가 아직은 미해결인 상태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랑스공산당의 변화는 맑스주의가 갖는 유토피아적 의미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에 공통된 것은 근대의 산업주의가 인간의 본성, 특히 인간의 정념(passion)에 반한다는 생각이다. 산업주의는 근대 이성의 발현의 산물이고 그것은 인간의 정념에 대한 억압을 가져오며,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 사회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포스트모던의 새로운 문제의식들이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정념의 문제를 새롭게 사고해야 한다.³¹⁾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로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사유가 유토피아에 대한 사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초현실주의 선언을 주도하였던 브르통은 초현실주의가 추구하는 변화의 내용과 폭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세계를 변혁해야 한다고 마르크스는 말했고, 랭보는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이 두 개의 슬로건은 하나의 것이다”.³²⁾ 그러한 브르통의 선언은 그의 「초현실주의선언」에서 강조한 ‘상상력’의 문제이다. “오직 상상력만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주고 상상력이 그 가공할 금지사항을 조금씩 취소시킬 수 있다.”라는 선언은 20세기의 화두 중의 하나가 된다.³³⁾ 1968년 혁명의 구호는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라!”였다. 그리고 68 혁명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성에 기반한 근대적 기획’에 대한 거부였다. 19세기의 전망이 실현되었던 20세기 동안 그것의 유토피아적 전망은 사실상 힘을 잃은 듯 하다. 오히려 19세기의 다양한 유토피아적 전망 가운데 근대

31) 근대 초기의 스피노자, 19세기 푸리에, 20세기의 벤야민은 아마도 그러한 경향의 사고를 전개한 사람들이다. 근대적 이성의 틀을 벗어나 인간의 정념의 발현을 모색했던 이들이다. 박주원이 ‘맑스에게서 푸리에로’라는 의미는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주원. “푸리에에서 맑스로? 맑스에서 푸리에로: ‘말랑쥬(phalange)’ 즐거운 노동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7집 2호. 2003.

32) 임홍배. “20세기 아방가르드 문예이론의 정치적 지평”, 『독일어문화권연구』. 2003, 6에서 재인용. 브르통은 <샤를 푸리에에게 바치는 오드>(1944)에서 “사람들은 푸리에를 무시했지만, 언젠가는 이들은 좋은 싫든 간에 당신의 치료약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정념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모든 인간적 채도에 대한 존중, 이러저러한 행동에 대한 판단의 거부, 즐거움에 대한 호소, 상상계 문화, 이러한 것들은 기만과 위선이 지배하는 물질주의적 사회와 관계를 끊고자 하는 앙드레 브르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다. Th. Paquot. 『유토피아』, 2002, 50.

33) A. Breton. 『다다/ 쉬르레알리즘 선언』. 송재영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7, 113.

적 기획의 한계를 인식한 가운데 새로운 모색을 시도했던 시각들이 주목을 다시 받기 시작한 것은 산업주의 자체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이다. 지금은 상상력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할 시점인 듯하다.

[참고문헌]

- 민유기. 2005. “고갱의 파밀리스테르 이상적 공동체”, 『프랑스사연구』,
- 박설호. 1993. “역자 서문: 블로흐 사상의 이해를 위해”, E. Bloch. 박설호 역. 『희망의 원리』, 서울: 숲.
- 박주원. 2003. “푸리에에서 맑스로? 맑스에서 푸리에로: ‘말랑쥬(phalange)’ 즐거운 노동 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7집 2호.
- 박태호. 1998. 「서구의 근대적 주거공간에 관한 공간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호강. 1995. “근대서구의 기술유토피아의 이상과 실제”, 『한국사회학』, 29집.
- 변기찬. 2003. “푸리에(Charles Fourier)의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역사와 경계』, 49집.
- 손세호. 1993. “19세기 말 미국 사회주의 사상의 성격 - Edward Bellamy의 ‘공화적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1집.
- _____. 2008. “에드워드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면서』를 뒤돌아보며”, 『미국사연구』, 27집.
- 스즈키 히로유키. 2003. 『서양 근현대 건축의 역사』. 서울: 시공사.
- 안정옥. 2005. “소비적 근대성과 사회적 권리”, 백승욱 편.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서울: 그린비.
- 임홍배. 2003. “20세기 아방가르드 문예이론의 정치적 지평”, 『독일어문화권연구』.
- 장세룡. 2002. “해제: 마르퀴 드 콩도르세: 정치, 역사의 진보”,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장세룡 역. 서울: 책세상.
- 정진수. 1989. “Le Corbusier의 都市案에서 그의 理念과 住居建築에 관한 考察”, 『大韓建築學會論文集』, 5권 3호.
- 최갑수. 1991. 「생시몽의 사회사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Arrighi, G. Barr, K. Hisaeda, S. 2005. “기업의 변천”, 최홍주 역. 『체계론으로 보는 세계사』, 서울: 모티브북.
- Balibar, Etienne, 1989. “‘공산당선언’의 정정”, 이해민 역. 『역사유물론 연구』, 서울: 푸른산.
- Barret-Ducrocq. Françoise. 1991. *Pauvreté charité et morale à Londres au XIXe siècle*. Paris: puf.
- Bellamy, Edward. 『뒤를 돌아보면서: 2000-1887』 서울: 지만지 고전천줄.
- Breton, André. 1987. 『다다/ 쉬르레알리즘 선언』. 송재영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 Buck-Morss, Susan. 2008. 『꿈의 세계와 파국. 대중유토피아의 소멸』. 윤일성 외 역. 부산: 경성대 출판부.
- Castel, Robert. 1995. *Les métamorphoses de la question sociale*. Paris: Fayard.
- Comte, August. 2001. 『실증주의 서설』, 김점석 역. 서울: 한길사.

- Condorcet, Marquis de. 2002.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장세룡 역. 서울: 책세상.
- Dilas-Rocherieux, Yolène. 2007. 『미래의 기억 유토피아』, 김희석 역. 서울: 서해문집.
- Donzelot, Jacques. 1977. *La police des familles*.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 Duroselle, J.-B. 1956. "Michel Chevalier, Saint-Simonien", *Revue historique*, Avril-Juin.
- Engels, Friedrich. 1988.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 박준식 외 역. 서울: 두리.
- Fishman, Robert. 2000. 『부르조아 유토피아』, 박영한 외 역. 서울: 한울.
- Harvey, David. 2001.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최병두 외 역. 서울: 한울.
- Huxley, A. L. 『멋진 신세계』 서울: 문예출판사.
- Marx, Karl. 「경제학, 철학 수고」
- _____. 「공산당 선언」
- _____. 「고타강령비판」
- Owell, G. 『1984』. 서울: 민음사.
- Paquot, Thierry. 2002. 『유토피아』, 조성애 역. 서울: 동문선.
- Procacci, Giovanna. 1993. *Gouverner la misère*. Paris: Seuil.
- Schivelbusch, Wolfgang. 1999. 『철도여행의 역사』. 박진희 역. 서울: 궁리.
- Taylor, Peter, J. 1999. *Modernities: A Geohistorical Interpretation*.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 _____. 2005. "헤게모니 순환으로서의 '미국의 세기'", 백승욱 편.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서울: 그린비.

새로운 세기를 향한 러시아의 인간주의 윤리학

김은실(성신여자대학교)

I. 서론

오늘날 보호막이 전혀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현대문명을 크게 변화시켰다. ‘세계화’로 압축 표현되고 있는 현대문명은 보편화와 대중화, 과학만능주의와 물신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화를 향한 개방화, 표준화의 바람은 국경을 넘어 지구촌의 의미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총성 없는 경제전쟁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경쟁력 상승을 경주시키고 있으며, 세계는 국가 간의 갈등과 경쟁의 메커니즘에 빠져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역학관계는 과거의 국민국가 중심 구조에서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개별 국민들 역시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다.

국제적인 경쟁과 갈등은 곧 국가 내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는 불신과 우열경쟁의 와중에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다. 빈부격차의 심화, 세대 간 물이해와 개인주의화 경향은 사회의 균열과 양극화로 이어지고,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점차로 희소해져 가고 있다. 치열한 승자 독식의 경쟁 양상은 인간을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소외감과 사회병리현상은 자살, 충동적 공격, 저출산, 노인문제, 환경과 생태문제, 전쟁 등등 인류의 공존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과거 사회가 지향했던 빈곤탈출과 경제적 안정, 집단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개인주의 사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문명화된 사회, 세련되고 합리적인 서구의 생활방식이 실현되고 있는 오늘날 스트레스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비해 훨씬 강하게 지구와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물질문명의 발달과 산업발전을 계기로 현대문명은 인간의 영역에 다른 물질적인 것들을 대체시키고 있다. 인간사회는 한정된 재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노출되어 있다. 문명은 생존을 위한 경쟁뿐만 아니라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위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자본주의 산업구조와 인간의 본질 문제가 충돌하면서 긍정적인 해법을 창출하지 못하고, 결국은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마저 자신의 생존과 욕망을 위한 명분으로 전환시키는 몰도덕적이고 몰이성적인 행태들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 자신의 욕망과 안정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방해하고, 그 피해자에 의해 또 침해를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을 촉진시키게 된다.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19세기 러시아 지성계가 인식하고 있던 시대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러시아는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온 유럽 사회와의 조우는 러시아에게 개방과 교류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게 했고, 폐쇄성과 열등감을 해소하고 유럽 열강과 동등한 국제 관계를 유지하려는 열망으로 러시아 지식인 사회는 들떠 있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 열풍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해 있는 정치, 경제적 상황과 유사하다. 1812년 크림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기운을 체감했던 러시아는 유럽 진출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과 농노개혁을 비롯한 국내사회의 근대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유럽과의 관계 속에서 수립해야 하는 러시아의 정체성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이념과 정파를 형성 하였다. 유럽 열강의 치열한 제국 경쟁에서 생존과 발전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사회의 체질개선을 전제로 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느끼고 있는 명제였다. 그러나 시대상황에 대한 동일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법에는 각각의 이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석과 지향성을 드러냈다.

국가 발전과 유럽 진출이라는 명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사회는 급진적이고 물질적인 경향이 대세를 이뤘다. 정부 역시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전통의식보다는 유럽의 혁명적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러시아 국민들 역시 유럽의 부와 사회적인 변화를 한꺼번에 수용하고자 하는 과잉 의욕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 발전의 기초 동력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는 물질적 번영과 정치적 영향력 확보가 일차적인 과제로 인식되었고, 인간주의적 전통에 대한 분석보다는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유럽의 눈부신 발전에 몰입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 정부는 유럽의 제국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쟁력을 창출해 내기 위해 국내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과학만능주의와 물신주의에 점점 빠져 들고 있는 유럽의 정세와, 국가발전이라는 명제에 매료되어 유럽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지성계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유럽문화와 전통을 통해 사회개혁을 촉진하고자 했던 러시아 사회는 공동체 지향적 전통이 구태의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사회분화가 촉진되어졌고,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한 도시집중화와 도시빈곤화를 비롯한 사회병리현상에 몸살을 앓게 되었다. 유럽의 계몽주의 영향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노력마저 역부족인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러시아 사회는 이념적 정향에 따른 분화 역시 심화되어 갔다.

국내외적인 사회변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생겨났다. 근대정신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이 문학과 예술 작품을 통해 표출되기도 하였고, 서구화와 개방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으로 발생한 인간 사회의 갈등과 이탈에 대한 자기반성과 교정에 대한 의지들이 사상가들을 통해 고민되어졌다. 중심 잡힌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에 대한 청사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간주의 윤리학적 소신들

이 사상과 문학을 통해 분출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또한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성이 배제되고 물질주의적 추종으로 생성된 19세기 사회변화를 근대적 병리현상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대유럽 문호개방과 물질적 번영이라는 화두 앞에서 고민했던 러시아 지성계의 자기성찰적 반성과 새로운 20세기에 대한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승자독식의 치열한 경쟁과 인간적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19세기가 지향했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극단성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되었던 러시아의 이성적 윤리공동체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현대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인간의 진정성 문제와, 물질문명과 경제발전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인간본성과 내면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한 현대사회의 윤리적 사회관계 형성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러시아 인간주의에 대한 근대적 성찰

1. 톨스토이의 인간 이성에 대한 기대

19세기 러시아의 사상과 문학은 인간적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반성과 도덕적 책임성에 대한 분석과 통찰력을 갖고 있다. 특히 레프 톨스토이(Лев Николаевич Толстой 1828~1910)는 직업적인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작품과 정신세계 속에서 인간 내면과 사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시도했던 대문호였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노력하였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추구하는 자기규정적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존재이다. 이성을 통해 인간은 삶의 올바른 길을 깨닫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의식을 가지고 자기완성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이다. 이것은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데서 시작된다.¹⁾

당시 톨스토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 견해를 루소의 철학적 영향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문명화, 산업화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²⁾ 그는 서구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나친 숭배와 문명화가 오히려 인간을 타락하게 했으며 인간의 이성과 본질에 대한 왜곡을 불러왔다고 비평하였다. 산업화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러시아인들의 사회, 정치적 생활에 많은 모순을 낳았다고 생각하였다. 근대 기술문명에 대한 반대와 자연성과 교육받지 않은 농부에 대한 이상화, 농부들에 대한 교육과 박애 사업 전개 등에서 그의 사상이 잘 투영되고 있다. 그는 러시아 농부들을 보고, 이들이 기독교적 이웃사랑에 대한 정신을 상징한다는 영감을 얻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의 단순한 삶에서 인간존재의 의미를

1) 이소영, 「톨스토이에 있어서의 삶과 죽음의 문제」,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10, 1997, 31-33.

2) 실제로 톨스토이는 소년기에 루소 메달을 목에 걸고 다닐 정도로 루소에 심취해 있었다.

발견하고 있다.³⁾

당시의 정치 사회적 문제와 대결하면서 전제주의 국가와 혁명운동의 경향을 반대하고 전 인류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당시 근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의 유명한 작품『부활』을 통해서 도덕적 설교, 교회의 종교의식, 사법과 수형제도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문명화와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그의 국가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톨스토이는 『신의 왕국은 당신 안에 있다(Царство Божие внутри вас)』는 작품을 통해 국가는 부자와 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하며 무력을 통해 대중을 박해하고 전쟁을 통해 민중을 살해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19세기 사회의 부조리를 국가와 교회의 전통에서 탈피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믿었던 톨스토이는 혁명가들의 국가 전복 내지는 폭력적 파괴를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고, 오히려 인간에 대한 계몽과 의식개혁을 통한 자기완성이라는 도덕적인 과제를 통해 국가를 극복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는 어떤 식의 사회적 강제나 제도, 기구에 대한 정당화를 부정하였고, 진정한 그리스도교와 조직화된 폭력체로서의 정부는 전혀 양립될 수 없는 요소임을 분명히 했다. 톨스토이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힘이나 폭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다.⁴⁾ 힘에 근거한 어떠한 사회체제도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⁵⁾ 1905년 혁명을 경험한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부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폭력혁명 주장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 모두 러시아 민중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주장하고 있으나, 러시아 민중은 어떤 정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더구나 톨스토이는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면한 재앙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세계관이나 방법론을 유일한 것으로 여겨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⁶⁾ 국가가 질서유지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더 나은 질서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난폭한 혁명행위로 현존 질서를 파괴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현실적으로는 반대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의 숫자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모든 혁명이 폭력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민중들은 폭력에 대한 복종을 강요당하고 때로는 그것을 지지하기도 하며, 나아가 자신들의 상식과 이해관계에 대립될 때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하고 자기들에게 폭력을 통해 고통을 가했던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사용하였다. 인간의 이성적이고 사랑하는 본성에 반대되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폭력 사용을 통한 해결은 인간의 운명을 개선시키는 대신 더 악화시키게 된다.

3) 이에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지하는 것을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해 톨스토이 스스로도 영지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고, 기아구호 조직을 통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4) 제임스 이디 외, 정해창 옮김, 『러시아 철학Ⅱ』, 고려원, 1992, 231.

5) 톨스토이는 폭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에 대한 무저항 신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이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폭력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표명하였다. 톨스토이의 이 같은 무저항주의는 마하트마 간디를 비롯한 반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6) 제임스 이디 외, 정해창 옮김, 1992, 234-235.

이는 인간에게 폭력을 동원하면 저항 없이 동일한 삶의 질서와 동일한 행위 규칙에 복종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모든 폭력을 거부하는 사랑의 교리를 제시함으로써 폭력으로 점철되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단절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부조리 현상은 민족들을 통합하는 어떤 종류의 도덕적 원리도 없고 인간을 동물보다 더 낮은 도덕적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인간에 대한 물이성과 거짓의 난무를 그 원인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근대 과학과 기술적인 진보가 일반적인 행복에 기여하는 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인간의 비참함을 증가시킬 뿐 감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그는 사회문제의 원인이 과학문명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적 발전은 사회적 존재의 영향 밖에서 존재하며, 윤리학에 의해 정립되지 않은 과학은 비도덕적이고 인간의 사명과 삶의 의미에 기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생존경쟁의 법칙에 속하는 이기주의, 쾌락주의에 기반된 물신숭배가 거짓이성을 등장시켜 탈 인간화, 윤리적 중립화를 강화시킴으로써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⁷⁾ 이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궁극적 개념이나 공동의 신념과 행위규칙에 대한 공감대가 향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과학적 지식이 인간을 위해 이용되지 못할 때 인간의 자기소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톨스토이의 과학 윤리에 대한 견해는 윤리를 상실한 과학과 기술이 인간 사회에 대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근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한 톨스토이의 진정한 개혁은 물질적 번영이나 혁명적 저항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윤리적 자기완성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었다.⁸⁾ 인간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소유했던 톨스토이는 인간은 모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이성과 양심은 이 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지각 있는 삶의 목적은 이 힘의 의지인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 실현된다고 믿었다. 감각적 육체적 자연원칙에 지배되는 거짓이성을 거부하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원칙, 즉 이성적 자아의 완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시대적 혁명정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전환을 의미했다. 톨스토이의 도덕적 인간관은 국가의 제도적 틀 속에서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위한 투쟁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었다.⁹⁾ 그는 모든 인간에게 국가나 교회의 목소리에 귀기우리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동할 것을 호소하였다. 인간의 삶은 각자의 개인적인 완전과 무한한 완전으로의 접근을 통해서 완전이라는 영원한 이상을 향해 진일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톨스토이는 미래 질서라는 미신의 이름을 빌어 사용되는 폭력에서 해방될 때 인간은 짐승 같은 생존-고뇌하고, 영혼의 요구와 충돌하며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생존-양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 의식을 고양할 수 있으며, 국가나 교회 등 사회 제도의 무질서와 타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자기완성'에서 가능한 것이었다.¹⁰⁾ 그에

7) 이명현, 차인석, 「오늘의 러시아 철학사상」, 『지역연구』 제3호, 1995, 149.

8) 최대회, 2003, 337.

9) 이러한 톨스토이의 인간관은 국가제도를 개선하려는 자유주의자와 폭력에 근거한 국가 전복을 목표로 하는 혁명적 인민주의자들 모두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

게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는 자아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감각적 육체적 본성은 이성의 당위적 규제활동에 의해 예속되어하는 것이다. 오로지 이성만이 개인을 도덕적 마비에서 구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 당위성을 깨우쳐 준다고 생각하였다.¹¹⁾ 따라서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자연원칙에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거짓이성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낮은 지위, 노예상태, 무지에서 구제될 수 있는 것은 혁명을 통해서도,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국제회의를 통해서도 아니며, 가장 단순한 방법인 참된 정신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은 자유스러운 성품이며, 그것이 없으면 날개 없는 새처럼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사랑과 자유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고안하거나 조직할 필요가 없이 다만 감정을 흐리게 하고, 이를 은닉했던 거짓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적인 완성의 접근을 향해 인간 내부의 사랑을 증대시키는 것이 인류가 직면해 있는 무질서와 파멸의 곤경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이다. 이 같은 사랑의 법칙은 모든 외적인 권위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게 된다. 사랑은 다른 나라의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적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 사랑의 법이 실현하게 된. 이것은 육체에 의해 인간 안에 제한된 신성의 원리이고, 이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인간의 진정한 삶, 신성하고 자유로운 삶이 성취된다. 따라서 사랑의 법은 어떤 이타이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¹²⁾

사랑은 인간 삶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사랑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며, 사랑은 모든 것의 원리가 된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이성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위해서는 이성적인 인간 공동체 건설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로 들어 사랑과 인간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¹³⁾ 이성적 인간공동체는 성서에 근거한 사랑의 법을 통해 실현가능하다. 이와 같이 톨스토이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념은 보편적인 사랑과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톨스토이는 인간해방을 위한 시대적 해법을 고차원적인 의식고양과, 이를 위한 교육과 개인의 자기완성이라는 도덕적 요구에서 찾고 있다.

2. 도스토예프스키의 허무주의적 인간과 형제애적 공동체 의식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Фёдор Михайлович Достоевский 1821-1881)는 인간

10) 최대회, 「톨스토이와 사회민주주의적 인텔리겐치아」,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4, 2003, 335-336.

11) 삶의 의미는 절대적 진리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살아가면서 점차로 가까이 다가가는 진리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진리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찾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명현, 차인석, 1995, 150.

12) 이것은 신약성서(마태 5:43~46)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 위로 그의 해를 뜨게 하며, 의로운 자와 의롭지 않는 자 위에 비를 내리기 때문”이다.

13) “인간은 죽는다. 그러나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작용하며 심지어 살아 있을 때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 사랑을 확대시켜 감에 따라 이러한 작용은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 줄 모르며 확대되고 자라게 된다.” 이소영, 1997, 35.

과 사회문제에 대한 도덕적 해결을 문학적 기교와 철학적 윤리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의 합리적 이기주의에 대하여 러시아 전통에 보존되어 있는 진정한 형제애적 공동체의 이상을 대조시켜 당시 부르주아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세상은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유토피아가 선과 악으로 대립되어 있으며, 악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에서 비롯된 산물로 인식하였다. 부르주아적 생활 방식과 서구의 합리적 이기주의는 사회적 관계의 비인간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하였다. 부르주아 문명의 발달이 소수에 의한 부의 증대와 함께 다수의 빈곤과 정치적 결핍을 가져왔다. 또한 부르주아 사회의 보편적 번영과 사회적 조화는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부르주아적 개체성은 ‘홀로서기’원칙이며,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자기중심주의라고 비판하였다.¹⁴⁾ 따라서 유럽 문명은 이 극단에서 병리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인간은 불안하고 비참함에 사로잡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부르주아 사회의 개인주의 법칙과 부정적 의미의 부르주아적 자유가 사람들을 지상에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에 의한 형제애나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작품을 통해 허무주의적 인간상을 부각시키면서 인간을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가는 악의 계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허무주의는 현대사회의 공허감과 인간의 고독을 의미한다. 허무주의는 신, 불멸성, 양심과 같은 정신세계가 사라짐으로 해서 삶의 의의를 상실하고 기존의 가치들이 부정됨으로 발생하는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인간의 점진적 사멸과 부패를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⁵⁾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문학 작품 속에서 인간 영혼의 문제를 사회와 인간의 자아 관계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¹⁶⁾ 아울러 개인의 도덕 심리를 분석함으로써 허무주의에 대한 인간성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모색하고 있다.¹⁷⁾ 도스토예프스키는 항상 인간 내부의 심원한 곳으로부터 존재론적 문제의 시초를 도출했다. 인간과 신의 관계라는 거대한 문제를 설정함으로써 인간의 문제를 인간 영혼 속에 놓인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접근하고자 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인간관은 그의 작품 속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에서 점차로 긍정적인 자아의 형태로 변화해 간다. 초기 작품에서 그려지는 인간상은 거대사회 앞에서 왜소화된 ‘작은 인간(маленький человек)’으로 묘사된다. 이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거나 혹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으로서

14) 이명현, 차인석, 1995, 153.

15) 이종진,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나타난 허무주의적 인간관」, 『슬라브연구』19집 1호, 2003, 261-263.

16) 백준현, 「도스토예프스키 초기작들에 나타난 인간관」, 『노어노문학』제12권 제2호, 2000, 258.

17) 도덕 심리의 유형화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불의와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에 허무주의적 방식으로 대항하여 사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악과 싸우는 데 파괴적인 타격을 가한다. 둘째는 자신이 경멸하는 사회 논리를 이용하여 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정도의 권력이나 부를 획득함으로써 운명을 극복해 나간다. 세 번째 유형은 인간성의 왜곡과 사회적 관계의 굴레를 현실도피 방식으로 벗어나려는 지적 반항이다.

의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사회 구성인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물상화(物象化)된 인간이다.¹⁸⁾ 또한 그러나 이후 『여주인』, 『백야』에 오면서 차츰 사회 속의 자아를 극복하고 사회 밖에서 자신과 사회를 들여다보는 인간을 통해 소박한 형태의 사회적 자의식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느껴진다.¹⁹⁾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 내부의 심원한 곳으로부터 존재론적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인간과 신의 관계의 설정을 통해 인간의 영혼 속에 놓인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실존적 인간의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였다.²⁰⁾

따라서 당시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을 종교적 재화와 도덕적 재생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였다. 또한 사회 속의 자아를 탈피하고 인식의 다른 차원에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인간의 모습이 문학작품 속에서 전개되었다. 『죄와 벌』에서 과학적 이기주의를 공격하면서 생명의 가치가 도덕적 판단의 척도가 된다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도덕관이 잘 표현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합리적 이기주의에 대해 인간의 생명존중 사상을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불합리와 죄악에 대한 선전포고를 시도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같은 시대적 병리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인간의 자기갱생 능력에서 발견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상의 인간들은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발전하는 존재로서 자기갱생을 통해 도덕적 자아로 돌아올 수 있는 자연적이고 본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의식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어떤 정신적인 원리 즉, 신, 절대정신, 이데아 등을 중시하여 인간정신의 주체성은 그것들을 향해 지향될 때 정당성을 얻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근거로 도스토예프스키는 신을 가장 상위에 놓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신인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를 통해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바로 도스토예프스키가 표방하고 있는 인간이다. 인간이 참된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종교적 감성으로서의 근본인 자유를 통해 인간의 주체성이 성립되는 것이다.²¹⁾ 심지어는 인간이 비합리적인 충동에 휩싸이게 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²²⁾

인간들은 상호간에 신의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서로의 죄에 대해 연민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조시마 장로를 통해 인식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공동체 이상을 구현해 가는 알료샤 카라마조프의 모습에서 새로운 이상인 사보르노스찌(соборность)가 제시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의식이 그 자체에 내적 모순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혼과의 진정한 교류 속에서

18) 인간 내면세계와 분리된 외형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정체성을 상실함으로써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인간상을 묘사하였다. 백준현, 2000, 259.

19) 백준현, 2000, 262-267.

20) 백준현, 2000, 271.

21) 백준현, 「도스토예프스키의 관념적 리얼리즘」, 『한국노어노문학회 정기논문발표회 자료집』 1997.

22) 인간의 비합리적 충동도 인간의 자유를 위해 보여지고 인정된다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변증법이 이를 근거로 전개된다.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²³⁾ 이것이 바로 러시아적 연대성(соборность), 즉 형제애적 공동체의 기본 개념이다. 이것은 외면적으로는 거칠고 무례한 가운데에서도 초월적 이상인 신에 대해 경건한 믿음을 잃지 않는 러시아인들의 선과 악에 대한 자유의 소박한 실현을 의미한다.²⁴⁾ 상호간에 자신들 속에서 선과 악의 공존을 인정하고 악의 순간에도 선을 향한 욕구를 잃지 않고 신적인 자유의 구현자가 되고자 하는 러시아적 인간관이 도스토예프스키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이처럼 신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가 연계되면서 신과 인간 세계의 본성이 결합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프랑스 혁명과 박애(형제애)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²⁵⁾ 프랑스혁명은 부르주아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것에 불과하며, 박애는 단순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박애에 대한 부르주아적 관점과 러시아의 전통적 관점을 비교하였다. 참된 형제애는 개개인을 가치와 권리에 있어서 동등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권리를 사회에 이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개인주의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하고, 권리를 요구하며, 분배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는 형제애는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위해 강요되지 않는 자발성으로 자기희생의 단계에 도달하며 최고로 발전된 개인의 인격, 최고의 침착함, 최고로 자유로운 개인의 의지 표현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형제애는 생명의 최고 단계인 자기희생의 자발적인 단계를 통해 승화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 사랑할 수 없는 상태를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랑은 지상에서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 덕목이자, 인간의 존재 의미이다. 그리고 사랑은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통해 행복의 길로 안내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자유와 도덕성을 갖도록 해 준다. 인간이 자아의 완전한 발전을 최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파괴해야 한다는 역설을 제공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자아의 법칙은 개인의 자아를 전체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각자에게 돌리는 것임을 강조하였다.²⁶⁾ 이와 같이 자아의 법칙은 인간성의 법칙과 융합되어 둘은 하나이고, 자아와 전체는 상호 파괴된 둘이며, 동시에 이 토대에서 양자는 개별적인 발전의 더 높은 목표를 얻게 된다. 따라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지향하는 사회는 교회와 신에 대한 자유로운 사랑에 토대를 둔 형제애적 공동체이며, 이것은 자아의 법칙을 통해 승화되는 것이다.

III. 러시아 인간주의에 대한 종교철학적 전통

1. 러시아 정교회적 인간관

23) 조유선, 「문학작품에 나타난 러시아 정교문화: “소보르노스찌”와 19세기 러시아문학」, 『슬라브학보』 17권 1호, 2002, 129-130.

24) 백준현, 1997.

25) 도스토예프스키는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프랑스 부르주아들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프랑스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에 대한 현실적인 비평을 『여름 인상』이라는 글을 통해 시도하고 있다.

26) 제임스 이디 외, 정해창 옮김, 1992, 261.

인간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고, 신과의 공존 속에서 자연이나 천사보다도 우선시 되는 존재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신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신과 공유되는 형상을 통해 교제하며 창조에 임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신인동형의 속성을 통해 우주만물 속에서 자유와 창조에 대한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모든 문화, 기술, 과학, 예술품들은 정신의 체현, 인간 지혜의 구현, 신인동형의 구체화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²⁷⁾ 그러나 근대 과학과 기술, 산업 발전의 결과로 인간이 물질적인 조건에 밀려나거나 오히려 물상화(物象化)되는 과정에서 그 본질적인 존재성과 정체성을 상실했다.

정교회 원리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러시아의 인간주의 전통은 과학과 물질주의의 성장에서 비롯된 인간성의 상실과 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정치사상적 각성이다. 19세기 러시아의 종교철학은 러시아 정교회 교리와 전통적 공동체 윤리를 중심으로 인간주의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신적인 기원을 갖는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러시아 인간주의 철학을 집대성했던 솔로비요프(Соловьёв В.)는 서구 근대철학의 위기를 합리주의의 위기로 규정하였다. 서구 철학은 이성과 신앙의 갈등에서 탄생되었으며, 신앙의 합리화가 결국은 신앙의 부정을 초래함으로써 순수한 이론적 지식으로 남게 됨으로써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근대성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창조성과 지식, 사회적 실천이 총체성을 이룰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 러시아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존재성과 가치를 정교회 교리를 근거로 신의 속성에서 찾고 있다. 불가코프(Булгаков С.Н.)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성은 신의 창조과정에서 드러난다. 신이 창조과정에서 신은 인간에게 ‘생기(дыхание жизни)’를 불어넣었다.²⁸⁾ 인간 속에 신적인 영(Божественный Дух)을 나누어줌으로써 인간은 신으로부터 리취노스찌(личность: 인격)를 획득하게 되었다.²⁹⁾ 따라서 리취노스찌는 신과 연관되어 분리될 수 없는 전체이다. 신이 인간의 육체에 불어넣어 준 생기를 통해 인간은 신과 공유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신적인 영’은 삼위일체의 리취노스찌이며, 본성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의 개체적 속성을 갖는 리취노스찌(personality)는 영(дух)과 혼(душа)과 육(тела)의 통일체이면서도 영과 혼과 육을 포함하는 완전하고 전체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영적인 실체는 신적인 영성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데, 따라서 리취노스찌는 신적인 이데아이고, 신의 뜻이다.

리취노스찌는 신과 동일한 형상을 소유하며, 따라서 신과 인간은 유사성을 소유하게 되고, 이로써 영원성의 완전한 세계를 함축하는 통일성(единство: unification)을 지향하게 된다.³⁰⁾ 인간은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육체가 아니라 영혼 속에, 즉 동물적인 영혼이 아니라 이성적인 영혼(разумная душа)을 내포하고 있다.³¹⁾ 신과 인간

27) Вышеславцев Б.П. *Этика преображенного Эроса*, М.: Республика, 1994, 287-289.

28) Булгаков С.Н. *Два града*. СПб., 1997, 127-130.

29) 김은실, 「러시아 공동체와 사적자유의 조화」, 『정치사상연구』 제6집, 2002, 152.

30) 김은실, 2002, 153.

31) Вышеславцев Б.П., 1994, 279.

이 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은 인간과 결합할 수 있고, 더욱 가까워 질 수 있게 된다. 고로 인간의 영성 속에 존재하는 자기 인식은 곧 신의 인식이다. 여기에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의 근원이 신적인 이성을 통해 발현됨을 알 수 있다. 인간 본질 속에 신적인 이성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그 속에서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의 완성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인간은 신에 의해서 ‘실존하는’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리취노스씨는 수단이나 객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주체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한 존재이다.

2. 이성적 윤리공동체의 정교회적 의미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지향했던 이성적 윤리공동체 개념은 호먀코프(Хомяков А.С.)에 의해 제시되었던 사보르노스찌(Соборность: 연대성)에 근거하고 있다. 사보르노스찌의 어원은 사보르(Собор)이다. 이는 집회(собрание) 또는 교회의 총회(церковный съезд)라는 신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보르노스찌는 신자들 각자가 신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모두 함께 나오는 것과, 각자의 기도를 창조주에서 올리며 자신의 행위와 소망에 대해 신의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개념이 도출되었다.

일린(Ильин В.В.)은 윤리적 연대를 형성하는 인간공동체의 원리를 정교회 신학사상인 삼위일체론에서 도출하였다.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역할과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통일되고 완전한 속성으로 현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신의 존재론적 개념과 원리를 통해 일린은 깊은 철학적 성찰을 하고 있다. 삼위일체 중 한 형체인 창조주의 계시는 곧 삼위 모든 신의 모습이다. 구약에서 성부를 통해 삼위의 통일성과 유일성을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한 위의 신속에 드러나는 창조주의 모습이다. 신약은 삼위의 두 번째 위(Ипостась: 역할, 속성)로 구현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중심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이 다양한 모습과 역할로 인간에게 현현되어 모든 삼위의 모습이 비록 나뉘어져 보이지만 결국에는 각각의 존재가 그 자체로 충분하며 완전성을 갖고 있다. 즉 하나로도 완전한 존재이면서도, 하나이기도 하며 셋이기도 한 것이 바로 신의 모습이고, 역할이며 속성이다.

이것이 러시아의 윤리 공동체 개념인 사보르노스찌(соборность)의 원리가 된다. 완전하고 조화로운 개인들이 존재하게 되고, 완전한 개인의 자유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사회결합 형태인 것이다. 일린은 ‘하나’의 의미(смысл одного)와 ‘유일’의 의미(смысл единого)를 구분하고 있다. ‘하나’(Один)는 통일성의 이단적 축소이며 단일성(одиначество) 역시 유일성에 대한 축소라고 보았다. 유일성은 분리할 수 없는 통일성의 본질 속에 존재하는 단일성이다.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삼위일체의 본질이다. 삼위일체는 하나의 속성을 갖는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6-17).

여기에서 사보르노스찌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 하나의 속성, 즉 삼위의 핵심인 단일한 속성이 바로 사보르노스찌의 존재성이다. 성부는 인간의 죄를 위해 신의 말씀이자 독생자인 그리스도로 하여금 스스로 죽게 했다. 이로써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죽었다. 성자의 희생을 통한 인류의 구원은 신과 인간의 진정한 결합인 신인성(Богочеловечество) 속에서 구현된 것이다. 이런 통일성의 심오한 내면적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은 희생이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희생으로 성부 속에서 영광스럽게 된 것(요 13:31)과 같이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들도 성자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인간의 형상 속에도 사보르노스찌가 하나의 본질로 나타나게 되었다.

사보르는 인간 각각의 我이다. 인간 각각의 我是 신과 유사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분리할 수 없는 형상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런 각각의 我가 모여 '우리'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인간적인 다수의 통일체(многоединства)를 함축하게 된다. 여기에서 각각의 인간적 我是 곧 신적인 '우리'의 형상과 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호마코프는 강조하였다. 솔로비요프 역시 개인구원사상은 중세적인 구태의 연한 가치관이며 구원은 개체적으로 분리된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적인 일이라고 주장하여 개인주의를 부정하였다. 전인민적인(всенародное) 것은 몰인민적인(безнародное) 것과 일치하지 않으며 인류는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결합되어 있는 온전한 나무이며, 그 가지는 각각의 나누어진 인민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교의 속성은 가지가 아니라 온전한 나무이다. 이와 같이 윤리공동체의 개념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사보르라는 교회조직체의 원리를 사용함으로써 통일성(единство), 자유(свобода), 사랑(любовь)을 통해 자유로운 사람들의 기독교적 사랑에 근거한 결합으로 승화시키고 있다.³²⁾

3. 윤리공동체의 조화로운 자유

윤리공동체 개념인 사보르노스찌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융합(слияние)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하나하나의 자유로운 개체들이 동일하게 통일되는 현상이 바로 사보르노스찌이다. 교회의 집회(церковный Собор)는 다양성 속의 단일성(единства во множестве)을 의미한다. 악사코프(Аксаков К.С)가 표현했던 것처럼 합창에서의 개체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동체(община)가 바로 사보르노스찌의 진정한 모습이다. 극단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절대적인 개인주의(абсолютный индивидуализм)와 절대적인 집단주의(абсолютный коллективизм)의 양극적이고 모순적인 체계를 통해 사보르노스찌가 발현되는 것이다.³³⁾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개인주의는 개

32) Троицкий Е.С., *Что такое русская соборность*, 1993. 참조

33) Струве Н., *Православие и культура*, М., 1992, 181.

인의 자유가 완전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절대적인 집산주의는 공동체의 통일성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양자가 각기의 개념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완전한 양자의 결합이 바로 사보르노스찌가 지향하는 이상이다.

이처럼 사보르노스찌는 보편적이고 단일한 개체들의 유기적인 통일성(орган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을 통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사보르노스찌의 개념을 근거로 트루베츠크이(Трубецкой Е.Н.)는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는 개인주의(индивидуализм)와 공동체의 통일성만을 강화하려는 사회집산주의(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изм)를 반대하였다. 진콥스끼(Зеньковский В.В.)는 가장 중요한 사보르노스찌의 유기적 통일성은 자유를 토대로 한 통일(единство)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 자유와 통일, 이 양자의 조화를 근거로 통일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사보르노스찌는 자유로운 통일(свободное единство)이다. 자유로운 통일은 어떤 권위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개인들이 통일체로 승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보르노스찌는 권위나 강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카르사빈(Карсавин Л.)에 따르면 사보르노스찌는 높은 권위가 인정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체들 간의 심포니아(симфония: 교향곡, 소리의 일치)를 이루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의미가 훨씬 강하다.

심포니아(симфония)는 조화로운 일치성(гармоническая согласованность)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체간의 유기적 통일성, 즉 상호간의 사랑을 토대로 한 자유로운 통일(свободное единство)을 전제로 한다. 호마코프는 교회적 통일성(соборное единство)이 바로 개체 상호간의 사랑을 근거로 자유롭고 유기적인 통일(единство свободное и органическое)을 달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 없이 통일성만 존재하는 권위적인 카톨릭 교회와 통일성 없는 자유가 성립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비판하면서 러시아 정교에서는 사랑을 통해 자유와 통일성의 조화로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였다.³⁴⁾ 따라서 사랑이 결여된 공동체는 사랑하는 신자들의 조화로운 결합이 아니라 강도와 도둑내지는 군중의 군집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³⁵⁾ 만일 통일은 있으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사보르노스찌(соборность)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스보르노스찌(сборность: 군집)을 낳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영적인 사랑의 법칙에 의해 발현된 통일성과 자유는 상호간에 동질성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보르노스찌의 실천적 의미가 되는 브랏스뜨바(братство: 형제애)와 관련을 갖게 된다. 브랏스뜨바는 사랑과 자유에 의해 발현되기 때문에 단순한 집산주의(коллективизм)와는 구별된다.³⁶⁾ 이와 같이 사보르노스찌는 분절된 각자의 삶에 몰두하게 하는 개인주의(индивидуализм), 또는 통합이나 공동체만을 강조하는 전체주의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공동체의 연대성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슬로비옙프에 따르면 세상의

34) 김은실, 2002, 162-163.

35)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 *Хомяков и Бобыри*, <http://www.izvestia.ru/culture/article100260>

36) Зеньковский В.В., *“Обращение к русской молодежи”*, <http://pedagog.eparhia.ru/bibl/vest/obrsch/>

모든 존재는 절대성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이며, 프세이진스뜨바(Всеединство: 전일성)는 이런 개인의 자유라는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타자에 대한 관계의 부정으로 얻어지게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유일한 자유(единое свободно)는 비록 자유를 획득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내부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결함을 안게 된다. 왜냐하면 자유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의 형상을 닮은 리취노스찌의 결합은 어떤 형태의 예측성도 거부하며, 사랑을 통한 자유로운 결합을 전제로 한 세계 민족 간의 연대성을 의미한다. 러시아 사상가들이 지향하는 공동체주의 이상은 자유로운 리취노스찌의 조화를 통해 통일체를 이룸으로써 그 수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러시아 윤리공동체의 사보르노스찌 개념은 단순한 사회통합의 차원을 넘어 러시아인들의 세계적 사명과 역사적 통합에 대한 이상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인들의 정체성과 국민적 자존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사보르노스찌는 프세이진스뜨바와 형제애를 통해 그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³⁷⁾ 사보르노스찌와 프세이진스뜨바는 모두 실천적 의미의 형제애에 기초하고 있다. 형제애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시켜 주는 원동력이다. 모든 종교적 운동은 사랑의 연합과 내면적 성장, 진리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것을 하나로 결합시켜야만 한다. 이 때 형제애는 교회의 헌신과 상호간의 필요한 사랑의 달성을 위해 존재한다.

러시아 인간주의는 신의 형상을 닮은 리취노스찌의 결합 원리를 민족 간의 관계에 적용시켜 민족적 애고이즘의 극복과 상호 결합을 통해 러시아적 연대성을 넘어선 세계적인 연대를 실현시키는 것까지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베르자예프는 러시아 공동체 사상을 인민들의 형제애(братство)라고 볼 수 있으며, 보편적 구원(всеобщие спасение)을 모색하는 것으로 인류에 대한 책임이라고 규정하였다. 베르자예프와 일린은 러시아 정교이념이 러시아인들의 자유의지와 더불어 자유로운 양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 인민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영혼의 자유는 서구의 자유롭고 계몽된 인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믿었다.³⁸⁾

IV. 결론

러시아 사상의 르네상스로 불리던 19세기로 거슬러 가보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정치사회 변화와 국제정치 상황이 유럽을 뒤흔들고 있었다. 과학문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을 통한 급진적인 정치 경제변화, 프랑스 제국과 시대정신으로 일컬어졌던 나폴레옹의 유럽 지배와 몰락을 바라보면서 러시아 지식인 사회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19세기 중반에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Война и Мир)』에 잘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유럽의 변동과 1812년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공은 러시아 사회를 자극시키기에 충분했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 지식인들은 유럽문명 세계에 대한 러시아적 공동체 윤리

37) 불가코프(Булгаков С.Н.)는 프세이진스뜨바의 의미를 자연으로부터 신에게로의 상승과정이라고 보았다.

38) Бердяев Н.А., *Русская идея*, Париж, 1971, 48.

를 통한 극복을 모색하였다. 정치 경제적으로 급변하고 있던 유럽 사회는 부르주아 문명을 형성하여 경쟁과 승자독식의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마저도 파괴해 버리고 진정한 인간본질을 망각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결국 소수에 의한 부의 증대를 초래하는 부르주아 문명의 발달은 그들이 주장하는 부르주아 사회의 보편적인 번영과 사회적 조화가 아니라 다수의 빈곤과 결핍을 초래함으로써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와 인간에게 자기생존 능력이 있다는 러시아 인간주의 윤리학에 대한 확신은 현대사회에도 희망의 메시지로 들린다.

정치는 그 시대에 대한 성찰을 통해 대중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부의 사회적 배분과 불평등 해소라는 경제학 기능에 몰입하게 되면서 시대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 제시라는 정치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당시 유럽을 비롯한 러시아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인간 이성에 대한 두터운 신뢰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위력 앞에 서 흔들리는 인간의 정체성에 좋은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록 이상주의적이고 관념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겠으나, 인간주의 정신을 토대로 한 러시아의 윤리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현대 사회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미래 사회에 대한 윤리적인 지향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대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은실. 2001. 「러시아 정교이념의 정치적 수용」 『정치사상연구』 제5집.
김은실. 2002. 「러시아 공동체와 사적자유의 조화」 『정치사상연구』 제6집.
백준현. 1997. 「도스토예프스키의 관념적 리얼리즘」 『한국노어노문학회 정기논문발표회 자료집』.
백준현. 2000. 「도스토예프스키 초기작들에 나타난 인간관」 『노어노문학』 제12권 제2호.
이명현, 차인석. 1995. 「오늘의 러시아 철학사상」 『지역연구』 제3호.
이소영. 1997. 「톨스토이에 있어서의 삶과 죽음의 문제」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
이종진. 2003.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나타난 허무주의적 인간관」 『슬라브연구』 19집 1호.
제임스 이디 외 엮음, 정해창 옮김. 1992. 『러시아 철학Ⅱ, Ⅲ』 고려원.
조유선. 2002. 「문학작품에 나타난 러시아 정교문화: “소보르노스찌”와 19세기 러시아문학」 『슬라브학보』 17권 1호.
최대희. 2003. 「톨스토이와 사회민주주의적 인텔리겐치아」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4.
홍완석 엮(2001). 『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 일신사.

- Арсений и Гулыга. Формулы Русской идеи. <http://kolev3.narod.ru/Books/Imp/gul.htm>
Бердяев Н.А. 1935. Свобода и дух. Лондон.
Бердяев Н.А. 1936. "Проблемы человека". Путь. №50: 12—26.
Бердяев Н.А. 1971. Русская идея. Париж.
Бердяев Н.А. 1998. Духовный кризис интеллигенции. Москва.
Булгаков С.Н. 1991. "Христианский социализм". Споры о судьбах России. Новосибирск.
Булгаков С.Н. 1994. Свет невечерний. Москва.
Булгаков С.Н. 1997. Два града. СПб.
Вышеславцев Б.П. 1994. Этика преображенного Эроса. М.: Республика.
Вышеславцев Б.П. и др. 1990. О России и русской философской культуре. М.
Достоевский Ф.М. Полн. собр. соч. т. 18.
Елсуков А.Н. 1997. История социологии. Минск.
Зеньковский В.В. "Обращение к русской молодежи". <http://pedagog.eparhia.ru/bibl/vest/obrsch/>
Ильин В.В. 1926. "О небесной и земной соборности". Путь. №6: 716—720.
Институт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1996. The new course of Russia: Premises and goals. Москва: Асадемия.
Карташев А.В. 1996. Церковь-История-Россия. Москва.

- Ким Ын Сил. 1999. "Идея мессианизма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России". Диссертация МГУ.
- Крейтор Н.К. 1998. Миссия России: Русский социализм. Конкурс Журналистики. <http://press.21.ru/print.phtml?id=862>
- Лосский Н. 1990. Условия абсолютного добра. М.
- Лосский Н.О. 1991.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философии. Москва.
- Маслин М.А. и др. 1995. Русская философия: словарь. М.: Республика.
- Национальная служба Новостей. "Общественное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стройство". <http://www.nns.ru/elects/documents/derzhd2.html>
-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 Хомяков и Бобры. <http://www.izvestia.ru/culture/article100260>
- Поляков Л.В. 1996. Россия как философская проблема: Как Россия нас обустроивает. Москва.
- Поляков Л.В. 1998. Путь в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одернизация как деархаизация. М.; Ифрфн.
- Соловьев В.С. 1989. Сочинение: В 2т. Т. 1. Москва: Правда.
- Струве Н. 1992. Православие и культура. М.
- Струве П.Б. 1997. Patriotica: Политика. культура. религия. социализм. Москва.
- Троицкий Е.С. 1995. Соборная сила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России.
- Троицкий Е.С. 1993. Что такое русская соборность.
- Хомяков А.С. 1988. О старом и новом. Москва.

유럽의 새로운 역할: 규범적 리더 또는 현실적 타협자?

김남국(서울대학교)

“인간은 완전하게 사악하지도, 놀랍도록 선하지도 않다.”
“누구나 전쟁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권위를 갖고 있지만 끝내는 것은 그렇지 않다.”
-마키아벨리, 로마사논고

1. 서론: 국민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실험?

코소보 전쟁과 이라크 전쟁 이후로 유럽연합은 두 가지 정책영역에서 빠른 진전을 경험했다. 하나는 난민과 망명에 관한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안보와 방위에 관한 분야이다. 두 정책은 전혀 다른 분야에 속하지만 유럽이 그 무능력을 실감한 두 개의 전쟁을 통해서 급속도로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정책의 분석을 통해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 유럽연합의 역할이 과연 인권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규범적 리더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아니면 배타적으로 자신의 이해와 국경을 방어하는 현실적 타협자로서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살펴 보려는 것이다.

규범적 권력이란 무엇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렇게 형성된 규범을 통해 다른 행위자의 행동과 선택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규범적 권력은 유럽연합이 모범적인 수준의 법의 지배와 인권의 향상,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행사될 수 있다. 이 권력은 경제와 외교, 제도적 협력에 기반한 시민적 권력과 다르며, 재래식 군대와 핵무장에 기반한 군사적 권력과 다르다.¹⁾ 유럽연합은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국제²⁾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나 교토기후협약(Kyoto Protocol)의 출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가치와 원칙을 지지하는 규범적 권력의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이야기 된다. 유럽연합이 여전히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경제적 이익을 자주 당근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규범적 권력과 시민적 권력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자체의 안보와 방위정책을 개

1) Ian Manners, “Normative Power Europe: a Contradiction in Ter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0(2002): 235-258.

2) Sibylle Scheipers & Daniela Sicurelli, “Normative Power Europe: A Credible Utopia,”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5(2007): 435-457.

발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권력과 구분도 쉽지 않지만 규범적 권력은 유럽연합의 현재 단계와 미래의 발전 방향을 검증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유럽연합은 확실히 인권과 안보의 두 정책 분야 모두에서 규범적 권력의 성격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난민과 망명정책은 보편적 인권의 정신아래 박해 받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안보와 방위정책은 인도주의적 원조의 정신아래 위기관리와 재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정책은 동시에 배타적인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자신의 이해와 국경을 지키는 현실적 타협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준다. 규범적 권력의 문제는 유럽연합이 과연 국민국가의 부정적인 특징을 뛰어 넘는 새로운 실험인가라는 질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3)

전통적인 국민국가가 갖는 강점은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대규모 군대와 무기를 동원하여 근대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는 중앙 집중된 권력을 통해 무임승차자(free rider)나 배신자(defector)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대 국민국가는 대규모 전쟁에 필요한 병사와 자금을 효율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다른 모든 형태의 국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⁴⁾ 국민국가는 동시에 위계질서의 확립과 화폐의 도입, 도량형의 통일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정치발전에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성공했다.⁵⁾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강점들은 국민국가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이 세계주의적 해석보다 우위를 점하면서부터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다. 국민국가는 사실상 출범부터 두 가지 얼굴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은 국민국가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국민국가의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던 요소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민족이었다. 근대국민국가는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통합의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는 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구화에서 기원한 다양성의 도전이 동질적인 국민국가를 위협하면서부터 국민국가는 종종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른 소수집단을 배제하는 억압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⁶⁾

분명 점증하는 안보이슈의 우선화와 난민에 대한 국경통제의 강화는 규범적 권력으로서 유럽연합의 토대를 침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럽연합이 과연 전통적인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향한 실험인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군사력과 분명한 국경을 지닌 채로 요새처럼 강화된 유럽은 유럽과 비유럽사이의 벽을 더 높게 만들고 국민국가가 갖는 배타적 성격을 단지 규모만 키운 상태로 재생산해 내는 현실적 타협자로서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 상태의 유럽은 과연 유럽연합이 평화를 향한 새로운 프로젝트이었는지, 아니면 세계를 장악하는 또 하나의 제국을 탄생

3) Joseph Weiler, "A Constitution for Europe? Some Hard Choic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0(2002): 563-580.

4) Charles Tilly,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38-39.

5) Hendrik Spruyt, *The Sovereign State and Its Competitors: An Analysis of System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166-167.

6) Jurgen Habermas, 'The European Nation-State,' in Cronin and Greiff (eds.), *The Inclusion of the Others* (Cambridge: The MIT Press, 1999), 115.

시키려는 것이었는지 구분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다.⁷⁾

바꿔 말하자면, 대규모 국민국가로 재탄생한 위계적 질서의 거버넌스는 유럽연합이 갖는 규범적 호소력을 약화시킨다.⁸⁾ 이러한 체제는 빠르고 효율적인 집행력을 앞세워 회원국들 사이의 다양성과 절차적 심의를 희생시킬 수 있다. 즉, 중앙집중화 된 하향식 거버넌스는 유럽연합이 규범적 권력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발전의 길은 단일한 정통성의 근거나 배타적인 영토 주권을 강조하지 않고, 공유된 권위와 함께 복합적인 차원의 네트워크와 사법권 등이 유럽의 거버넌스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새로운 중세’ (new medievalism)나 ‘포스트모던 정치제도’ (postmodern political institution), ‘다원적 거버넌스’ (plurilateral governance) 등의 개념으로 표현되었다.⁹⁾ 현재의 유럽은 두 가지 발전 가능성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규범적 리더가 되는 것이 정부간 네트워크 체제아래서 유지되는 다원적 거버넌스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다면, 현실적 타협자가 되는 길은 초 국민국가로서의 유럽연합 체제아래서 유지되는 위계적 거버넌스와 친화력을 갖는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갈등하는 유럽연합의 발전방향을 인권과 안보의 두 정책분야를 검토함으로써 가늠해 볼 수 있다.

2. 난민과 망명정책: 요새화된 유럽 vs. 보편적 인권

최근 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난민 및 망명 정책의 이면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경제적 이익에 기초했던 초기의 통합 비전이 정치적 통합의 심화와 함께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로 유럽연합은 경제적 혜택 대신에 독립적인 정치공동체가 반드시 갖춰야 할 인권정책을 내적 추진력으로 삼기 시작했다. 2000년 기본권리에 대한 장전의 채택과 이후 헌법조약에 이 장전을 포함시킨 것은 점증하는 인권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변화들이다. 둘째로 더 직접적인 이유는 유고내전 때문에 발생한 대규모 난민이 유럽연합의 영토 안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은 공동 난민 및 망명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대규모 난민의 유입에 대처해야만 했다. 암스테르담 조약의 4장,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

7) Richard Whitman, “Road Map for a Route March? (De) civilizing through the EU’s Security Strategy,”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1(2006): 1-15. Charlotte Bretherton & John Vogler, eds., *The European Union as a Global Actor* (London: Routledge, 2006).

8) Jan Zielonka, “How to Exercise Europe’s Power,” *International Spectator* 43 (2008): 63-77.

9)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John Ruggie,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1993): 139-174. Jeremy Rifkin, *The European Dream* (New York: Penguin, 2004). Philip Cerny, “Plurilateralism: Structural Differentiation and Functional Conflict in the Post-Cold War world Order,” *Millennium* 22(1993). Jan Zielonka, “Plurilateral Governance in the Enlarged European Un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5(2007): 187-209. Andrew Gamble, “Regional Blocs, World order, and the New Medievalism,” in Telo, M. ed., *European Union and New Regionalism* (Aldershot: Ashgate, 2007).

련된 비자, 망명, 이민 및 기타 정책들’은 제네바 난민 협약과 뉴욕 협약을 존중하는 공동의 난민과 망명, 그리고 임시보호 정책을 5년 안에 수립할 것을 정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1997년 2월에 ‘난민의 임시보호에 관한 지침’(Temporary Protection for Displaced Persons)을 제안하였고 1998년 6월에 수정안을 제시하였지만 이 지침은 2001년 7월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이 지침의 채택을 위한 협의 과정은 1999년 코소보 전쟁으로 그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코소보 전쟁 때문에 유럽연합의 영토 안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자 유럽연합은 1999년 10월 핀란드 Tampere에서 특별 유럽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자유와 안보, 정의의 유럽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Tampere 이정표 (Tampere milestones)를 채택하였다. 유럽 정상들은 유럽통합이 인권과, 민주적 제도, 그리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를 존중하고자 하는 공동의 약속에 굳건히 기반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유럽정상회의의 의장 성명서는 이러한 자유가 유럽연합의 시민들만이 누리는 배타적 권리로 간주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영토에 당기를 희망하는 외부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정신과 모순된다고 지적하였다. 연대를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답할 수 있는 개방되고 안전한 유럽연합을 지향한다는 약속과 함께 유럽의 정상들은 망명처리 기준 절차, 망명접수의 최소 조건, 난민지위의 인정에 관한 규칙, 망명처리의 당사국 지정 문제 등을 포괄하는 ‘공동의 유럽 망명 체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표 1은 Tampere 정상회의 이후 유럽연합이 채택한 주요 난민 및 망명 정책과 지침들을 요약한 것이다.

표 1 1999년 이후 채택된 난민 및 망명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지침들

Policy and Directives	Year	Main Contents
European Refugee Fund	2000	Enhancing solidarity among member states and sharing burden due to the number of application difference, 2000-2004 budget 216million euro
Temporary Protection for Displaced persons	2001	Adoption of a protection case in 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through QMV Basic 1 year plus renewable twice 6 months each time, total 1 year Prohibition of asylum application during temporary protection
Minimum Standards on Reception of Refugees	2003	Principles of subsidiarity and proportionality Not applicable to persons under temporary protection Giving priority of employment to EU citizens, own nationals, and legal residents of third country to protect labor market
Dublin Convention II	2003	Criteria and mechanism for determining responsible member states to examine asylum application Prohibition of asylum shopping through sharing application information
Eurodac	2003	Sharing fingerprint and information of asylum seekers
Common Definition of Refugees	2004	Principles of subsidiarity and proportionality Criteria of a lesser form of protection Compulsory deportation in cases of security threat & final judgment of guilty
Asylum Procedure for Minimum Protection of Refugees	2005	Principles of subsidiarity and proportionality Provision of safe third country

이처럼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코소보 전쟁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응으로 나온 정책은 2001년 난민의 임시보호에 관한 지침이었다. 임시보호 제도는 적어도 세가지 측면에

서 정규 난민의 신분과는 다르다. 첫째, 난민의 자격에 대한 심사과정이 개인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단 단위로 이루어진다. 내전으로 인해 일시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됨으로써 개인별로 지원서를 검토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임시보호 제도 아래 보호 받는 유민은 정규망명자 신분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것은 임시보호 제공국가의 사회적, 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다. 셋째, 임시보호 제도 아래 보호 받던 사람들은 위협상황이 안정되면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 역시 2001년에 채택된 임시보호 제도 아래 보호 받는 사람과 2003년에 채택된 정규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기준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다.

임시보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이 정책은 제네바 난민 협약이 규정한 난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즉,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로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서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개인단위가 아니라 집단단위로 심사하고 판단함으로써 빠르고 유연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적인 자격시비에 따른 시간 낭비를 막고 서류심사과정의 실수에 따른 부적절한 송환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은 대규모 난민의 국내유입을 원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인도주의적 원조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유럽시민들의 서로 상반된 요구에 대한 하나의 타협책이 될 수도 있다.¹⁰⁾ 이런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은 임시보호 정책이 오히려 난민정책이 갖는 자의적이고 우연적인 자선정책으로서 성격을 제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옹호한다.¹¹⁾

반면, 임시보호 제도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이 정책은 정규 난민으로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개별 난민의 안전보다는 수용국가의 이해를 우선 고려하여 단기간의 임시보호를 제공한 후에 빠른 송환을 통해 본국이나 원래 거주지로 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남용될 수 있다. 회원국가들은 이 제도를 통해 정식 망명신청을 중단시킬 수 있고 난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긴장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이 정책은 자동적인 구금이나 고용 제한 등 난민의 권리와 혜택의 규제를 통해 사회통합을 방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강제송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코소보 전쟁 기간 동안 난민의 대량 유입 때문에 정상적인 망명신청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었던 나라가 독일 한 나라 정도였다고 볼 때 유럽연합의 회원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임시보호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¹²⁾

공정하고 빠른 절차를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의 여타 난민에 관련된 지침과 정책들 역시 난민의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유럽난민기금(The

10) Joan Fitzpatrick, "Temporary Protection of Refugees: Elements of a Formalized Regim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4(2000): 279-306.

11) W. J. Dacyl, "Europe Needs a New Protection System for 'Non-Convention'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7(1995).

12) Erik Roxström and Mark Gibney, "The Legal and Ethical Obligations of UNHCR," in Niklaus Steiner, Mark Gibney, and Gil Loescher, eds., *Problems of Protection* (London: Routledge, 2003).

European Refugee Fund)은 회원국가간 망명신청 숫자의 차이에 따른 부담을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Dublin II 는 망명신청자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어떤 나라가 개별 망명신청 서류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고 한꺼번에 여러 나라에 망명 신청 을 하거나 또는 한 나라에서 거절당했을 때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에 망명신청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rodac은 망명신청자의 지문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에 채택된 난민의 공동정의에 관한 지침은 정식 난민보다 낮은 단계의 보호형태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유죄를 최종적으로 선고 받았을 때 강제 송환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은 개별 회원국가에 의한 정책수행보다 유럽연합에 의한 개입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에만 개입한다는 ‘보조성의 원칙’과 그렇게 개입할 경우라도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례성의 원칙’아래 난민 문제에 관한 회원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회원국가와 유럽연합, 그리고 제네바 난민협약을 비교할 수 있다. 표 2는 각 공동체의 정책 차이를 표시한 것이다.

표 2 개별국가, 유럽연합, 그리고 제네바 난민 협약 사이의 난민 및 망명 정책의 비교

Individual State	European Union	Geneva Refugee Convention
Non-arrival policy, Carrier sanction	No non-arrival and carrier sanction, Prohibition of asylum shopping	Right to apply for refugee status, No visa and document requirement No carrier sanction
Chain deportation through diversion policy, Actual breach of non-refoulement	No compulsory deportation, Criteria of safe third country, Deportation in cases of final judgment of guilty & security threat	No compulsory deportation, Deportation in case of final judgment of guilty
Introduction of various deterrent measures such as automatic detention, denial of social assistance & family reunion rights, restriction of access to employment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Right to association, Priority of employment to own nationals, Discrimination according to nationality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Right to association, Priority of employment to own nationals
Introduction of a lesser form of status with fewer rights and benefits such as B status, humanitarian status, exceptional leave to remain	Acknowledgement of a lesser form of status with fewer rights and benefits	No temporary status & lesser form of status

이 비교에 따르면 제네바 난민 협약이 난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가장 규범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면 개별 국민국가는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를 우선하면서 엄격한 국경통제와 망명신청의 철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체로 개별 국민국가는 늘어나는 난민과 망명 신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¹³⁾ 첫째, 각 국가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난민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도착 억제 정책(non-arrival policy)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사전 차단당한 이들 가운데는 정식 망명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개별 국가는 또한 정식 서류를 갖추지 못한

13) UNHCR, *The State of the World's Refugees 2000: Fifty Years of Humanitarian Action* (Geneva: UNHCR, 2000).

승객을 수송한 배와 비행기에 벌금을 부과하는 운송 제재(carrier sanction)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네바 난민 협약은 비자나 서류 없이도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도착 억제 정책이나 운송제재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 역시 그러한 규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이 Eurodac과 Dublin II 를 통해 난민들의 망명 소경을 억제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둘째, 개별 국민국가는 이미 자신들의 나라에 도착한 난민의 경우 전환정책(diversion policy)을 통해 이른바 안전한 제 3국으로 재 이송 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시도는 종종 연쇄적인 송환과정을 통해 결국 난민 자신의 본국으로 송환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것은 분명히 제네바 협약이 금지한 난민의 자유가 위협받는 국가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한 원칙(non-refoulement) 을 어기는 것이다. 제네바 난민 협약 33조는 도착국가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해 유죄를 판결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민에게 적대적인 환경이 사라지기 전에 본국으로 강제송환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안전한 제 3국의 범주를 인정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범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난민의 본국 송환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강제송환의 인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셋째, 개별 국민 국가는 일정기간 자동 구금이나 사회보장혜택의 제한, 가족 재결합 권리의 제한, 고용 제한 등 다양한 억제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망명신청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제네바 난민 협약은 인종과 종교, 출생지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주택제공, 교육제공, 이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고용제한과 관련하여 제네바 협약은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인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3년 이상 도착 국가에 머문 난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차별을 금지하고 결사의 자유 등을 인정하고 있지만 도착국가에 위협이 되는 서로 다른 정도에 따라 구분해 놓은 국적에 의한 차별은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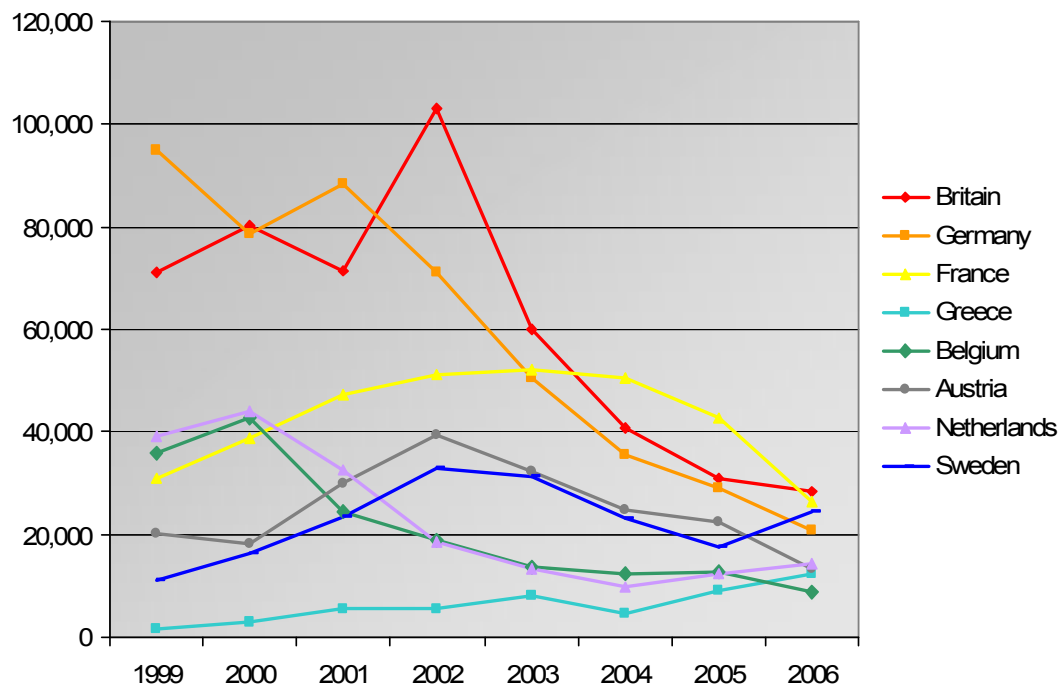
넷째, 개별 국민국가는 정규난민과 구별되는 더 작은 권리와 혜택을 갖는 B 지위, 인도적 지위, 예외적 체류 등의 부차적 난민 지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각 국가는 난민 보호의 인도적 필요성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국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특히 개별 국민국가는 난민이 받은 정치적 위협을 본국의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위협과 부족이나 반란군 등 비국가적 단체에 의한 위협으로 구분하여 후자에 의한 위협을 망명 신청에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네바 난민 협약은 난민의 부차적 지위나 임시보호 정책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중에 유엔인권위원회는 전통적인 인권협약으로 포괄되지 않는 자의적이고 자선적인 보호를 피하기 위해 임시보호 정책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성문화 하였다. 유럽연합 역시 2004년 채택된 지침에서 정규 난민 신분 이외에 부차적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지위에 따른 차별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정책에서 보여지는 유럽연합의 전체적인 입장은 확실히 제네바 난민 협약 보다는 덜 규범적이다. 그러나 국경통제와 망명 신청 검토에서 개별 국민국가 보다는 훨씬 규범적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유럽연합이 개별 회원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규범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두 가지 구조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충분한

연대와 소속감을 갖고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유럽시민의 부재를 뜻하는 ‘민주주의의 결여’의 역설을 지적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시민에게 직접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에 직접 영향 받는 회원국가와는 다르게 심지어 9/11이후에도 철저한 국경통제와 반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극우단체들의 활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다.¹⁴⁾ 둘째로 유럽의 규범적 비전을 공유하고 유럽연합의 이해를 회원국가의 이해보다 우선하는 유럽연합 엘리트들 사이의 ‘합의의 문화’를 들 수 있다.¹⁵⁾ 특히,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제안은 항상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최종 채택된 지침보다 더 규범적이다. 예를 들어 난민의 정의에 관한 2001년 집행위원회의 제안과 최종 채택된 2003년 지침을 비교해 보면, 초기 제안이 7조 5항에 모든 난민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권리를 포함시켰지만 최종 채택된 안은 이 조항을 없애는 대신 11조 4항에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난민의 차별적 대우를 포함시켰고, 3조 3항에 임시보호 정책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난민은 정규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처럼 규범적 권력의 성격을 가능하게 하던 유럽연합의 역설적인 토대는 공동의 정체성을 갖는 유럽시민을 만들어 내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체제의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결여를 해소하려는 시도들에 의해 점점 약화되고 있

그림 1 Number of Refugee Applications



다. 그림 1은 유럽연합 회원국가들 사이에 공동 난민 및 망명 신청 체계의 도입 이후 난

14) Carl Levy, "The European Union after 9/11: The Demise of a Liberal Democratic Asylum Regime?" *Government and Opposition*, 40/1 (2005): 26-59.

15) Mikko Mattila and Jan-Erik Lane, "Why Unanimity in the Council?: A Roll Call Analysis of Council Voting," *European Union Politics* 2/1(2000): 31-52.

민 신청 숫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가에 지원한 총 망명 신청자 수는 2002년에 370,000-400,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2005년에는 200,000-220,000명으로 줄어 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연합의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제적 의무에 관한 준수 선언에도 불구하고 공동 난민 및 망명 체계의 도입이 분명히 유럽연합의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그 자신의 이해를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안보방위정책: 독자적 유럽 vs. 미국과 부담 공유

코소보와 이라크 전쟁은 인권정책에 대한 영향과 함께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에도 빠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두 전쟁은 모두 유엔의 승인 없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고 유럽은 이 두 전쟁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들의 힘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 전쟁을 통해 유럽의 군사력의 결핍은 독자적인 유럽 건설과 워싱턴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전에 안보방위정책의 추진에 회의적이었던 스웨덴, 핀란드 등도 이라크 전쟁 이후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은 자신의 군사력을 통해 인접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유럽의 변화하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진전에는 유럽의 안보화를 통해 인도주의적 개입의 부담을 공유하려는 미국의 이해도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럽과 미국 두 당사자의 이해의 수렴이 2003년 이후 유럽안보방위정책의 발전속도를 빠르게 만들었다.

유럽안보방위정책의 기원은 1954년 서유럽기구의 수립과 1992년 피터스버그 선언에 따른 그 역할의 확대이었지만, 유럽연합이 공동의 안보정책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는 1998년 세인트 말로에서 있었던 프랑스와 영국의 유럽방위에 관한 공동 선언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발칸반도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서유럽기구의 틀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유럽안보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신뢰할만한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유럽연합의 자율적인 작전능력의 확보에 동의했다. 비록 대서양 동맹을 강조하는 영국과 독자적인 유럽 건설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 사이에 유럽안보방위정책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두 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조율 속에서 위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강화된 유럽연합의 군사력 구성에 동의했다.¹⁶⁾

발칸반도의 위기가 코소보 전쟁과 함께 다시 한번 악화되었을 때 1999년에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정상회의는 헬싱키 주요 목표(Headline Goals)를 채택하였다. 이 결정은 60 일안에 배치되어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5만-6만명의 병사로 이루어진 유럽신속대응군의 창설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유럽신속대응군의 창설이 나토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전개를 피해야 하고 유럽군대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

16) Anand Menon, "From Crisis to Catharsis: ESDP after Iraq," *International Affairs* 80(2004): 631-648.

후 유럽연합과 나토의 유럽안보방위정책에 관한 2002년 선언은 위기관리와 갈등방지에 유럽연합의 역할을 높인다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이 선언은 또한 회원국의 공동방위에 나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유럽연합이 나토의 모든 지휘 시설에 접근할 수 있고 이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2년 선언 이후 2003년 채택된 베를린플러스 합의에서도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모든 위기관리작전에서 나토의 군사시설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유럽연합과 나토 사이에 서로의 역할에 대한 반복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진 미국의 일방주의는 2003년에 있었던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네 나라의 정상회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유럽군사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화시켰다. 물론 영국은 유럽안보방위정책이 나토와 경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유럽의 독자적인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자신들과 함께하는 신유럽과 그렇지 않은 구유럽을 대비시키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비난하였다. 이러한 모든 소란은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한달 만에 군사작전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사라졌다. 미국과 영국이 이끄는 군사작전 기간 동안 무력했던 유럽은 분쟁지역의 종전 후 재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라크 전쟁은 궁극적으로 유럽안보방위정책의 빠른 전개를 막고 있던 서로의 입장차이를 없애고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유럽 건설과 미국의 부담을 공유하는 유럽건설이라는 서로 다른 이해가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유럽연합이 주도한 몇 차례의 군사 및 경찰 작전 이후 유럽연합은 처음으로 2003년에 자신들의 안보방위 원칙을 밝히는 유럽안보전략(European Security Strategy)을 채택하였다. 이 문서에서 유럽연합은 지구화 시대의 주요 위협으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지역갈등, 국가실패, 조직범죄 등을 들고, 현재의 복잡한 문제들은 어떤 한 나라의 힘으로 대응할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기에 빠르고 강력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전략적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를 강조한다. 그러나 개입의 수단은 초기에 군사적이기 보다는 시민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군사적 수단을 채택하더라도 갈등이 발생한 실패한 국가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전 유엔 승인과 함께 다자주의와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전략 원칙은 몇 가지 점에서 부시 독트린과 다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자신의 리더십과 가치 및 원칙의 우위를 강조하는 헤게모니 일방주의(hegemonic unilateralism) 입장을 취해 왔다. 미국의 일방주의 입장은 때때로 개혁의 대상이 되는 비민주적 국가들이 유엔안보리를 구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유엔안보리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또한 선제 공격, 전략적 핵무기 사용, 군사력의 우위 원칙 등으로 이루어진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를 주장하였다. 부시 독트린의 마지막 원칙은 악의 축이나 불량국가 등의 용어를 사용해 세계를 악과 선으로 구분하고, 미국이 선을 대표해 세계를 구한다고 주장하는 도덕적 절대주의(moral absolutism)라고 말할 수 있다.¹⁷⁾ 유럽안보전략과 부시 독트린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다섯 가지 주요 위

17) Moon Chung-In & Bae Jong-Yoon, "The Bush Doctrine and the North Korean Crisis," *Asian Perspective*, 27(2003): 9-45.

협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고, 점증하는 지구적 도전과 변화하는 환경을 인식하는 면에서는 비슷하다. 그들은 또한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지지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다자주의 접근과 유엔의 승인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국민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방주의적 접근과 선택적인 유엔 승인의 인정을 강조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럽안보방위정책 사이의 계속되는 역할 갈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23개의 작전이 결정되었고, 그 가운데 11개 작전이 완전히 끝났으며, 12개 작전은 진행 중이다. 표 3은 유럽안보방위정책 아래서 진행된 유럽연합의 작전을 군사, 경찰, 법치, 국경통제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3 유럽안보방위정책 아래서 유럽연합이 수행한 작전들 (총 23건)

Type	Mission	Code Name	Period	Size
Military	EU military operation in Republic of Macedonia	FYROM-Concordia	Mar 2003-Dec 2003	357
	EU military operation in Democratic Congo	DRC-Artemis	June 2003-Sep 2003	1800
	EU military operation in Bosnia-Herzegovina	EUFOR-Althea	Dec 4 2004-Now	7000
	EU military operation during election process in Congo	EUFOR-RD-Congo	June 2006-Nov 2006	
	EU military operation in Chad & Central African Republic	EUFOR TCHAD/RCA	Jan 2008-Now	3700
	EU military operation against piracy & robbery Somalia	EU NAVFOR Somalia	Dec 2008-Dec 2010	
Police	EU police mission in Bosnia-Herzegovina	EUPM/BiH	Jan 2003-Dec 2008	554+200
	EU police mission in Republic of Macedonia	EUPOL Proxima	Dec 2003-Dec 2005	200
	EU police mission in Kinshasa	EUPOL Kinshasa Congo	April 2005 - June 2007	
	EU support to African Union Mission in Darfur	AMIS	July 2005 - Dec 2007	47
	EU police advisory team in Republic of Macedonia	EUPAT	Jan 2006-Jun 2006	30
	EU police mission in Palestinian Territories	EUPOL COPPS	Jan 2006-Now	32
	EU police mission in Afghanistan	EUPOL Afghanistan	June 2007 for 3 years	195
	EU police mission in Congo	EUPOL RD Congo	July 2007 for 1 year	39
Rule of Law	EU rule of law mission to Georgia	EUJUST THEMIS	July 2004 - July 2005	
	EU security sector reform in Congo	EU SEC RD Congo	June 2005 - Now	
	EU integrated rule of law mission for Iraq	EUJUST LEX Iraq	July 2005 - June 2009	
	EU rule of law mission in Kosovo	EULEX KOSOVO	Feb 2008 - Now	120
	EU security sector reform in Guinea-Bissau	EU SSR in Guinea-Bissau	Jan 2008 for 1 year	15
Border Assistance	Ache monitoring mission	AMM	Sep 2005 - Dec 2006	240

	EU border assistance mission in Palestinian territories	EU BAM Rafah	Nov 2005 - Now	
	EU border mission in Moldova & Ukraine	EU BAM Moldova & Ukraine	Nov 2005 - Nov 2009	200
	European Union monitoring mission Georgia	EUMM Georgia	Sep 2008-Sep 2010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은 회원국가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파견해 위기관리와 분쟁 후 재건에 중점을 둔다. 유럽연합 최초의 군사작전인 마케도니아의 콘코디아(Concordia)는 2001년 이후 마케도니아에서 분쟁을 해결하던 나토의 연합작전(Operation Allied Harmony)을 이어 받은 것이다. 콘코디아에는 총 357명의 병사가 참여했으며 그 가운데 1/3은 주축국가인 프랑스에서 파병되었다. 보스니아의 알테아(Althea) 작전은 1996년 데이튼 평화협정 이후 현지에 주둔해 왔던 나토의 안정화 군을 대신하여 2004년에 시작되었다. 이 작전은 3년의 초기 계획이 완료된 이후 2007년에 연장되었다. 이 작전에는 한 때 7,000명의 병사가 참여했으나 지금은 약 2,500명의 지상군이 유엔헌장 7장에 따른 평화유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콩고 동쪽의 부니아에서 수행중인 아르테미스(Arthemis)는 유럽 지역 이외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군사작전이고 베를린 플러스 협약에 따른 나토의 군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유럽연합이 독자적으로 시작한 첫 작전이었다.

경찰업무 작전(police operation)은 모니터링, 교육, 감독 등을 통해 치안유지 활동을 안정화 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2003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시행되었던 유럽연합 경찰임무(European Union police mission)는 유엔의 국제경찰 태스크 포스 임무를 이어 받은 것이다. 파리/데이튼 평화협정의 연장선상에서 2003-2005년의 초기에 554명의 경찰들이 참여했고, 2006-2008년 시기에는 약 200여명의 국제 스태프들이 경찰 개혁과정과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지역 협력 및 치안 공고화 작업을 지원하였다. 마케도니아의 경찰업무 작전 프록시마(Rroxima)는 군사작전 콘코디아 후속 임무였고 나중에 더 작은 유럽연합 경찰자문팀인 EUPAT으로 대체되었다. 수단에서 수행된 AMIS는 2005-2007년에 수단 다르푸르를 안정시키려는 아프리카 연합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시민/군사 활동을 결합시켜 수행한 작전이다. 이 작전은 해당지역에 군사감독관과 기획, 기술 원조, 장비와 시설을 제공하였고 아프리카 군대의 훈련과 경찰훈련 및 지원을 제공하였다.

법치확립 작전(rule of law operation)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교육요원을 파견하여 사법체계의 강화와 개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EUJUST LEX이라크는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위기관리 임무로써 경찰, 사법,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이라크 관료들을 훈련 시킴으로써 직업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임무들은 보통 다른 작전과 함께 수행된다. 코소보의 EULEX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224호 아래 집행의 권위를 행사하는 유엔 코소보 미션(United Nations Mission in Kosovo)과 함께 수행되었다. 즉, 코소보 EULEX는 유엔 코소보 미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지역기관

들에 자문과 모니터, 감독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경관리 작전(border assistance operation)은 효율적인 국경 통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EU BAM Rafah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가자 지구 라파에서 국경검문 초소의 활동을 모니터 한다. EU BAM Moldova & Ukraine은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밀수와 불법 이민, 불법 상품 송출 등을 통제하는 관세 서비스와 국경관리에 대해 기술적으로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의 작전은 특히 몰도바 국경수비대가 출현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트란스트리안 분리주의자 사이의 국경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체 모니터링 임무(Aceh Monitoring Mission)는 2005년 8월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유아체운동(Free Aceh Movement) 사이에 체결된 양해협정각서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평화협정 이행과정을 모니터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유럽안보방위정책의 작전들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보여준다. 첫째, 대부분의 작전들은 출발부터 새롭게 유럽연합에 의해 시작되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나토와 유엔의 작전을 넘겨 받는 경우가 많았다.¹⁸⁾ 그러나 Artemis나 AMIS경우처럼 유럽연합이 처음부터 나토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베를린플러스 협약에 의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유럽안보방위 정책 작전은 유럽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유럽연합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그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작전지역들은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거나 공적 원조의 수혜국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들 나라들은 유엔이나 나토의 의심스러운 개입을 피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공정한 제 3자로 생각하고 초대하기도 한다.¹⁹⁾ 셋째, 유럽연합은 전통적으로 안보 제공자라기 보다는 안보 소비국가였다. 그러나 최근 몰도바에서 벌인 갈등관리작전과 기타 지역에서 뚜렷한 유럽의 존재는 유럽연합의 정책이 소극적 안보 소비자에서 적극적 안보 제공자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⁰⁾ 넷째,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럽안보방위정책의 예산과 병사의 수로 볼 때 유럽연합이 미국과 경쟁하는 의미 있는 국가가 되기에는 아직 멀다고 볼 수 있다.²¹⁾ 즉, 모든 유럽연합의 작전들은 그 예산의 규모와 병사의 규모 측면에서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대서양 동맹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는 2010정책목표와 전투그룹의 창설 목표 등 유럽연합의 끊임없는 변화에 비추어 보면 빠른 시일 안에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연합이 군사적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선시 하는 것은 두 가지 영역에 대한

18) Jan Wouters Jan & Frank Hoffmeister & Tom Ruys, eds.,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an Ever Stronger Partnership* (The Hague: T.M.C. Asser Press, 2006), 242.

19) Michael Merlingen & Rasa Ostrauskaite, eds.,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An Implementation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2008).

20) Esther Barbé & Benjamin Kienzle, "Security Provider or Security Consumer? The European Union and Conflict Management,"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2(2007): 517-536.

21) Frederic Charillon, "The EU as a Security Regime,"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0(2005), 517-533.

분명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 하나는 유럽 내부의 안보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외부의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안보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안보 차원에서 내외부의 목표에 따라 유럽의 분명한 공간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유럽안보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과정이나 유럽에 대한 공동의 위협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회원국가들 사이의 입장 차이 때문에 유럽연합 자체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많은 회원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동의하더라도 어떤 국가는 경찰임무를 강조할 수 있고, 다른 국가는 군사작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작은 나라와 큰 나라 사이의 갈등 역시 큰 나라들이 군사영역에서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한다면 생겨날 수 있다. 유럽연합과 나토의 관계도 베를린 플러스 협약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조정과 해석의 압력아래 들게 될 것이다. 프랑스는 여전히 단순한 갈등관리를 넘어서 유럽의 공동방위를 위한 더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원하겠지만, 영국은 나토와의 밀접한 협의 아래 유럽안보방위정책이 유지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해의 충돌은 유럽연합이 목표로 하는 강대국에 도달하기도 전에 유럽연합이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외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유럽의 안보 목표를 정의하는 과정은 더욱 복잡하다. 흥미롭게도 유럽안보전략(European Security Strategy)은 과감한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 강조하면서 국민국가의 주권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다. 비록 유럽연합이 다자주의와 개입의 조건으로서 유엔의 사전승인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럽내부 공간에 대한 강력한 방어와 외부의 인도주의적 남용에 대한 과감한 개입은 미래에 유럽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자의적인 조합이 될 수도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적절성과 정도를 판단할 단일한 국제적인 인권 레짐이 없는 한, 유럽의 이러한 개입은 비유럽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유럽안보방위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유럽연합이 기존에 갖고 있던 비군사 분야의 갈등 관리에서 보여준 진정한 장점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코소보 전쟁에서 유럽연합이 지출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건을 위한 민간분야의 지출을 유럽의 군사지출과 합치면 그 총액은 미국의 지출을 능가한다.²²⁾ 게다가 보스니아 전쟁에서 실제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은 미국의 공중폭격보다는 영국과 프랑스의 신속대응군이 내뿜은 포격이었다.²³⁾ 따라서 유럽의 부담공유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는 정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유럽은 이미 발칸반도에서 충분한 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케이간의 주장도 과장된 것일 수 있다. 그는 유럽이 현재 갖고 있는 비현실적인 힘의 개념을 버리고 기존에 미국의 안보 우산아래서 즐기던 태도에서 벗어나 안보 부담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즉, 최소한의 군사력이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²⁴⁾

유럽안보방위정책의 빠른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군사작전과 민간원조

22) Mette Sangiovanni, "Why a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is Bad for Europe," *Survival*, 45(2003): 193-206.

23) Robert Cooper, *The Breaking of Nations* (London: Atlantic Books, 2003).

24) Robert Kagan, "Power and Weakness," *Policy Review* 113(2002).

에 많은 돈을 지출 하고도 아무런 실익 없이 유럽연합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공정한 제 3자의 이미지마저 잃어 버리는 것이다. 만약 유럽연합이 부담공유라는 주장 때문에 군사적 발전을 정당화 할 외부의 영역을 잃어 버리면, 유럽의 내적 안보 공간을 강화하는 일만 남는다. 내적 안보 공간을 규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은 자신의 이해와 국경을 지키는 현실적 타협자로서의 가능성을 유럽연합에게 더 크게 남겨줄 것이다.

4. 결론: 민주적 제국(democratic empire)으로서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인권과 안보 정책을 수립하면서 근대국민국가가 그랬듯이 두 가지 차원에서 자신의 강점을 입증하였다. 유럽연합은 지속적인 경제통합과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이미 거래비용을 줄이고 무임 승차자를 통제하는데 성공하였다. 유럽연합은 또한 유럽안보방위정책의 발전을 통해 군사적 권력으로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갈등이 있는 지역에 믿을 만한 제 3자로서 자주 초대받고 있다. 게다가 근대 국민국가가 영토적 배경을 가졌듯이 유럽연합도 외부인에 대한 더 엄격한 국경통제를 통해 점차 분명한 유럽의 경계를 갖기 시작했다. 공동난민망명정책의 수립은 유럽연합 회원국가들 사이에 내부의 경계를 더 낮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포용과 배제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강화시킨 결과 유럽과 비유럽 사이의 장벽은 더 높아 졌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시민이 되는 자격과 유럽의 정체성 문제도 유럽경계 밖에 있는 외부인의 배제를 통해 우회적으로 분명해 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발전의 결과 하나의 민주적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제국은 공포와 명예, 그리고 이익이라는 세가지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²⁵⁾ 유럽연합은 테러리스트의 위협과 그들의 통제되지 않는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정당한 공포를 갖고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세계의 규범적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명예를 갈망한다. 나아가서 유럽연합은 공간적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지키려는 이익을 갖고 있다. 물론 구 제국과 신 제국 사이에는 그 작동 양식에 차이가 있다. 구 제국이 영토적 침략을 통해 팽창을 추구했다면 신 제국은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해 그 영향력을 높이하고자 한다. 고대의 민주적 제국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호전적인 제국은 양립하기 쉽지 않았다. 투키디데스는 이미 일반 시민의 민주적 염원과 폭군적 지도자의 호전적 팽창 사이에서 민주적 제국이 갖는 모순된 본질을 설명한 바 있다. 고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현대의 민주적 제국에도 이러한 모순된 본질은 존재한다.

현대적인 모순과 가장 가까운 논리는 국제법에 대한 세계주의적 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신 전통주의로 귀결되고 있는 블레어 독트린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⁶⁾ 코소보 전쟁기간 동안 국민국가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우선하는 입장과 국민국가의 주권을 넘어선 인도주

25) Thucydides, *History of Peloponnesian War*, Rex Warner ed., (Baltimore: Penguin Books, 1980), 1.75.

26) China Mieville, "Anxiety and the Sidekick State: British International Law after Iraq."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6/2(2005): 441-458.

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입장이 충돌하였다. 블레어는 이 논쟁에서 국민국가의 주권에 대한 존중보다는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1999년 4월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영국의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은 영토에 대한 제국주의적 이해 때문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가치를 목표로 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는 또한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영토에 근거한 근대 국제 질서는 그 적실성을 잃었고 이제는 인권에 근거한 세계주의적 국제법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⁷⁾

그러나 블레어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주장은 세가지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주장은 영토 주권을 근거로 한 근대국민국가의 출현 이후 인권의 보호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주장은 또한 단일한 국제인권 레짐이 없는 한 어떤 기준에 의해 누가 인도주의적 긴급성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무력하다. 셋째, 국제적 개입에 따른 무장충돌에 의해 분쟁지역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개입이 더 나은 인권보호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다.

인권보호를 위해 인도주의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블레어의 세계주의적 입장은 9/11이후 신 전통주의로 변화한다. 그의 2004년 세지필드 연설은 여전히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자에 대항하는 군사적 개입을 지지하며, 주권에 대한 존중을 우선하는 국제법의 비적실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 공격으로부터 주권을 지킬 필요성과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접근을 함께 취하고 있다.²⁸⁾ 다시 말하자면, 신 전통주의는 외부의 세계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에서는 세계주의적 해석을 강조하지만 테러에 대한 전쟁에서는 자국의 주권의 수호를 강조한다. 따라서, 자신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이름아래 정당화할 개연성은 항상 남아 있는 것이다.

물론 블레어는 유럽연합의 의도를 정당하게 대변할 대표적인 인물은 아니고 유럽연합은 항상 군사개입에서 다자주의와 유엔의 사전 승인을 강조해 왔다. 유럽연합의 고위 관료인 로버트 쿠퍼는 신 보주주의자들의 신 전통주의 주장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궁극적인 힘의 두 가지 근원으로써 군사력과 정당성을 들고 정당성 없는 군사력은 혼란을 가져오고 군사력이 없는 정당성은 쉽게 전복된다고 주장한다.²⁹⁾ 그는 정당성의 문제를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과 연결시킨다. 정책은 반드시 국가이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고 때때로 국가정체성으로부터 나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변화를 보장하는 길은 이해를 둘러싼 협상을 뛰어 넘는 것이다. 즉, 우리는 국제분쟁의 영구적인 해결을 위해 정체성의 재규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쿠퍼의 관점에서 보면 오직 넓고 새로운 정체성이 개발될 때 전쟁 없이 살아갈 국제적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쿠퍼

27) Tony Blair, "Doctrine of International Community," http://www.pbs.org/newshour/bb/international/jan-june99/blair_doctrine4-23.html (Search date: 2008. 4. 9)

28) Tony Blair, "Sedgefield Address," *The Guardian*, March 5, 2004, <http://politics.guardian.co.uk/iraq/story/0,12956,1162991,00.html> (Search date: 2008. 4. 9).

29) Cooper, *The Breaking of Nations*, 88.

는 군사력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이 군사적 점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봉쇄에 있다고 본다.³⁰⁾ 결국 유럽연합의 이 고위관료는 신 전통주의 입장과 정당성에 근거를 둔 새로운 국제공동체의 구성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연합의 발전방향이 가져 올 가능한 결과, 즉, 군사력과 분명한 경계를 갖춘 수퍼 국민국가로서 유럽은 인권침해에 대한 군사 개입과 테러리스트 위협에 대한 주권의 보호를 편리하게 조합하는 신 전통주의의 새로운 대리인이 될 개연성이 있다. 만약 안보와 인권정책이 유럽의 경계와 공간을 분명하게 가져 오는 쪽으로 작동한다면 유럽연합이 규범적 리더가 되는 길은 거대 크기의 국민국가를 재생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가의 경계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정체성을 인정하며 교류하는데 있을 것이다. 외부인에 대해 부정적인 배제의 정치체제를 키우기 보다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를 격려하는 것이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함을 존중하는 길일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수퍼 국민국가 유럽의 위계적 거버넌스보다 회원국가 간 네트워크로서 유럽의 다원적 거버넌스를 지지하는 이유이다. 후자는 유럽연합이 규범적 리더가 되는 것을 돕지만, 전자는 대서양 건너편에 또 하나의 현실적 타협자로서 거대 국가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다.

30) Cooper, *The Breaking of Nations*, 87.

[참고문헌]

- Barbé, E. & Kienzle, B. 2007. "Security Provider or Security Consumer? The European Union and Conflict Management,"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2: 517-536.
- Biscop, S. 2004. "Able and Willing? Assessing the EU's Capacity for Military Action,"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9: 509-527.
- Bretherton, C. & Vogler, J. eds., 2006. *The European Union as a Global Actor* (London: Routledge).
- Brinkmann, G. 2004. "The Immigration and Asylum Agenda," *European Law Journal* 10/2.
- Bull, H. 1977. *The Anarchical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erny, P. 1993. "Plurilateralism: Structural Differentiation and Functional Conflict in the Post-Cold War world Order," *Millennium* 22/1.
- Charillon, F. 2005. "The EU as a Security Regime,"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0: 517-533.
- Cooper, R. 2003. *The Breaking of Nations* (London: Atlantic Books).
- Dacyl, W. J. 1995. "Europe Needs a New Protection System for 'Non-Convention'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7/4.
- European Council, 2003. *European Security Strategy: A Secure Europe in a Better World*. Brussels
- Featherstone, K. 1994. "Jean Monnet and the Democratic Deficit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2/2.
- Fitzpatrick, J. 2000. "Temporary Protection of Refugees: Elements of a Formalized Regim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4: 279-306.
- Gamble, A. 2007. "Regional Blocs, World order, and the New Medievalism," in Telo, M. ed., *European Union and New Regionalism*. Aldershot: Ashgate.
- Habermas, J. 1999. 'The European Nation-State,' in Cronin and Greiff (eds.), *The Inclusion of the Others* (Cambridge: The MIT Press).
- Hathaway, J. 2005. *The Rights of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Hendemann-Robinson, M. 2001. "Third Country Nationals Resident within the EU," *Common Market Law Review* 38: 525-586.
- Henttne, B. & Soderbaum, F. 2005. "Civilian Power or Soft Imperialism? The EU as a Global Actor and the Role of Interregionalism,"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0: 535-552.
- Howorth, J. 2004. "Discourse, Ideas, and Epistemic Communities in European

- Security and Defense Policy," *West European Politics* 27: 29-52.
- . 2003. "France, Britain, and the Euro-Atlantic Crisis," *Survival* 45: 173-192.
- Hiil, C. & Smith, M. 2005.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gan, R. 2002. "Power and Weakness," *Policy Review* 113.
- Kim, N. K. 2007a. "Britain's Road to Iraq War: Structure and Agency,"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47/1: 259-281.
- . 2007b. "Human Rights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War, Refugee, and Identity," *Journal of EU Studies* 12/2: 37-73.
- Koser, K., Walsh, M., Black, R. 1998. "Temporary Protection and the Assisted Return of Refugees from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10/3.
- Lavenex, S. 2001. "The Europeanization of Refugee Policies: normative Challenges and Institutional Legaci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9/5.
- Levy, C. 2005. "The European Union after 9/11: The Demise of a Liberal Democratic Asylum Regime?" *Government and Opposition* 40/1: 26-59.
- Luca, D. 1994. "Questioning Temporary Prot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6/4: 535-538.
- Lucarelli, S. & Manners, I. eds., 2006. *Values and Principles in European Union Foreign Policy* (London: Routledge).
- Manners, I. 2002. "Normative Power Europe: a Contradiction in Ter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0: 235-258.
- Martinelli, M. 2006. "Helping Transition: The EU Police Mission in Congo,"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1: 379-399.
- Mather, J. 2005. "The Court of Justice and the Union Citizen," *European Law Journal* 11/6: 722-743.
- Mattila, M. and Lane, J. 2000. "Why Unanimity in the Council?: A Roll Call Analysis of Council Voting," *European Union Politics* 2/1: 31-52.
- Menon, A. 2004. "From Crisis to Catharsis: ESDP after Iraq," *International Affairs* 80: 631-648.
- Merlingen, M. & Ostrauskaite, R. eds., 2008.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An Implementation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 Mieville, C. 2005. "Anxiety and the Sidekick State: British International Law after Iraq."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6/2: 441-458.
- Moon, C. I. & Bae, J. Y. 2003. "The Bush Doctrine and the North Korean Crisis," *Asian Perspective* 27: 9-45.
- Nicol, A. 2004. "Between Immigration and Policing Cross Recognition." *European*

- Law Journal* 10/2: 171-181.
- O'Connell, M. E. 2000. "The UN, NATO, and International Law after Kosovo," *Human Rights Quarterly* 22: 57-89.
- Rifkin, J. 2004. *The European Dream*. New York: Penguin.
- Roxström, E. and Gibney, M. 2003. "The Legal and Ethical Obligations of UNHCR," in Niklaus Steiner, Mark Gibney, and Gil Loescher, eds., *Problems of Protection*. London: Routledge.
- Ruggie, J. 1993.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1: 139-174.
- Salmon, T. 2005.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Built on Rocks or Sand?"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0: 359-379.
- Salzman, T. 1998. "Rape Camps as a Means of Ethnic Cleansing." *Human Rights Quarterly* 20: 348-378.
- Sangiovanni, M.E. 2003. "Why a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is Bad for Europe," *Survival* 45: 193-206.
- Scheipers, S. & Sicurelli, D. 2007. "Normative Power Europe: A Credible Utopia,"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5/2: 435-457.
- Spruyt, H. 1994. *The Sovereign State and Its Competitors: An Analysis of System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iner, N. 2003. "Arguing about Asylum," in Niklaus Steiner, Mark Gibney, and Gil Loescher, eds., *Problems of Protection* (London: Routledge).
- Triantafyllou, D. 2002. "The 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Rule of Law." *Common Market Law Review* 39: 53-64.
- Tilly, C. 1975.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ucydides, 1980. *History of Peloponnesian War*, Rex Warner ed., (Baltimore: Penguin Books).
- UNHCR, 2000. *The State of the World's Refugees 2000: Fifty Years of Humanitarian Action*. Geneva: UNHCR
- Weiler, J. 2002. "A Constitution for Europe? Some Hard Choic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0/4: 563-580.
- Weller, M. 2005. "Forcible Humanitarian Action: The Case of Kosovo," in Michael Bothe, Mary Ellen O'Connell, Natalino Ronzitti eds., *Redefining Sovereignty* (New York: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 Whitman, R. 2006. "Road Map for a Route March? (De) civilizing through the EU's Security Strategy,"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1: 1-15.
- Wouters, J. & Hoffmeister, F. & Ruys, T. eds., 2006.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an Ever Stronger Partnership (The Hague: T.M.C. Asser Press).

Zielonka, J. 2007. "Plurilateral Governance in the Enlarged European Un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5/1: 187-209.

———. 2008. "How to Exercise Europe's Power," *International Spectator* 43/2: 63-77.